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기획조정실,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2025.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기획조정실 ····· 1

Ⅰ. 세 입 ····· 3

<일반회계>

(1) 토지대여료 ····· 6

(2) 건물대여료 ····· 10

(3) 기타재산이자수입 ····· 13

(4) 과태료 ····· 15

(5) 과징금 ····· 19

(6) 가산금 ····· 21

(7) 기타경상이전수입 ····· 24

(8)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 27

(9)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 29

(1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31

Ⅱ. 세 출 ····· 33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1-501) ····· 36

(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132-303) ····· 49

(3)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 61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7142-317) ····· 71

2. 무역위원회 ····· 81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1233-301) ····· 84

3. 국가기술표준원 ····· 101

<일반회계>

(1) 신기술제품인증(3731-301) ····· 106
(2)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 134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3731-303) ····· 154
(4)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3731-304) ····· 192
(5)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 ····· 210
(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3731-306) ····· 240
(7)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3731-307) ····· 258
(8)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 271
(9)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 291
(10)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3731-312) ····· 315
(1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 ····· 337
(12)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3731-328) ····· 354
(13)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3731-330) ····· 372
(14)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3731-331) ·· 384
(1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 395
(16)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 412
(17)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 안전관리(3732-306) ····· 432
(18)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 449
(19)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3732-310) ····· 464
(20)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3732-312) ····· 491

(2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 508
(22)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3736-302) ····· 557
(23)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36-304) ····· 580
(2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 608
(25) 기술표준정책(7134-302) ····· 616

기획조정실

세 입

세입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총계	**138,616**	**157,872**	**180,267**	**188,767**	**30,895**	**19.6**
51 관유물대여료	**20,556**	**23,077**	**22,536**	**22,536**	**△541**	**△2.3**
건물대여료 (51-512)	3,938	4,915	4,358	4,358	△557	△11.3
토지대여료 (51-511)	16,618	18,162	18,178	18,178	16	0.1
54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32,826**	**12,774**	**23,939**	**23,939**	**11,165**	**87.4**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32,826	12,774	23,939	23,939	11,165	87.4
56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911**	**820**	**1,120**	**1,120**	**300**	**36.6**
과징금 (56-565)	819	670	756	756	86	12.8
과태료 (56-563)	92	150	364	364	214	142.7
58 가산금	**1**	**6**	**12**	**12**	**6**	**100.0**
가산금 (58-581)	1	6	12	12	6	100.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83,437**	**120,302**	**131,758**	**131,758**	**11,456**	**9.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83,437	120,302	131,758	131,758	11,456	9.5
69 잡수입	**885**	**893**	**902**	**902**	**9**	**1.0**
기타잡수입 (69-691)	885	893	902	902	9	1.0
84 유가증권매각대	**-**	**-**	**-**	**8,500**	**8,500**	**순증**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84-843)	-	-	-	8,500	8,500	순증

(1) 토지대여료
51 - 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토지대여료	16,607	18,162	18,178	18,178	16	0.08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토지 ·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 · 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 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18,162,000	▪ 외국인투자지역 : 7,254,585.04㎡×1,392.57원=10,103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예상단가=8,059백만원 - 마산 : 637,750.93㎡×6,108원=3,895백만원 - 군산 : 958,816㎡×1,147원=1,100백만원 - 대불 : 936,862.5㎡×1,092원=1,023백만원 - 동해 : 148,688㎡×877원=130백만원 - 율촌 : 184,157㎡×1,488원=274백만원 - 김제 : 535,553.6㎡×791원=424백만원 - 울산 : 404,489㎡×3,000원=1,213백만원
2025예산	18,178,000	▪ 외국인투자지역 : 7,254,585.04㎡×1,352.10원=9,809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 예상임대면적×예상단가=7,822백만원 - 마산 : 630,127.17㎡×5,736원=3,614백만원 - 군산 : 927,482.9㎡×1,176원=1,090백만원 - 대불 : 936,862.5㎡×1,092원=1,023백만원 - 동해 : 152,721㎡×949원=145백만원 - 율촌 : 211,127.5㎡×1,488원=314백만원 - 김제 : 601,541.2㎡×840원=505백만원 - 울산 : 404,488.1㎡×2,798원=1,131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547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6,722	16,722	16,722	16,388	14,892	89.1	90.9	1,496	-
'22	17,480	17,480	17,480	22,798	21,036	120.3	92.3	1,762	-
'23	17,779	17,779	17,779	18,784	16,607	93.4	88.4	2,177	-
'24	18,162	18,162	18,162	-	-	-	-	-	-
'25	18,178	18,178	18,178	-	-	-	-	-	-

마. 최근 3년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 한 솔
		044-203-5080		044-203-5086

(2) 건물대여료
51 - 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건물대여료	3,934	4,915	4,358	4,358	△557	△11.3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물류창고 및 청사·업무지원동 입주기업에 부과한 건물임대료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4,915,000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마산 : 232,219.61㎡ × 10,270원 = 2,385백만원 - 군산 : 71,398㎡ × 11,989원 = 856백만원 - 대불 : 62,295.75㎡ × 8,234원 = 513백만원 - 동해 : 34,913㎡ × 6,816원 = 238백만원 - 율촌 : 12,359.12㎡ × 8,181원 = 101백만원 - 김제 : 35,149.78㎡ × 10,393원 = 365백만원 - 울산 : 44,378.86㎡ × 10,320원 = 457백만원
2025예산	4,358,000	▪ (자유무역지역) 예상임대면적 × 예상단가 - 마산 : 215,260.27㎡ × 9,839원 = 2,118백만원 - 군산 : 77,064.63㎡ × 7,250원 = 558백만원 - 대불 : 62,289.56㎡ × 8,215원 = 512백만원 - 동해 : 34,913㎡ × 6,816원 = 238백만원 - 율촌 : 10,272.19㎡ × 8,181원 = 84백만원 - 김제 : 35,149.78㎡ × 10,704원 = 376백만원 - 울산 : 39,776.53㎡ × 8,157원 = 324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48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5,378	5,378	5,378	2,941	2,525	47.0	85.8	416	-
'22	5,378	5,378	5,378	4,497	3,880	72.1	86.2	617	-
'23	5,378	5,378	5,378	4,931	3,934	73.1	79.7	996	-
'24	4,915	4,915	4,915	-	-	-	-	-	-
'25	4,358	4,358	4,358	-	-	-	-	-	-

마. 최근 3년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 한 솔
		044-203-5080		044-203-5086

(3)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기타재산이자수입	32,825	12,774	23,939	23,939	11,165	87.4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보조금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12,774,000	▪ '23년 사업비 총액 × 예상 이자수익율(최근 3개년 이자수익율 가중평균) = 4,389,690백만원 × {(0.39% × 0.2) + (0.16% × 0.3) + (0.33% × 0.5)} = 12,774백만원
2025예산	23,939,000	▪ '24년 사업비 총액 × 예상 이자수익율(최근 3개년 이자수익율 가중평균) = 5,009,586백만원 × {(0.16% × 0.2) + (0.3% × 0.3) + (0.71% × 0.5)} = 23,939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	-	-	-	-	-	-	-	-
'22	20,891	20,891	20,891	12,437	11,974	96.2	96.2	462	-
'23	15,102	15,102	15,102	32,864	32,825	217.3	99.8	38	-
'24	12,774	12,774	12,774	-	-	-	-	-	-
'25	23,939	23,939	23,939	-	-	-	-	-	-

마. 최근 3년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4) 과태료
56 - 56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과태료	92	150	364	364	214	142.6

가. 법적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과태료)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⑧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②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준용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8항(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舊)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舊)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나. 세입 개요

○ 전기공사허위실적 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규정(연비등급 등)을 위반한 제작사 · 수입사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품목(TV, 냉장고 등)의 등급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업체에 과태료 부과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舊)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150,000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 가중평균 = 150백만원 * [(251*0.2) + (220*0.3) + (67*0.5)] = 150백만원
2025예산	364,000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 가중평균 = 110백만원 * [(220*0.2) + (67*0.3) + (92*0.5)] = 110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254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600	600	600	358	220	36.6	61.4	138	-
'22	600	600	600	195	68	11.3	34.8	127	-
'23	600	600	600	243	92	15.3	37.8	151	-
'24	150	150	150	-	-	-	-	-	-
'25	364	364	364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5) 과징금
56 - 5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과징금	818	670	756	756	86	12.8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과징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670,000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670백만원 * [(502*0.2) + (294*0.3) + (962*0.5)) = 670백만원
2025예산	756,000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756백만원 * [(294*0.2) + (962*0.3) + (818*0.5)) = 756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251	1,251	1,251	7,466	295	23.5	3.9	7,171	-
'22	1,251	1,251	1,251	8,090	963	76.9	11.9	7,127	-
'23	509	509	509	7,959	818	160.7	10.2	7,140	-
'24	670	670	670	-	-	-	-	-	-
'25	756	756	756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6) 가산금
58 - 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가산금	1	6	12	12	6	100

가. 법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도록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부과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6,000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6백만원 * [(6*0.2) + (16*0.3) + (0*0.5)) = 6백만원
2025예산	12,000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12백만원 * [(16*0.2) + (0*0.3) + (0.7*0.5)) = 4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8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8	18	18	269	16	88.8	5.9	253	-
'22	18	18	18	256	0.2	1.1	0.07	256	-
'23	18	18	18	257	0.8	4.4	0.3	256	-
'24	6	6	6	-	-	-	-	-	-
'25	12	12	12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기타경상이전수입	83,437	120,302	131,758	131,758	11,456	9.5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입 개요

○ 출연금, 민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기타 반납금, 연체료 등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120,302,000	▪ '23년 사업비 총액 × 예상 반환율(최근 3개년 반환율 가중평균) = 4,010,066백만원 × {(2.95% × 0.2) + (3.53% × 0.3) + (2.71% × 0.5)}= 120,302백만원
2025예산	131,758,000	▪ '24년 사업비 총액 × 예상 반환율(최근 3개년 반환율 가중평균) = 5,009,586백만원 × {(3.53% × 0.2) + (2.71% × 0.3) + (1.80% × 0.5)}= 121,280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0,478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63,595	163,595	163,595	136,664	135,398	82.7	99.0	1,266	-
'22	163,595	163,595	163,595	111,161	106,214	64.9	95.5	4,946	-
'23	142,660	142,660	142,660	84,764	83,437	58.4	98.4	1,327	-
'24	120,302	120,302	120,302	-	-	-	-	-	-
'25	131,758	131,758	131,758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8)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3 -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기타잡수입	10	26	32	32	6	23.0

가. 법적 근거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업체의 전기·수도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26,000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26백만원 * [(8*0.2) + (19*0.3) + (38*0.5)) = 26백만원
2025예산	32,000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20백만원 * [(19*0.2) + (38*0.3) + (10*0.5)) = 20백만원 ▪ 미수납건 예상수납액 : 12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45	45	45	19	18	40.0	94.7	1	-
'22	21	21	21	39	38	180.9	97.4	1	-
'23	34	34	34	12	10	29.4	83.3	2	-
'24	26	26	26	-	-	-	-	-	-
'25	32	32	32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9)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14 -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기타잡수입	873	867	870	870	3	0.3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해당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권자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공동부담금

다. 2025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867	▪ 최근 3개년('20~'22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867백만원 * [(855*0.2) + (871*0.3) + (869*0.5)) = 867백만원
2025예산	870	▪ 최근 3개년('21~'23년) 수납액 산술평균 × 가중평균 = 870백만원 * [(871*0.2) + (869*0.3) + (871*0.5)) = 870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734	734	734	1,031	871	118.6	84.4	160	-
'22	807	807	807	1,056	869	107.6	82.2	187	-
'23	864	864	864	1,108	871	100.8	78.6	236	-
'24	867	867	867	-	-	-	-	-	-
'25	870	870	870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재무팀)	최준근 팀장		박한솔
		044-203-5080		044-203-5086

(10)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 - 84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액	2024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	-	-	8,500	-	-

가. 법적 근거

○ 산업집적법 제47조(자금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제7호

-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 · 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나. 세입 개요

○ 수입 내용 : 산업단지환경조성(3333-305)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중 산단환경개선펀드로 2015년 취득한 유가증권(수익증권)의 매도

○ 수입 금액 및 납기일정 : 유가증권 매도에 따른 수입을 2025년 말까지 국고에 수납

다. 2025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	-
2025예산	8,500	· 2015년 산단환경개선펀드 유가증권 매도 : 8,500,000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8,500	-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년 청산 예정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회수 예상자금 일부를 기타유가증권 매각대에 신규 반영 필요(예결위, 2025년 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청산 예정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의 회수 예상자금 일부(8,500백만원)를 기타유가증권매각대에 신규 반영

바. 담당자 정보

실 · 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이재석	신현우	정지웅
		044-203-4430	044-203-4432	044-203-4434

세 출

세출예산 총괄표(기획조정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기획조정실	**7,873**	**8,402**	**8,253**	**8,253**	**△149**	**△1.8**
<일반회계>	**7,873**	**8,402**	**8,253**	**8,253**	**△149**	**△1.8**
713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125**	**2,849**	**2,983**	**2,983**	**134**	**4.7**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7131-501)	3,125	2,849	2,983	2,983	134	4.7
7132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1,192**	**2,276**	**1,898**	**1,898**	**△378**	**△16.6**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7132-303)	1,192	2,276	1,898	1,898	△378	△16.6
7133 본부정책수립운영	**1,341**	**1,393**	**1,965**	**1,965**	**572**	**41.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7133-301)	1,341	1,393	1,965	1,965	572	41.1
7142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	**2,215**	**1,884**	**1,407**	**1,407**	**△477**	**△25.3**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7142-317)	2,215	1,884	1,407	1,407	△477	△25.3

사 업 명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1-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5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 열 규	박 성 배	나 웅 주
		정보관리담당관	044-203-5550	044-203-5552	044-203-555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031	2,749	3,327	2,983	234	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7	3,222	3,031 [3,031]	100	91	2,749	2,849	2,730 [2,730]	2,749	2,630 [2,630]	109	10	2,983
· 정보시스템 고도화	602	817	639	100	78	612	712	595	612	495	109	8	230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20	1,420	1,412	-	8	1,430	1,430	1,428	1,430	1,428	0	2	1,286
· 정보보호체계 구축	985	985	979	-	5	707	707	707	707	707	0	0	719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	-	-	-	-	-	-	-	-	-	-	100
· 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	-	-	-	-	-	-	-	-	-	-	648
○ 비목별 분류(합계)	3,007	3,222	3,031	100	91	2,749	2,849	2,730 [2,730]	2,749	2,630 [2,630]	109	10	2,983
· 관리용역비 (210-15)	1,465	1,465	1,457	-	8	1,475	1,475	1,473	1,475	1,473	0	2	1,331
· 사업추진비 (240-01)	6	6	6	-	-	6	6	6	6	6	0	0	6
· 일반연구비 (260-01)	250	438	352	62	24	453	515	465	453	403	43	7	376
· 자산취득비 (430-01)	1,286	1,313	1,215	38	59	815	853	786	815	748	65	2	1,210
·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20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07	3,222	3,031	100	91	2,749	2,849	2,730 [2,730]	2,749	2,630 [2,630]	109	10	2,983
· 정보시스템 고도화	602	817	639	100	78	612	712	595	612	495	109	8	230
- 사업추진비 (240-01)	6	6	6	-	-	6	6	6	6	6	-	-	6
- 일반연구비 (260-01)	250	438	352	62	24	453	515	403	453	403	43	7	168
- 자산취득비 (430-01)	346	373	281	38	54	153	191	86	153	86	65	1	56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20	1,420	1,412	-	8	1,430	1,430	1,428	1,430	1,428	0	2	1,286
- 관리용역비 (210-15)	1,420	1,420	1,412	-	8	1,430	1,430	1,428	1,430	1,428	0	2	1,286
· 정보보호체계 구축	985	985	979	-	5	707	707	707	707	707	0	0	719
- 관리용역비 (210-15)	45	45	45	-	-	45	45	45	45	45	0	0	45
- 자산취득비 (430-01)	940	940	934	-	5	662	662	662	662	662	0	0	674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	-	-	-	-	-	-	-	-	-	-	10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40
-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20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40
· 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	-	-	-	-	-	-	-	-	-	-	648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168
- 자산취득비 (430-01)	-	-	-	-	-	-	-	-	-	-	-	-	4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對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시스템고도화, 유지보수 및 운영) 산업부 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직원들의 정책업무 지원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체계구축)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 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실시,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로 데이터행정 기반 구축 및 산업부 데이터 기반 행정 중장기계획 수립
- (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소에 관계 없이 하나의 PC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조의2, 제30조, 제52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②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00),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05),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기본계획 수립('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13~)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7)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시행('20)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3,220	3,265	3,007	2,749	2,9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부내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정보시스템 고도화 : 230백만원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224백만원

가. 홈페이지 기능 개선 : 140백만원

○ (주요내용) 클라우드 시스템 교체에 따른 AP 이전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등

- AP 이전(대표 홈페이지 등 3종) WEB/WAS/DB 환경 재구성, DB분리 및 재설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 컨텐츠 제공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 등

○ (산출내역)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 PM	응용SW개발자	UI/UX개발자
투입인력		3	9.18	1
노임단가		9,525,983	7,128,530	6,595,965
인건비		28,577,949	65,439,905	6,595,965
제경비	직접인건비×15%	4,286,692	9,815,986	989,395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3,286,464	7,525,589	758,536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3,615,111	8,278,148	834,390
합 계				140,000,000

나. 업무자동화(RPA) 구축 : 84백만원

○ (주요내용) 단순, 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비용,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 추진

* 로봇엔진 라이선스 구입 : 56백만원, 자동화 2개 과제 발굴 및 개발 : 28백만원

○ (산출내역)

- 로봇라이선스 구입

품명	수량	단가	금액
RPA 관리용 웹페이지	2	13,200,000	26,400,000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	1	4,950,000	4,950,000
자동화 실행 프로그램(봇)	4	6,050,000	24,200,000
합 계			56,000,000

- 신규 업무자동화 과제(2건) 개발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업무분석가	IT기획자	IT컨설턴트
투입인력		0.5	0.5	1
노임단가		11,409,840	8,124,332	10,082,426
인건비		5,704,920	4,062,166	10,384,899
제경비	직접인건비×15%	855,738	609,325	1,557,735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656,066	467,149	1,194,263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721,672	513,864	1,313,690
합 계				28,000,000

② 정보화 협의체 운영 : 6백만원

ㅇ (주요내용)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간의 시행계획 수립, 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정보화 협의체 운영

* 산업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정보화 협의체 운영(0.3백만원×20회)

(2) 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1,286백만원

① H/W 유지보수 : 108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22종) : 106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 2백만원

구분	H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548,576,000	7%	39,497,470
3~4등급	1,095,827,000	6%	69,037,100
합 계	1,644,403,000	-	108,534,570

②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 25백만원

구분	네트워크 장비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 계	352,813,000	7%	25,204,960

③ 상용 S/W 유지보수 : 250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22종) : 230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 5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 2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 13백만원

구분	상용 SW		
	도입가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2등급	2,245,981,000	11%	242,297,330
3~4등급	86,100,000	9%	7,740,390
합 계	2,332,081,000	-	250,037,720

④ 개발 S/W 유지보수 : 722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22종) : 504백만원, 디지털도서관(1종) : 15.5백만원,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1종) : 19백만원, 광업정보시스템(1종) : 133.5백만원, 무역구제업무시스템(1종) : 16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1종) : 13.5백만원, 자유무역지역통합홈페이지관리시스템(1종) : 20.5백만원

구분	개발 SW		
	구축비	요율	유지보수 비용 (백만원 미만 절사)
합 계	8,030,632,000	9%	722,756,880

⑤ 위탁운영비 : 113백만원

가. 정보화사업(시스템) 운영지원 : 57백만원

- 사업·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운영지원, RPA SW 지원 등(기술자 1인)

* 산업부 대표 홈페이지, 16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실물경제 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업무 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1명) 상주 필요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지원 기술자
투입인력		12
노임단가		3,407,639
인건비		40,891,668
제경비	직접인건비×15%	6,644,896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4,753,656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229,022
합 계		57,519,242

나. 광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56백만원

- 사용자 업무지원, 민원대응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기술자 1인)

* 광업정보시스템은 광업권 행정업무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으로, '23년 온라인 민원발급건수가 77,554건에 달하는 등 업무지원·민원대응 소요가 많아 전문 인력 상주 필요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IT시스템기술지원
투입인력		12
평균임금		3,500,000
인건비		42,000,000
제경비	직접인건비×15%	6,825,00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4,882,500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5,370,750
합 계		59,078,250
할인율	5.2%	56,000,000

⑥ 기타 운영비 : 68백만원

-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데이터 및 분석 자료 구매 : 68백만원

* 국제 원자재 시장의 산업 관련 주요 16개 품목별 원자재 지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전문 분석기관을 통하여 제공받음

(3) 정보보호체계구축 : 719백만원

① 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 237백만원

○ (사업목적)

- 산업부 내·외부망 PC 및 서버 대상 바이러스 감염 방지 및 운영체제 최신 패치 등 보안기능 유지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능화·고도화 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 필요

* 사용자 및 서버용 내·외부망 보안 프로그램 연간 라이선스 유지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백신	1,500	26,667	40,000,000
내PC지키미	1,500	20,000	30,000,000
패치관리시스템(PMS)	1,500	20,000	30,000,000
Microsoft GA Subscription	600	228,334	137,000,000
합 계			237,000,000

② 노후화 장비 교체 : 167백만원

○ 우리 부 내·외부망의 보안시스템(방화벽, 로그기록 등)을 구성하는 주요 보안장비의 유지·관리·최적화 및 전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후 장비 적시 교체 및 이중화 장비 신규 추가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내) 사용자방화벽 #1	1	23,925,000	23,925,000
(내) 사용자방화벽 #2	1	23,925,000	23,925,000
(내) 지니안 EDR	1	22,000,000	22,000,000
(외) 지니안 EDR	1	22,000,000	22,000,000
(내) 리눅스 백신	1	24,180,000	24,180,000
(외) 리눅스 백신	1	24,180,000	24,180,000
(내) 웹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1	15,950,000	15,950,000
(내) 웹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1	10,840,000	10,840,000
합 계			167,000,000

③ 보안나라 '국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교체 : 270백만원

○ (주요내용) 국가 암호이용기반시스템의 운용 종료 예정('25.12월)에 따른 신규 장비 도입 필요
- 국가 암호이용기반 시스템(NCI-19) 도입 필요

품명	수량	단가	금액
NCI-19KG(키 생성시스템)	1	53,000,000	53,000,000
NCI-19IMS(정보 관리시스템)	2	52,000,000	104,000,000
NCI-19KI(키 발급 시스템)	1	56,300,000	56,300,000
NCI-19PI(암호프로그램 주입 시스템)	1	56,000,000	56,000,000
합 계			269,300,000

④ 정보보안 수준 강화 : 45백만원

○ (사업목적) 지능화·고도화되는 해킹 시도 및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점검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보안강화를 위해 비표준 기술 제거, 유해 게시물 등록 차단, UI/UX 최적화 등 주기적 점검 진행

○ (산출내역)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공 웹사이트 점검	1	45,000,000	45,000,000
합 계			45,000,000

(4)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100백만원

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40백만원

○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0백만원

내역	금액
공모전 개최, 상금 지급, 홍보 및 수요조사 등	20,000,000
합 계	20,000,000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용역 : 20백만원

내역	금액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품질관리, 오픈API 개발,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전방에 대한 용역	20,000,000
합 계	20,000,000

②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 60백만원

○ 산업부 협업부서 지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 40백만원

내역	금액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분석: 20백만원×2개 과제 또는 40백만원 x1개 과제	40,000,000
합 계	40,000,000

○ 민·관 데이터 전문가 연구협의회 운영 : 20백만원

내역	금액
협의체 구성·운영·심사·강의 및 인쇄비 등	20,000,000
합 계	20,000,000

(5) 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648백만원

○ (사업목적)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업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소에 관계 없이 하나의 PC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

○ (사업내용) '27년까지 3년간 부내 직원 대상으로 온북 점진적 배포 추진('25년 100대 시범 도입)

○ (산출내역)

구 분		단가	수량	금액
구름 플랫폼	VPN	26.2	2	52.4
	VPN라이선스	0.07	200	13.2
	GPMS	0.02	100	1.6
	GPMS서버(HW)	12	3	36
	GPMS설치	4.9	1	4.9
	구름OS	0.04	100	4.4
	구름OS설치비	0.06	100	5.5
DaaS	인증관리서버	14	1	14
	운영서버	24	3	72
	스토리지	180	1	180
	VDI 라이선스	0.6	100	55
	SAN스위치	33	1	33
	서버RACK	4	2	8
구축 개발 및 운영	구름 연동 및 커스트마이징	18.1	3M/M	54.4
	구축 및 운영지원	14.2	8M/M	113.6
합 계		648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49	(1)정보시스템고도화 : 612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606) ▪정보화 협의체 운영지원(6) (2)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1,430백만원 ▪H/W 유지보수(120)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28) ▪상용 S/W 유지보수(278) ▪개발 S/W 유지보수(803) ▪위탁운영비(126) ▪기타운영비(75) (3)정보보호체계구축 : 707백만원 ▪보안 S/W 구입(320) ▪보안통합관리시스템(140) ▪비밀관리시스템 솔루션(25) ▪유해정보차단강화(138) ▪광업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39) ▪정보보안 수준 강화(45)	2,983	(1)정보시스템 고도화 : 230백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224) ▪정보화 협의체 운영지원(6) (2)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1,286백만원 ▪H/W 유지보수(108)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25) ▪상용 S/W 유지보수(250) ▪개발 S/W 유지보수(722) ▪위탁운영비(113) ▪기타운영비(68) (3)정보보호체계구축 : 719백만원 ▪보안 S/W 구입(237) ▪보안장비 구축(437) ▪정보보안 수준 강화(45) (4)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100백만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40) ▪데이터기반 행정체계 기반 마련(60) (5)온북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 648백만원 ▪인프라 구축(480) ▪구축 개발 및 운영(16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86.00	86.80	83.80	82.70	82.70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하여 설정	정보시스템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후 만족도 측정	부내 직원 및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실적	86.49	79.13	78.82	-	-			
	달성도	100.6	91.2	94.1	-	-			
②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건)	목표	54.00	54.00	54.80	60.58	60.58	최근 3년간 실적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하여 설정	(∑연간 업무포털 이용자수 ÷ 총 인원)X100= 시스템 활용율)	접속로그 분석
	실적	54.14	54.82	70.11	-	-			
	달성도	100.3	101.5	127.9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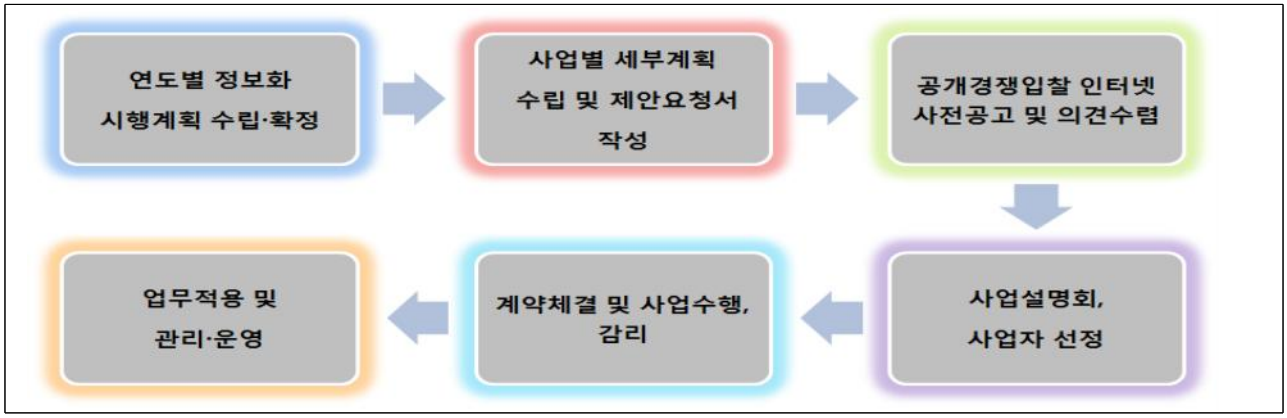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 정보보호체계 보안환경 등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사고 시 효과적인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3,007	2,749	2,983	3,622	3,872	
'24~'28		2,749	2,983	4,974	6,332	3,4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홈페이지 등 안정적 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시기	회계/기금	**평가등급**	비고
2021년도	일반	**보통**	
2022년도	일반	**보통**	
2023년도	일반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업무 지원, 대국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 운용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고도화 필요
- 나날이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3,220	-	3,220	-	-	-	3,220	3,111	98.6	98.6	54	55
2022	3,265	-	3,265	54	-	-	3,319	2,976	91.1	89.6	215	128
2023	3,007	-	3,007	215	-	-	3,222	3,031	101	94.1	100	91
2024	2,749	-	2,749	100	-	-	2,849	2,730	99.3	95.8	109	1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55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54백만원) : 백본스위치 인프라 고도화 사업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2022	- 불용(128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215백만원) :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2023	- 불용(91백만원) : 광업정보시스템 HW·SW 구매예산 48백만원, 행정시스템 고도화 28백만원 등 집행잔액 91백만원 불용 - 이월(100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잔금 100백만원 이월
2024	- 불용(10백만원) : 집행잔액 - 이월(109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51백만원), 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58백만원)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109백만원 이월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사 업 명
(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7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3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책기획관	김종연	나윤정	김태훈
		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0	044-203-5565	044-203-5536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김태훈	044-203-553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1,286	2,376	2,298	1,898	△478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33	1,433.1	1,286.5	115.9	30.8	2,376	2,492	1,944.2	2,376	1826.7	210.6	336.3	1,898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473.19	483.6	418.9	41.3	1.9	340	381.5	274.4	340.5	233.4	90	16.1	363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99.21	99.21	70.3	-	-	99	99	66.2	99	66.2	-	32.8	99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0	100	94	6	-	100	106	81.8	100	75.8	6	18.2	-
· 정책지원 연구	500	504.8	500	-	-	393	393	340.5	393	340.5	46	6.5	212
·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132.6	217.4	132.6	68.6	-	240	309	240	240	169.5	68.6	-	240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8	28	28	-	-	28	28	23	28	23	-	5	28
· 청년인턴 운영	-	-	-	-	-	1,109	1,109	851.3	1,109	851.3	-	257.7	889
· 2030자문단 운영	-	-	-	-	-	67	67	67	67	67	-	-	67
○ 비목별 분류(합계)	1,333	1,433.1	1,286.5	115.9	30.8	2,376	2,492	1,944.2	2,376	1826.7	210.6	336.3	1,898
· 일용임금(110-04)	-	-	-	-	-	976	976	780.5	976	780.5	-	195.5	748
· 일반수용비(210-01)	227	238	238	-	-	276	186	149.7	186	149.7	-	36.3	149
· 일반용역비(210-14)	359	341	288.5	41.3	0.8	247	378	271	337	230	96	10	335
· 국내여비(220-01)	-	-	-	-	-	63	63	17.8	63	17.8	-	45.2	51
· 사업추진비(240-01)	4.51	4.51	3.8	-	0.7	8.5	8.5	8.2	8.5	8.2	-	0.3	8.5
· 일반연구비(260-01)	727	816	787	69.8	28.9	727	796	647.7	727	577.2	114.6	33.3	506
· 정책연구비(260-02)	-	-	-	-	-	-	6	6	-	-	-	-	-
· 포상금(310-03)	16	16	16	-	0.1	16	16	16	16	16	-	-	16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고용부담금(320-09)	-	-	-	-	-	63	63	47.3	63	47.3	-	-	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33	1,433.1	1,286.5	115.9	30.8	2,376	2,492	1,944.2	2,376	1826.7	210.6	336.3	1,898
・변화관리 및 혁신 교육	473.19	483.6	418.9	41.3	1.9	340	381.5	274.4	340.5	233.4	90	16.1	363
-일반수용비(210-01)	137	148	147.7	-	0.3	112	22	16.2	22	16.2		5.8	6.5
-일반용역비(210-14)	318.68	318.18	265.5	41.3	0.8	207	338	237	297	196	90	10	335
-사업추진비(240-01)	4.51	4.51	3.8	-	0.7	8.5	8.5	8.2	8.5	8.2	-	0.3	8.5
-포상금(310-03)	13	13	12.9	-	0.1	13	13	13	13	13	-	-	13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99.21	99.21	70.3	-	-	99	99	66.2	99	66.2	-	32.8	99
-일반수용비(210-01)	45.21	45.21	45.21	-	-	45	45	39	45	39	-	6	45
-일반연구비(260-01)	54	54	25.1	-	28.9	54	54	27.2	54	27.2	-	26.8	54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00	100	94	6	-	100	106	81.8	100	75.8	6	18.2	-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	-	20	20	1.8	20	1.8	-	18.2	-
-일반용역비(210-14)	40	20	20	-	-	40	40	34	40	34	6	-	-
-일반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
-정책연구비(260-02)	-	20	14	6	-	-	6	6	-	-	-	-	-
・정책지원 연구	500	504.8	500	-	-	393	393	340.5	393	340.5	46	6.5	212
-일반연구비(260-01)	500	504.8	500	-	-	393	393	340.5	393	340.5	46	6.5	212
・자체평가 및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132.6	217.4	132.6	68.6	-	240	309	240	240	169.5	68.6	-	240
-일반연구비(260-01)	132.6	217.4	132.6	68.6	-	240	309	240	240	169.5	68.6	-	240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8	28	28	-	-	28	28	23	28	23	-	5	28
-일반수용비(210-01)	25	25	25	-	-	25	25	20	25	20	-	5	25
-일반용역비(210-14)	-	3	3	-	-	-	-	-	-	-	-	-	-
-포상금(310-03)	3	-	-	-	-	3	3	3	3	3	-	-	3
・청년인턴 운영	-	-	-	-	-	1,109	1,109	848.3	1,109	848.3	-	260.7	889
-일용임금(110-04)	-	-	-	-	-	976	976	780.5	976	780.5	-	195.5	748
-일반수용비(210-01)	-	-	-	-	-	7	7	5.7	7	5.7	-	1.3	6
-국내여비(220-01)	-	-	-	-	-	63	63	17.8	63	17.8	-	45.2	51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고용부담금(320-09)	-	-	-	-	-	63	63	47.3	63	47.3	-	15.7	84
· 2030자문단 운영	-	-	-	-	-	67	67	67	67	67	-	-	67
-일반수용비(210-01)	-	-	-	-	-	67	67	67	67	67	-	-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부내 조직문화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규제비용·편익분석, 자체규제개혁위원회 및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기반 마련
- (정책지원 연구) 재정, 정책홍보, 조직관리 등 정책 지원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 지원) 평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부내 자체평가 업무수행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내 직원 및 국민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제53조(제안제도)

제50조 (교육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제53조 (제안제도) 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설·강화규제 도입 시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혁신'은 국조실 주관 국정과제 16번(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협조부처, 국정과제 17번(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의 주관부처로서 역할 수행

<행정규제기본법상 관련 조항>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 후 정비하여야 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등

국정과제 17(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 수립하는 협의체 운영등

- **(갈등관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 관련 조항>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원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2조

▶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음

-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

※ 지원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대통령 말씀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 지원근거 :「적극행정 운영 규정」

▶ 제8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 제14조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 제18조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변화관리능력개발(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경제안보 · 디지털 전환 · ESG)에 따라 산업부 고유 업무에 대한 실무자 역량개발 ·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 절실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산업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전례없이 높으나, 직원 사기저하와 업무회피 성향 강화로 조직활력 제고책 마련 필요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규제개혁)**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2.28)되어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심사'가 필수 절차로 정착됨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이후 '규제개혁신문고'가 설치되었으며, '규제비용총량제'가 시행됨('16~)에 따라 비용-편익 분석 등 제도관련 예산수요 증대됨, 아울러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 등 실시 필요

- 새 정부 출범('22.5.10.) 이후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르게 됨

* (국무총리, '22.5.24) 부처별 규제개혁 TF 구성 지시

- **(갈등관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산업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갈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갈등관리심의 등을 추진

○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 **(기타공공기관)** ’13.12월「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주무부처에서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14.3.20)하여 **매년 경영평가 실시**

- **(자체평가)** ’01.5.1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본격 실시 → ’01.9.24(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매년 자체평가 실시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정부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발표(‘19.3.14.)

-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의 체계적 제도화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

- 이와 함께, ‘19년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실행(’19.07.) 및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20.0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24) 340.19백만원 □ 요구 ㅇ 정책 및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속성 있는 전문 강연 설치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산출 ㅇ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177.19백만원 -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0.51백만원 * (학습비) 25개局×4.48백만원 * (운영비) 8.51백만원 소요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56.68백만원 * 조직문화 개선, 업무역량 향상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부내 업무환경 개선 등 변화관리 추진으로 56.68백만원 소요 ㅇ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150백만원 - 혁신현장 방문프로그램 지원: 150백만원 * (현장방문 지원) 0.8백만원×100명(산업부 정원의 약 7%) * (해외 현장체험) {항공료(3.5백만원)+숙박비(1.5백만원)+일비(0.3)+식비(0.7백만원)+환율 등(1백만원)} * 10명 규모 ㅇ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13백만원 - 우수부서 및 산업통상자원인 선정: 13백만원 * 20만원×10명×4분기+50만원×1개국×4분기+100만원×3개과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25요구) 363백만원 □ 요구 ㅇ 정책 및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을 통한 민간과의 네트워크 형성, 연속성 있는 전문 강연 설치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생산성 제고 및 직원역량 강화 도모 □ 산출 ㅇ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혁신교육: 244백만원 - 변화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244백만원 * (학습비) 35개局×4백만원 = 144백만원 * (기본교육) 상하반기(2회)x5백x3개분야 =30백만원 * (현장방문) 10명x7백=70백만원 ㅇ 협업행정을 위한 소통촉진 프로그램: 106백만원 - 협업프로그램 지원: 106백만원 * (협업행사) 5백만원 × 10회(기관·실·국) = 50백만원 * (부내협업) 동호회주간 10개 동호회 × 3.5백만원= 35백만원, 크로스미팅 0.5백만원 × 12회= 6백만원 * (네트워킹) 40건(10실x 연 4회) × 0.2백만원 = 8.5백만원 * (협업성과 홍보) 6.5백만 ㅇ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13백만원 - 우수부서 및 산업통상자원인 선정: 13백만원 * 20만원×10명×4분기+50만원×1개국×4분기+100만원×3개과
2,376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24) 99.21백만원 □ 요구 ㅇ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핵심규제 발굴·개선 수요 대응 □ 산출 ㅇ 규제개혁, 갈등관리심의,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41.21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 (회의) 13명×12회×0.1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1.151백만원×12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 -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 (회의) 4명×2회×0.1백만원 * (회의진행경비 등) 0.1백만원×2회 ㅇ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 강사료 0.5백만원×2회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 상하반기 2회×1.5백만원 ㅇ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54백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27백만원 * 15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 -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27백만원	1,898	②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25요구) 99백만원 □ 요구 ㅇ 핵심규제 발굴·개선 수요 대응 □ 산출 ㅇ 규제개혁, 갈등관리심의,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41.21백만원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7.21백만원 * (회의) 13명×12회×0.1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1.151백만원×12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백만원 * (회의) 10명×2회×0.125백만원 * (안건 인쇄 및 회의 준비 등) 0.25백만원×2회 - 제안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 (회의) 4명×2회×0.1백만원 * (회의진행경비 등) 0.1백만원×2회 ㅇ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및 홍보: 4백만원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교육 * 강사료 0.5백만원×2회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홍보 * 상하반기 2회×1.5백만원 ㅇ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연구용역: 54백만원 -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 규제비용, 편익분석: 27백만원 * 15건(예상 분석대상 건수)×1.8백만원 - 민간활동 저해 핵심규제 개선방안 연구: 27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규제 연구 3개 분야×9백만원 ③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24) 100백만원 □ 요구 o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혁신 추진 및 산업·에너지·통상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량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촉진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산출 o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40백만원 -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백만원 * 공모전 개최, 상금 지급, 홍보 및 수요조사 등 20백만원 소요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용역: 20백만원 o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기반 마련: 60백만원 - 산업부 협업부서 지원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분석: 40백만원 * 과제 발굴 및 전문가 분석: 10백만원×4개 과제 - 민·관 데이터 전문가 연구협의회 운영: 20백만원 * 협의체 구성·운영 16백만원 + 인쇄비 등 4백만원 ④ 정책지원 연구: ('24) 392.6백만원 □ 요구 o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대내외 정책 홍보지원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 □ 산출 o 정책지원 연구: 392.6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392.6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5건 × 78.52백만원 ⑤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 240백만원 □ 요구 o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 □ 산출 o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0백만원 * 자체평가 용역 140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백만원 ⑥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4) 28백만원 □ 요구 o 부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국민 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산출 o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5백만원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0백만원 * 5회×2백만원(위원수당 1.4 + 운영비 0.6) -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5백만원		* 규제 연구 3개 분야×9백만원 ③ 정책지원 연구: ('25요구) 212백만원 □ 요구 o 재정·조직관리, 국민인식 제고, 대내외 정책 홍보지원 등 정책분야 역량강화 □ 산출 o 정책지원 연구: 212백만원 - 재정사업 자율평가, 조직실태진단 등 운영관련 용역비: 212백만원 * 정책홍보, 재정사업평가, 실태진단 등 운영 관련 용역 5건 × 42.4백만원 ④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5요구) 240백만원 □ 요구 o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검증된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 □ 산출 o 자체평가 및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원: 240백만원 * 자체평가 용역 140백만원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백만원 ⑤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25요구) 28백만원 □ 요구 o 부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직원 및 국민 대상 각종 지원 제도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산출 o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대국민 홍보: 15백만원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10백만원 * 5회×2백만원(위원수당 1.4 + 운영비 0.6) - 적극행정 대국민 홍보: 5백만원 *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5백만원 o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10백만원 *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5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5백만원 o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3백만원 * 4회(분기별)× 3명 × 0.25백만원 ⑥ 청년인턴 운영: ('25요구) 889백만원 o 인건비: 748백만원 o 일반수용비: 6백만원 o 국내여비: 51백만원 o 고용부담금: 84백만 ⑦ 2030자문단 운영: ('25요구) 67백만원 o 회의체 운영 및 외부활동 지원: 67백만원 -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54백만원 * 6개월×20명×15만원+12개월×20명×15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카드뉴스,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5백만원 o 적극행정 면책관련 소송비 지원: 10백만원 * 적극행정 징계절차 지원 5백만원 + 소송비용 지원 5백만원 o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3백만원 * 4회(분기별)× 3명 × 0.25백만원 ⑦ 청년인턴 운영: ('24) 1,109백만원 o 인건비: 976백만원 o 일반수용비: 7백만원 o 국내여비: 63백만원 o 고용부담금: 63백만 o 정책참여 활동비: 28백만원 ⑧ 2030자문단 운영: ('24) 67백만원 o 회의체 운영 및 외부활동 지원: 67백만원 -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 54백만원 * 6개월×20명×15만원+12개월×20명×15만원 - 청년 정책간담회, 청년 관련 행사·포함 참여: 13백만원		- 청년 정책간담회, 청년 관련 행사·포함 참여: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화관리 마일리지 획득자 수	목표	-	-	-	-	-	기재부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제외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500명
2022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900명
2023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00명
2024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000명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2025	조직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 교육 실시(계속) : 약 1,200명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지식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333	1,400	1,456	1,500	1,530	
'24~'28		2.376	2,613	2,744	2,881	3,0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ㅇ 정책대상과의 소통 및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중요시하는 업무분위기 형성과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 도모
- ㅇ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ㅇ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및 품질제고 사례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ㅇ 객관적인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부내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업무의 신뢰도 제고
- ㅇ 적극행정문화 정착화 및 관련 지원 활성화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 및 법·제도와 현장간 괴리 극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965	-	965	27.8	18	-	992.8	869.8	90.1	87.6	120.3	2.7
2022	847	-	847	120.3	-	-	967.3	826.8	97.6	85.5	100.1	40.2
2023	1,333	-	1,333	100.1	20	-	1,433	1,287	96.5	89.8	115	28
2024	2,376	-	2,376	116	-	-	2,492	1944.2	81.8	78	210.6	336.3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조정 : 18백만원, 적극행정 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조정 - 조정 : 112백만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률 사업 집행을 위해, 일반수용비, 임차료의 일반용역비로 조정 - 전용 : 18백만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등으로 기존사업 추진 어려움 및 효과적인 행정능률 사업 집행을 위해, 국내 · 외여비의 일반용역비로 조정(국가재정법 46조3항, 47조3항의거) - 불용 : 2.5백만원, 규제개혁 및 창의혁신 방안연구 추진 간,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
2022	- 이월: 100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40백만원,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
2023	- 이월: 115백만원, 계약체결 및 설계 지연과 연구용역 완성도 증가를 위해 이월 - 불용: 28백만원,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발생 등
2024	-

사 업 명
(3)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7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본부정책수립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정재환과장	최준근팀장	김정미주무관
		재무팀	044-203-5050	044-203-3890	044-203-50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1,341	1,393	1,965	1,965	572	4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1	1,411	1,343	0	70	1,393	1,393	1,338	1,393	1,338	0	55	1,965
· 무기계약직 보수 등	38	38	33	0	5	40	40	36	40	36	0	4	42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771	771	721	0	50	771	771	768	771	768	0	3	1,342
· 차량·통신·시설지원 등	107	107	100	0	7	107	107	107	107	107	0	0	107
·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0	280	275	0	5	280	280	272	280	272	0	8	280
· 연구용역	71	91	91	0	0	71	71	30	71	30	0	41	71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업무협의 여비	80	80	80	0	0	80	80	80	80	80	0	0	80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비목별 분류(합계)	1,391	1,411	1,343	0	70	1,393	1,393	1,338	1,393	1,338	0	55	1,965
· 상용임금(110-03)	30	30	30	0	0	32.5	32.5	31.8	32.5	31.8	0	0.7	34
· 일반수용비(210-01)	528	528	528	0	0	528	528	528	528	528	0	0	676
· 임차료(210-07)	338	338	333	0	5	338	338	330	338	330	0	8	338
· 유류비(210-08)	30	30	24	0	8	30	30	30	30	30	0	0	3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	19	18	0	1	19	19	19	19	19	0	0	19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	0	0.4	0.4	0.3	0.4	0.3	0	0.1	0.5
·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0	0	0	0	0	0	423
· 국내여비(220-01)	80	80	80	0	0	80	80	80	80	80	0	0	80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일반연구비(260-01)	314	334	284	0	50	314	314	270	314	270	0	44	314
· 포상금등(310-03)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고용부담금(320-09)	7	7	2	0	5	7	7	4	7	4	0	3	7
· 공사비(420-03)	0.1	0.1	0	0	0.1	0.1	0.1	0	0.1	0	0	0.1	0.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1	1,411	1,343	0	70	1,393	1,393	1,338	1,393	1,338	0	55	1,965
· 무기계약직 보수등	38	38	33	0	5	40	40	36	40	36	0	4	42
-상용임금(110-03)	30	30	30	0	0	32.5	32.5	31.8	32.5	31.8	0	0.7	34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0	0	0.4	0.4	0.3	0.4	0.3	0	0.1	0.5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고용부담금(320-09)	7	7	2	0	5	7	7	4	7	4	0	3	7
· 업무보고 준비 및 시책홍보	771	771	721	0	50	771	771	768	771	768	0	3	1,342
-일반수용비(210-01)	528	528	528	0	0	528	528	528	528	528	0	0	676
-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0	0	0	0	0	0	423
-일반연구비(260-01)	243	243	193	0	50	243	243	240	243	240	0	3	243
· 차량·통신·사설지원 등	107	107	100	0	7	107	107	107	107	107	0	0	107
-임차료(210-07)	58	58	58	0	0	58	58	58	58	58	0	0	58
-유류비(210-08)	30	30	24	0	6	30	30	30	30	30	0	0	3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	19	18	0	1	19	19	19	19	19	0	0	19
-공사비(420-03)	0.1	0.1	0	0	0.1	0.1	0.1	0	0.1	0	0	0.1	0.1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0	280	275	0	5	280	280	272	280	272	0	8	280
-임차료(210-07)	280	280	275	0	5	280	280	272	280	272	0	8	280
· 연구용역	71	91	91	0	0	71	71	30	71	30	0	41	71
-일반연구비(260-01)	71	91	91	0	0	71	71	30	71	30	0	41	71
·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포상금 등(310-03)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 업무협의 여비	80	80	80	0	0	80	80	80	80	80	0	0	80
-국내여비(220-01)	80	80	80	0	0	80	80	80	80	80	0	0	80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0	0	22	22	22	22	22	0	0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특히, 타 부처에 비해 매우 부족한 기본경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가 불가피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위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필요
- 아울러, 서울 등 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발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등
- 대외무역법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등
- 에너지법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6조 등

② 추진경위

- '10~12회계연도 19억원 예산규모 편성
- '13회계연도-전년 대비 1억원 삭감, '14회계연도-전년 대비 2.3억원 삭감되는 등 2회계연도 동안 총 3.3억원 삭감되어 정책추진 활동 지원 애로
- '15, '16, '17회계연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18회계연도에 일반수용비 1.2억원 등 총 1.6억원 삭감되어 재정 지원 애로
- '19, '20년도 13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동 예산규모로는 각 실국의 정책추진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
- '21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수용비 3억원, 일반연구비 2.3억원 등 총 5.6억원 증액편성되었으나, '22회계연도에 일반수용비 3억원, 일반연구비 2.6억원, 여비 0.8억원 등 총 7.2억원 삭감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 활동 지원 애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865	1,134	1,391	1,393	1,96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무기계약직 보수 등 42백만원
: ('24) 40백만원 → ('25) 42백만원
- (산출) (상용임금 110-03)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8백만원 = 34백만원
(복리후생비 210-12) 복리후생비 1명 × 0.5백만원 = 0.5백만원
(고용부담금 320-09) 퇴직금 1명 × 7백만원 =7백만원

② 연두 업무보고, 정부업무평가, 주요시책 홍보 등 : 1,342백만원
: ('24) 771백만원 → ('25) 1,342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210-01)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센스 등 25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6건 x 50백만원 = 295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저작권 확보 (방송3사×6백만원) + (통신3사×10백만원) = 48백만원
(일반용역비 210-14)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관리용역 1건 x 180백만원 = 180백만원
(일반용역비 210-14) 정책 홍보영상 제작 관련 용역 1건 x 243백만원 = 243백만원
(일반연구비 260-01)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x 243백만원 = 243백만원

③ 차량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107백만원
: ('24) 107백만원 → ('25) 107백만원
- (산출) (임차료 210-07)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임차료 210-07)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유류비 210-08)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공사비 420-03)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④ 해외파견자 임차지원 등 280백만원
: ('24) 280백만원 → ('25) 280백만원
- (산출) (임차료 210-07)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⑤ 연구용역비 71백만원
: ('24) 71백만원 → ('25) 71백만원
- (산출) (일반연구비 260-01)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등 정책지원 관련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⑥ 정책지원 우수부서 포상 등 22백만원
: ('24) 22백만원 → ('25) 22백만원
- (산출) (포상금등 310-03)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⑦ 부처간 또는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및 업추비 : 102백만원
: ('24) 102백만원 → ('25) 102백만원
- (산출)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 12개월 = 80백만원
(사업추진비 240-01)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3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2.5백만원** 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7백만원 = 32.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28백만원** 가.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나.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다.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센스 등 25백만원 마.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4건 x 50백만원 = 195백만원 ○ **임차료(210-07) : 338백만원** 가.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나.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다.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 **유류비(210-08) : 30백만원** 가.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백만원** 가.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나.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0.4백만원** 가. 복리후생비 1명 × 0.4백만원 = 0.4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0백만원** 가. 국내여비 × 12개월 = 80백만원	1,965 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34백만원** 가. 무기계약직 상용임금 1명 × 12개월 × 2.8백만원 = 34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76백만원** 가. 연두업무보고 등 5건 × 49.4백만원 = 247백만원 나. 부처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등 3건 × 7백만원 = 21백만원 다. 주요시책 홍보 등 자료인쇄 2건 × 19.5백만원 = 40백만원 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위한 연간 라이센스 등 25백만원 마. TV, 라디오, 전광판, 열차 등 정책광고 6건 x 50백만원 = 295백만원 바. 저작권 확보 (방송3사×6백만원) + (통신3사×10백만원) = 48백만원 ○ **임차료(210-07) : 338백만원** 가. 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차량임차 3대 × 18백만원 = 54백만원 나. 부내 행사차량 임차 8회 × 0.5 = 4백만원 다. 국제기구 파견관 주택임차 지원 280백만원 ○ **유류비(210-08) : 30백만원** 가. 관용차량 유류지원 3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백만원** 가. 차량유지보수 8백만원 나. 통신시설유지보수비 11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0.5백만원** 가. 복리후생비 1명 × 0.5백만원 = 0.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23백만원** 가.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관리용역 1건 x 180백만원 = 180백만원 나. 정책 홍보영상 제작 관련 용역 1건 x 243백만원 = 243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80백만원** 가. 국내여비 × 12개월 = 80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사업추진비(240-01) : 22백만원** 가.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14백만원** 가.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x 243백만원 = 243백만원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등 관련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 **포상금 등(310-03) : 22백만원** 가.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7백만원** 가. 퇴직금 등 고용부담금 1명 × 7백만원 = 7백만원 ○ **공사비(420-03) : 0.1백만원** 가.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22백만원** 가.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업추비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14백만원** 가. 디지털콘텐츠 홍보 1건 x 243백만원 = 243백만원 나. 산업통상자원부 기록물 등 관련용역 2건 × 35.5백만원 = 71백만원 ○ **포상금 등(310-03) : 22백만원** 가. 우수부서 포상 12회 × 1.8백만원 = 2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7백만원** 가. 퇴직금 등 고용부담금 1명 × 7백만원 = 7백만원 ○ **공사비(420-03) : 0.1백만원** 가. TF조직 등 사무실 공사 0.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재무결산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3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2024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메세지 제작 등 홍보 관련 용역 수행 · 해외파견관 임차료 및 장·차관 차량 임차료 지급 등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카드뉴스 제작, SNS 관리, 홍보영상 제작 등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정책지원 강화

ㅇ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추진방향 설정	전반적인 연간 추진방향 설정	각 실국
▼		
추진계획 수립	당해연도 연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각 실국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각 건별로 사업 수행	각 실국
▼		
소요 예산 요청	각 건별로 예산지출 요청	각 실국
▼		
예산 지출	각 개별 건별로 예산 지출	재무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391	1,460	1,965	1,610	1,690	
'24~'28		1,393	1,965	1,609	1,689	1,77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지원 강화 계속 추진
- 해외파견관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활동 및 외국정부와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산업통상자원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각 실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대가 필요함
- 특히,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에 재정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865	-	1,865	21			1,886	1,686	90.4	89.4	63	137
2022	1,146	△12	1,134	63			1,197	1,145	101.0	95.7	20	32
2023	1,391	-	1,391	20			1,411	1,341	96.4	95.0	-	70
2024	1,393	-	1,393	-			1,393	1,338	95.6	96.1	-	55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이 · 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2	- 이 · 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연구용역비 이월 및 집행잔액
2023	- 이 · 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집행잔액
2024	- 이 · 전용 등 사유 : 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4년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7142-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기획조정실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2	317
명칭	산업통상자원행정지원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지운	전수하	이기성
		정보보호담당관	044-203-5590	044-203-5597	044-203-556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2,215	1,884	1,407	1,407	-477	-25.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25	2,225	2,215 [2,215]	-	10	1,884	1,884	1,825 [1,825]	1,884	1,825 [1,825]	-	59	1,407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260	1,260	1,256 [1,256]	-	3	1,460	1,460	1,414 [1,414]	1,460	1,414 [1,414]	-	46	1,407
· 사이버안전세스템 고도화	965	965	959 [959]	-	6	424	424	411 [411]	424	411 [411]	-	13	-
○ 비목별 분류(합계)	2,225	2,225	2,215 [2,215]	-	10	1,884	1,884	1,825 [1,825]	1,884	1,825 [1,825]	-	59	1,407
· 일반수용비(21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00	400	400 [400]	-	-	578	578	541 [541]	578	541 [541]	-	37	-
· 관리용역비(210-15)	850	850	847 [847]	-	3	872	872	863 [863]	872	863 [863]	-	9	1,407
· 자산취득비(430-01)	965	965	959 [959]	-	6	424	424	411 [411]	424	411 [411]	-	13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25	2,225	2,215 [2,215]	-	10	1,884	1,884	1,825 [1,825]	1,884	1,825 [1,825]	-	59	1,407
·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	1,260	1,260	1,256 [1,256]	-	-	1,460	1,460	1,414 [1,414]	1,460	1,414 [1,414]	-	46	-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10 [10]	-	-	10	10	10 [10]	10	10 [10]	-	-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400	400	400 [400]	-	-	578	578	541 [541]	578	541 [541]	-	37	-
- 관 리 용 역 비 (210-15)	850	850	847 [847]	-	3	872	872	863 [863]	872	863 [863]	-	9	1,407
· 사이버안전세스템 고도화	965	965	959 [959]	-	6	424	424	411 [411]	424	411 [411]	-	13	-
- 자 산 취 득 비 (430-01)	965	965	959 [959]	-	6	424	424	411 [411]	424	411 [411]	-	13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o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o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발굴 · 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6조제1항,「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제2조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o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 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 ·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 ·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o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 · 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 · 분석센터를 구축 · 운용할 수 있다.

o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조(훈령 제154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무역 등 산업통상자원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MOTIE-CSC(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Cyber Security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06.5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7월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12월 산업자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8월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8개 기관)
  · ’10.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1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8.9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18.10월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개 기관)
- ‘10.1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2.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3.6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래부 이관(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IPA)
- ‘14.12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9호)
- ‘16.8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02호)
- ‘19.6월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154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709	2,285	2,225	1,884	1,40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수혜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및 주요기반시설 안전확보에 따른 전국민 생활안정 보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84	ㅇ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460 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872백만원) * 344백만원(AI보안관제장비 자산취득비) X 6.3953%(유지보수요율)=22백만원 증가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전용회선 임차(578백만원) * 통신사 전용회선 노후 스위치장비교체 임대갱신 82백만원 + 주요기관 및 센터 전용 회선 이중화 96백만원 증가 - 소모품비(10백만원) ㅇ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424백만원) - 보안장비 이중화(267백만원) * TMS위협관리시스템 3식(89백만원 X 3식 = 267백만원)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노후 보안설비 교체(157백만원) * DDoS대응시스템 1식(87백만원) + TMS관리시스템SW 1식(70백만원) = 157백만원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1,407	ㅇ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1,407 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910백만원) * ’24~’25년 유지보수 계약으로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전용회선 임차(492백만원) * 53개 기관 중 73개 회선 사용으로 예산 실링액에 따른 산출금액 - 소모품비(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안관제 정탐율 (단위: %)	목표	98.3	98.3	98.3	98.4	98.5	최근 3개년간 평균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사이버공격 정탐건수/ 총사이버공격 탐지통보건수) *10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시스템 (SCMS)
	실적	98.33	98.41	98.57	98.69	-			
	달성도	100	100	100	100	-			
관제시스템 안정가동율 (단위: %)	목표	99.5	99.5	99.5	99.5	99.5	최근 3개년중 실현가능한 목표치로 설정(정보시스템은 내·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으로 100% 가동율은 불가, 99.5%의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	(가동계획시간-관제서비스중단시간) /가동계획시간*100	관제시스템 장애복구 보고서 및 월별 서비스 수준협약(SLA) 보고서
	실적	99.60	99.57	99.58	99.59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VPN 전용 관제시스템 자체 개발 및 시범운영('20.8~12) ○ 정보보호교육(5개 과정, 18회, 288명 수료) ○ 정보보안최고관리자(CISO)과정 운영 : 19개 기관 22명 선발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17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12회, 공공기관 6회) ○ 제9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온라인 개최(11.17~18, 16개 기관 27개팀 참가)
2022	○ 한전, 한수원 등 단위관제센터 운영 14개 기관 현장방문 기술교류회 개최(6월~10월) ○ "VPN접속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특허 등록 및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 금상 수상(11월) ○ 회원기관 홈페이지 위변조 감시 대상 확대(57개→180개) * 57개(회원기관 53개+ 부처홈페이지 4개(산업부1개, 국표원2개, 부산엑스포1개) ○ 오픈소스 활용 빅데이터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절감 및 독자기술 확보(7억/년 절감)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실시(21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5회, 공공기관 5회) ○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13개 주요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실시(7.4) ○ 제10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11.1~2, 26개 기관 36개팀 참가) ○ 제14회 산업부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12.15, 53개 기관 200여명 참가)
2023	○ 단위관제센터 운영기관 대상 보안관제 전문교육 시행 * 기본과정(5.17~19, 8개 기관), 심화과정(10.23~26, 6개 기관) ○ 회원기관 대상 인터넷망·업무망 모의해킹 실시(23개 기관)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 4회, 공공기관 6회)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백업복구 훈련 실시(6.12~16, 21개기관) ○ 제11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3개분야 26개기관 37개팀 참가, 7.6~7) ○ "VPN접속 이상행위 탐지시스템" '23년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금상수상(중국, 10월) * '22년 국내대회 금상수상 자격으로 국제대회 참가 ○ 탐지규칙 개발 및 악성코드 분석을 위한 "모의 침해사고 분석시스템" 구축 (12월)
2024	○ 재난·장애 사전 대비 보안장비 및 전용회선 이중화 * 보안이벤트 수집, 탐지규칙 배포용 3중보안관제 핵심 보안장비 이중화 * 11개 기반시설 기관 전용회선 이중화 완료(3월) ○ '24년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중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개선 과제 채택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등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171개 홈페이지 대상 웹위변조 감시, 상시 비상 연락망(온라인 상황실) 운영 ○ 차세대 지능형 보안관제 전략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4~5월) * 행정·공공·민간분야 6개기관 현장 방문 및 벤치마킹 결과 분석 ○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악성 이메일 모의훈련 실시(산업부 3회, 공공기관 2회) ○ 제12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3개분야 31개기관 42개팀 참가, 6.26~6.27)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장애 감시 등 현행 보안관제 체계를 활용한 효율적 디지털 서비스 통합관제로 사회적·경제적 피해 발생 예방·억제
- 차세대 지능형 보안관제 전략수립으로 조직적 대규모 사이버공격 증가, AI를 악용한 공격기법 지능화 등 보안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 ①사이버위협 억제예방 ②인텔리전스 보안관제 ③침해사고 신속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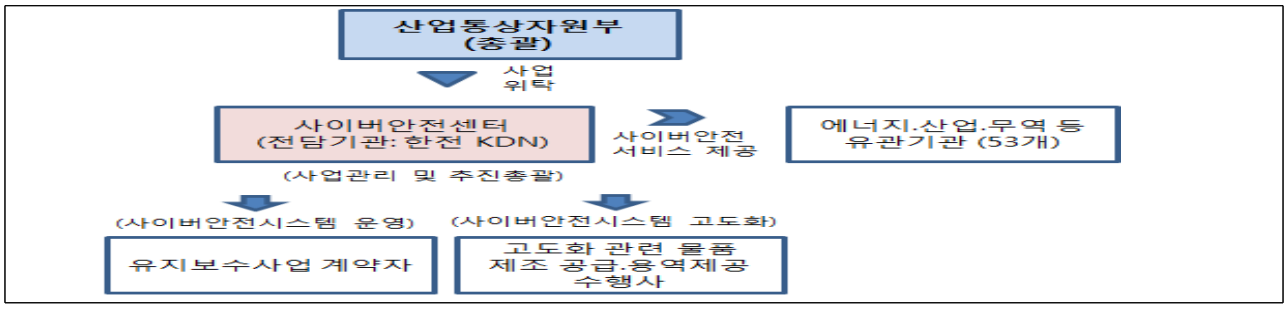
- 사이버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산업·무역·에너지 등 산업부 소관기관 사이버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및 사이버공격 탐지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확산 방지 및 긴급복구
· 취약점분석평가, 모의해킹 등을 통한 산업부 소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정보보안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정보보안 대응기반 강화
· 회원기관과 정보보안 관련 정책·기술 교류회를 통한 협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2,225	1,884	1,407	2,525	2,575	
'24~'28		1,884	1,407	2,208	2,302	2,31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이버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차세대 보안관제 전략 수립 - 침입방지/탐지/차단 등 보안관제 빅데이터와 모의침해사고 분석시스템의 상호연동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및 지능화 인프라 개선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강화 추진 - 급증하는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분류 후 보안관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편입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709	1,709	-	-	-	-	1,709	1,685	98.6	98.6	-	24
2022	2,285	2,285	-	-	-	-	2,285	2,270	99.3	99.3	-	15
2023	2,225	2,225	-	-	-	-	2,225	2,215	99.5	99.5		10
2024	1,884	1,884	-	-	-	-	1,884	1,825	96.9	96.9	-	59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6백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약정만료후 무상사용에 대한 미사용액 발생(18백만원)
2022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5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10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22백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회선 해지 등에 대한 미사용액 발생(37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①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개요

□ (**설립목적**) 고도화되는 전자적 침해에 대비, 산업부 및 산하기관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근거규정**)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10조의2 ②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2항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③ ~ ④ (생략)

□ (**조직**) 운영委, 사무국(산업부), 전담기관(한전KDN), 53개 회원기관



□ (**업무**) △보안관제(365일 24시간), △사고예방(모의해킹훈련, 정보보안 감사,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등), △침해사고대응 등

무역위원회

세출예산 총괄표(무역위원회)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무역위원회	**1,619**	**1,793**	**1,793**	**1,793**	**-**	**0.0**
<일반회계>	**1,619**	**1,793**	**1,793**	**1,793**	**-**	**0.0**
1233 무역구제지원	**1,619**	**1,793**	**1,793**	**1,793**	**-**	**0.0**
무역구제지원사업 (1233-301)	1,619	1,793	1,793	1,793	-	0.0

사 업 명
(1) 무역구제지원사업(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110	113
명칭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무역구제	무역구제지원	무역구제지원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역구제 지원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이민영	-	임은영
		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0	-	044-203-5855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무역구제지원사업	1,593	1,793	1,793	1,79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44**	**1,644**	**1,593 [1,593]**	**-**	**51.5**	**1,793**	**1,793**	**1,749 [1,749]**	**1,793**	**1,749 [1,749]**	**-**	**43.9**	**1,793**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566.0**	**566.0**	**531.8 [531.8]**	**-**	**34.2**	**749.0**	**749.0**	**749.0 [749.0]**	**749.0**	**749.0 [749.0]**	**-**	**-**	**749.0**
-일반수용비 (210-01)	491.1	491.1	483.4 [483.4]	-	7.7	684.8	684.8	684.8 [684.8]	684.8	684.8 [684.8]	-	-	684.8
-국내여비(220-01)	21.0	21.0	21.0 [21.0]	-	-	18.6	18.6	18.6 [18.6]	18.6	18.6 [18.6]	-	-	18.6
-국외여비(220-02)	46.4	46.4	20.5 [20.5]	-	25.9	38.6	38.6	38.6 [38.6]	38.6	38.6 [38.6]	-	-	38.6
-사업추진비(240-01)	7.5	7.5	6.9 [6.9]	-	0.6	7.0	7.0	7.0 [7.0]	7.0	7.0 [7.0]	-	-	7.0
· 무역구제진흥	**281.0**	**281.0**	**279.2 [279.2]**	**-**	**1.8**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	**-**	**281.0**
-일반수용비(210-01)	281.0	281.0	279.2 [279.2]	-	1.8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281.0]	-	-	281.0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450.0**	**450.0**	**438.4 [438.4]**	**-**	**11.6**	**450.0**	**450.0**	**436.8 [436.8]**	**450.0**	**436.8 [436.8]**	**-**	**13.2**	**450.0**
-일반연구비 (260-01)	450.0	450.0	438.4 [438.4]	-	11.6	450.0	450.0	436.8 [436.8]	450.0	436.8 [436.8]	-	13.2	450.0
· 무역구제 국제협력	**347.0**	**347.0**	**343.1 [343.1]**	**-**	**3.9**	**313.0**	**313.0**	**282.0 [282.0]**	**313.0**	**282.0 [282.0]**	**-**	**30.8**	**313.0**
-일반수용비 (210-01)	114.0	114.0	114.0 [114.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일반용역비 (210-14)	194.0	194.0	190.1 [190.1]	-	3.9	244.0	244.0	222.0 [222.0]	244	222.0 [222.0]	-	22.0	244.0
-국내여비(220-01)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3.0 [3.0]	-	-	3.0
-국외여비(220-02)	32.0	32.0	32.0 [32.0]	-	-	32.0	32.0	23.2 [23.2]	32.0	23.2 [23.2]	-	8.8	32.0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4.0]	-	-	4.0	4.0	4.0 [4.0]	4.0	4.0 [4.0]	-	-	4.0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비목별 분류(합계)	**1,644**	**1,644**	**1,593 [1,593]**	**-**	**51.5**	**1,793**	**1,793**	**1,749 [1,749]**	**1,793**	**1,749 [1,749]**	**-**	**43.9**	**1,793**
-일반수용비 (210-01)	886.1	886.1	876.5 [876.5]	-	9.5	995.8	995.8	995.8 [995.8]	995.8	995.8 [995.8]	-	-	995.8
-일반용역비 (210-14)	194.0	194.0	190.1 [19.01]	-	3.9	244	244	222.0 [222.0]	244	222.0 [222.0]	-	22.0	244
-국내여비(220-01)	24.0	24.0	24.0 [24.0]	-	-	21.6	21.6	21.6 [21.6]	21.6	21.6 [21.6]	-	-	21.6
-국외여비(220-02)	78.4	78.4	52.5 [52.5]	-	25.9	70.6	70.6	61.8 [61.8]	70.6	61.8 [61.8]	-	8.8	70.6
-사업추진비(240-01)	11.5	11.5	10.9 [10.9]	-	0.6	11	11	11.0 [11.0]	11	11.0 [11.0]	-	-	11
-일반연구비 (260-01)	450.0	450.0	438.4 [438.4]	-	11.6	450	450	436.8 [436.8]	450	436.8 [436.8]	-	13.2	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구제 기반을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 **(사업내용)** 불공정 무역행위・국내산업피해 조사(조사→판정→제재 또는 제재 건의), 무역구제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연구·개선, 홍보, 국제협력 등 추진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심의·판정을 위한 현지 조사, 법률 자문, 무역위원회 운영, 행정소송 대응 등

② **(무역구제진흥)** 국내기업의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 등을 위한 세미나, 대학(원)생 논문대회/경연대회, 무역구제지 발간, 홍보, 시장 조사·상담 지원 추진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국내산업 피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동향 모니터링 운영, 산업피해 예상품목의 산업경쟁력 조사, 제도/현안 연구 등 추진

④ **(무역구제 국제협력)** 對韓 수입규제 대응,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주요국과의 무역구제 협력·협상 참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5조, 제15조, 제25조)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제33조)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 관세법(제51조, 제57조, 제65조)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87년 무역위원회 설립(근거 : 대외무역법)
· ’89～’99년 무역구제 세미나 매년 개최(「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로 발전)
· ’93년 반덤핑 조사개시결정 권한 이관(재무부 ⇒ 무역위원회)
· ’95년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업무 이관(관세청 ⇒ 무역위원회), 제도운용 일원화
· ’01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제1회「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무역구제 소식지 ‘무역구제지’ 창간
·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실시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美 관세법332조) 벤치마킹
· ’03년 제1회 한·EU 무역구제협의회 개최
· ’05년 제1회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최초 개소(시계, 의류, 시계 등 3개 업종단체)
· ’14～‘15년 무역위원회-WTO 협력 양해각서 체결(「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WTO 후원)
제1회 한·미 무역구제기관간 기술협의회 개최
· ’14년 무역위-관세청 업무협력 MOU 체결
· ’18년 한-인도 무역구제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19년 무역위-경찰청 간 업무협력 MOU 체결, 무역구제 수입동향시스템 구축
· ’20년 관세법/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고시 등 법규 재정비
· ’21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덤핑·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 세부운영규정 개정
· ’22년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11월)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절차 세부운영 규정 제정(6월)
· ’23년 ‘23년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 수립(4월, 무역위 안건 상정)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세법 개정, 2023.12.31. 공포, 2025.1.1. 시행)
· ‘24년 무역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업무협약(MOU) 체결(5월)
무역구제제도 효과성제고방안 마련(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633	1,647	1,644	1,793	1,7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대학, 유관 협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피해 조사(조사 → 판정 → 제재), 홍보, 정책연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전년수준 예산 요구**

: (’24) 1,793백만원 → (’25) 1,793백만원, 전년동일

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 (2024) 749 → (2025요구) 749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장치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무역구제 조사 수요 증가 및 첨단산업분야(이차전지, 바이오 등) 시장성장으로 고도화된 기술분야 특허권 침해 불공정 조사 증가로 현재수준 예산 요구

* 국내무역구제 신규조사(건, KTC) : (’21)11 → (’22)14 → (’23) 16 / 연평균 20.6% 증가
* 첨단산업 분야 특허권 침해 조사(건, KTC) : (’22)3 → (’23)4 → (’24.1Q)6 / 연평균 41.4% 증가
* 기술설명회 개최(건, KTC) : (’21) 2 → (’22)3 → (’23)6 / 연평균 44.2% 증가

- (산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활동 : (’24)629 → (’25)629백만원
  무역위원회 운영 : (’24)120 → (’25)120백만원

* 조사활동 : 현지조사(덤핑, 국내산업 피해 여부), 공청회·기술설명회 개최, 법률 자문, 행정소송 대응 등
* 무역위원회 및 예비무역위원회 개최(위원수당 등 회의운영비)

② 무역구제 진흥 : (2024) 281 → (2025요구) 281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학계 및 일반 그룹 대상의 무역구제제도 홍보강화를 통한 저변확대가 필요하므로 전년수준 예산 요구

- (산출) 학술세미나 : (’24)26 → (’25)26백만원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24)74 → (’25)74백만원
  무역구제지 발간 : (’24)50 → (’25)50백만원
  무역구제 제도홍보 : (’24)99 → (’25)99백만원
  무역구제조사·상담지원 : (’24)32 → (’25)32백만원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 (2024) 450 → (2025요구) 450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상계관세 등 新제도 국내시행 연구를 위한 국내산업 피해예상품목 도출·경제분석, 피해예상품목 산업경쟁력조사, 제도·현안 연구를 위해 전년수준 요구

* (법적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5조의 2

- (산출) 산업경쟁력조사/제도현안 연구 : (’24)250 → (’25)250백만원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피해예상품목 도출 : (’24)100 → (’25)100백만원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 : (’24)100 → (’25)100백만원

④ 무역구제 국제협력 : (2024) 313 → (2025요구) 313백만원, 전년수준

- (요구) 양자·다자 협력 수요 반영 및 한국이 주관하는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기관 행사인 서울국제포럼 위상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재수준 예산 요구

- (산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 (’24)244 → (’25)244백만원
  무역구제 국제협력 : (’24)69 → (’25)69백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9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95,800천원**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680,800천원)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8,060천원×16.8건(조사 등)=512,2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9,000천원×12회=108,000천원 ・ 안건 인쇄비 등 : 3권×1,694천원×12회=61,000천원 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4,000천원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홍보 : 25,500천원×4건=99,000천원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34,000천원)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000천원x10회=10,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400천원x10회=4,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등 : 1,000천원×2명×10회=2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4,000천원** 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44,000천원) ・ 수행사 용역 : 244,000,000원*1회=24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600천원** 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75,800원*20명*15회 =22,740천원 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75,800원×6명×7회 =3,183천원 다. 조정재원 (-4,323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0,600천원** 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47,591천원) ・ 항공료(5급) : 1,612천원×2명×4.5회=14,508천원 ・ 일비 : $30×15일×2명×4.5회=4,576천원($4,050) ・ 숙박비 : $137×14일×2명×4.5회 =19,506천원($17,262) ・ 식비 : $59×15일×2명×4.5회=9,000천원($7,965) 나. WTO 등 회의 참석(8,788천원)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3,172천원×1명×1회=6,343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06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238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800천원($708) 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26,097천원) ・ 항공료(유럽 기준, 5급) : 1,612천원×3명×3회=14,508천원 ・ 일비 : $30×6일×3명×3회=1,830천원($1,620) ・ 숙박비 : $137×4일×3명×3회=5,573천원($4,932) ・ 식비 : $59×6일×3명×3회=3,600천원($3,186)	1,79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995,800천원**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경쟁력 강화(680,800천원) ・ 조사활동(현지조사, 자문감정, 소송비용 등) : 18,060천원×16.8건(조사 등)=512,200천원 ・ 무역위원회 운영 : 9,000천원×12회=108,000천원 ・ 안건 인쇄비 등 : 3권×1,694천원×12회=61,000천원 나. 무역구제진흥(281,000천원) ・학술세미나 : 13,000천원×2회(하계-동계)=26,000천원 ・논문발표대회・경연대회 : 74,000천원 ・무역구제지 발간(계간지) : 12,500천원×4회=50,000천원 ・홍보 : 25,500천원×4건=99,000천원 ・무역구제 조사·상담 : 3,200천원×10건=32,000천원 다.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협의 등 (34,000천원) ・ 영문회의자료 번역 및 제작 : 1,000천원x10회=10,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400천원x10회=4,000천원 ・ 동시통역비(한-영) 등 : 1,000천원×2명×10회=2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44,000천원** 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244,000천원) ・ 수행사 용역 : 244,000,000원*1회=24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600천원** 가. 무역구제조사, 무역위원회 참석 85,000원*10명*24회 =20,400천원 나. 국제협력 업무협의 및 회의 등 참석 : 85,000원×3명×6회 =1,530천원 다. 조정재원 (-33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0,600천원** 가. 덤핑 해외 현지조사(52,561천원) ・ 항공료(5급) : 1,200천원×2명×5회=12,000천원 ・ 일비 : $30×14일×2명×5회=5,628천원($4,200) ・ 숙박비 : $137×13일×2명×5회 =23,865천원($17,810) ・ 식비 : $59×14일×2명×5회=11,068천원($8,260) 나. WTO 등 회의 참석(7,900천원) ・ 항공료(유럽/고공단+실무자 기준) : 2,500천원×2명×1회=5,000천원 ・ 일비 : $30×6일×2명×1회=482천원($360) ・ 숙박비 : $137×4일×2명×1회=1,469천원($1,096) ・ 식비 : $59×6일×2명×1회=949천원($708) 다.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회의 참석(10,599천원) ・ 항공료(5급) : 1,200천원×2명×2회=4,800천원 ・ 일비 : $30×6일×2명×2회=965천원($720) ・ 숙박비 : $137×4일×2명×2회=2,937천원($2,192) ・ 식비 : $59×6일×2명×2회=1,879천원($1,416)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라. 조정재원 (-11,87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 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0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8명×8.3회=2,000천원 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5,4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4명×12.8회=5,400천원 다. 무역구제 국제 협력회의 등 (4,2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3회=3,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0천원×20명×2회=1,200천원 라. 조정재원 (-6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 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250,000천원) ・ 연구용역 : 50,000천원×5개 과제=250,000천원 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건=100,000천원 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10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25,000천원×4건=100,000천원		라. 조정재원 (46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1,000천원** 가. 무역구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2,10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0명×7회=2,100천원 나. 무역위원회 운영 등(5,040천원) ・ 오・만찬비 등 : 30천원×14명×12회=5,040천원 다. 무역구제 국제 협력회의 등 (4,0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20명×3회=3,0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33천원×10명×3회=1,000천원 라. 조정재원 (-14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0,000천원** 가.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250,000천원) ・ 연구용역 : 25,000천원×10개 과제=250,000천원 나. 수입동향시스템 활용 연구(100,000천원) ・ 산업영향조사 : 100,000천원×1건=100,000천원 다. 산업피해 조사·조치품목 경제분석(100,000천원) ・ 품목 경제분석 : 50,000천원×2건=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경쟁력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	목표	72.8	73.0	73.2	73.3	73.4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업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2.9	73.0	73.7	-				
	달성도	100.0	100.0	100.7	-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	목표	76.2	76.4	76.5	76.6	76.7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을 고려하여 설정	홈페이지 이용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6.3	76.4	77.0	-				
	달성도	100.1	100.0	100.5	-				
무역구제 지원건수 (건)	목표	49	52	53	54	55	최근 3년간의 무역구제 지원건수 평균을 고려하여 설정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현지조사, 상담 등 업체 지원 건수	출장내역 및 지원보고서 등
	실적	51	54	53	58				
	달성도	104.1	103.8	100.0	107.4	-			

* '24년 산업경쟁력조사 사업 및 홈페이지 무역구제 DB 만족도 조사 진행 중('24.12월말 완료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5건, 최종판정 · 덤핑관세부과 7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4건, 판정 및 시정조치(수출입중지 등) 8건 · 법적기반 강화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12월),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6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예규 개정('20.11.20. 시행)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세미나(하계 7월, 동계 11월), 대학생 논문대회(11월), UCC공모전(11월),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회), 무역구제 홍보영상 및 사례집(e-북) 제작 · 배포, 협단체/전문가 간담회 · 15개 신고센터 방문 · 조치기업 현장방문 등 21회 홍보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10개 정책과제 추진 · 수입동향시스템 기능보완 및 무역구제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9~12월) **- 국제협력** · 고위급회의 : 위원장 미 ITC 위원장 및 위원 면담(1~2월) · 양자·다자협력 :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10월),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한-EU 무역구제협력회의(11월)
2021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7건(신규 5, 재심2), 최종판정 6건, 덤핑관세부과 5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 조사개시 5건, 최종판정 1건 · 법적기반 강화 :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7월), 고시 개정(2월)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정책세미나(6.24./11.25),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7.16, 동계 11.5), 대학생 논문대회(11.5), 모의무역위원회(10.3), 보조금상계관세 제도 정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11.25)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뉴스레터' 제작 · 배포(5/7/8/10/11월), 무역구제 홍보시리즈 영상 제작(3편) 및 유튜브 홍보(6~10월), 업계 · 전문가 대상 간담회 지속 추진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13개 정책과제 추진 **- 국제협력**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1.15) : 온/오프방식 병행 * 해외 ↔ 국내 실시간 영상회의(국내는 코엑스에서 모여 영상회의 진행) ·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12월, 영상회의)
2022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5건, 작년말 신청건 포함 6건(13국) 조사진행 · 불공정무역행위 : 조사개시 8건, 총 10건 조사진행 (특허권 5, 상표권 3, 디자인권 1, 영업비밀 1)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6.17., 동계 11.11), 대학생 논문대회(11.11), 모의무역위원회(11.23),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12월)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홍보영상 제작(9월), 제17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2.10), 업계 · 전문가 대상 간담회 지속 추진 및 현장방문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조사 및 제도/현안 연구 9개과제 추진, 하반기 정책과제 추진 **- 국제협력** · 양자 협력 : 한-이집트 무역구제 협력 MOU 체결 추진 (1월), 한-중국 무역구제 협력회의 ·FTA 이행위 (4월), 한-EU FTA무역구제 작업반(6월), 한-WTO 고위급 면담(위원장-사무차장, 6월), 한-EU & 한-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면담(9월),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FTA 이행위(11월, 잠정) ·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12.(수)~14(금),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

2023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7건(신규 1, 재심6), 최종판정 6건(조사종결 1), 덤핑관세부과 5건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10건, 최종판정 5건 · 무역구제조사 기반 강화 : 제3차 무역구제기본계획 수립(4.20),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세법 개정/12.31. 공포)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6.16., 동계 11.17), 대학생 논문대회(11.10), 모의무역위원회(11.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세미나(11.12) · 무역구제지 발간(4/6/9/12월), 무역구제 홍보영상 서울국제포럼 오프닝 영상 활용(10.13),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와 연계하여 무역구제제도 홍보<* 대구·경북(5.31,대구인터불고),전북(6.21,전북대),경남(6.27,창원컨벤션센터),대전·세종(9.8,대전오노마)>, 업계 · 전문가 대상 간담회 지속 추진 및 현장방문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 조사(부직포, 전원공급장치), 제도현안 연구 등 연구용역 추진 (14건) **- 국제협력** · 2023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10.12.(목)~14(토), COAX 아셈볼룸) · 무역구제회의 개최·참석 : WTO 무역구제 기관장회의(5월),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11월), 한-베트남 FTA 공동위(12월) · 고위급 면담('24.5월)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의장,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5.3), 영국 무역구제청 청장, 인도 무역구제총국 부국장(5.4), 중국 무역구제 부국장(10.13) ·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및 타결: (타결)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협상중)한-몽고 EPA
2024	**- 무역구제조사** · 반덤핑 : 조사개시 6건(신규 4, 재심2), 최종판정 6건, 덤핑관세부과 5건, 공청회(5회), 이해관계인 회의(13회) · 불공정무역행위(지재권침해 등) : 조사개시 16건, 최종판정 12건, 기술설명회(3회) **- 무역구제조사 기반 강화** ·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세법 시행령('23.2월) · 시행규칙('24.3월) 및 고시 · 매뉴얼 개정('24.12월))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행정규칙 개정('24.7월) ·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24.7월) · 상계관세 보조금조사 업무 매뉴얼 개정('24.10월) **- 무역구제진흥(홍보 등)** · 무역구제제도 업계 간담회 개최(3.22) · 무역구제 학술세미나(하계 7.1, 동계 11.7), 대학생 논문대회(7.4) 개최 ·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설립 고시 개정(6.26) · 지원센터 설립 간담회 개최(7.19),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0.11), 지원센터 5개 신규 지정('23년 19개 → '24년 24개) · 무역구제 조사·상담 사업 진행(4월~12월, 대한상의 시행) · 무역구제지 발간(6월/12월) · 모의 무역위원회(예선 (11.19.) → 본선 (11.26.) → 시상식 및 간담회 (12.18.)) · 무역구제제도 홍보 브로슈어 발간·배포(15,000부), 홍보 다이어리 제작·배포(2,000부) · 통상진흥협의회 지역별 무역구제제도 설명회 12회 진행(기업체 직원 500여명 참석) · 2024년 불공정무액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11.20) **- 연구용역** · 산업경쟁력 조사(서빙로봇, 전기상용차) 및 무역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추진 (16건) **- 국제협력** ·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7.2.(화)~7.3(수), 코엑스 아셈볼룸) : WTO, 美, EU, 캐나다, 英, 호주, 中, 日 등 12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전문가 등 140여명 참석 · 국제회의 개최(참석) :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1.16.), WTO 반덤핑회의 (4.25. 상(上), 10.30~31(下)),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이행위·무역구제 세미나(11.6), 한-중국 경제공동위 협조(12.12) · 면담: 한-일본 실무면담(3.12./7.2.),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면담(7.1.), 중국 무역구제국 부국장 면담(7.1.) EU 무역구제총국 과장 면담(7.1.),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의장 면담(7.2,), 영국 산업통상부 국장 면담(7.2.) · 무역구제분야 자유무역협정 : (정식 서명) 한-UAE CEPA(5.29.), (진행중) 한-조지아 EPA, 한-몽골 EPA, 한-태국 EPA, 한-말레이시아 FTA, (발효) 한-필리핀 FTA 발효(12.31) 대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 무역구제분야 자유무역협정 : (정식 서명) 한-UAE CEPA(5.29), 한-GCC FTA, (연내 예상_협상 진행중) 한-조지아 EPA, 한-몽골 EPA, 한-태국 EPA, 한-말레이시아 FTA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덤핑 수입, 지재권 침해 등 해외기업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실효적인 무역구제 조치로 국내 산업피해 예방 및 국내산업 보호

○ 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업종별 간담회, 논문·경연대회,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개최, 조사·상담사업 추진 등 무역구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인식 제고 및 제도활용 촉진

○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양자·다자회의 등을 통해 국제 무역구제규범 주도, 무역구제제도 발전 논의 및 수출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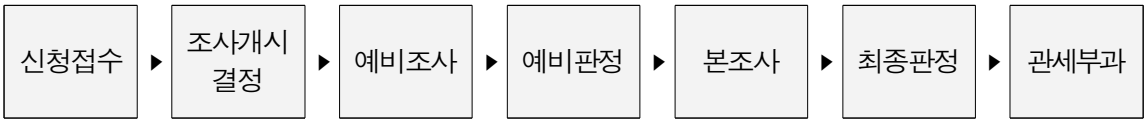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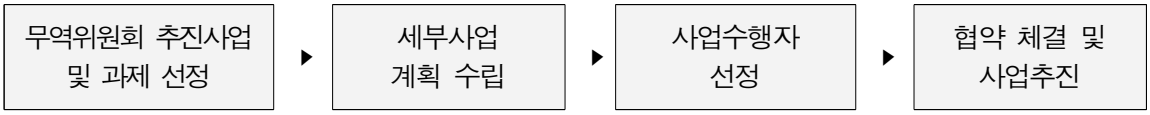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 직접 수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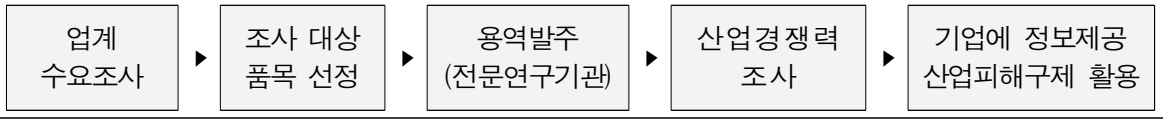
○ 무역구제조사(덤핑)



○ 무역구제진흥



○ 산업경쟁력 조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644	1,793	1,793	1,849	1,886	
'24~'28		1,793	1,793	2,071	2,175	2,28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 강화)**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신속한 진행, 잠정조치 원칙 적용, 우회덤핑방지제도 본격 시행('25.1.1) 등을 위한 제도 정비 지속

○ **(중소기업 제도이용 활성화)**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무역구제 관련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무역구제 활용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산업피해 예방 선순환 체계 구축)** 수입 급증 및 산업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피해예방 및 무역구제 신청검토를 위한 '산업·시장동향 조사' 추진 등을 통해 수입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피해를 예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국제협력)** 외국 무역구제기관과 양자·다자 협력 확대로 국제무역규범 주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수입규제 대응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헤딩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633	-	1,633	-	-	-	1,633	1,477	90.4	90.4	-	156
2022	1,715	△68	1,647	-		-	1,647	1,564	94.9	94.9	26.4	56.6
2023	1,644	-	1,644	26.4	-	-	1,670	1,619	98.5	96.9	-	51.5
2024	1,793	-	1,793	-	-	-	1,793	1,749	97.5	97.5	-	43.9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협력 축소(54백만원), 현지조사 미실시(84백만원) 등
2022	- (이 · 전용)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항공요금(초청경비)이 연초 대비 대폭 인상**됨에 따른 '서울국제포럼' 예산 증액(세목간 조정 : 210-01 △39.1백만원 → 210-14 +39.1백만원) * 무역위는 주요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를 초청, 참가국 대표(1人)에게 항공료(왕복 비즈니스), 숙박(3日) 제공 ** 예) 튀르키예 : (5월) 4.3백만원 → (10월) 11.8백만원 - (불용)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현지조사 미실시(31백만원), 낙찰차액 (5백만원) 등 - (이월) 연구용역(2개) 과제비 잔금 이월(하반기 연구용역 추진시 유찰로 인한 재공고 등으로 10월에 계약체결, 과제기간('22.10~'23.3월)을 감안하여 잔금 이월(26.4백만원)
2023	- (불용) 해외 현지실사 미실시(26백만원), 행사 · 용역 낙찰차액 (15.5백만원) 등
2024	- (불용) 국제협력 회의 취소*(8.8백만원), 행사 · 용역 낙찰차액(35.1백만원) 등 * 한-베 FTA공동위('24.12.12~12.13), 한-중 경제공동위('24.12월)

참고1 「무역위원회」 및 「무역조사실」 개요

□ 개요

○ **(근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직)** 합의제 행정기관인 **무역위원회** 및 사무국인 **무역조사실**

○ **(주요 업무)**
① **덤핑 · 보조금 지급** 사실과 산업피해 조사 · 판정 및 건의
② **세이프가드** 조치·판정 및 건의
③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판정 및 제재 조치
④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및 무역구제 활용 촉진
⑤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 및 양자/다자간 협력 추진 등

□ 「무역위원회」 구성·운영

○ **(성격)** 덤핑, 보조금, 지재권 침해와 국내산업 피해 유무를 심의 ·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

○ **(구성) 위원장**(비상임), 상임위원(산업부 1급)을 포함 **총 9인**
* 위원장·위원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임기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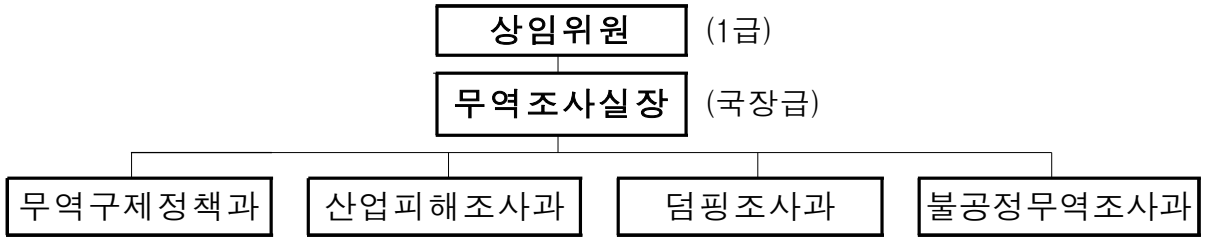
○ **(개최 실적) 월 1회 개최,** '24.12월까지 **455차** 개최
* 무역위원회 개최 이전 주에 '예비무역위원회' 개최

○ **(운영 방식)** 위원장 주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1/2이상 찬성** (불공정무역조사법 제32조)

- 회의공개 : **의결, 심리는 공개**(필요시 비공개), 합의과정은 비공개

□ 「무역조사실」 **구성 · 운영 :** 4개과, 정원 44명(현원 35명, 공무원)



참고2 「무역구제」 제도 및 관련 법령

1 덤핑방지관세 (WTO 반덤핑 협정,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

○ (개념)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부과

○ (무역위 역할) 기업의 조사신청에 따라 **덤핑 및 실질적 피해 사실을 조사·판정**하고, 기재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

2 상계관세 (WTO보조금·상계조치 협정,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

○ (개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부과

○ (무역위 역할) 기업의 조사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실질적 피해 사실을 조사·판정**하고, 기재부에 **상계관세 부과 건의**

3 세이프가드 (WTO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5조, 관세법 제65조)

○ (개념)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 조정, 수입물품 수량 제한 등의 조치 실시

○ (무역위 역할) 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유무를 **조사 · 판정**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을 **관계부처에 건의**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부터 제14조의3)

○ (개념) 수출입거래에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허위·과장표시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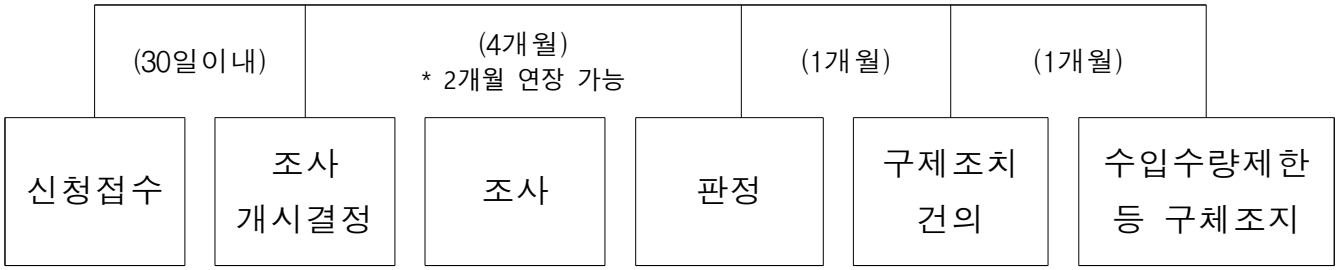
○ (무역위 역할)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조사 · 판정**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참고3 무역구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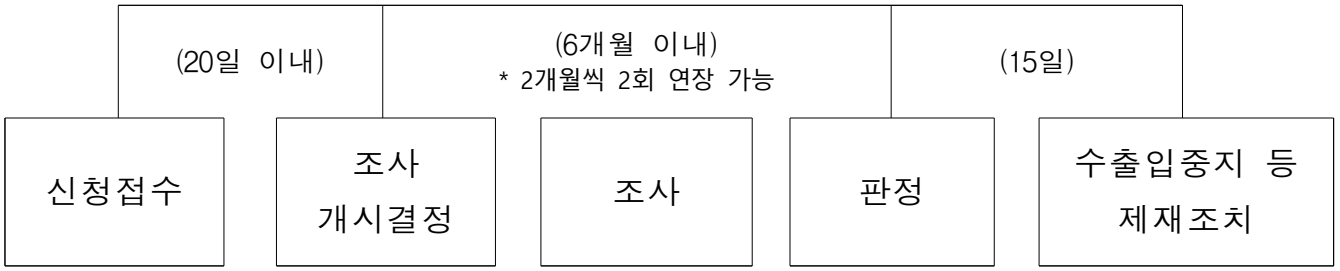
□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제도



□ 세이프가드제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 총괄표(국가기술표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국가기술표준원	**1,346**	**1,702**	**1,469**	**1,469**	**△233**	**△13.7**
<일반회계>	**1,346**	**1,702**	**1,469**	**1,469**	**△233**	**△13.7**
7134 국가기술표준원정책 수립운영	**1,346**	**1,702**	**1,469**	**1,469**	**△233**	**△13.7**
국가기술표준원기관 운영 (7134-301)	1,346	1,702	1,469	1,469	△233	△13.7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2,694**	**11,318**	**8,627**	**8,627**	**△2,691**	**△23.8**
<일반회계>	**12,694**	**11,318**	**8,627**	**8,627**	**△2,691**	**△23.8**
3736 무역기술장벽대응 기반강화	**12,694**	**11,318**	**8,627**	**8,627**	**△2,691**	**△23.8**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정보화) (3736-304)	3,146	2,389	806	806	△1,583	△66.3
기술규제개혁선진화 체계구축 (3736-302)	1,170	1,060	1,133	1,133	73	6.9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3736-301)	8,378	7,869	6,688	6,688	△1,181	△15.0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8,998**	**14,582**	**15,561**	**15,561**	**979**	**6.7**
<일반회계>	**8,998**	**14,582**	**15,561**	**15,561**	**979**	**6.7**
3731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8,315**	**13,633**	**14,761**	**14,761**	**1,128**	**8.3**
국가인증제도혁신 기반구축 (3731-307)	1,051	947	758	758	△189	△20.0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국제적합성평가기반 구축 (3731-306)	1,991	2,088	1,620	1,620	△468	△22.4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731-331)	-	-	3,600	3,600	3,600	순증
법정계량선진화기반 구축 (3731-308)	1,849	1,517	1,161	1,161	△356	△23.5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3731-312)	-	4,760	3,818	3,818	△942	△19.8
신기술제품인증 (3731-301)	3,424	2,461	2,734	2,734	273	11.1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구축 (3731-328)	-	1,860	1,070	1,070	△790	△42.5
7134 국가기술표준원정책 수립운영	**683**	**949**	**800**	**800**	**△149**	**△15.7**
기술표준정책 (7134-302)	683	949	800	800	△149	△15.7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9,936**	**18,063**	**19,497**	**19,497**	**1,434**	**7.9**
<일반회계>	**19,936**	**18,063**	**19,497**	**19,497**	**1,434**	**7.9**
3731 국가표준혁신및국제 협력	**5,208**	**2,788**	**4,425**	**4,425**	**1,637**	**58.7**
융복합 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R&D) (3731-320)	5,208	2,788	4,425	4,425	1,637	58.7
3732 제품안전관리 기반조성	**14,728**	**15,275**	**15,072**	**15,072**	**△203**	**△1.3**
안전제도기반조성 (3732-304)	2,877	3,888	1,685	1,685	△2,203	△56.7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조성 (3732-307)	1,843	1,543	1,247	1,247	△296	△19.2

구분	2023결산	2024예산 본예산(A)	2025예산		증 감	
			정부안	확정(B)	(B-A)	%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3732-310)	1,049	954	592	592	△362	△37.9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3732-306)	1,748	1,679	1,527	1,527	△152	△9.1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3732-303)	7,211	7,211	4,364	4,364	△2,847	△39.5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지원 (3732-312)	-	-	5,657	5,657	5,657	순증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88,034**	**56,034**	**70,104**	**70,104**	**14,070**	**25.1**
<일반회계>	**88,034**	**56,034**	**70,104**	**70,104**	**14,070**	**25.1**
3731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88,034**	**56,034**	**70,104**	**70,104**	**14,070**	**25.1**
개도국표준체계보급 지원(ODA) (3731-303)	2,036	2,890	2,019	2,019	△871	△30.1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3731-330)	-	-	3,300	3,300	3,300	순증
국가표준기술개발및 보급(R&D) (3731-305)	74,495	42,187	53,100	53,100	10,913	25.9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6,764	6,000	6,278	6,278	278	4.6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3,019	3,232	3,558	3,558	326	10.1
한국인인체데이터조사및활용기반구축 (3731-304)	1,720	1,725	1,849	1,849	124	7.2

사 업 명
(1) 신기술제품인증(37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신기술제품인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세부사업) 신기술제품인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이위로	-	지새한울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신기술제품인증	3,425	2,461	2,734	2,734	273	11.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25	3,425	3,425 [3,425]	-	-	2,461	2,461	2,460 [2,460]	2,461	2,460 [2,460]	-	1	2,734
· 신기술인증 등 지원	2,709	2,709	2,709 [2,709]	-	-	1,896	1,896	1,895 [1,895]	1,896	1,895 [1,895]	-	1	2,139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402	402	402 [402]	-	-	281	281	281 [281]	281	281 [281]	-	-	231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1 [31]	-	-	-	-	-	-	-	-	-	-
·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284	284	284 [284]	-	-	284	284	284 [284]	284	284 [284]	-	-	364
○ 비목별 분류(합계)	3,425	3,425	3,425 [3,425]	-	-	2,461	2,461	2,460 [2,460]	2,461	2,460 [2,460]	-	1	2,734
· 일반수용비(210-01)	84.519	84.519	83.519	-	-	58	58	58 [58]	58	58 [58]	-	-	28
· 시험연구비(210-13)	30	30	31 [31]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481	1.481	1.481 [1.481]	-	-	1	1	1 [1]	1	1 [1]	-	-	1
· 일반연구비(260-01)	25	25	25 [25]	-	-	18	18	18 [18]	18	18 [18]	-	-	18
· 민간경상보조(320-01)	3,284	3,284	3,284 [3,284]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384	2,384	2,383 [2,383]	2,384	2,383 [2,383]	-	1	2,68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25	3,425	3,425 [3,425]	-	-	2,461	2,461	2,460 [2,460]	2,461	2,460 [2,460]	-	1	2,734
· 신기술인증 등 지원	2,709	2,709	2,709 [2,709]	-	-	1,896	1,896	1,895 [1,895]	1,896	1,895 [1,895]	-	1	2,139
- 민간경상보조 (320-01)	2,598	2,598	2,598 [2,598]	-	-	-	-	-	-	-	-	-	-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819	1,819	1,818 [1,818]	1,819	1,818 [1,818]	-	1	2,092
- 사 업 추 진 비 (240-01)	1.481	1.481	1.481 [1.481]	-	-	1	1	1 [1]	1	1 [1]	-	-	1
- 일 반 연 구 비 (260-01)	25	25	25 [25]	-	-	18	18	12 [12]	18	12 [12]	-	-	18
- 일 반 수 용 비 (210-01)	84.519	84.519	83.519 [83.519]	-	-	58	58	58 [58]	58	58 [58]	-	-	28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402	402	402 [402]	-	-	281	281	281 [281]	281	281 [281]	-	-	231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02	402	402 [402]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81	281	281 [281]	281	281 [281]	-	-	231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30	30	31 [31]	-	-	-	-	-	-	-	-	-	-
- 시 험 연 구 비 (210-13)	30	30	31 [31]	-	-	-	-	-	-	-	-	-	-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284	284	284 [284]	-	-	284	284	284 [284]	284	284 [284]	-	-	364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284	284	284 [284]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84	284	284 [284]	284	284 [284]	-	-	3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기술인증 등 지원)** 국내 개발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의 평가·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 및 인증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신제품(NEP)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설명회, 구매상담회, 판매 실적 조사 등을 통한 인증제품 판로개척 추진
-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의 인증 취득 당시의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한 인증 차단 및 소비자 보호
-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지원)** 융합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적시 시장출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 ·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2. (생략)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 ·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제57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 · 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0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 · 부품 ·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 · 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가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0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 (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 인증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11.10.06 :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도입
- '16.02.17 : 제9차 무역투지진흥회의,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신속 시장진입지원체계로서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구축 등 보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3,010	3,320	3,425	2,461	2,73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사업자(공모)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수혜자 : 전 산업분야 인증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4) 1,896백만원 → (’25) 2,139백만원, 243백만원 증액

- NEP, NET, GR 인증 평가위탁에 따른 인증평가비용 및 제도 운영 예산으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 및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증액 필요

- (산출)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1,717백만원
  NET·NEP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165백만원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기준 개발 210백만원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1백만원
  연구용역비 18백만원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28백만원

② 인증제품판로지원 및 확산
: (’24) 281백만원 → (’25) 231백만원, 50백만원 감액

- 인증 신제품(NEP))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산출) 의무구매 실적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80백만원
  공공구매 설명회, 현장방문 상담회, 정부포상 등 151백만원

③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4) 284백만원 → (’25) 364백만원, 80백만원 증액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증액 요구

- (산출) 적합성인증 제도운영 344백만원
  제도이용유도 및 활성화 2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61 백만원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1,896백만원** (1-1) NEP, NET, GR 인증 : 1,393백만원 - 정기인증평가 724건 × 3.85백만원 × 0.5 (1-2) NEP, NET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216백만원 - (신산업 지원) 100백만 + (상시인증평가) 30건x3.85백만원 (1-3) 우수재활용(GR)인증기준 개발 : 210백만원 - 기준개발 10건 x 21백만원 (1-4)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 1백만원 - 6명 X 18천원 X 9회 (1-5) 연구용역비 :18백만원 - 연구용역 1건 X 18백만원 (1-6)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5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281백만원** (2-1) 의무구매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68백만원 - 실적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운영 : 68백만원 2-2) 공공구매, 현장 방문 상담회 정부포상 등 : 213백만원 - 상담회 등 30회 X 4.8백만원 + (정부포상) 70백만원	2,461 백만원	**(1) 신기술인증 등 지원 : 2,139백만원** (1-1) NEP, NET, GR 인증 : 1,717백만원 - 정기인증평가 892건 × 3.85백만원 × 0.5 (1-2) NEP, NET 100대 신산업 전략품목 발굴·지원 : 216백만원 - (신산업 지원) 80백만 + (사후관리) 59건x1.44백만원 (1-3) 우수재활용(GR)인증기준 개발 : 210백만원 - 기준개발 10건 x 21백만원 (1-4) 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 : 1백만원 - 6명 X 18천원 X 9회 (1-5) 연구용역비 :18백만원 - 연구용역 1건 X 18백만원 (1-6) 법률자문 등 일반수용비 : 28백만원 **(2)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231백만원** (2-1) 의무구매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80백만원 - 실적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운영 : 80백만원 (2-2) 공공구매, 현장 방문 상담회 정부포상 등 : 151백만원 - 상담회 등 20회 X 4.8백만원 + (정부포상) 55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284백만원 (4-1)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 · 분석 : 264백만원 - (수요발굴)16건 X 3백만원 - (조사분석)8건 X 27백만원 (4-2)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홍보 1회 X 20백만원		**(4)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지원 : 364백만원** (4-1) 제도운영 및 인증조사 · 분석 : 344백만원 - (수요발굴)16건 X 3백만원 - (조사분석)8건 X 27백만원 - (기준제정)1건 X 80백만원 (4-2)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홍보 : 20백만원 - 홍보 1회 X 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구매품목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1.7	71.7	72	72.5		'12년도 성과지표 설정 후 장기간 큰 폭으로 상승 한 점, 만족도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공기관(419개 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만족도 평균 점수	외부 전문 기관의 만족도 설문 조사
	실적	71.4	72.0	72.1					
	달성도	99.6	100.4	100.1					
기관별 의무구매 이행률 (단위: 점)	목표	-	48.7	43	42		최근 3년 실적을 감안, 목표 산출. '22년 도입된 신규지표로 실적 추이 관찰 필요	인증 신제품(NEP)의 의무구매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중 법정구매비율(20%)을 준수한 기관의 비율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시스템, 기관별 재정시스템 등 온라인 조사
	실적	-	43	42	-				
	달성도	-	86.2	97.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431건/인증 68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438건/인증 97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25건/인증 114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5회, 구매상담회 6회, 현장방문 상담회 16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21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46건, GR : 67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46건, 인증건수 7건
2022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424건/인증 53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533건/인증 91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64건/인증 112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8회, 현장방문 상담회 27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22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50건, GR : 102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64건, 인증건수 5건
2023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372건/인증 57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479건/인증 68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90건/인증 131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6회, 구매상담회 7회, 현장방문 상담회 16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23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53건, GR : 114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63건, 인증건수 1건
2024(7월)	① 신기술 인증 평가지원 - 신제품(NEP) 인증(신청 273건/인증 17건), 신기술(NET) 인증(신청 261건/인증 18건) -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신청 140건/인증 51건)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 워크숍 1회, 설명회 2회, 구매상담회 4회, 현장방문 상담회 5회 ③ 인증제품 사후관리 - '24년 사후관리 대상 건 완료(NEP: 25건, GR : 31건) ④ 융합신제품적합성 인증 지원 - 애로지원건수 81건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중소기업 성장 기여) 2023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총액은 3,488억원, 한 개 제품 당 평균 구매액은 20.9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하고 있음

<최근 3년 NEP 의무구매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1년	'22년	증감률	'23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438	2,845	16.7	3,488	22.6
품목당 구매액	15.5	16.7	7.7	20.9	25.1

○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이 ①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취득을 위해,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해 기술 및 행정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신기술, 신제품 인증의 일자리 창출 효과>

(고용실시기업(%) / 고용규모(명))

구 분	① 인증 취득 전 [인증 취득을 위한 고용]	② 인증 취득 후 [생산·관리를 위한 고용]
신기술(NET) 인증	48.8% / 4.0명	52.4% / 4.3명
신제품(NEP) 인증	60.6% / 2.9명	48.5% / 2.6명

※ 조사 대상/기간 :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 중소기업 175개사 / '18.8.~'18.9.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② 보조금 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신 청
- **신제품인증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실무평가위원회 개최(학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평가
  - 제품평가 기준 작성
  - 현장심사위원(3인이상) 선정
-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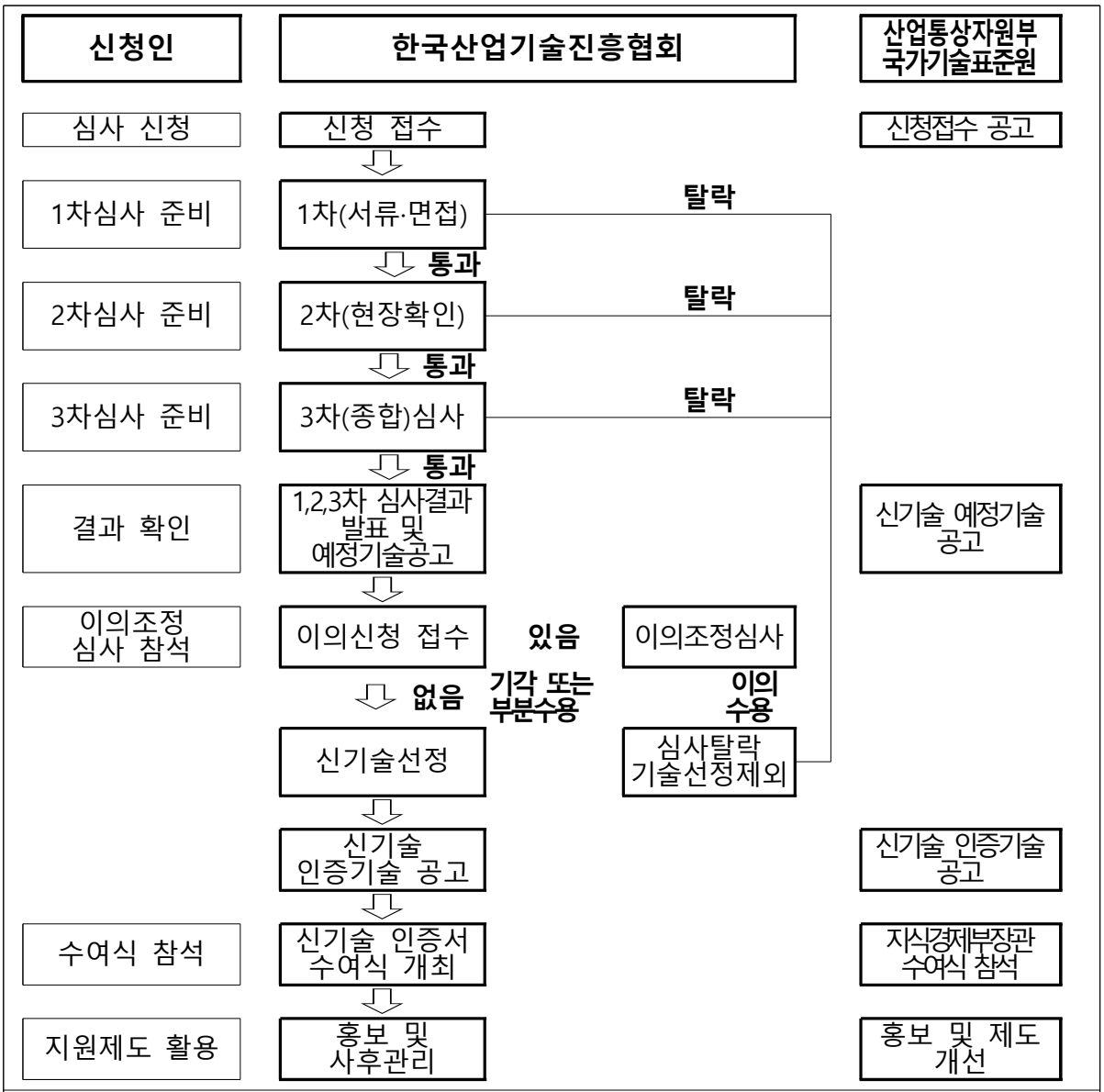
현장심사 제품심사
- **현장심사위원**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위원회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 제품의 지속 생산 여부 판단(필요시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
  - 현장심사 평가표 작성
- **신청업체**
  - 신청제품의 개발·생산·시험평가 현장 안내
  - 현장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인터넷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수렴(30일간)

인증 심의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현장심사위원 등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
  - 종합평가보고서 위주로 신청제품 평가
-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신제품인증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서 발급

② NET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120일)



③ 인증제품 판로지원

인증신제품 구매 요청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종합보고 제출

⇩

종합분석자료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 협조

- ㅇ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신제품 목록 공공기관에 제공
- ㅇ **공공기관**
  -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 년도 구매 계획
- ㅇ **한국신제품인증협회**
  - 구매 계획 및 실적 종합보고서 국표원에 제출
- ㅇ **국가기술표준원**
  - 감사원장 등에 통보 및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 요청
- ㅇ **관계중앙행정기관**

④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신청서접수	⇒	1차 인증평가 (서류.면접, 현장심사)	⇒	2차 인증평가 (종합심사)	⇒	인증서 교부, 공고, 사후관리 등
국표원		국표원, 인증지정기관		국표원		국표원

⑤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소요기간 : 6개월)

신 청

- **제조자등(신청인)→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서 및 별첨 자료 제출

접수사실 통보

- **접수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서 사본 및 별첨 자료 송부
  - 접수 후 5일 이내

심사대상 여부 통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
  - 심사대상 여부와 예정기간 등 통보
  -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적합성 인증 심사

- **인증 관련 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체 구성**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신청 후 30일 이내

협의체 회의 및 안건 의결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및 안건 의결**
  - 적합성 인증기준
  - 적합성인증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기관
  - 그 밖에 적합성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결과 통보

- **적합성인증 협의체 회의 결과 통보**
  - 협의체→신청인, 시험·검사기관, 관련 기관
  - 신청 후 90일 이내

시험·검사 및 결과 통보

- **제조자등→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시험·검사기관→중앙행정기관**
  - 시험·검사 결과통보

인증서 발급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신청인**
  - 6개월 이내에 적합성 인증 결과서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심사기준 등의 고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적합성 인증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재
  - 의견수렴 후 심사기준 등을 관보고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3,425	2,461	2,734	6,492	6,686	
'24~'28		2,461	2,734	6,492	6,686	6,81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NET, NEP, GR,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 도모

- 신산업 분야의 NET·NEP 인증품목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신산업 분야 육성
- 우수 제품 인증을 통해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 탄소중립 실현과 해외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인증기준개발 확대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GR) 활성화 추진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인증애로 발굴 통로 다각화 및 적합성 인증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지원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 자율평가('23회계연도)
- 우수, 90.7점(단위사업명: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2) 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사업방식변경, 79.3점
- 신기술제품 20% 의무구매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동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인증소요 비용인 만큼, 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동 사업의 특장점이 혁신조달이라는 점을 감안 공공 구매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3,010	3,010	3,010	-	-	-	3,010	3,008	99.9	99.9	-	2
2022	3,320	3,320	3,320	-	-	-	3,320	3,320	100	100	-	-
2023	3,425	3,425	3,425	-	-	-	3,425	3,425	100	100	-	-
2024	2,461	2,461	2,461	-	-	-	2,461	2,460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2,869	2,869	2,869	2,869	-	2,869	2,869	-	-	100
2022	3,179	3,179	3,179	3,179		3,179	3,179	-	-	100
2023	3,284	3,284	3,284	3,284	-	3,284	3,284	-	-	100
2024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 2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2	-
2023	-
2024	- 불용 : 2백만원 (민간위탁사업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고 1 신제품(NEP)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 신제품인증은 **제품인증**이며, **최초 개발(개선) 기술을 적용 상용화**에 성공하고 **동종 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인증 요건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등

□ 인증현황

○ 인증평가는 **3차례 평가**(서류→현장→종합)로 구성되며, 획득한 인증은 **3년간 유효**(3년 연장 가능)

<연도별 신제품(NEP)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395	46	362	50	431	69	424	53	372	57

< 신제품(NEP)인증 평가 절차(90일 이내) >

신청	→	접수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평가기관		평가기관 (1차심사)		평가기관 (2차심사)		평가기관 (3차심사)		국표원

* (평가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

□ 주요 지원 제도

○ 공공기관 구매 지원(**의무구매**, 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 기술금융 지원 사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참고 1-1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

□ 제도개요

○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NEP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2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장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시행령 제22조)

*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 (457개 공공기관, '21년 기준)

(기관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총 계
45(9.8)	243(53.2)	17(3.7)	152(33.3)	457(100.0)

□ 추진현황

○ 신제품(NEP) 공공구매 이행 실적 및 구매계획 조사

* 감사원 등 5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 실시,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진

○ 신제품(NEP) 공공구매 촉진 홍보 지원

* 신제품(NEP)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및 인증제도 안내를 위한 워크숍, 설명회, 구매상담회, 현장 방문 상담회 등 진행

○ **(의무구매 현황)** '22년 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 총액은 2,845억원, **한 개 제품당 평균 구매액은 16.6억원**으로 **중소기업 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

<연간 의무구매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년	'21년	증감률	'22년	증감률
NEP제품 구매액	2,435	2,438	0.1	2,845	16.7
품목당 구매액*	18.6	15.5	△16.7	16.6	7.7

* 유효인증품목 수 : '19년(122품목) → '20년(131품목) → '21년(157품목) → '22년(170품목)

참고2 신기술(NET)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조기 발굴 및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 기반 조성

- 신기술인증은 **기술인증**이며, 국내 **최초 개발(대체)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등

○ 신기술인증은 현재 우리부를 포함하여 **8개 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 중

* 산업부(산업), 국토부(건설, 교통, 물류), 복지부(보건), 농림부(농식품, 농기계), 산림청(목재), 행안부(방재), 환경부(환경), 해수부(해양수산, 물류)

□ 인증현황

○ 인증평가는 **3차례 평가**(서류→현장→종합)로 구성되며, 획득한 인증은 **3년이내 유효**(3년 연장 가능)

<연도별 신기술(NET)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인증
건수	425	57	499	86	438	97	533	91	479	68

<신기술(NET)인증 평가 절차(120일 이내)>

신청	→	접수	→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평가기관		평가기관 (1차심사)		평가기관 (2차심사)		평가기관 (3차심사)		국표원

* (평가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 수행

□ 주요 지원 제도

○ 공공기관 구매 지원(우선구매, 수의계약 등)

○ 기술금융 지원 사업,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참고3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제도개요

○ **국내 폐자원을 주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인증제도**로 재활용 산업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선순환경제 실현**

-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 인증을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

* 예) 재생신문용지 : 폐지 40%이상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제품 : 폐플라스틱 80%이상 사용

○ **(근거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의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
> **「재활용촉진법」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대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경표지인증, 2. 환경성적표지인증, **3. 우수재활용제품인증**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예) GR 인증 인쇄용지(GR M 7002) 국정교과서 납품 등

□ 인증현황

○ '97년 대통령주재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통산부(현 산업부)로 추인한 후, **국립기술품질원(현 국표원)에 위임**

* '97.10월 GR 제1997-01호 대한제지 전자복사용지 등 7건 최초인증

○ GR 대상 17분야 361품목* 지정, 266개 업체, 324개 제품 인증('22.12.)

* 폐요업(55종), 폐유리(11종), 폐목재(21종), 폐플라스틱(108종), 폐고무(28종), 폐식용유(8종), 폐산·폐알칼리(8종), 폐유기용제(3종), 폐수처리오니(2종), 폐유(3종), 유기성폐기물(15종), 식물성잔재물(3종), 수산물가공잔재물(4종), 폐전지(6종), 폐섬유(13종), 폐금속(41종), 폐지(32종)

□ 목 적

○ **(순환경제 실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0)**」, 「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등 자원의 재활용 및 재생원료 이용 확대 강조

< K-순환경제이행계획(안) 中 >

■ 자원순환 전과정 관리
❶ (재생원료 이용확대) GR 등 인증기준 마련 및 품질개선
❷ (친환경소비촉진) GR 등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의무화(일정비율이상), 조달 등록시 GR인증 등 재활용 품질기준 반영

- GR 인증을 통해 철강산업 등 탄소 多배출 **기업의 ESG 경영 지원**

*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19) : 1.17억톤(국가배출량의 17%, 산업부분의 30% 차지)

○ **(재자원화)** 자원 재활용 기술혁신을 통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여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에서 금속물질 추출 → 고순도 배터리소재로 재활용

* 폐배터리 물질 재활용을 위한 표준물질, 시험방법 개발 및 GR 인증기준 마련 필요

○ **(해외환경규제 대응)**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활용 제품 등을 규제로 활용함에 따라 **해외규제 대응**

- (EU) 배터리에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新지속가능배터리 규제" 발표('20.12.), (미국) 조달물품에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 ('30)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 ('35)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

참고3-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관계부처합동, p12)

3 순환경제 활성화

◇ **(필요성) 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 필요

○ **순환경제**를 통해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동시 구현

☞ **(추진방향)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 및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으로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decoupling)

❶ (생산·공정)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

-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 마련**
-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 추진

  * (철강) 철스크랩 이용목표 상향(現 50%),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 CO_2 포집 플라스틱으로 납사사용 감소
- 제조공정 발생 **폐에너지**·**부산물** 등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 촉진

❷ (사용)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

- 부품확보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강화**, 제품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 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❸ (재활용) 선별·재활용 시스템의 선진화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

-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및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
- 노후 산업기계·전력기자재 등 **사용 후 제품·부품 성능 복원** 및 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추진

❹ (순환)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및 자원 모니터링 강화

- **(부문별)** 탄소중립과 연계한 **순환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모니터링)**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

참고3-2 「제 3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20.9., 관계부처합동, p14)

3 자원순환 분야 (총 10건)

1.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①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 인증 연계

○ **(기존) 고품질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품질 기준을 보증하는 **국내 인증이 전무**하여 활용 애로*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 재생업체에 해외 인증 획득을 요구

○ **(개선)**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전자 부품·제품에 대한 GR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신청시 **제품별 품질기준 제정***

* 해당 제품의 안전·환경기준 등 법적기준도 고려

☞ **(효과)** 재생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기업 비용절감 및 경쟁력 향상 기대

② 복합재질 필름 제품 GR 인증규격 마련

○ **(기존) 現 GR인증 품질규격**은 단일재질 필름류 위주로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은 규격 **충족이 어려움**

○ **(개선)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제품 4개**에 대해 **신규 대상제품 선정 공고**('20.7.2) 및 **품질기준 제정 예정***

* 대상제품선정(선정위원회)→기준제정(기준위원회)→심의·확정(심의위원회)

· 기준을 효율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기존 규격의 시험항목에 대해 해당기업이 변경 제안을 해야 하므로 규격 개정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기업에 안내('20.5)

☞ **(효과)**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의 GR인증 활성화 및 공공기관에 구매 유인 제공

참고3-3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 관계부처합동) 일부발췌

1 순환 단계별 자원순환 全과정(Life-cycle) 관리 中

1 (원료 생산 단계)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원료 사용 촉진

(3) 재생원료 이용 확대

○ **(품질개선)** 재생원료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사용제품 인증기준**을 **마련**(GR, 환경표지 등)하고, KS 및 단체표준 규격에 반영('22~)

- 재생원료 고품질 · 고부가가치화 및 이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 표준화

3 (유통 단계) 친환경 소비 촉진

(2) 재생원료 사용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기** 근거 마련(~'22, 자원재활용법 개정)

- 지자체 대상 재생원료 사용제품* 일정 비율 이상 **구매 의무화**('23)

*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표지 등 최소한의 품질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조달제도 개선)** 조달 등록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정보 사전 공개**

- 재활용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해 **건설시방서 등**에 **재활용 품질기준**(환경표지·GR인증 등) **반영**

2 정책 주체별 순환경제 이행 확산 中

1 (소비자) 소비자 권리 강화

(1) 환경표지 등 에코 라벨링 개선

○ **(환경표지, GR)** 인증기준에 **자원순환성 및 탄소감축 효과 반영**

- ①인증대상에서 **1회용품 제외**, ②바이오매스 합성수지의 **바이오매스 함량 강화**(現 20% → '30년 50% 이상), ③재생원료 사용비율 확대 등

참고 3-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18.9, 관계부처합동, p61)

세부 추진과제

1 공공·민간부문의 친환경 소비 확산

○ **환경마크 인증** 시 제품의 **순환이용 용이성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는 등 **녹색제품 인증제도의 자원순환성 강화**

- 주요 제품별 **순환이용성 평가요소**와 **환경마크 인증기준** 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환경표지 인증 기준 제·개정**('18~)

< 순환이용성 평가 및 환경마크 연계 >

순환이용성 평가	⇒	연계(적용)방안 검토	⇒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반영
· 평가대상 제품군별 순환이용성 평가요소 도출		· 순환이용성 평가요소와 환경마크 인증기준간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제품군별 순환이용성 평가요소의 환경마크 인증기준 반영 (제·개정 우선 고려)

○ **녹색제품 인증 품목**에 **재활용제품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이용률 명시,**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기관 녹색구매비율 49% → 70%)

* 환경표지 인증기준(총 165개) 내 폐재(34개), 포장재(61개) 및 재활용 용이성(56개) 항목이 포함된 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개정 추진('19.1~)

- 공공부문 **공사·조달 관련 구매지침·규격 제·개정** 및 **조달 가점 부여*** **등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재활용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

*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GR), KS 및 단체표준 인증 등 신인도 가점 부여

○ **중소형 매장(나들가게)** 등으로 **녹색매장 확대지정, 친환경생활지원센터**(구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설치** 등 **민간부문 녹색제품 유통·소비 다각화**

- **신규업계**(인테리어 전문점 등) **참여유도**를 통한 녹색매장 지속 확대

* '18년까지 520개소 → '27년 800개소까지 확대 지정

-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중점사업**(녹색제품 교육 및 홍보,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 **추진**을 통해 지역밀착형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 유도

* '18년 기준 8개소 운영 중으로 '19년 1개소(전남) 추가 지정 예정

참고4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증기준이 없거나 기존 인증기준과 맞지 않아** 시장출시에 어려움* 발생

* 인증기준 제정에 **평균 2~3년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적시 시장진출 실패

(사례) 트럭 자동차에 지게차 기능 추가한 융합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부 **법령개정을 통해 3년 9개월만에** 인증 획득



□ **(특징)** 인증획득이 어려운 융합신제품에 **신제품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인증과 동일 효력의 **적합성인증** 부여

- 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全부처 제도**로 기업의 인증신청 이후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적합성인증 부여

-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제품 품질 및 제조공장에 대한 인증기준·심사기준** 제정(90일 이내)

◈ **LED 투명전광유리**

(특징) 기존 접합유리에 **LED를 융합**한 **디스플레이 기능 제품**

(애로) 기존 **접합유리 관련 인증규격(KSL2004)에 맞지 않아 인증취득 불가**

(결과) 접합유리의 **물리적 특성(내광성, 내열성 등) 외 소비전력, 색도, 내전압 등 기준**을 마련하여 적합성인증 취득





□ **(현황)** 법시행('11.10) 이후, 융합신제품 시장출시에 대한 **애로 발굴 357건**('14년~'22년) 중 **342건의 애로 해소 완료**

○ 342건 중 **79건이 적합성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부여 43건***, 유권해석 등 종결 31건**, **인증 진행 중 5건**

* 인증부여 건수(최근 5년) : ('18) 5, ('19) 12, ('20) 7, ('21) 7, ('22) 5건

** 소관부처 협의로 애로 해소 3건, 제품 개선을 위한 신청 철회 21건, 기타 7건 등

첨부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완료 사례

제품명: LED 투명전광유리

- 제품특징 접합유리 사이에 LED를 삽입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융합한 제품
- 애로내용 일반 접합유리 관련 기존 KS표준으로는 LED가 융합된 접합유리의 광학 특성 및 전기적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취득 불가
  *KS L 2004(접합유리)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제품명: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 제품특징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기존 고분자 연료전지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며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 애로내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시스템 관련 기존 KS표준으로는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취득 불가
  *KS C 8569(고분자연료전지 시스템)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적합성 인증 후 KS표준 개정



사 업 명
(2)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 활동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이응로 과장		김효중 연구사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31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3,019	3,232	3,558	3,558	326	1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52	3,052	3,019	-	33	3,232	3,232	3,177	3,232	3,177	-	55.4	3,558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656	781	773	-	7	655	655	654.6	655	654.6	-	0.4	1,040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252	252	239	-	13	184	184	182	184	182	-	2	184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534	534	525	-	9	534	534	525	534	525	-	9	5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7	-	3	100	100	95	100	95	-	5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1,510	1,385	1,385 [1,385]	-	-	1,159	1,159	1,139	1,159	1,139	-	20	1,234
· 한-아세안 표준협력	-	-	-	-	-	600	600	581	600	581	-	19	500
○ 비목별 분류(합계)	3,052	3,052	3,019	-	33	3,232	3,232	3,177	3,232	3,177	-	55.4	3,558
· 일반수용비 (210-01)	145	145	143	-	2	144.5	144.5	144.3	144.5	144.3	-	0.2	144.5
· 임차료(210-07)	462	587	582	-	5	462	462	461.9	462	461.9	-	0.1	462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385
· 국외업무여비 (220-02)	252	252	239	-	13	184	184	182	184	182	-	2	184
· 사업추진비 (240-01)	44	44	44	-	-	43.5	43.5	43.5	43.5	43.5	-	-	43.5
· 일반연구비 (260-01)	634	634	622	-	12	1,234	1,234	1,201	1,234	1,201	-	33	1,100
· 민간경상보조 (320-01)	1,510	1,385	1,385 [1,385]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159	1,159	1,139	1,159	1,139	-	20	1,234
· 자산취득비 (430-01)	5	5	5	-	-	5	5	4.9	5	4.9	-	0.1	5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52	3,052	3,019	-	33	3,232	3,232	3,177	3,232	3,177	-	55.4	3,558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656	781	773	-	7	655	655	654.6	655	654.6	-	0.4	1,040
- 일반수용비 (210-01)	145	145	143	-	2	144.5	144.5	144.3	144.5	144.3	-	0.2	144.5
- 임차료(210-07)	462	587	582	-	5	462	462	461.9	462	461.9	-	0.1	462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385
- 사업추진비 (240-01)	44	44	44	-	-	43.5	43.5	43.5	43.5	43.5	-	-	43.5
- 자산취득비 (430-01)	5	5	5	-	-	5	5	4.9	5	4.9	-	0.1	5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252	252	239	-	13	184	184	182	184	182	-	2	184
- 국외업무여비 (220-02)	252	252	239	-	13	184	184	182	184	182	-	2	184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534	534	525	-	9	534	534	525	534	525	-	9	500
- 일반연구비 (260-01)	534	534	525	-	9	534	534	525	534	525	-	9	500
·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7	-	3	100	100	95	100	95	-	5	100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0	97	-	3	100	100	95	100	95	-	5	100
· 국제의장·간사활동 지원	1,510	1,385	1,385 [1,385]	-	-	1,159	1,159	1,139	1,159	1,139	-	20	1,234
- 민간경상보조 (320-01)	1,510	1,385	1,385 [1,385]	-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159	1,159	1,139	1,159	1,139	-	20	1,234
· 한-아세안 표준협력	-	-	-	-	-	600	600	581	600	581	-	19	50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600	600	581	600	581	-	19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표준 협력·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신산업·기술 핵심분야 표준 선점 등 전략적 표준외교 추진 및 수행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ISO/IEC 정회원국으로서 국제회의(기술위원회 총회 등) 유치 및 개최, ISO 회장 임기 간 국제표준협력 활동 지원 및 표준 전략 대응, 세계표준포럼(World Standards Forum) 개최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입지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제품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기구·지역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기술위원회·포럼·세미나 등) 참가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협의,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 강화 등 글로벌 표준화 협력·대응 체계 구축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사항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실상 표준 규격*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사실상표준화기구별 포럼/컨소시엄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의 대응·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신산업 및 주력사업 관련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국내기업 대응 역량 제고 등 추진

  * 사실상 표준 : 빠르게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는 산업과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구성원(개인 혹은 기업·단체)을 중심으로 제정된 민간부문 표준규격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月, 국표원)」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방안, 핵심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등의 정책 수립 기반 자료 조사·연구 수행

-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국제표준화기구 임원(회장, 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직책 수임 인원)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표준화기구 내 영향력 확대 및 표준외교 역량을 확보하여 국제표준 제안·선점, 상임이사국 진출 등 추진

- **(한-아세안 표준협력)**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전략적 표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각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사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❶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❷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WTO/TBT 협정 >

· 제2조, 제4조, 제5조 - WTO 회원국의 국제 표준화 및 적합성 활동 명시

· 제10조, 제11조 - WTO 회원국 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ㅇ '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ㅇ '02년,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를 통해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약 3~5년)을 거치므로 국제표준의 제안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지지·협력도 중요

ㅇ '17년도,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추진

ㅇ '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DNA, Big3 등 핵심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의장단 60명 확대

ㅇ'20.6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 '20~23년까지 18종을 국제표준 제안 추진

ㅇ'21.2월, 우리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별 저탄소 기술, 시험평가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표준화 추진

ㅇ반도체, 배터리, 자율차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의 사실상 표준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 선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2.1월,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국내창구 단일화로 사실상 표준화활동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상표준포럼운영 추진('22.1.1.)

ㅇ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외교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22.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임기 '24~'25년도) 및 '23.9월 ISO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 '23.10월 IEC 이사국 진출,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 참여를 통해 표준강국으로의 기반 마련

ㅇ'23.8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를 통한, 핵심·신흥기술분야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 구축

ㅇ'24.2월,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JTC3) 신설 및 의장국 수임, '24.3월 영국 표준협회(BSI)와 양자기술분야 MoU 체결

ㅇ'24.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안한 중전압직류(MVDC) 배전망 기술이 IEC 미래 표준 백서 주제로 채택, '24.10월 기술위 신설 제안 등을 통해 향후 국제표준화에 주도적이고 유리한 입지 확보

ㅇ'24.6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국표원-NIST 표준협력활성 MoU 체결

ㅇ'24.11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AKSCN) 출범 및 공동 워크숍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050	2,497 (2,482)	3,052	3,232	3,55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및 소비자(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 ('24) 655백만원 → ('25) 1,040백만원, (+385백만원, +58.8%)

- 국제표준회의(총회·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 등) 유치·개최 비용, 조성환 ISO 회장 임기 간 국제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 회의장 임차비 : 약 22회 x 21백만원(1회 평균 임차비용) = 462백만원
    * ('23-24) 1회 평균 행사장 임차 21백만원 소요
  - 통역비 및 자료 구비·인쇄 등 : 연평균 소요 약 30건 x 평균 단가 약 3.5백만원 = 104.5백만원
  - 주요 표준기관(ASTM, ASME, DIN 등) 표준자료 구입비 등 : 40백만원
  - 세계표준포럼(ISO 회장 공약) 개최 : 385백만원
  - 회의 준비·운영 장비(노트북 등) : 5백만원
  - 국제회의 개최 시 업무 협력비 : 43.5백만원 (조정 : △0.5백만원)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24) 184백만원 → ('25) 184백만원, (전년동)

-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회의(총회·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 등), 양자·다자간 표준협력 활동 참석 및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약 42명 x 4.4백만원(1회 출장여비) = 184.8백만원
    * ('24) 51명 → ('25) 42명 (조정 : △0.8백만원)

③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 ('24) 534백만원 → ('25) 500백만원, (△34백만원, △6.4%)

- 사실상표준 동향 파악 및 대응 포럼 운영, 사실상 표준 제안 등 대응·협력체계 구축하여 국내 산업계 대응 역량 제고하고자 예산 반영
- (산출)
  - 포럼사무국 운영 : 전문가활용 및 위원회 운영 60백만원 + 운영·관리비(여비, 통신비, 유인물 비 등) 5백만원 = 65백만원
    * 전문가 활용 회의비 : 150,000원(국표원 전문가 회의수당 기준 책정) x 10인 x 15회 = 22.5백만원
    * 사무국 및 위원회 운영 : 운영인원 2인 x 3.1백만원 x 12개월 x 참여율 50% = 37.5백만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사실상 표준규격·기구 대응 6개 분야 x 68.3백만원 = 410백만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백만원

④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24) 100백만원 → ('25) 100백만원, (전년동)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신기술·산업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국제표준 동향 및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국제표준 대응 정책·전략 조사연구 : 3건 x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⑤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 ('24) 1,159백만원 → ('25) 1,234백만원, (+75백만원, +6.5%)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직책 수임 인원(의장.간사.컨비너)의 국제표준회의(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워팅그룹(WG) 등) 참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활동 지원 : 약 187회 x 4.4백만원 = 823백만원
    * ('23) 국제표준화기구 수임 인원 : 263명
      (인당 연평균 1-2회의 국제표준회의 참가, 이를 고려한 예산안 필요)
  - ISO 회장 출장 지원 : 15회 x 15백만원 = 225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5명 x 3.1백만원 x 12개월 = 186백만원

⑥ 한-아세안 표준협력

: ('24) 600백만원 → ('25) 500백만원, (△100백만원, △16.7%)

-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세안 관계자 대상 포럼·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현지 국제표준 전수를 위한 국내 표준전문가 및 표준 협력 사업 발굴 등 사업예산 반영
- (산출) 한-아세안 표준협력 500백만원 : 4개 분야 x 125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32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 ・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40,000천원) ・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다. 조정재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 ・ 3,600천원×51명= 183,600천원 나. 조정재원(+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3,55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 ・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40,000천원) ・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다. 조정재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5,000천원** 가. 행사장 임차료(197,000천원) ・ 행사장 구성 152,000천원 ・ 동시통역 기자재 20,000천원 ・ 영상음향장치 25,000천원 나. 연사초청 여비(27,000천원) 다. 행사운영·대행 및 진행요원 활용 비용(146,000천원) 라. 책자인쇄 등 비용(5,000천원) 마. 기타 경비(1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 ・ 4,400천원×42명= 184,800천원 나. 조정재원(△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 ・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 오・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23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 ・ 3건 × 33,000천원= 100,000천원 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34,000천원) ・ 6포럼 × 89,000천원= 534,000천원 다. 한-아세안 표준협력(600,000천원) ・ 4개 분야 × 150,000천원= 600,000천원 라. 조정재원 (+1,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159,000천원** 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3,200천원) ・ 196명×4.2백만원= 823.2백만원 나. 전문간사 인건비(111,600천원) ・ 5명×3.1백만원×12월= 186백만원 다. ISO회장 출장지원(150,000천원) ・ 10회×15백만원= 150백만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 ・ 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1회 = 5백만		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 ・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00,000천원** 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 ・ 3건 × 33,000천원= 100,000천원 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00,000천원) • 포럼사무국 운영 : 65,000천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6분야 x 68,300천원 = 410,000천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000천원 다. 한-아세안 표준협력(500,000천원) ・ 4개 분야 × 125,000천원= 500,000천원 라. 조정재원 (+3,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34,000천원** 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2,800천원) ・ 187명×4.4백만원= 822.8백만원 나. 전문간사 인건비(186,000천원) ・ 5명×3.1백만원×12월= 186백만원 다. ISO회장 출장지원(225,000천원) ・ 15회×15백만원= 225백만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 ・ 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1회 = 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단위: 건, 누적)	목표	-	735	738	740	742	국제회의 참석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 B (B: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통계자료
	실적	729	736	742	-	-			
	달성도	-	100	100	-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건수 (단위: 건)	목표	131	-	-	-	-	-	-	-
	실적	315	-	-	-	-			
	달성도	240.5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0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3개), IEC 73.6%(156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160건
2022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8개), IEC 73.8%(158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1,296건
2023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2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0.5%(582개), IEC 73.7%(160개)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796건
2024	▪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6건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집계중 ▪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집계중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제표준화활동 증대에 따른 표준역량 제고 기대

ㅇ ISO 발표, '23년도 대한민국 국제표준화활동 순위*는 세계 8위

* ①간사수임(20%), ②정회원(P멤버) 가입률(20%), ③분담금(60%)으로 책정

- 간사수임 10위, 정회원(P멤버) 가입률 8위, 분담금 납부 10위

ㅇ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및 정책이사회 등 임원 수임 중

구분	직책	구성	성명	임기
ISO	**President(회장)**		**조성환**	**'24~'25**
	Council(이사회) 위원	20개국	김세종	'24~'26
	TMB(기술관리위원회) 임원	15개국	문영준	'23~'25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	129개국	문은숙	'22~'24
IEC	IB(이사회) 위원	15개국	이정준	'24~'26
	SMB(표준화관리이사회)위원	15개국	권대현	'21~'26
			배진석	'24~'26
	CAB(적합성평가이사회)위원	15개국	조규식	'22~'24
			최갑홍	'22~'24
	MSB(시장전략이사회)위원	15개업계	김태균	'23~'26
			이창희	'22~'25
	BAC(비즈니스 자문위원회)	15개국	장경진	'22~'26

→ 국제표준 무대에서 표준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외교 역량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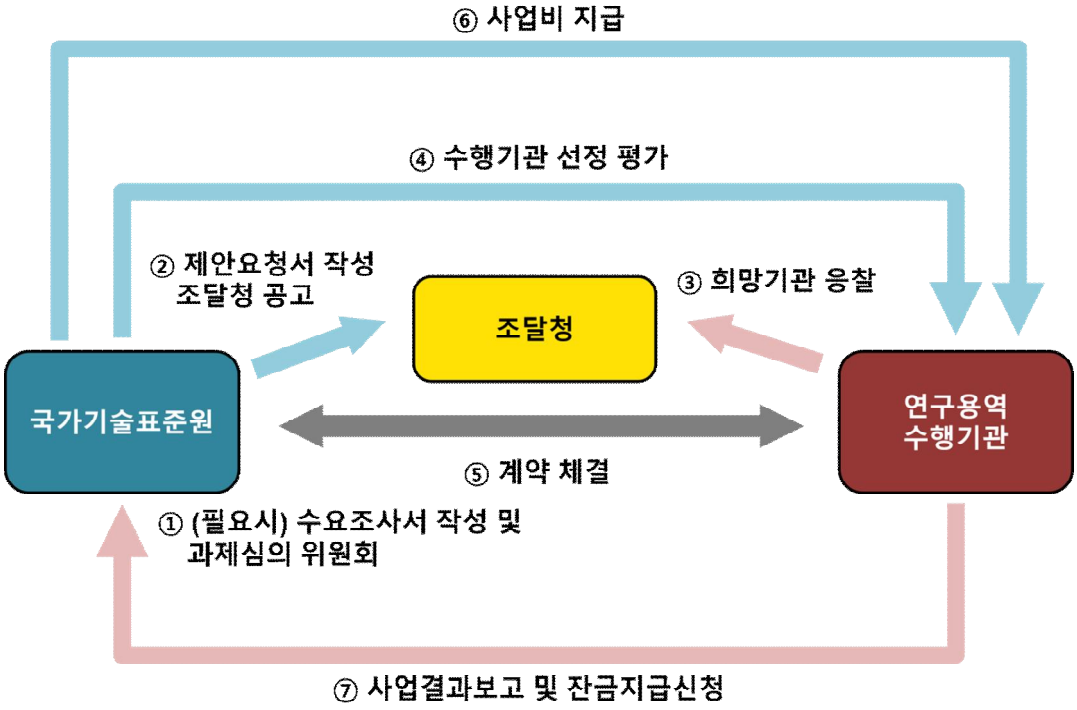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① 국가기술표준원 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 부서 통보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① 사업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
③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
④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산 처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3,052	3,232	3,558	8,291	9,120	
'24~'28		3,232	3,558	3,950	4,148	4,3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 )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 '23년도, "보통" ('21년 보통, 22년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는 '15년 「ISO 서울총회」, '18년 「IEC 부산총회」, 20년~23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19년, '20년, '23년 ISO 이사국 선임, '22년 우리나라 최초 ISO 차기 회장 당선(9월)과 '22년 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 선임, ISO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 재진출, '23년 IEC 이사국 선임 등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ㅇ 탄소중립 표준화, D.N.A·BIG3 등의 신산업·신기술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중소·대기업)들이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등) 등에서 국제표준화 무대에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우리나라 임원 수

'19년 216명 → '20년 237명 → '21년 243명 → '22년 250명 → '23년 262명 → '24년 273명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및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ISO 및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전략적 표준외교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 요청**

○ 美·中·EU 등 주요국들, 미래 핵심기술 주도 및 新시장 선점·확보를 위해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표준개발역량 집중 중

* (美)「핵심 신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표준전략」(백악관, '23.5월)
(中)「신산업 표준화 및 시범사업 실시방안」(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23.8월), 「국가표준화발전계획」(국무원, '21.10월)
(EU)「EU 표준화 전략」(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2.2월)
(日)「일본형 표준 가속화 모델」(경산성, '23.6월), 「통합 혁신(이노베이션) 전략 2023」(내각부, '23.6월)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도구로 표준을 활용하면서 적극적 통상 정책과 표준화 활동 강화

* 美-EU는 통상·기술위원회(TTC)를 출범하고 기술 표준을 포함한 협력 강화('21.10월)

* 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수임('15), 국제전기술위원회(IEC) 회장 수임('20)

○ 우리나라도 신산업 핵심 기술분야 및 탄소중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임

- (표준 선점)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 기구(IEC, ISO) 및 사실상(de facto) 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 신규 제안

*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250건 제안(~'27년)

* 첨단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 수임('22.6월)을 통해 우리 산업기술 반영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추진

- (리더십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화 정책·전략을 리드하는 ISO 회장직에 한국 기업인 진출('22.9월 ISO 회장 당선)

* 그간 국제표준화 성과(ISO 국가별 순위 8위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국제표준 개발 기구(ISO, IEC, ITU)의 회장직에 우리나라는 진출 경험 전무

- (국제 협력) 美·獨 등 기술 강국과 양자기술, AI, 자율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표준 공동개발 및 정보교류 등 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

* '한-독 표준협력대화, 한-미 표준협력대화 등 정례 회의체 운영

⇨ 자국 기업·제품·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해 각국의 표준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내 기업에 용이한 표준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2,050	-	1,835	-	-	-	2,050	1,001	48.8	48.8	-	1,049
2022	2,497	△15	2,482	-	△80	-	2,402	1,990	80.1	82.8	-	412
2023	3,052	-	3,052	-	- (125)	-	3,052	3,019	98.9	98.9	-	33
2024	3,232	-	3,232	-	-	-	3,232	3,177	98.3	98.3	-	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900	900	500	500	-	500	483	-	-	53.6
2022	1,110	1,110	1,110	1,110	-	1,110	857	-	-	77.2
2023	1,510	1,510	1,385	1,385	-	1,385	1,385	-	-	91.7 (100)
2024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1,049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2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237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391백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 잔액(400백만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연기 및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 회의 취소로 불용 발생
2022	○ (불용) 41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5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30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잔액(4백만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연기 및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 회의 취소로 불용 발생 ○ (전용) 국제표준활동지원 일반연구비에서 국가표준활성화 시험연구비로 전용(80백만원)
2023	○ (불용) 33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5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3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12백만원) ○ (전용) ISO 전략대응팀 사무소 계약(집행) 주체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산업부(국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제표준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차료로 예산 비목 변경(125백만원)
2024	○ (불용) 55.4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1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및 민간위탁(320-02) 조달 낙찰차액(33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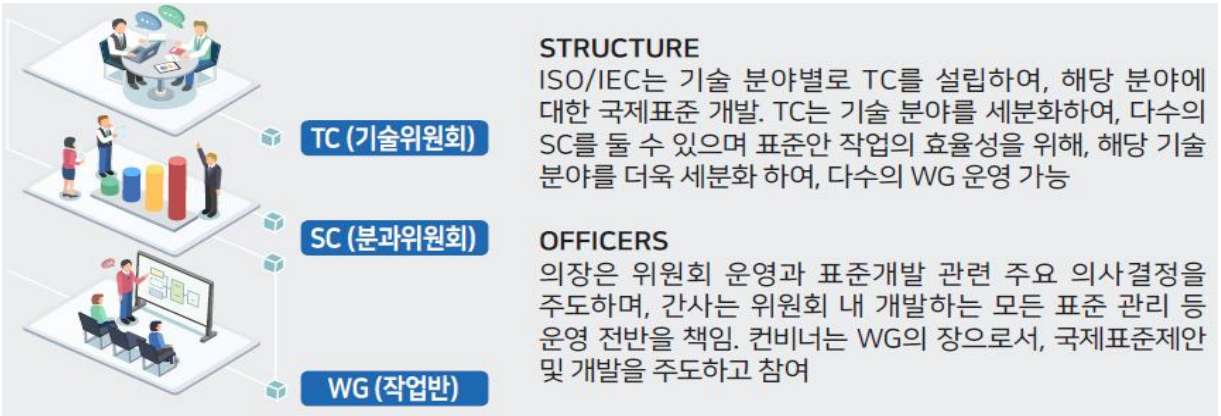
□ 기구별 현황

기구명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72개국 (정회원 128, 준회원 40, 통신회원 4)	174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8, 개도국회원국 84)	193개 회원국 (약 90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20,000여명)
표준 수	25,111종	11,746종	6,212종
위원회 수	TC: 268개 SC: 496개 WG: 2,506개	TC: 113개 SC: 113개 WG: 773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 국제표준화 필요성



□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 · 간사 · 컨비너 역할



□ ISO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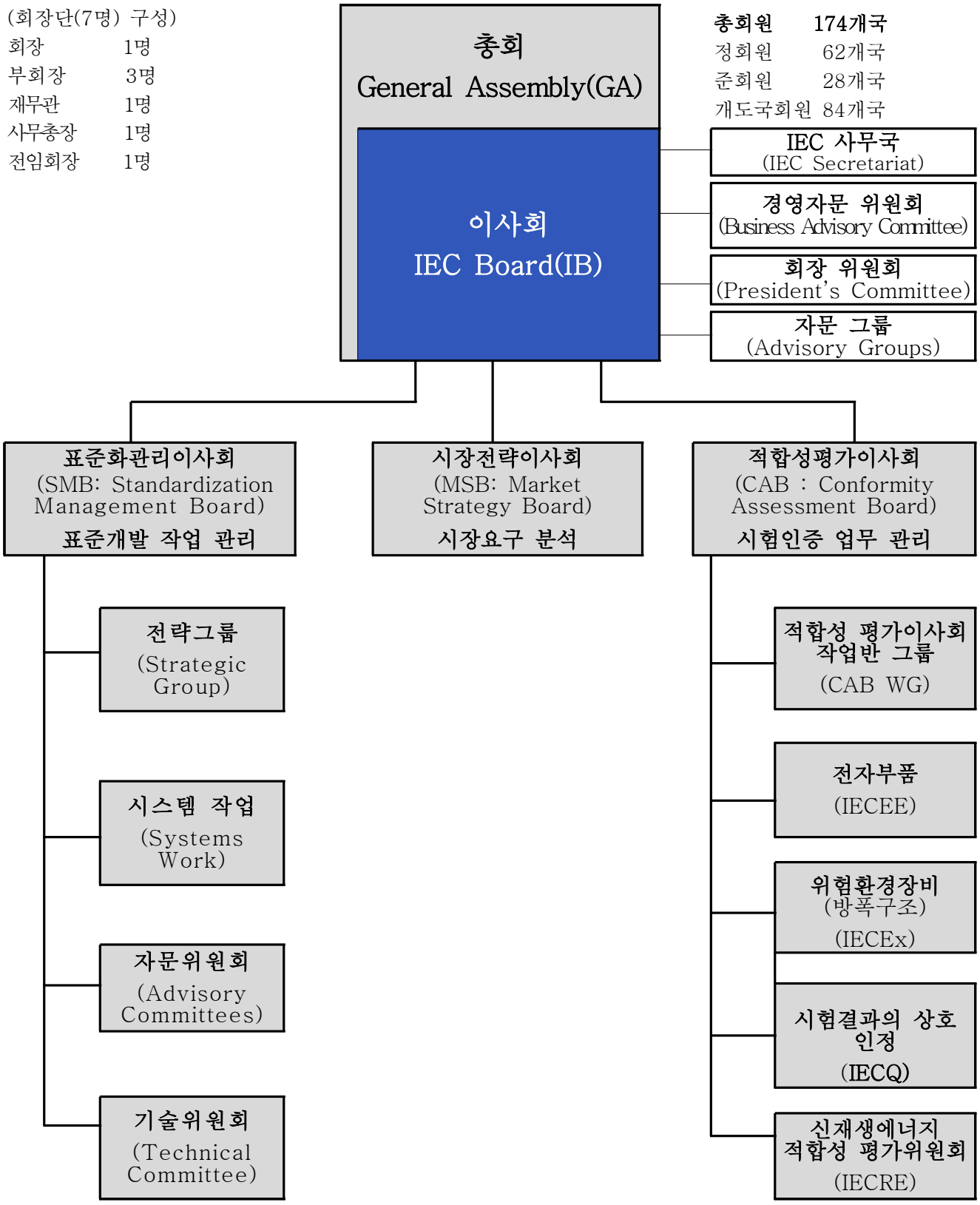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DEVC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개발도상국위원회)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그룹)
SAG	Strategical Advisory Group	(전략자문그룹)

★ ISO 중앙사무국 직원 현황 : 28개국 162명

□ IEC 조직도

(회장단(7명)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
재무관 1명
사무총장 1명
전임회장 1명



붙임 2 사실상 표준화 동향

□ 사실상 표준화 동향

○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는 국제표준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을 우선 개발하여 시장 지배

* SAE(미래차), ASTM(첨단소재), 3GPP(통신), SEMI (반도체), IEEE(전자) 등

< 사실상 표준화 주요 분야 >

▸ (SAE : SAE INTERNATIONAL) 자율차 레벨표준(J3016) 등을 개발 → ISO PAS 22736으로 수용

▸ (ASTM : ASTM INTERNATIONAL) ISO와 공동으로 3D프린팅 표준(ISO/ASTM 52900) 등을 개발

▸ (3GPP : 3GPP A GLOBAL INITIATIVE) ITU에서 정한 비전에 따라 5G·IMT 등의 국제표준을 개발

< 미국 사실상 표준화 정책 >

▸ 미국 사실상 표준화 활동은 정부에서 지원, 민간 주도 표준화

○ 국가기술이전법(NTTAA)을 통해 정부가 민간 표준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표준 개발보다 민간표준을 인용·활용토록 권고

구분	ASTM (재료시험협회)	ASME (기계기술자협회)	NFPA (화재방재협회)	SAE (자동차기술자협회)	UL (보험연구소)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수	12,000종	600종	300종	10,000종	1,500종	1,300종

□ 사실상 표준 협력 강화

○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해 산업 분야별 포럼 구성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ASTM, IEEE, SEMI 등 주요 표준화기구 대응(산업계 중심 포럼 운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참고 3 국제표준화 관련 현황('23년 말 기준)

○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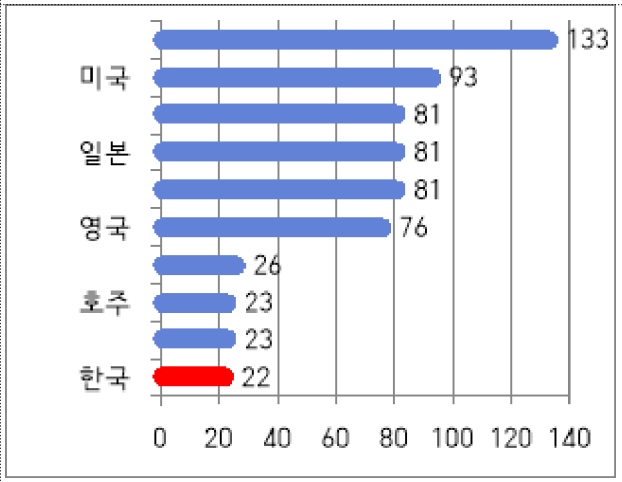
구분(명)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ISO	18	22	136	176
IEC	7	8	72	87
계	25	30	208	263

○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 현황('22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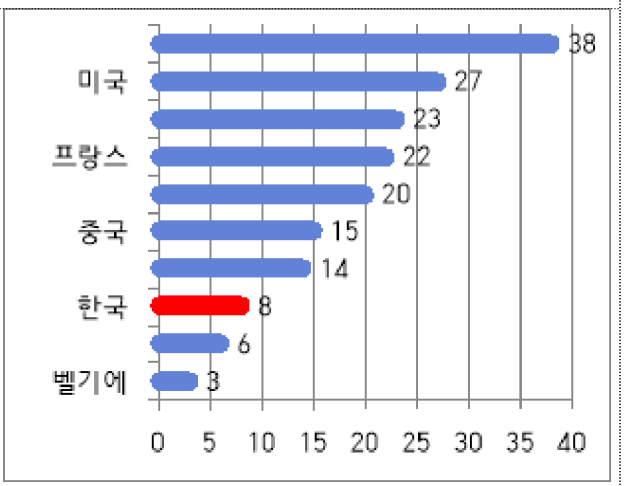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825	268	557	582	197	385	148	54	94	730	251	479	70.5%
IEC	217	115	102	160	92	68	24	19	5	184	111	73	73.7%
합계	1,042	383	659	742	289	453	172	73	99	914	362	552	71.2%

○ 간사국 수임 순위 : **ISO 10위, IEC 8위** ('23년 기준 해당기구 집계순)

<ISO 간사 수임 현황>



<IEC 간사 수임 현황>



사 업 명
(3)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이응로		장준규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402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너지본부 에너지소재센터	박재성	043-718-9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에너지본부 공기환경센터	이경수	043-753-3181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조서영	02-6240-4593
		FITI 시험연구원	기반활용센터	안윤희	02-3299-8149
		KATRI 시험연구원	해외협력단	문창헌	02-3668-285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제개발사업센터	최상협	031-428-75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2,036	2,890	2,019	2,019	△871	△3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36	2,036	2,036 [2,036]	-	-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	-	2,019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716	716	716 [716]	-	-	760	760	760 [760]	760	760 [760]	-	-	594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300	300	300 [300]	-	-	630	630	630 [630]	630	630 [630]	-	-	480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500	500	500 [500]	-	-	700	700	700 [700]	700	700 [700]	-	-	515
· 표준체계전수협력	520	520	520 [520]	-	-	800	800	520 [520]	800	520 [520]	-	-	430
○ 비목별 분류(합계)	2,036	2,036	2,036 [2,036]	-	-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	-	2,019
· 민간경상보조 (320-01)	2,036	2,036	2,036 [2,036]	-	-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	-	2,01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36	2,036	2,036 [2,036]	-	-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2,890]	-	-	2,019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716	716	716 [716]	-	-	760	760	760 [760]	760	760 [760]	-	-	594
- 민간경상보조 (320-01)	716	716	716 [716]	-	-	760	760	760 [760]	760	760 [760]	-	-	594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300	300	300 [300]	-	-	630	630	630 [630]	630	630 [630]	-	-	480
- 민간경상보조	300	300	300	-	-	630	630	630	630	630	-	-	480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320-01)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500	500	[300] 500 [500]	-	-	[630] 700 [700]	700	[630] 700 [700]	700	[630] 700 [700]	-	-	515
-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500 [500]	-	-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	-	515
· 표준체계전수협력	520	520	520 [520]	-	-	800 [520]	800	520 [520]	800	520 [520]	-	-	430
- 민간경상보조 (320-01)	520	520	520 [520]	-	-	800 [520]	800	520 [520]	800	520 [520]	-	-	4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국가 차원의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내수시장 안정화 촉진을 원하는 우즈벡을 대상으로 에어컨 국제공인시험소 및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의 우즈벡 중앙아시아 시장진출 및 수출 증대 지원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의 시험·인증 체계 수립, 시험실무자 및 품질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라오스 전기용품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와 시험검사 인프라 지원
- **(표준체계 전수협력)**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 · 연구 · 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 · 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 · 분석 · 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임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453	2,143	2,036	2,890	2,019

- 기타: 민간보조(보조율 100%), 보조사업자 공모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자(공모)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 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보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94	100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보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80	100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	한국표준협회	515	100	
표준체계전수 협력	보조	공모	430	100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24) 760백만원 → (25) 594백만원, △21.8%

- 시험 장비·시스템 현장 검수 및 운영 기술이전을 위한 국내 전문가 국외파견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을 위한 시험 장비·시스템 설치 등

- (산출) 594백만원(4차년도 사업비)

* 인건비	: ('24) 142백만	→	('25) 127.5백만	△ 14.5백만
*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24) 453백만	→	('25) 388백만	△ 65백만
* 표준컨설팅 및 전문가 현지파견	: ('24) 39백만	→	('25) 31백만	△ 8백만
* 역량강화 및 제도컨설팅	: ('24) 126백만	→	('25) 47.5백만	△ 78.5백만

(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24) 630백만원 → (25) 480백만원, △23.8%

- 시험 인프라 기자재 구축 착수

- (산출) 480백만원(3차년도 사업비)

* 운영비 및 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 ('24) 47.3백만	→	('25) 31백만	△ 16.3백만
* 표준컨설팅 및 현지파견	: ('24) 125.7백만	→	('25) 84.6백만	△ 41.1백만
* 한국형 시험 인프라 구축	: ('24) 408백만	→	('25) 330.2백만	△ 77.8백만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24) 49백만	→	('25) 34.2백만	△ 14.8백만

(3)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24) 700백만원 → (25) 515백만원, △26.4%

- 제품안전 및 정량인증제도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산출) 515백만원(3차년도 사업비)

* 관련제도 정책컨설팅	: ('24) 110백만	→	('25) 70백만	△ 40백만
* 정량인증·제품안전 장비구입 및 이전	: ('24) 230백만	→	('25) 177백만	△ 53백만
* 전문인력 양성교육	: ('24) 150백만	→	('25) 116백만	△ 34백만
* 사업운영비, 제도홍보지원 등	: ('24) 210백만	→	('25) 152백만	△ 58백만

(4) 표준체계전수협력 : (24) 800백만원 → (25) 430백만원, △46.2%

- '24년 표준체계 전수협력 내내역사업 중 1개 사업 종료*, '25년 3개 사업 계속 지원

  * (종료사업)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 (산출) ('25) 430백만원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구분	'25예산	산출내역
르완다 섬유·가죽 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계속	130	○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58.8 ○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40.1 ○ 사업운영비 : 31.1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인증 역량강화 지원,	계속	130	○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31.7 ○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33.4 ○ 사업운영비 : 64.9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계속	170	○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54 ○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62 ○ 사업운영비 : 35 ○ 교육자료 제작 : 19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36,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890,000천원** 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 지원(760,000천원) 가.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컨설팅 : 10,000천원 나.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6,100천원 다.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607,500천원 라.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 : 15,000천원 마.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121,400천원 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30,000천원) 가.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65,000천원 나.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45,000천원 다. 한국형 시험인프라 구축 : 430,0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90,000천원 3.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700,000천원) 가. 관련제도 정책컨설팅 : 50,000천원 나. 정량인증제도 검사교정장비 지원 : 200,000천원 다. 제품안전 공산품 검사장비 지원 : 200,0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교육 : 100,000천원 마. 사업운영비, 제도 홍보지원 등 : 150,000천원 4. 표준체계전수협력(800,000천원) 가.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나.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150,000천원 라. 베트남 태양광제품 시험인증시스템 구축지원 : 250,000천원	2,89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019,000천원** 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지원(594,000천원) 가. 인건비 : 127,500천원 나.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388,000천원 다. 표준컨설팅 및 전문가 현지파견 : 31,000천원 라. 역량강화 및 제도컨설팅 : 47,500천원 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480,000천원) 가. 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운영비 : 31,000천원 나. 표준컨설팅 및 현지파견 : 84,600천원 다. 한국형 시험인프라 구축 : 330,2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34,200천원 3.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515,000천원) 가. 제도개선방안/시험소 운용요령 개발 등 정책컨설팅: 70,000천원 나. 정량인증/제품안전 장비구입 및 이전 : 177,000천원 다. 전문인력 양성교육: 116,000천원 라. 사업운영비 및 제도홍보 지원: 152,000천원 4. 표준체계전수협력(430,000천원) 가.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130,000천원 나.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130,000천원 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170,0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프로젝트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달성률 (단위: %)	목표				100	10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산출	프로젝트 사업 당해연도 시행계획(인프라, 시험장비 구축) 대비 달성률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100	-			
		달성도				100	-			
공통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목표				10	1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관리자·실무자 대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건수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 등
		실적				17	-			
		달성도				170	-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목표				3	3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시행계획에 따른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건수	네트워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실적				7	-			
		달성도				233	-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7	7	7	7	6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연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7	7	7	8	-			
		달성도	100	100	100	114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11	13	13	14	14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4점을 기준	해당연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 조사 보고서 등「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기준
		실적	14.6	16.2	17.0	17.3	-			
		달성도	132	125	130	12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 (키르기스스탄) EAEU 제품안전제도 및 기술규정 정책 현황조사, 제품안전관리제도 구축 지원(홍보물, 영상교재), 시장감시 시뮬레이션(안전성조사보고서, 영상교재), 장비도입현황 및 시험능력 모니터링, 섬유제품 시험·분석 능력 구축 지원(영상교재) 등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시험기관(ECAE)의 시험 역량구축을 위한 기술 전수, 제품안전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영상교재), 섬유·가죽 환경규제 대응 적합성 평가 센터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컨설팅, 양국 정부·수행기관 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 (미얀마) 섬유·의류 분야 미얀마 국가표준개발 지원, 카테고리 별로 표준설명서(General Contents of Standard)의 개발, 섬유제품 표시·안전기준 개발 지원(영상교재, 해설서 제작), 한국형 품질관리 시스템 전수(영상교재, 시험컨설팅 보고서) 등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전반의 협력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현황조사(설문조사), 계량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온라인강의), 법정계량분야 이해관계자 교육(콘텐츠 제작) 등 ▸(협력타당성조사)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페루 등 3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 (과테말라) 에너지효율 표준체계 지원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시험인증 지원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 (페루) 인체치수 조사체계 구축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2022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 (키르기스스탄) 법·제도 정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장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 피드백, 섬유제품 시험·분석 능력 구축 지원 등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협력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 (인도네시아) 에너지효율 건물설계기준 보급 지원 기획 및 타당성조사 - (베트남) 유해물질 관리표준화 역량강화 기획 및 타당성조사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또는 한국산업표준) 도입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정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장비 및 기자재 세부 구축계획 수립 지원, 장비 및 기자재 발주·입찰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시험장비·기자재 검수 및 시운전을 위한 전문가 파견

2023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국제공인시험기관 획득 지원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ISO 5151 국제표준 기술 사항,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선을 위한 ISO 16358 기반 기술 데이터 산출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장비 관부가세 면제 합의(우즈벡 관세당국), 에어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및 시험장비 기초 구조물 제작/현지 설치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한-우즈벡 표준/적합성 분야 공동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수요기관(인도네시아 산업부, 표준청, 시험기관) 관리자급 9명(중앙부처 차관보급 1명, 과장급 3명 포함) 국내 초청 연수 - 한국형 마스크 시험인프라(Particle Photometer 외 7개 시험 장치) 구축 - 국내 표준에 부합화된 인니 마스크 시험 표준 제개정(안) 마련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Q마크, L-마크 인증제도 운용방안 및 근거 법령 개정방안 컨설팅 - L-마크 검사 및 교정장비 설치·구축 - Q마크, L-마크 전문가 파견을 통해 해당 분야 관리자·실무자 대상 교육
2024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출 확대 연구 - ISO/IEC 17025 품질문서 작성 및 시험장비 교정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공기청정기 및 에어필터 현지도입 표준 선정 - 인니 시험기관에 최적화된 품질문서 및 시험 불확도 추정보고서 개발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경영시스템 구축 및 장비 유지 보수 이론/실습 교육 - DOSM 담당관 초청연수(Q마크 5명, L마크 5명, PM 1명)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르완다) 현지 제품품질인증제도 현황 조사 및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우즈베키스탄) 현지 표준인증체계 정책조사, 전문가 파견 교육 및 교재 제작 -(인도네시아)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련 법령 현황 조사분석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u>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u>**

▸ 한국형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 표준체계 전수협력 및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지원을 통해 개도국 산업발전 지원

▸ 한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수원국 내 한국형 표준·인증체계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인증기관 수출시장 확대

-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역량강화 교육(초청, 전문가 파견 또는 영상교재 제작을 통한 비대면 교육) 추진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수원국 내 국가대표 표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위상 제고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의장국 및 간사국 진출확대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강국으로 도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2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금 1차 교부 (1분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금 집행점검 및 보조금 2차 교부 (3분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사업최종평가 (12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사업정산 (차년도 2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25년 내역사업별 보조금 흐름도

-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594백만원)	=> (594백만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94백만원)		-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480백만원)	=> (480백만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80백만원)		-

-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515백만원)	=> (515백만원)	한국표준협회 (515백만원)		-

- 표준체계 전수협력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430백만원)	=> (430백만원)	FITI시험연구원 (130백만원)		-
		KATRI 시험연구원 (130백만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70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2,036	2,890	2,019	3,750	4,027	
’24~’28		2,890	2,019	3,338	3,505	3,6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이 진출하기 위해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인정 등을 추진

*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ㅇ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협력 타당성조사, 표준체계 전수협력,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개도국 표준,인증 지원

- (1단계)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지원 가능한 개도국 협력사업 조사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ㅇ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사업방식 변경) 효율적인 사업(ODA사업)추진을 위해 내역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등록하여 내역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 내역사업 개시연도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정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확보

ㅇ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결과 : 보통, 80.0점(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453	-	1,453	-	-	-	1,453	690	47.5	47.5	-	763
2022	2,143	-	2,143	-	-	-	2,143	1,382	64.5	64.5	-	761
2023	2,036	-	2,036	-	-	-	2,036	2,036	100	100	-	-
2024	2,890	-	2,890	-	-	-	2,890	2,89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1,453	1,453	690	690	-	690	690	-	-	47.5
2022	2,143	2,143	1,382	1,382	-	1,382	1,382	-	-	64.5
2023	2,036	2,036	2,036	2,036	-	2,036	2,036	-	-	100
2024	2,890	2,890	2,890	2,890	-	2,890	2,89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액 763백만원(집행잔액)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21년 2월)으로 인해 미얀마 ODA 사업 지원 중단 ※ 미얀마 사태 장기화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
2022	○ 불용액 761백만원(집행잔액) - 미얀마 군부 쿠데타(21년 2월)장기화로 인해 미얀마 ODA 사업(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구축 지원,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총 761백만원) 지원 중단 ※ 미얀마 사태 장기화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21년과 동일)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관계법령

(2) 내역사업별 설명자료

참고1 관련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참고2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지원**

□ 사업 개요

- ㅇ 사업 기간: 2022 ~ 2025년(총 4년)
- ㅇ 사업 예산: 2,640백만원('25년 594백만원)
- ㅇ 수요 기관: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s(우즈벡기술규제청)
- ㅇ ODA 모델



□ 세부 사업 목표

세부 목표	세부내역
국가표준 및 인증제도 제개정 컨설팅	▪ 국제표준 부합화(ISO 5151) 및 국제에너지기구(IEA) 기반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출법 제안
한국형 시험인증 시스템	▪ 에어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전기, 통신, 수도 등) ▪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시험 장비/시스템 구축	▪ 에어컨 시험 장비 조달(발주, 제작, 국제운송, 통관 등) ▪ 시험 장비 검수, 설치, 교정, 시운전(커미셔닝)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컨설팅	▪ 국제공인시험소 컨설팅(ISO/IEC 17025) ▪ 국제공인시험소 평가 및 자격 획득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수요기관 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초청연수 ▪ 시험소 운영 기술이전 및 전문가 파견 교육

□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사업 내용
2022년, 1차년도 (5.7억 원)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또는 한국산업표준) 소개 – 국제표준 기반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기준 소개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 – 장비 및 기자재 구축 세부계획/설계 지원 •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시험장비 및 기자재 규모/리스트 확정 – 시험장비 및 기자재 발주 및 입찰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전문가 파견) – 현행 국가표준 및 제도 조사 및 과업 추진 전략 수립 – 우즈벡 인정기구 현황 조사 및 관련 규정 파악
2023년, 2차년도 (7.16억 원)	• 국제표준 부합화 : ISO 5151 및 ISO 16358-1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컨설팅 – 우즈벡 기후환경을 반영한 국제표준 및 국제에너지기구 기반의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출법 연구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시험 기자재 설계 및 제작 – 시험 기자재 국제운송 및 설치 준비 작업 •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관리자 초청연수 (1주, 5명) – 실무자 초청연수 (2주, 5명) – 전문가 파견 : 시험 장비/시스템 설치 감독 및 현지 교육 – 국제세미나 개최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 기술교류
2024년, 3차년도 (7.6억 원)	• 시험소 경영 마스터플랜 수립 –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 국제표준 도입(부합화) 컨설팅 – ISO 5151, 16358-1 세부 내용 및 기술사항 교육 •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컨설팅 – 우즈벡 기후환경을 반영한 국제표준 및 국제에너지기구 기반의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출법 우즈벡 전문가 워크샵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시험 장비 기초프레임 및 풍동/계측 설비 설치 – 시험 장비 운영시스템 설치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시운전 및 검교정(1차) – 시험 장비 운영법 및 검교정 기술 전문가 교육 • 국제공인시험소(ISO/IEC 17025) 자격 컨설팅 – 국제공인시험소 품질문서 작성 지원 – 시험 장비 검교정 및 숙련도 시험 3단계(총 6단계) 수행 •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 –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 보수교육(각각 1주, 5명) – 현지교육 : 시험 장비 운전 및 운영법 교육 – 전문가 파견 : 시험 장비 검수/시운전 및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평가 준비 작업 컨설팅
2025년, 4차년도 (5.94억 원)	• 시험소 경영 마스터플랜 완료 – 국제공인시험소 운영시스템 구축 및 SOP 수립 • 국제표준 도입(부합화) 및 에너지효율인증제도 컨설팅 – 국제표준 및 국제에너지기구 기반 효율등급 기준 기술 제안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시험 기자재 스페어파트 제작 및 현지 설치 – 시험 장비 및 시스템 검교정(2차) 및 시범운영 – 시험 시스템 보수 및 유지관리법 교육 • 국제공인시험소(ISO/IEC 17025) 자격 컨설팅 – 우즈벡인정기구(O'zakk) 인정 평가 및 자격 획득 컨설팅 •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 – 현지교육 : 시험 장비/시스템 유지관리 노하우 전수 및 국제공인시험소 운영 점검 – 전문가 파견 : – 워크샵 개최 : 표준/인증제도/적합성 평가 체계 운영 노하우

참고3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 사업 개요

- ㅇ 사업 기간: 2023 ~ 2026년(총 4년)
- ㅇ 사업 예산: 2,030백만원('25년 480백만원)
- ㅇ 수요 기관: BSN(인니 표준청), 인니 산업부 산하 시험기관 2곳(BBT, B4T)*
  * BBT: 마스크 시험기관, B4T: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시험기관 구축 예정
- ㅇ ODA 모델



□ 세부 사업 목표

세부 목표	세부내역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미세먼지 대응 제품 관련 국제표준(또는 KS 표준) 도입 컨설팅
시험소 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	▪ 시험소 경영 및 관리시스템 구축, 교정 프로세스 컨설팅 ▪ ISO 부합화(ISO/IEC 17025, 17065) 지원 컨설팅
한국형 시험 인프라 구축	▪ 시험소 기초인프라 구축 컨설팅 ▪ 시험 장비 구축(커미셔닝),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수요기관 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초청연수 ▪ 시험소 운영 기술이전 및 전문가 파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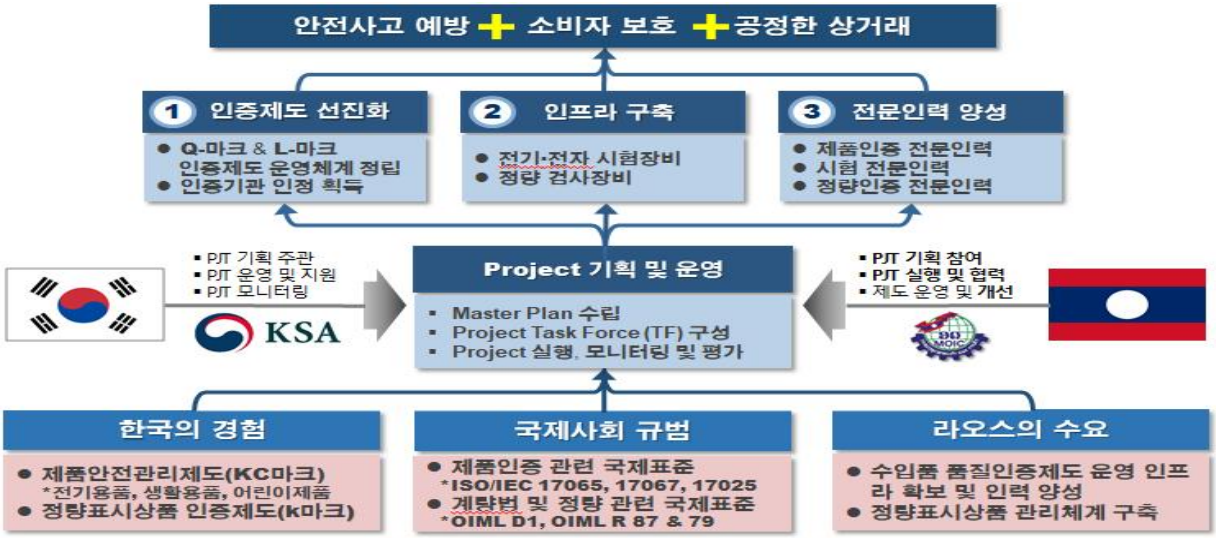
□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세부내역
2023년 1차년도 (3억 원)	•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 현지 니즈 분석/한국측 실무자 현지 착수조사 -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TC 활동 지원 • 시험 표준 제개정(안) 컨설팅 - 미세먼지 대응 제품 관련 국가표준 조사/국제표준 부합화 컨설팅 • 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 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기초 설계(전력, 수도 등) 지원 - 구축 시험 장비 선정 • 시험 기자재 입찰(설계/제작/설치업체 선정)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양성 교육 - 인니 표준청 및 시험기관 초청 교육 • 사후관리 계획 마련(사후관리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마련)
2024년 2차년도 (6.3억 원)	•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 시험소 운영 품질문서 검토 • 시험 장비 제작 및 검수 - 현지 시험 장비 설치, 검수 및 시범운영 • ISO/IEC 17025, 17065 기반 마련 - 인니 인정 스킴 검토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양성 교육 - 시험기관 초청 교육
2025년 3차년도 (4.8억 원)	•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24년 계속) • 시험 장비 제작 및 검수 - 공기청정기 시험 장비 설치, 검수 및 시범운영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 시험소 운영 SOP 수립 지원 • ISO/IEC 17025, 17065 기반 마련 - 시험기관 품질문서 제개정 지원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실무자 양성 교육 - 시험기관 실무 교육을 위한 현지 파견 교육
2026년 4차년도 (6.2억 원)	• 시험 장비 제작 및 검수 - 에어필터 시험 장비 설치, 검수 및 시범운영 • 시험소 운영 마스터플랜 도출 - 시험 SOP 수립 지원 • ISO/IEC 17025, 17065 기반 마련 - 시험기관 품질문서 제개정 지원('25년 계속) •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력 실무자 양성 교육 - 시험기관 실무 교육을 위한 현지 파견 교육

참고4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2023~2027년(총 5년)
- ㅇ (사업예산) 2,315백만원('25년 515백만원)
- ㅇ (수원국 관계기관) 산업통상부(MOIC) 표준계량국(DOSM)
- ㅇ (ODA 모델)



□ 세부 사업 목표

세부 목표	세부내역
국가표준 제개정 컨설팅	▪ 제품안전·계량 관련 법령 현황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시험소 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	▪ 제품안전제도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 ▪ 정량인증제도 및 교정기관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
한국형 시험 인프라 구축	▪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시험·검사 장비 현지 구축 ▪ 질량·부피·길이 측정·교정 장비 현지 구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현지) 구축장비 활용법 및 전문가 양성(인증심사원 정량관리자 등) ▪ (초청) 랩투어 및 실습(전자기기 시험 및 정량측정·교정방법 등)
제도홍보	▪ 제품안전제도 인식 제고 및 정량 인증 적용업체 확대 홍보

□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추 진 내 용
2023년 1차년도 (5억 원)	**<Q-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제품안전제도 운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초조사) 기존 시험·검사 분야, 보유 장비, 시험실 공간·인력 등 기초환경 조사 - (기초조사) 불량제품 유통으로 인한 사고·소비자 의견 수렴 현황조사 - (협의체) 한-라 프로젝트 Q-마크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 - (현지교육) 제품 인증기관(ISO/IEC 17065 기반) 기초교육 실시(31명) - (장비구축) 연차별 적용 품목(11개) 및 '24년 장비구축 목록 합의 **<L-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정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기초조사) DOSM 시험·검사·계량·교정실 환경 개선방안 도출 - (협의체) 한-라 프로젝트 L-마크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 - (현지교육) '23년 구축 장비 활용법 및 시험·교정기관(ISO/IEC 17025 기반) 기초교육 실시(32명) - (장비구축) 1차 질량·부피(75개) 및 길이(67개) 측정 장비 현지 구축 * *분석용 전자 저울, 표준분동, 환경관리용 온·습도계, 게이지블록, 전기마이크로미터 등*
2024년 2차년도 (7억 원)	**<Q-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4년 Q-마크 연간 추진 계획 수립 - (정책컨설팅) 제품안전제도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11건) * *시험기관 운영 메뉴얼(1건), 시험 절차서(7건), 품목별(냉장고, 헤어드라이기, 전선) 지침서(3건)* - (정책컨설팅) Q-마크 인증 관련 법령 현황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 (현지교육) '24년 구축 장비 활용법 및 시험방법 심화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전자기기 시험 실습 실시(5명) - (장비구축) 1차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시험·검사 장비* 현지 구축 * *테스트 핑거, 표면온도측정기, 디지털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열전대, 누설전류계 등* - (제도홍보) 구축 장비 기증식 및 기업간담회 개최 **<L-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4년 L-마크 연간 추진 계획수립 - (정책컨설팅) 정량인증제도 및 교정기관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14건) * *인증 업무규정(1건), 교정기관 운영 매뉴얼(1건), 교정업무 절차서(12건)* - (정책컨설팅) 계량법 현황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 (현지교육) '24년 구축 장비 활용법 및 측정·교정방법 심화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정량측정·교정방법 실습 실시(5명) - (장비구축) 2차 질량·부피·길이 측정·교정 장비* 현지 구축 * *표준체, 기압계, 무진동차량, 다이얼게이지 시험기, 단색광원장치, 줄자교정장치 등* - (제도홍보) 구축 장비 기증식 및 기업간담회 개최
2025년 3차년도 (5.15억 원)	**<Q-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5년 Q-마크 연간 추진 계획수립 - (정책컨설팅) 제품안전제도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3건) * *품목별(플러그 및 소켓 콘센트,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지침서(3건)* - (정책컨설팅) Q-마크 인증 관련 법령 현황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 (현지교육) '25년 구축 장비 활용법 및 시험자 양성 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전자기기 시험 실습 실시(5명) - (장비구축) 2차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시험·검사 장비 현지 구축 - (제도홍보) 제품안전제도 인식 제고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연차 (예산)	추 진 내 용
	<L-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5년 L-마크 연간 추진 계획수립 - (정책컨설팅) 정량인증제도 및 교정기관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16건) * *질량·부피·길이 검사기준(3건), 교정업무 절차서(9건), 측정 장비 교정 지침서(4건)* - (정책컨설팅) 계량법 현황 모니터링 및 개정 지원 - (정책컨설팅) 정량표시 시판품 조사 및 생산공장 시범 현장평가 실시 - (현지교육) '25년 구축 장비 활용법 및 적합성평가요원 양성 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정량측정·교정방법 실습 실시(5명) - (장비구축) 3차 질량·부피·길이 측정·교정 장비 현지 구축 - (교정기관인정) 질량·부피·길이·온도 분야 국제 공인 교정기관 인정 신청 준비 - (제도홍보) 정량 인증 적용업체 확대 홍보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2026년 4차년도 (3억 원)	**<Q-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6년 Q-마크 연간 추진 계획수립 - (정책컨설팅) 제품안전제도 경영시스템* 문서화(3건) * *품목별(선풍기, 전기물끓이개, 전기다리미) 지침서(3건)* - (현지교육) '26년 구축 장비 활용법 및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전자기기 시험 실습 실시(5명) - (장비구축) 3차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시험·검사 장비 현지 구축 - (시험소운영) 6개 품목에 대한 각 1건의 자체 시험성적서 발급(6건) - (제도홍보) 제품안전제도 인식 제고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L-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6년 L-마크 연간 추진 계획수립 - (정책컨설팅) 정량인증제도 및 교정기관 경영시스템* 문서화(10건) * *품목별(냉동 수산물, 피클류, 아이크림, 고점성 상품) 검사기준(4건), 측정 장비 교정 지침서(6건)* - (현지교육) 구축 장비 보수교육 및 산업체 정량관리자·시판품 검사자 양성 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정량측정·교정방법 실습 실시(5명) - (교정기관인정) 질량·부피·길이·온도 분야 국제 공인 교정기관 인정 신청 - (제도홍보) 정량 인증 적용업체 확대 홍보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2027년 5차년도 (3억 원)	**<Q-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7년 Q-마크 연간 추진 및 모니터링 계획수립 - (정책컨설팅) 제품안전제도 경영시스템* 문서화(2건) * *품목별(전기밥솥, 전기팬) 지침서(2건)* - (현지교육) 구축 장비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제도 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전자기기 시험 실습 실시(5명) - (시험소운영) 5개 품목에 대한 각 1건의 자체 시험성적서 발급(5건) - (제도홍보) 제품안전제도 인식 제고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L-마크 인증제도 인프라 구축>** - (계획수립) '27년 L-마크 연간 추진 및 모니터링 계획수립 - (현지교육) 구축 장비 보수교육 및 사후관리제도 교육 실시(10명) - (초청교육) 랩투어 및 정량측정·교정방법 실습 실시(5명) - (교정기관인정) 질량·부피·길이·온도 분야 국제 공인 교정기관 인정 획득(4건) - (제도홍보) 정량 인증 적용 업체 확대 홍보 및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참고5 르완다 섬유·가죽 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2024~2026년(총 3년)
- ㅇ (사업예산) 530백만원('25년 130백만원)
- ㅇ (수원국 관계기관) RSB(르완다표준원)
- ㅇ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추진내용(요약)
2024년 (2억 원)	- 협력기관의 시험·검사 역량 향상을 위한 3개년 협력계획 수립 협의 1회 - 협력기관시험실 현황(보유 장비, 인력 등) 파악 - 섬유·가죽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노하우 전수(현지교육 1회 10명) - 한-르 양국 간 기술공유회 개최(현지교육 1회 10명)
2025년 (1.3억 원)	- 섬유·가죽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험역량 강화 교육(현지교육 2회 10명) * 장비 활용 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비대면 지원) * 시험분석 기술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현지 방문 교육 지원) * 비교숙련도 평가 - 국제인증제도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인증제도 교육(섬유·가죽·환경 등)
2026년 (2억 원)	- 섬유·가죽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험역량 강화 교육 (현지교육 2회 10명/초청교육 1회 5명) * 장비 활용 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비대면 지원) * 시험분석 기술교육(영상교재 제작 및 현지 방문 교육 지원) * 비교숙련도 평가 - 한-르 공동세미나 개최(1회 10명)

- ㅇ ODA 모델



■ **상호 협력** 활성화로 **수원국의 참여도** 촉진

■ **수원국**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강력한 **협업 시스템** 구축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진행



참고6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인증 역량강화 지원

□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2024~2026년(총 3년)
- ㅇ (사업예산) 430백만원('25년 130백만원)
- ㅇ (수원국 관계기관) O'ZTTSA(우즈베키스탄 표준원)
- ㅇ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추진내용(요약)
2024년 (2억 원)	- 우즈베키스탄 현지 섬유제품 품질관리 법적 규제사항 및 표준, 인증제도, 시험구축 현황 파악 - 3개년 인력양성 추진계획 수립 -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시험실 직원 교육 (초청교육 1회 5명, 현지교육 1회 20명)
2025년 (1.3억 원)	- 정부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 KC 제도 및 글로벌 유해물질 규제 동향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섬유제품 이화학 시험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시험실 직원 교육 (현지교육 1회 20명)
2026년 (1억 원)	- 완제품 검사(Inspection)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기관 직원 교육 (초청교육 1회 5명, 현지교육 1회 10명)

- ㅇ ODA 모델



참고7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2026년(총 3년)

○ (사업예산) 520백만원('25년 170백만원)

○ (수원국 관계기관) MOT(인도네시아 무역부)

○ (연차별 추진내용)

연차 (예산)	추진내용(요약)
2024년 (1.5억 원)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장비구성 기본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정책 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2025년 (1.7억 원)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시험소 구축방안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2026년 (2억 원)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성과 공유회 개최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 ODA 모델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수행기관	수원기관(인니 무역부)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사업관리	• 정부 및 수원기관 업무협의 •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초청/현지연수 진행 및 사업수행	•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해당 분야 현황 제공 • 초청/현지연수 계획 공동 기획

주요 사업 내용	• 전기차 충전기 정확도 관리를 위한 법령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 기술 역량강화 교육 • 전기차 충전기 분야 이해관계자 현지교육
주요 산출물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정책 관리인력 5명 확보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 실무인력 10명 확보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인프라 개선방안 보고서 • 산업계 이해관계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 산업계 이해관계자 교육 수료인원 45명

후속 조치 사항	수원기관(인니 무역부)	사업수행기관
	• 연수과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 연수사업 성과 활용계획 제시 • 후속사업 추진협의	• 수원기관 피드백에 대한 후속조치 • 국내기업 지원방안 검토 • 후속사업 기획 및 추진

기대 효과	인도네시아	사업수행기관
	• 전기차 충전기 시험소 구축·운영을 위한 인적 역량 마련 •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인적 역량 마련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 마련	•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플랫폼 사업자의 현지 진출 기회 확대 •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법정계량 분야 우호국 확보

참고1 관련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참고2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ODA) 추진실적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예산	890	900	900	890	1,115	1,200	1,275	1,020	1,559	1,453	2,143	2,036	2,890

□ 지원국가 : 4대륙 16개국

* 중남미(5개국), 아시아(7개국), 중앙아시아(2개국), 아프리카(2개국)

□ 법령개정,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초청연수 등 주요실적

○ 법령제정 및 개정 : 5건(라오스, 베트남)

국가 *지원기관	완료 시기	주요 내용	실적(OUTCOME)
베트남 *STAMEQ	2014 (KASTO /KSA)	-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제정 완료** * V-마크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 품목 선정 및 표시요건 규정 제정	과기부 고시 제정(CIRCULAR 21, No. 21/2014/TT-BKHCN) - 포장상품 양 관리 규칙 - 우리나라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및 OIML 참고하여 제정 완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MOIT)	2019 (KTR)	- LED 조명 품목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기술규정) 개정 지원	베트남 기술규정 개정 (QCVN 19:2019/BKHCN) - LED 제품 Safety, EMC, RoHS 분야에 대한 규정 - 한국의 규격 개선 시스템 및 절차 소개·건의를 통해 개정 지원
베트남 *VSQI	2024 (KCL)	- 국가표준 제·개정 지원 : KS C IEC 61730, IEC 61710 기반 - 시험인증제도 수립 지원 : KS C 8561 인증심사기준서(공장 인증체계, 품질표시 기준 등) 개발 컨설팅 등	- 베트남 국가표준 제정 1건, 개정 1건 예정
라오스 *DOSM	2020 (KSA)	- 전기용품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존 **근거 규정 개정 완료**	장관 결정문 개정(no. 1573) - 전기전자제품안전관리 과기부 장관 결정문(Decision) - 우리나라 KC 인증제도 참고하여 개정 완료
		-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존 **근거규정 개정 완료**	장관결정문 개정(no. 1572) - 포장상품관리 과기부 장관 결정문(Decision) - 우리나라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참고하여 개정완료

ㅇ 국내기업 지원 : 3개국 대상 기업 지원(브라질, 페루, 베트남)

구분			실적	주요 내용
국내 기업 지원	브라질	애로사항 접수	1건	- 한-브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브라질 기술규제 동향 수집 중, 기술규제강화 동향 파악 * 모든 수입 전기전자제품에 EMC에 대한 INMETRO 인증 획득 규정 발표
		EMC 시험 상호인정 추진		- 한-브 EMC 규제 공동 연구 :규제부합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토의 :한국의 EMC규격 소개 및 브라질 전자파규제 일반요구사항(RGEMC) 도입 제안 :선대응 품목 설정: LED 조명등 - 브라질 LED 규정, KOLAS 지정 추진
		애로해소		EMC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한 LED 인증획득(3건)
	페루	애로사항 접수	1건	-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시행계획 발표 *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에어컨, 보일러, 조명등 등 대상 강제규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파악 한계
		적합성평가 기관 지정 추진		- 페루 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한 현지 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한 기술규제 상황 * ISCP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주 수출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을 추가로 인정했음을 확인('20.) - 기존 협력 채널(NYCE Colombia, 인증기관)을 통해 국내 시험 성적서 활용 및 페루 인증서 획득 방안 마련 * KTR-NYCE Colombia :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협력
		애로해소		- KTR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현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발급 추진
	베트남	애로사항 접수	2건	- (QCVN 19) 베트남 MOIT에서 규제 시행 발표가 지연되면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 (LED 에너지효율) 202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LED 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정보 부족
		LED 제품 수출·인증 세미나		- 베트남 LED 조명 및 제품 시장 동향 및 신규 규제* 소개 * QCVN 19 : Safety 및 EMC 규제 (과학기술부, 인증서 필요) CIRCULARS 30/2011/BCT : RoHS 규제 (산업통상부, 성적서 필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규제 (산업통상부, DoC letter 필요)
		애로해소		- (QCVN 19) 업체 대상 세미나를 통해, 1)규제 발표 시점, 시행 시점, 대상품목, 유예기간 등의 세부 정보 안내 2)각 기업이 본인 제품의 특이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기회 제공 - (LED 에너지효율) LED제품을 수출시 필요한 강제인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어 원활한 인증 획득 및 수출 지원 가능
	베트남	애로사항 접수	5건	- 베트남 현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통한 기업 애로 상시 접수 및 해소 지원
		애로해소		-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선적전 검사 업무 등 사무소 시험.인증 업무 범위 확대 추진 :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신규 시험인증 협력 사업, 목재펠릿 공동시험소 운영추진 등 신규사업 협력 중

□ 대륙별 주요 실적(요약)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중남미 (5개국)	페루 (전기 등)	2013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KTL
		2014	안전관리대상 6개 전기용품군* 안전기준 개발 * 전선 및 코드류, 전기기기류 등	
		2019	표준화 이해를 위한 현지 세미나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5명	KSA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을 위한 현지 교육 ※ 현지 인증기관 담당자 등 1회 30명	KTR
			적합성평가 및 표준화 역량강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2020	한-페루 현지 시험인증기관(Lenor Peru) 협력 * (MOU) Certific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LENOR PERU S.A.C. and KTR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브라질 (전기 등)	2014	한-브 기술협력센터 개소(~2020) * (MOU) Agreement between KTR and NCC Certification Brazil on TESTING and CERTIFICATIONS (의료기기 등 안전 관련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KTR
	파라과이 (전기)	2015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50명	KTC
		2016	파라과이 전기용품 기초시험설비(테스트베드) 구축 * 에어컨, 냉장고, 전기샤워, 전기온수탱크, 세탁기, 다리미, 전기포트 등 7개 전기용품 품목에 대한 14개 설비로 구성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23명	
		2017	전기설비 시험업무를 위한 시험절차서 마련 * 시험절차서(Test Method) 개발하고, 시험성적서 초안 1건을 시범 발행하여 테스트베드 정상운용 지원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요령 마련	
	콜롬비아 (전기)	2018	한-콜롬비아 공동시험소 구축 * (MOU) Agreement between NYCE Colombia and KTR (냉장고, 세탁기 등 안전 및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 표준협력 공무원 및 인증기관 초청교육 1회 4명	KTR
	에콰도르 (전기)	2020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에 대한 표준체계 보급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MOU) Certification service agreement between LENOR ECUADOR and KTR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효율 관련 국내시험성적서 인정)	KTR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아시아 (7개국)	인도네시아 (선박)	2020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KOMSA
	인도네시아 (계량)	2021	인도네시아 계량제도 조사 및 정책 제언(컨설팅) 비대면 동영상 제작 계량공무원 법정계량분야 실시간 비대면 세미나 ※ 표준협력 실시간 비대면 교육 1회 공무원 78명	KTC
		2022	법정계량 시험소 선진화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5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30명	
		2023	인도네시아 법정계량 역량강화 ※ 실무자 초청교육 1회 5명 ※ 현지 전문가 파견교육 1회 45명 ※ 세미나 개최 1건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2023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 관리자급 국내 초청교육 1건 9명	KCL
		2024	미세먼지 대응 제품 공인시험소 기반 구축 ※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1회 80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 교육 1회 8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교육 1회 5명	
	인도네시아 (전기차)	2024	전기차 충전기 시험소 구축 방안 마스터플랜 마련 ※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1회 40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 교육 1회 8명 ※ 현지기업 및 유관기관 교육 1회 58명	KTC
	베트남 (계량, 태양광, 섬유, 건설)	2012	한-베 국장급 협의회 및 액션플랜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2회 13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20명	KSA KASTO
		2013	계량법 및 하위법령 개선방안 마련 * 계량법 구성분석을 통한 하위법령체계 수립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8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13명	
		2014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부 고시 제정 완료*** * V마크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품목 선정 및 표시요건 규정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8명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교육 및 세미나 3회 45명	
		2017	주유기 조작방지 기술 및 표준 전무 ※ 표준협력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현지 세미나 2회 20명	KTC
		2018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적용품목 및 기준 단위 확대를 위한 STAMEQ* 고시 개정(안) 마련 * 과기부 산하, 베트남 국가표준화기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3회 12명	KSA
		2018	식생매트 단체표준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7명	KCL
		2019	식생매트 단체표준 제정안 마련 및 제도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27명	
		2019	LED 제품 신규 규제 대응방안 마련 ※ Quacert 공무원 등 현지교육 2회 32명 ※ 표준협력 공무원등 초청연수 1회 4명	KTR
		2019	섬유분야 시험·인증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등 초청연수 2회 6명	KATRI
		2020	베트남 태양광 시험인증제도 구축 타당성조사 완료	KCL
		2022	베트남 태양광 시험인증제도 전수 및 베트남 국가표준 개발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3명	
		2022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비산배출 관련 표준체계 및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지원 타당성조사	KSA
		2023	베트남 태양광 신제품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교육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관리자2명 / 실무자3명 ※ 현지 전문가 파견교육 2회 ※ 세미나 개최 1회	KCL
		2024	한-베 기술위원회 개최 및 TCVN 표준 제/개정 추진 ※ 베트남 현지 세미나 개최 1회 45명 ※ 관리자/실무자 초청 교육 2회 6명 / 6명	KCL
	몽골 (건설)	2012	몽골 국가표준원 역량강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9명	KCL
		2013	몽골 적합성체계 분석 및 타당성조사 실시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5명	
		2014	건설표준 제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3회 13명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건설분야 국가표준(MNS) 10종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4명	
		2015	몽골 시험인증서비스 산업진출 타당성조사 실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2회 10명	
		2016	몽골 신재생에너지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13명	
	캄보디아 (계량, 섬유)	2015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도출 *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7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40명	KTC
		2016	섬유분야 품질표시 심층협력과제 도출 ※ 표준협력 시험기관 초청연수 1회 3명	KATRI
		2017	검정업무 운영요령 및 기술기준 초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65명	KTC
		2018	계량기 기술기준 개선방안* 제안 * 우리나라 및 국제 기준과의 비교·분석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5명	
		2018	주유기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안) 제안	
		2018	주유기 조작방지를 위한 주유기 및 관제시스템 현지시험실 설치	
		2019	LPG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제안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6명	
		2018	섬유제품 품질관리 표시 기술규정 제정(안) 마련	KATRI
		2019	섬유제품 품질관리제도 선진화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2019	농기계 계량측정제도 선진화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교육 1회 4명	KTL
	라오스 (계량)	2015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현황 조사 및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0명	KTC
		2017	한-라 표준체계 정보공유 현지 세미나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2명	KSA
		2018	법정계량 및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도출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 법정계량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영문) * 제품안전제도 개선방안 제언보고서(영문)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2019	제품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법령 개정(안)개발**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근거 법령 개정(안)개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6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2명	
		2020	제품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과기부 장관결정문 개정 완료** * 고시명 : 전기전자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부 장관결정문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과기부 장관결정문 개정 완료** * 고시명 : 포장상품관리에 관한 과학기술문 장관결정문	
		2023	시험 검사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 ※ 현지 전문가 파견 교육 2회	
		2024	Q마크 / L마크 시험장비 구축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11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2회 ※ 구축 장비 기증식 및 기업간담회 1회 32명	
	미얀마 (섬유, 건설)	2015	섬유분야 시험검사제도 선진화 사업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세미나 1회 20명	KATRI
		2016	시험·검사제도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0명	
			시험검사 절차 및 검사원 역량강화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교육 2회 22명	
			섬유제품 품질검사 기술규정(안) 마련 * Quality Inspection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세미나 1회 90명	
		2017	섬유제품 품질표시 기술규정(안) 마련 * Quality labelling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세미나 2회 105명	
			섬유분야 표준 제정을 위한 WG 구성 완료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2018	섬유분야 기술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2회 11명	
		2019	섬유제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11명	
		2020	섬유.의류 분야 국가표준 우선 제정 목록 마련 및 제안	
			섬유제품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제안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발방안* 제안 * 적용품목:어린이용품, 대상연령, 안전요건 등 * 섬유공동시험소 법인설립 완료 ('20. 12. 31)	
		2021	섬유제품 국가표준개발 지원 및 섬유제품 표시기준(안전기준) 개발 지원 - 표준설명서 제작 * 총 9개 카테고리, 62건 ISO표준 - 비대면 교육 동영상 4건 * 1) 한국 섬유제품(유아동 및 성인) 표시방법, 2) 섬유제품(유아동 및 성인) 유해물질 중요성 및 안전기준, 3)섬유제품 검사 개론, 4) 섬유제품 검사 실무	
		2017	기초 건설재료 시험인증체계 선진화 로드맵 수립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KCL
		2018	건설분야 국가표준안 47종 제정안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8명	
		2019	레미콘 공장심사 매뉴얼 마련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3명	
	방글라데시	2016	향후 협력방안 도출 현지 워크숍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 워크숍 1회 7명	KTC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연수 1회 4명	KSA
중앙아시아(2개국)	키르기스스탄(섬유)	2015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5명	KATRI
		2016	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성과확산 현지 세미나 25명	
		2017	섬유분야 시험·검사 및 제품안전제도 선진화 마스터플랜 ※ 정부관계자 및 산업체 대상 현지 세미나 1회 43명 제품안전 운용요령(안) 전달 등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 표준협력 공무원 등 초청연수 1회 8명	
		2018	경공업제품 시험법 및 제품안전제도(리콜) 실무 세미나 안전성조사매뉴얼(안) 마련	
		2019	국제표준화 활동 및 유해물질 시험법 교육 세미나 ※ 표준협력 성과확산 현지 세미나 10명	
		2020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작성 및 전달 * 의류인증 및 기업현황 조사, 현지 유통 제품의 유해물질 시험 기술규정에 따른 제품적합성평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규정 관련 시험법 교육 (혼용률 정성, 정량분석)	
		2021	정책홍보 지원 * 제품안전제도 홍보물(브로슈어, 동영상) 제작 시장감시 시뮬레이션 멘토링 지원 * 보건부 시장감시 실무자 주도 안전성조사 샘플 수거, 유해물질 시험 지원(원격)	
		2022	정책홍보 지원 * 제품안전제도 홍보물(브로슈어, 동영상) 배포 시장감시 시뮬레이션 멘토링 지원 * 보건부 시장감시 실무자 주도 안전성조사 샘플 수거, 유해물질 시험 지원(원격) ※ 표준협력 공무원 비대면 교육 5명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2020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KCL
		2022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 국제공인시험소 마스터플랜 수립	
		2023	한-우즈벡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실무자 초청 교육 1회 5명(2주) ※ 관리자 초청 교육 1회 5명(1주)	
		2024	한국형 시험 인프라/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 ※ 에너지효율등급 전문가 워크샵 1회 ※ 관리자/ 실무자 초청교육 각 1회 5명 / 5명	
	우즈베키스탄 (섬유)	2024	섬유제품 품질관리체계 기반 조성 지원 ※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1회 39명 ※ 관리자 / 실무자 초청 교육 각 1회 22명 / 20명 ※ 관리자 / 실무자 현지 교육 각 1회 5명 / 5명	KATRI

<table>
<tr><th>대륙</th><th>국가</th><th>년도</th><th>주요 내용</th><th>수행
기관</th></tr>
<tr><td rowspan="8">아프리카</td><td rowspan="5">ARSO</td><td>2012</td><td>한-ARSO 표준협력 활동
※ EMC 현지 기술 세미나 1회 47명
※ ARSO 회원국 초청교육 1회 12명</td><td rowspan="4">KSA</td></tr>
<tr><td>2013</td><td>아프리카 지역표준 97종 제.개정(안) 마련
<table><tr><th>분야</th><th>작업대상</th><th>폐지</th><th>개정</th><th>재검토</th><th>기타</th></tr><tr><td>기본.일반</td><td>64</td><td>13</td><td>43</td><td>4</td><td>-</td></tr><tr><td>건설</td><td>48</td><td>6</td><td>13</td><td>12</td><td>17종
불필요</td></tr><tr><td>기계</td><td>26</td><td></td><td>23</td><td>3</td><td>-</td></tr><tr><td>화학</td><td>22</td><td>-</td><td>18</td><td>-</td><td>3종 제외</td></tr><tr><td>전기전자</td><td>0</td><td></td><td></td><td></td><td></td></tr><tr><td>환경</td><td>0</td><td></td><td></td><td></td><td></td></tr><tr><td>에너지</td><td>0</td><td></td><td></td><td></td><td></td></tr></table>* KATS-ARSO Action Plan 갱신(2017)
※ 표준교육 현지 워크숍 1회 40명</td></tr>
<tr><td>2016</td><td>※ ARSO 회원국 초청교육 1회 6명</td></tr>
<tr><td rowspan="2">2017</td><td>※ ARSO 회원국 초청교육 1회 6명</td><td rowspan="2">KSA</td></tr>
<tr><td>※ 아프리카 4개국 현지 워크숍 1회 7명</td></tr>
<tr><td>우간다</td><td>2018</td><td>표준인증협력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td><td>KSA</td></tr>
<tr><td rowspan="5">에티오피아
(섬유)</td><td>2018</td><td>섬유 가죽 품질관련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9명</td><td rowspan="5">FITI</td></tr>
<tr><td>2019</td><td>ECAE, 수출시험 필수시험항목 제안
* 필수 시험항목 교재 매뉴얼 개발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5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6명</td></tr>
<tr><td>2020</td><td>섬유 등 제품안전제도 도입방안 제안
* 제품안전제도 설명자료(범용 인포그래픽) 제작</td></tr>
<tr><td>2021</td><td>국제공인 시험기관 자격 확대 지원
* 국제 공인인증 획득계획 수립(인정분야 선정 등)
※ 표준협력 공무원 실시간 비대면 세미나 1회 2명</td></tr>
<tr><td>2022</td><td>제품안전관리제도의 이해 및 제도개선방안 컨설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4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3명</td></tr>
</table>

대륙	국가	년도	주요 내용	수행 기관
		2023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 지원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7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5명	
	르완다	2024	섬유·가죽 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 한-르 공동세미나 개최 1회 30명 ※ 표준협력 공무원 초청교육 1회 2명 ※ 표준협력 공무원 현지교육 1회 6명	FITI

사 업 명
(4)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37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7
명칭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한국인인체데이터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오재철	조하니(연구사)	김정훈
		바이오화학 서비스표준과	043-870-5390	043-870-5391	043-870-5401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한국인인체데이터 조사및활용기반구축	1,720	1,725	1,849	1,849	125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25	1,725	1,720	-	-	1,725	1,725	1,685.77	1,725	1,685.77	-	39.23	1,849
· 인체치수측정사업	865	865	860	-	5	865	865	838.82	865	838.82	-	26.18	1,119
· 인체정보보급사업	360	360	360	-	-	360	360	353	360	353	-	7	310
· 휴먼빅데이터구축	500	500	500	-	-	500	500	493.95	500	493.95	-	6.05	420
○ 비목별 분류(합계)	1,725	1,725	1,720	-	-	1,725	1,725	1685.77	1,725	1685.77	-	39.23	1,849
· 시험연구비(210-13)	46.96	46.96	46.96	-	-	47.13	47.13	47.13	47.13	47.13	-	-	47.13
· 업무추진비(240-01)	2.04	2.04	2.04	-	-	1.87	1.87	1.87	1.87	1.87	-	-	1.87
· 일반연구비(260-01)	1296	1296	1291	-	5	1296	1296	1263.92	1296	1263.92	-	32.08	1,470
· 민간위탁사업(320-02)	360	360	360	-	-	360	360	353	360	353	-	7	31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20	20	19.85	20	19.85	-	0.15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25	1,725	1,720	-	-	1,725	1,725	1685.77	1,725	1685.77	-	39.23	1,849
· 인체치수측정사업	865	865	860	-	-	865	865	838.82	865	838.82	-	26.18	1,119
-시험연구비(210-13)	46.96	46.96	46.96	-	-	47.13	47.13	47.13	47.13	47.13	-	-	47.13
-업무추진비(240-01)	2.04	2.04	2.04	-	-	1.87	1.87	1.87	1.87	1.87	-	-	1.87
-일반연구비(260-01)	816	816	811	-	5	816	816	789.82	816	789.82	-	26.18	1,070
· 인체정보보급사업	360	360	360	-	-	360	360	353	360	353	-	7	310
-민간위탁사업(320-02)	360	360	360	-	-	360	360	353	360	353	-	7	310
· 휴먼빅데이터구축	500	500	500	-	-	500	500	493.95	500	493.95	-	6.05	420
-일반연구비(260-01)	480	480	480	-	-	480	480	474.1	480	474.1	-	5.9	400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	20	20	19.85	20	19.85	-	0.15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인인체데이터조사및활용기반구축) 한국인의 인체치수, 인체형상 등 종합적인 인체정보를 조사하여 관련 산·학·연에 보급함으로써,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79년 이래 약 5년 주기의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 확보로 우리 국민의 신체변화에 따른 제품·공간설계 등에 기여
- (인체치수측정) 국가통계작성과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을 위해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 위한 DB 구축
- (인체정보보급) 산·학·연의 서비스·제품 개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즈코리아센터를 통한 기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교육,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온·오프라인 데이터 보급·활용 활동 추진
- (휴먼빅데이터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의 인체정보 활용도 및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인체정보 통합체계(휴먼빅데이터)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참조표준"이라 함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등을 말한다.

-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표준 참고자료를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기관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 및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ㅇ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5호)

- 제6조(사업의 주체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구축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 · 보급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ㅇ 통계법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법 제9조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9년부터 : 의류치수 규격 마련을 위해서 '79년 처음으로 국민체위조사를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 사업 수행
- '00년 이후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조사 필요성 제기 및 3차원 인체형상, 동적치수 정보 등 다양한 인체치수 정보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및 DB 구축
- '05~'09년 : ①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 확대를 위한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sizekorea.go.kr) 및 인체표준정보실 개설 ② 통계청으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③ 장애인 인체치수 등 다양한 분야로 측정사업 확대
- '10~'14년 :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을 통해 유아부터 노인의 계층별 3D 인체형상 측정과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19년 :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 및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동적범위를 측정하여 보급하였고, 인체치수 정보의 산업계 보급 확대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14종)을 개발·보급
  * 안경, 스마트글라스, 머리범용, 학생용책걸상, 장애인 보조기기, 몸통범용, 안마의자, 기능성베개, 손범용, 욕실공간, 퍼스널모빌리티, 다리범용, 핸디형청소기, 캠핑용품
- '20년~'21년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제1차 조사('20.6월~'21.2월)를 20세~44세 남녀 3,29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45세~69세 남녀 3,381명에 대한 제2차 조사('21.5월~'21.12월)를 진행하여 만20세~69세 한국인 6,680명의 인체치수 데이터 확보
- '22년 : 70~8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014명(남441명, 여573명) 및 3D측정 429명(남192명, 여237명)의 고정밀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공식 발표, 성과전시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력 MoU(육군본부, 대한인간공학회 등 5개 단체) 등을 추진
- '23년 : 7~19세 아동 및 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3D 측정을 통한 311개 항목의 고정밀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 결과 발표 및 시니어산업 유관기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과 고령자 인체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4년 : 20~60세 이상 휠체어사용 척수손상 장애인 338명을 대상으로 29개 항목 직접측정을 통한 인체데이터를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인체치수조사 결과 발표 및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대비 사업 고도화 추진(데이터 통계처리 및 현장관리 매뉴얼 제작, 동적측정 시범운영, 인체치수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832	1,832	1,725	1,725	1,8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기업, 연구소, 학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체치수측정** : ('24) 865 → ('25) 1,119백만원, +29.3%

- 승인통계로 5년 주기 정기통계 조사사업인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차 년도 사업 추진(총 2년), 승인통계로서 통계적 유의성 및 정확도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표본 규모 확보를 위해 조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증액

* 정기조사는 인체측정에 대한 국제기준 ISO 15535에 따라 상대적 신뢰도 1.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약 7,000명 규모로 측정

** 관련예산 추이 : **('20년, 8차) 1,234** → **('21년, 8차) 1,047** → ('22년) 872 → ('23년) 865 → ('24년) 865 → **('25년, 9차) 1,119 백만원**

- **(산출1)**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연구용역 1,070백만원
  (세부산출) [측정인건비] 528백만원 (22명×8개월×3백만원),
  [측정경비] 262백만원 (장비시설 이용·유지·관리 186, 교육·재료비 76 등),
  [피측정자사례비]* 280백만원 (3,500명×8만원)
  * 측정규모확대: ('24년) 1,000명 → ('25) 3,500명

- **(산출2)**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
  (세부산출) [시험연구비] 47백만원 (수용비 20, 임차·시설유지비 28 등),
  [사업추진비] 2백만원 (회의비 2)

② **인체정보보급** : ('24) 360 → ('25) 310백만원, △13.8%

- 한국인 인체정보를 사이즈코리아센터 및 사이즈코리아 포털 등을 통해 보급하여 산업계 지원. 최신 인체정보 데이터 수요 대응

☞ '25년 '인체치수측정' 내역사업을 통한 5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역사업간 구조조정으로 감액

- **(산출)**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 민간위탁 310백만원
  (세부산출) [운영인건비] 189백만원 (7명×9개월×3백만원),
  [운영경비] 121백만원 (전산 운영·유지관리비 76, 컨설팅·회의비 45 등)

③ **휴먼빅데이터구축** : ('24) 500 → ('25) 420백만원, △16.0%

- 신규 데이터 활용 사업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인체치수조사 외 국내외 데이터 수집을 통한 산업계 지원체계 구축
  * 공공(육군, 공군) 및 민간(패션, 의료기기, 인간공학) 분야 협력기관과 인체정보 공유·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MoU 이행 및 인체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 '25년 '인체치수측정' 내역사업을 통한 5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역사업간 구조조정으로 감액

- **(산출1)**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용역 400백만원
  (세부산출) [개발인건비] 240백만원 (10명×8개월×3백만원),
  [개발경비] 160백만원 (시제품 및 서비스개발 90, 재료비·회의비 등 70)

- **(산출2)** 측정장비구입 자산취득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 **지원 필요성**

○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 경쟁 심화 중이며 인체데이터가 활용되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가 부상 중
  * 인체데이터는 헬스케어, 패션, 로봇, 콘텐츠 산업 등에서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등으로 적용 분야 확장되며 그 활용도가 증가
  - 산업 분야의 인체데이터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 新BM 창출 등 정부의 간접 지원 긴요
  - 우리가 강점을 가진 인체데이터 분야의 측정·활용·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조성으로 신산업 육성 지원 필요

['24년 대비 달라지는 '25년 사업내용]

구 분	'24예산	'25예산
□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1,725 백만원	1,849백만원
①인체치수측정	장애인 등 특수계층 대상 인체치수조사	5년 주기 승인통계인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추진을 위한 측정 규모 확대 * 연간 기존 1,000여 명 → 3,500여 명
②인체정보보급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 (인체정보 산업계 보급·지원)	전년동
③휴먼빅데이터구축	인체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년동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25	○ **인체치수측정 : 865백만원** **가. 인체치수측정사업 81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816백만원** ・[측정 인건비] 480백만원 (20명×8개월×3백만원) ・[측정경비] 256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214, 교육·재료비 등 42) ・[피측정자사례비] 80백만원 (1000명×8만원) **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47백만원** ・수용비 10백만원 (조달수수료등 납부 4건x2.5백만원) ・피복비 14 (1000매x1.4만원) ・임차·시설유지 23 (회의실 임차 3, 시설장비유지비 20) **-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 ・회의비 2백만원 (0.4백만원x5회) ○ **인체정보보급 : 360백만원** **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지원 36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60백만원** ・[운영인력 등 인건비] 160백만원(5명×8개월×4백만원) ・[운영경비] 200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114, 컨설팅·회의비 등 86) ○ **휴먼빅데이터구축 : 500백만원** **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8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80백만원** ・[개발 인건비] 308백만원(11명×7개월×4백만원) ・[개발경비] 172백만원(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110, 재료비·회의비 등 62) **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1,849	○ **인체치수측정 : 1,119백만원** **가. 인체치수측정사업 1,07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70백만원** ・[측정 인건비] 528백만원 (22명×8개월×3백만원) ・[측정경비] 262백만원 (측정장비이용·유지·관리 166, 교육·재료비 등 96) ・[피측정자사례비] 280백만원 (3500명×8만원) **나. 인체치수조사 부대경비 49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47백만원** ・수용비 20백만원 (수수료 납부 10, 소모품·재료 구입 10) ・임차·시설유지 28 (회의실 임차 8, 시설장비유지비 20) **- 사업추진비(240-01) : 2백만원** ・회의비 2백만원 (0.4백만원x5회) ○ **인체정보보급 : 310백만원** **가.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지원 31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10백만원** ・[운영인력 등 인건비] 189백만원(7명×9개월×3백만원) ・[운영경비] 121백만원(센터운영·유지관리비 76, 컨설팅·회의비 등 45) ○ **휴먼빅데이터구축 : 420백만원** **가. 휴먼빅데이터구축 연구 4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백만원** ・[개발 인건비] 240백만원(10명×8개월×3백만원) ・[개발경비] 160백만원(시제품 및 서비스모듈개발 90, 재료비·회의비 등 70) **나. 측정장비구입 2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0백만원** ・장비구입 20백만원 (20백만원 x 1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인인체정보 보급 건수 (단위: 건)	목표	8,600	8,600	10,000	10,000	10,000	과거실적 및 증가추세 감안	Σ(보고서 다운로드수+ 인체정보 가공요청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통계 및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실적	6,728	12,559	13,062	10,202	-			
	달성도	78.2%	148%	130%	10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19년 개발한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 * 2021년(2차년도, 45~69세) 3,381명 남자1,539명+여자1,842명 · 인체치수 측정항목 표준안 기반 데이터 저장 체계 설계 및 구축 * 동작, 자세, 치수, 부위, 기준점/축/면, 측정방법 등 6개 분류형태에 따라 도출된 측정항목(310개)과 코드(537개)에 따른 인체치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즈코리아와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통합 모델 구축을 위한 사이트 안정화 및 개선모델 개발
2022	· 70~8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014명(남441명, 여573명) 및 3D측정 429명(남192명, 여237명)의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 고령친화 산업제품 생산 및 의료기기, 고령자 생활공간 설계 자료로 제공 ·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공식 발표, 협력 MoU 등을 추진 * KBS, YTN / 조선·중앙·동아, 전자, 한겨레, 헤럴드경제 등 많은 방송, 신문 매체가 8차 조사결과 및 보급사례 중심으로 보도(78건) · 인체데이터 생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가상공간을 통해 가상착의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커머스 모델 제안, 설계
2023	·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을 대상으로 311항목의 3D 측정을 통한 고정밀 인체데이터 확보 * 아동·청소년용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고령자 대상 인체치수조사 사업결과 발표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MoU 등을 추진 * SBS, MBN / 조선·중앙·동아, 전자, 한겨레, 헤럴드경제 등 많은 방송, 신문 매체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57건) · 헬스케어분야 인체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 3D형상 데이터를 활용한 자세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맞춤형 근골격계 건강상태 점검 모델
2024	· 척수손상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조사 사업 추진 ·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에 대비하여 신규 '동적 측정 프로토콜' 시범 운영(200명 규모) · 인체데이터의 건강진단·헬스케어 분야 적용 사업모델 개발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u>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u>**

- '25년~'26년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추진으로 최신화된 고정밀 한국인 인체데이터베이스 구축 (목표 7,000명)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보급하고 해당 결과를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KS표준 제·개정에 이용, 기업의 제품설계 등에 활용

-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정보 및 3차원 인체형상정보, 동적측정정보 등 종합적인 인체표준정보 DB 구축 및 주기적인 인체정보 업데이트 정보 제공

-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매년 한국인인체관련 정보 보급 추진을 통하여 산업계가 인체 친화적 제품 생산 및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기업 대상 인체치수 활용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으로 의류, 가구,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유통산업 등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체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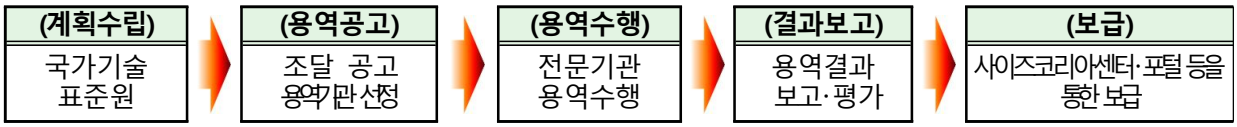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통) 사업 절차도

1단계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개최
↓	
2단계	수요조사 실시
↓	
3단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4단계	측정 사업, 보급 사업, 휴먼 빅데이터 사업 추진
↓	
5단계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등의 사업 점검
↓	
6단계	사업결과 검토
↓	
7단계	측정결과 통계분석 및 DB구축 작업 실시
↓	
8단계	측정결과 발표 및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공통) 사업 흐름도



- (내역사업1) 인체치수측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통상자원부 (1,119백만원)	=> (1,070백만원)	용역공고 (1,070백만원)	=> (1,070백만원)	용역선정기관
	=> (49백만원)	시험연구비 등 부처 직접지출 (49백만원)	=> (49백만원)	부처 직접지출

- (내역사업2) 인체정보보급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통상자원부 (310백만원)	=> (310백만원)	용역공고 (310백만원)	=> (310백만원)	용역선정기관

- (내역사업3) 휴먼빅데이터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통상자원부 (420백만원)	=> (400백만원)	용역공고 (400백만원)	=> (400백만원)	용역선정기관
	=> (20백만원)	자산취득비 부처 직접지출 (20백만원)	=> (20백만원)	부처 직접지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725	1,725	1,849	2,608	2,478	
'24~'28		1,725	1,849	3,208	2,978	2,97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이즈코리아센터 상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산중위, 22결산)

- 사이즈코리아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기업·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등 인체데이터의 민간 대상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연초 사업계획 확정 후 조달공고 및 계약절차에 약 3개월이 소요, 센터의 실제 운영은 약 9개월가량 진행되었음. 공백기가 없도록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인체치수측정 사업 표본설계 개선 및 사이즈코리아센터 지속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산중위, 23결산)

- '23년 인체치수측정사업은 서울·경기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대상 지역이 전국이 아닌 수도권에 한정됨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서울·경기·강원, 경상권, 전라권 등 3개 권역의 전국 단위 표본으로 조사한 성인 대상 측정과 일관성 유지 필요

- 매년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사이즈코리아센터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이 저하. 기업 맞춤형 컨설팅, 데이터 분석·가공 등의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기 위하여 다년도 계약 추진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이즈코리아센터는 '24년 연차계획 수립과 사업공고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을 2월로 앞당겨 운영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다년도 계약 등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사이즈코리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었던 아동·청소년 조사는 향후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전국으로 확장하여 시행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인체치수측정

- ㅇ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한국인 최신 인체치수 및 산업계 인체형상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제공 기반 구축
- ㅇ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대한 측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사업 성장 도모
- ㅇ 국가표준 및 산업규격의 설정을 위한 과학적 자료의 제공
- ㅇ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EU 등의 인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 강화
- ㅇ 2025년 5년 주기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을 대비하여 최신 측정 프로토콜 마련 및 제8차 조사 사업의 보완조사(19세 미만 미성년, 70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및 특수계층 등) 수행으로 최신 인체정보를 산·학·연에 보급

  * 2010(6차 조사) → 2015(7차 조사) → 2020(8차 조사) → 2025(9차 조사)

□ 인체정보보급

- ㅇ 인체치수정보 보급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산업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정보 보급 및 활용기술 개발지원 활성화 추진
- ㅇ Size-Korea DB 개선,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DB 관리·운영 및 웹기반 User Interface 시스템을 개발
- ㅇ 누구나 인체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DB 구축 및 관련 웹사이트 정비
- ㅇ 측정된 인체정보를 이용하여 연령별 대표 체형, 특이 체형 정보 제공 및 관련된 규격에 최신 정보의 지속적 반영
- ㅇ 미국, 유럽 등의 해외 인체치수정보를 확보・보급함으로써 현지인 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
- ㅇ 산업군별 응용 통계 및 3차원 모형 제공 서비스 추진으로 연령, 성별에 따른 표준 인체 부위별 분석자료 및 3차원 모형 제공
- ㅇ 산・학・연・관(軍 포함)의 인체표준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휴먼빅데이터구축

- ㅇ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개인 인체정보를 3차원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각종 산업에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 ㅇ 휴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맞춤 제품, 건강, 최적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등 인간 삶의 질 향상
- ㅇ 3D스캐너로 생성된 디지털인체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ㅇ 초기 휴먼 빅데이터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국방부, 교육부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 후, 민간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의 데이터베이스와 휴먼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별 인체 데이터 수요 증대로 데이터 수집 범위와 데이터 품질(동적데이터 등)을 제고할 필요에 따라 지출소요 증가 ○ (정기조사) 특히, '25 ~ '26년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추진에 따라 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 예상 (인건비, 측정장비 대여료, 피측정자 사례비 등) * 5년 주기 정기 통계측정 사업: (2015) 7차 조사 → (2020) 8차 조사 → 9차 조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832	-	1,832	355.5	-	-	2,187.5	2,160.9	118	98.8	-	26.6
2022	1,832	-	1,832	-	-	-	1,832	1,813.3	99.0	99.0	-	18.7
2023	1,725	-	1,725	-	-	-	1,725	1,720	99.7	99.7	-	5
2024	1,725	-	1,725	-	-	-	1,725	1685.77	97.7	97.7	-	39.2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및 조달차액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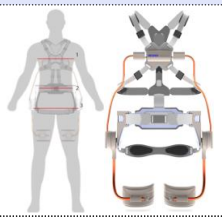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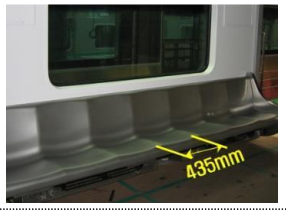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자료 참조

참고 1 한국인 인체데이터 조사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의 **수집 및 보급**을 통해 **국민의 편리 증대** 및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및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05년 최초승인)

□ **(주요내용)** '79년 이래 약 5년 주기의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데이터** 확보로 **우리 국민의 신체변화에 따른 제품·공간설계** 등에 **기여**

웨어러블로봇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좌석		의료용 부목
			

① **(인체치수측정) 국가통계작성**과 산업계의 데이터 수요 대응

- 한국인 인체치수·형상 정보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산·학·연에 보급하기 위한 DB 구축

* '79년 국민체위조사(공업진흥청)를 시작으로 '03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국표원)'로 명칭변경, 5년 주기 정기 및 수요 분야 인체치수측정 실시(직접측정 및 3D측정)

② **(인체정보보급) 산·학·연**의 서비스·제품 개발 **경쟁력 향상**

- 사이즈코리아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교육, 측정장비 무상대여 등 민간의 데이터 보급·활용 지원(온·오프라인)

[사이즈코리아센터]		
전시공간	부분 3D 측정실	전신 3D 측정실
		

③ **(휴먼빅데이터)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인체정보 통합체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체정보 활용도 증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한 휴먼빅데이터 구축

참고 2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추진 현황

차수	실시연도	측정	조사대상 (연령)	조사 인원수	측정 항목수	조사용역기관
1차	'79	직접/간접(사진)	0-45	16,977명	117개	한국과학기술원
2차	'86	직접	0-51	21,480명	80개	한국표준연구소
3차	'92	직접	6-50	8,886명	84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차	'97	직접	0-70	13,062명	120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차	'03-'04	직접	0-90	15,576명	119개	대한인간공학(주관) 한국의류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동적	2-70	551명	35개	
		3차원	8-75	5,168명	205개	
6차	'10	직접	7-69	14,016명	139개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차원	20-39	848명	177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1	3차원	7-12	1,238명	177개	(재)아이패션비즈센터(주관) 동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2	3차원	40-69	1,228명	182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관)
	'13	3차원	13-19	1,464명	160개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14	3차원	70-85	938명	199개	서울대학교(주관) 동서울대학교 한경대학교
7차	'15	직접	16-69	6,410명	133개	한국디자인진흥원(주관) 동서울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8차	'20-'21	직접	20-69	5,092명	137개	동서울대학교(주관)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3차원	20-69	4,545명	293개	
	'22	직접	70-84	1,014명	73개	포항공과대학교(주관) 서울대학교 동서울대학교
		3차원	70-84	476명	293개	
	'23	3차원	7-9	1,300명	293개	KATRI시험연구원
	'24	직접	20-60이상	338명	29개	KATRI시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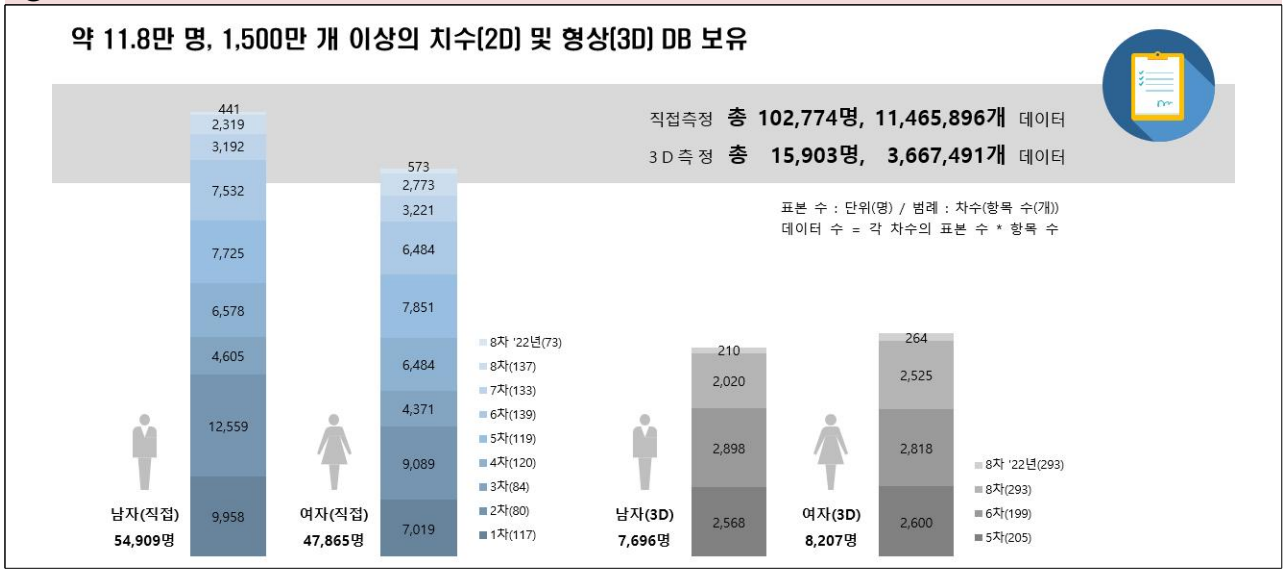
참고 3 기타 참고 사항

□ 해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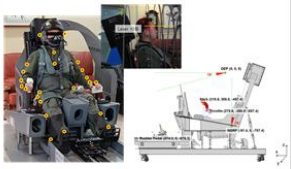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CAESAR project)	ㅇ 공식 사업명 : Civilian American and European Surface Anthropometry Resource project(CAESAR) ㅇ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 (미국) 1998.4.~2000.9. / Ames(IA), Atlanta(GA), Ottawa(Ontario, 캐나다) 등 12개 도시 / 2,375명 - (네덜란드) 1999.8.~2000.9. / Soesterberg 1개 도시 / 1,255명 - (이탈리아) 2001.2.~2001.9. / Genova 1개 도시 / 796명 ㅇ 결과물 및 보고서 - '미국 측정치 및 3차원 영상'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 및 3차원 형상'에 대한 구입비용은 각각 10,000USD이며, 3차원 형상을 제외한 인체 측정치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 측정치' 또는 '네덜란드+이탈리아 측정치'가 각각 3,500USD임
독일 (Size GERMANY)	ㅇ 공식 사업명 : SizeGERMANY - Die deutsche Reihenmessung ㅇ 조사기간 / 조사지역 / 3D 피측정자 수 - 2007.7.1.~2008.10.31. / 독일 전역(North Germany, South Germany, New Federal) / 12,331명 ㅇ 결과물 및 보고서 - SizeGERMANY에서 결과물 관리(iSize 포탈에서 제공) - 인체측정치 전체 자료 구매를 위해서는 15,600€가 소요되며, 3차원 형상 열람을 위해서는 3,200€가 추가 소요
일본 (Size-JPN)	ㅇ 공식 사업명 : 人間特性基盤整備事業(인간특성기반정비사업, Size- JPN2004-06) ㅇ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 2004.10.~2006.10. / 도쿄, 오사카, 고베, 모리구치 / 6,707명 ㅇ 결과물 및 보고서 - 전체 자료를 묶은 세트는 판매하지 않으며, 측정 항목별 및 분석 항목별로 개당 가격이 책정됨(2D : 200~20,000엔, 3D : 10,000~60,000엔) - 외국인에게는 결과물을 판매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과의 결과물 교환은 가능
중국	ㅇ 공식 사업명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ㅇ 조사기간 / 조사지역 / 2D·3D 피측정자 수 - (중국 미성년 인체측정사업) 2006년~2007년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동·광서·복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19,829명 - (중국 성인인체치수에 대한 예비조사) 2009년 / 시안, 톈진, 상하이, 북경 / 3,100명 - (제2차 중국 성인인체치수 조사항목) 2014.12.1.~2018.1.30. / 중국 전역(동북화북지역, 중서부지역, 장강중류지역, 장강하류지역, 광동·광서·복건지역, 운남·귀주·사천구역) / 약 24,000명 ㅇ 결과물 및 보고서 - 측정 수행기관인 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에서 결과물을 관리

□ 관련 도면 및 사진

① 인체데이터 현황



② 인체치수데이터 활용 사례

유아교사용 의자 (무궁유교)	어린이 머리보호대 (오라운드)	한국형 노인 보행 보조기 (라이프패킹)	인체치수활용 의류 (FRJ, 홈앤쇼핑)
			
마스크 사이즈 체계 (LG 생활건강)	**의료용 부목 (코루닷컴)**	**웨어러블로봇 (혁샤휴먼케어)**	**검체 채취 부스 설계 (지티사이언)**
			
버스 좌석 설계 (현대자동차)	**대중교통 좌석 개선 (서울교통공사)**	**재난구급용 장비 개선 (국민안전처)**	**수리온헬기 및 KF-21 보라매 전투기 조종공간 설계**
			

③ 3D인체스캐너를 이용한 전신측정



사 업 명
(5)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3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박종섭	윤승환 연구사	-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4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김원형 선임	053-718-823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국가표준기술개발 및보급	74,495	42,187	53,100	53,100	10,913	2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3,339	43,339	43,339 [43,339]	-	-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7,502	7,502	7,502 [7,502]	-	-	3,823	3,823	3,823 [3,823]	3,823	3,823 [3,823]	-	-	5,097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12,236	12,236	12,236 [12,236]	-	-	-	-	-	-	-	-	-	-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3,931	3,931	3,931 [3,931]	-	-	629	629	629 [629]	629	629 [629]	-	-	-
· R&D사업화표준연계	7,487	7,487	7,487 [7,487]	-	-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	-	2,984
· 국제표준화협력	-	-	-	-	-	1,627	1,627	1,627 [1,627]	1,627	1,627 [1,627]	-	-	2,437
○ 비목별 분류(합계)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495	74,495	74,495 [74,495]	-	-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43,339	43,339	43,339 [43,339]	-	-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43,339	43,339	43,339 [43,339]	-	-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7,502	7,502	7,502 [7,502]	-	-	3,823	3,823	3,823 [3,823]	3,823	3,823 [3,823]	-	-	5,09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7,502	7,502	7,502 [7,502]	-	-	3,823	3,823	3,823 [3,823]	3,823	3,823 [3,823]	-	-	5,097
· 상용표준물질개발 보급	12,236	12,236	12,236 [12,236]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12,236	12,236	12,236 [12,236]	-	-	-	-	-	-	-	-	-	-
· 산업데이터표준화 및인증지원	3,931	3,931	3,931 [3,931]	-	-	629	629	629 [629]	629	629 [629]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3,931	3,931	3,931 [3,931]	-	-	629	629	629 [629]	629	629 [629]	-	-	-
· R&D사업화표준연계	7,487	7,487	7,487 [7,487]	-	-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	-	2,984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7,487	7,487	7,487 [7,487]	-	-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	-	2,984
· 국제표준화협력	-	-	-	-	-	1,627	1,627	1,627 [1,627]	1,627	1,627 [1,627]	-	-	2,437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	-	-	1,627	1,627	1,627 [1,627]	1,627	1,627 [1,627]	-	-	2,4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핵심소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개발 시 품질·정확도 확인, 시험측정 장비의 교정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보급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핵심산업(스마트제조·자율차·로봇)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 (R&D사업화표준연계)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혁신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R&D에 따른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화협력)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21년 4월 :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21년 11월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 ‘24년 2월 :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2.0 수립
- ‘24년 5월 : 첨단산업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ㅇ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20년 : 36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1년 : 55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2년 : 63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년 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9년 6월 :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ISO/REMCO) 총회 개최
- '19년 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년 2월 : 신규과제 지원 (반도체 불화수소 가스 등)
- '21년 4월 : 신규과제 지원 (이차전지용 다성분계 양극활 물질 등)
- '22년 2월 : 신규과제 지원 (상용표준물질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성능검증 등)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①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② 추진경위

- '19년 1월 : 424개 데이터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기업 동향조사(201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 '19년 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반영
- '20년 8월 :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전략(경제중대본)에 반영
- '20년 11월 : 비대면 경제 활성화방안(경제중대본)에 반영
- '21년 4월 : 신규과제 지원(자율차, 스마트제조 등)
- '22년 4월 : 계속과제 지원(자율차, 스마트제조 등)

○ R&D사업화표준연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정의)

② 추진경위

- '19년 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단계별 표준연계 체계 구축 등 반영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R&D 전 주기 표준연계 등 반영
- '19년 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R&D 과제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 의무화
- '20년 6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표준을 특허, 논문과 같이 R&D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로 명시
- '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을 통해 표준을 연구개발성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 정의
- '21년 1월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기부 제2020-107호)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년 1월 : R&D 사업화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정 사업 시행
  * '22~'26년(표준화 전략 컨설팅,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ㅇ 국제표준화협력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23년 5월 : 미국 국가표준화 전략 발표
- '23년 5월 : 韓-美 표준정책 비교·검토를 통한 첨단산업 14개 중점분야 도출
- '23년 6월 : 한-미 고위급 표준화 협력 채널 신설 추진
- '23년 7월 : 한-독 양자 협력 채널 구축
- '23년 11월 : 국내 정책, 미국 표준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2대 국제표준화협력 중점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
- '24년 4월 : 국제표준화협력사업 신규과제 지원(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일몰관리혁신)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62,235	69,995	74,495	42,187	53,1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42,582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출연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센터	5,09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R&D사업화 표준연계	출연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984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제표준화 협력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2,43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 34,910백만원 → (’25) 42,582백만원, 7,672백만원 증액

-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 지원을 위한 선제적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수행으로 42,582백만원

- (산출) 계속과제 : (통합형) 7개×419.2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1개×397.6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4개×205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123개×119.3백만×12/12개월 = 30,880백만원

신규과제 : (통합형) 16개×585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11개×302.9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24개×120백만×9/12개월 = 11,702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91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4,910백만원 가. 계속과제 (29,765백만원) ・ (기반조성) 46개×209.8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147개×136.8백만×12/12개월 = 29,765 백만원 나. 신규과제 (5,145백만원) ・ (통합형) 7개×416.2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7개×305.3백만×9/12개월 + 3개×300백만×6/12개월 + (연구개발) 8개×120백만×9/12개월 + 3개×120백만×6/12개월 = 5,145백만원	42,582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2,582백만원 가. 계속과제 (30,880백만원) ・ (통합형) 7개×419.2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45개×294.9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123개×119.3백만×12/12개월 = 30,880백만원 나. 신규과제 (11,702백만원) ・ (통합형) 16개×585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11개×302.9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24개×120백만×9/12개월 = 11,702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4) 3,823백만원 → (’25) 5,097백만원, 1,274백만원 증액

-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산업접목 AI 개발 확대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5,097백만원

- (산출) 계속과제 : 4개x1,274.3백만x12/12개월=5,097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23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823백만원 가. 신규과제 (3,823백만원) ・ 4개×1,274.3백만×9/12개월=3,823백만원	5,09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097백만원 가. 계속과제 (5,097백만원) ・ 4개x1,274.3백만x12/12개월=5,097백만원

③ R&D사업화표준연계

: ('24) 1,198백만원 → ('25) 2,984백만원, 1,786백만원 증액

- 산업기술 R&D 단계에서 표준개발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의 표준화 선점 추진을 위해 2,984백만원

- (산출) 계속과제 : 2개x1,492백만원×12/12개월 = 2,984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98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198백만원 가. 계속과제 (1,198백만원) ・ 2개×599백만 ×12/12개월 =1,198백만원	2,984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984백만원 가. 계속과제 (2,984백만원) ・ 2개x1,492백만x12/12개월=2,984백만원

④ 국제표준화협력

: ('24) 1,627백만원 → ('25) 2,437백만원, 810백만원 증액

-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위해 2,437백만원

- (산출) 계속과제 : 6개×360백만원×12/12개월 = 2,160백만원
  신규과제 : 1개×369백만원×9/12개월 = 277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2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627백만원 가. 신규과제 (1,627백만원) ・ 6개x361.6백만원×9/12개월 = 1,627백만원	2,43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437백만원 가. 계속과제 (2,160백만원) ・ 6개x360백만원x12/12개월 = 2,160백만원 나. 신규과제 (277백만원) ・ 1개x369백만원×9/12개월 = 2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 (단위: 건)	목표	38	39	40	36	37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건수를 반영 `24년 예산삭감에 따라 전략계획서 목표치 재설정	국제표준화기구 (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40	43	43	-	-			
	달성도	105.3	110.3	107.3	-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 우수성	목표	-	-	80	82	83	참조표준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률과 만족도, 사업화 연계 수를 모두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설정근거) 최근 4개년 동안 2번 달성한 점수인 80점을 '23년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상향 설정	(이용률 목표/실적) × 0.32 + (활용 만족도 목표/실적) × 0.34 + (사업화 연계 수 목표/실적) × 0.34 (측정방법) 국가참조표준 플랫폼 및 외부기관 조사 결과 (만족도) (측정시기) 매년 1월	국가참조표준 플랫폼 확인 (www.srd.re.kr)
	실적	-	-	83.56	-	-			
	달성도	-	-	104.4	-	-			

○ R&D사업화표준연계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 표준연계 과제 건수 (단위: 건)	목표	-	신규	30	20	25	'22년 수행예정인 표준화동향조사 120건 대비 표준연계과제 도출 25% 수준으로 설정 · `24년 예산삭감(84%)에 따라 전략계획서 목표치 재설정	기술분야별 R&D 표준연계과제 지정 건수의 합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실적	-	-	30	-	-			
	달성도	-	-	100	-	-			

○ 국제표준화협력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단위: 건)	목표	-	-	-	신규	6	`24년신규과제(6개) RFP 상의 과제별 목표수준(PWI 1개 이상) 제시	국제표준화기구 PWI 제안 건수	총회 공식문서 또는 ISO/IEC번호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21	o 계속과제 : 고레벨 자율주행을 위한 긴급대응 기능(MRM Minimal Risk Maneuver) 시험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 등 152개 o 신규과제 : 혹한 및 해양 환경에서 체온저하 특성을 고려한 체온보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능평가 국제표준 개발 등 82개
2022	o 계속과제 : 다수의 AP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 중계방식 국제표준 개발 등 164개 o 신규과제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누설 안전 요구사항 국제표준개발 등 76개
2023	o 계속과제 :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 개발 등 195개 o 신규과제 : 자율주행차 5G 통신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국제표준 개발 등 51개
2024	o 계속과제 : 모바일 및 스마트계약 기반의 디지털 ID 표준 확산 및 기반 조성 등 233개 o 신규과제 : 첨단산업 기반, 선도국과의 표준협력, 스마트병원 서비스 표준화 등 국내외 표준기반 조성 등 13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21	o 신규과제 : 관절가동범위 참조표준 개발보급을 위한 측정 디바이스 개발 및 웹서비스 제공 등 13개
2022	o 계속과제 : 참조표준데이터를 활용한 냄새물질 유입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13개
2023	o 계속과제 : 심장질환 진단지원 시스템 및 3채널 웨어러블 심전도기기 개발 등 13개
2024	o 신규과제 : 한국인 단염기 다형성 참조표준 기반 헬스케어를 위한 고효율 DNA 칩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4개

○ R&D사업화표준연계

2022	o 신규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3	o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4	o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2개

○ 국제표준화협력('24년 신규사업)

2024	o 신규과제 : 산업 인공지능 신뢰성을 위한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안) 공동개발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新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 (중점분야) 韓·美 산업정책* 비교와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21)을 통해 선정한 첨단산업 12개** 분야 국제표준화(ISO/IEC) 추진

* (韓)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3.4), (美) 8대 핵심 신기술·6대 응용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전략('23.5) → 韓-美 정책 검토를 통해 12개 중점 추진 분야 도출

** AI,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스마트제조, 지능형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미래차, 미래선박, 차세대 원자력, 핵심소재, 이차전지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디지털전환 시대 핵심인 참조표준데이터(고품질 빅데이터)를 지속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신 사업화 연계 지원
- 참조표준 전문생산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 R&D 결과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연계하여 국가지식 자산화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R&D사업화표준연계

-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친 표준연계를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도출된 표준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구성과 확산 및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주도권 강화 기대

○ 국제표준화협력('24년 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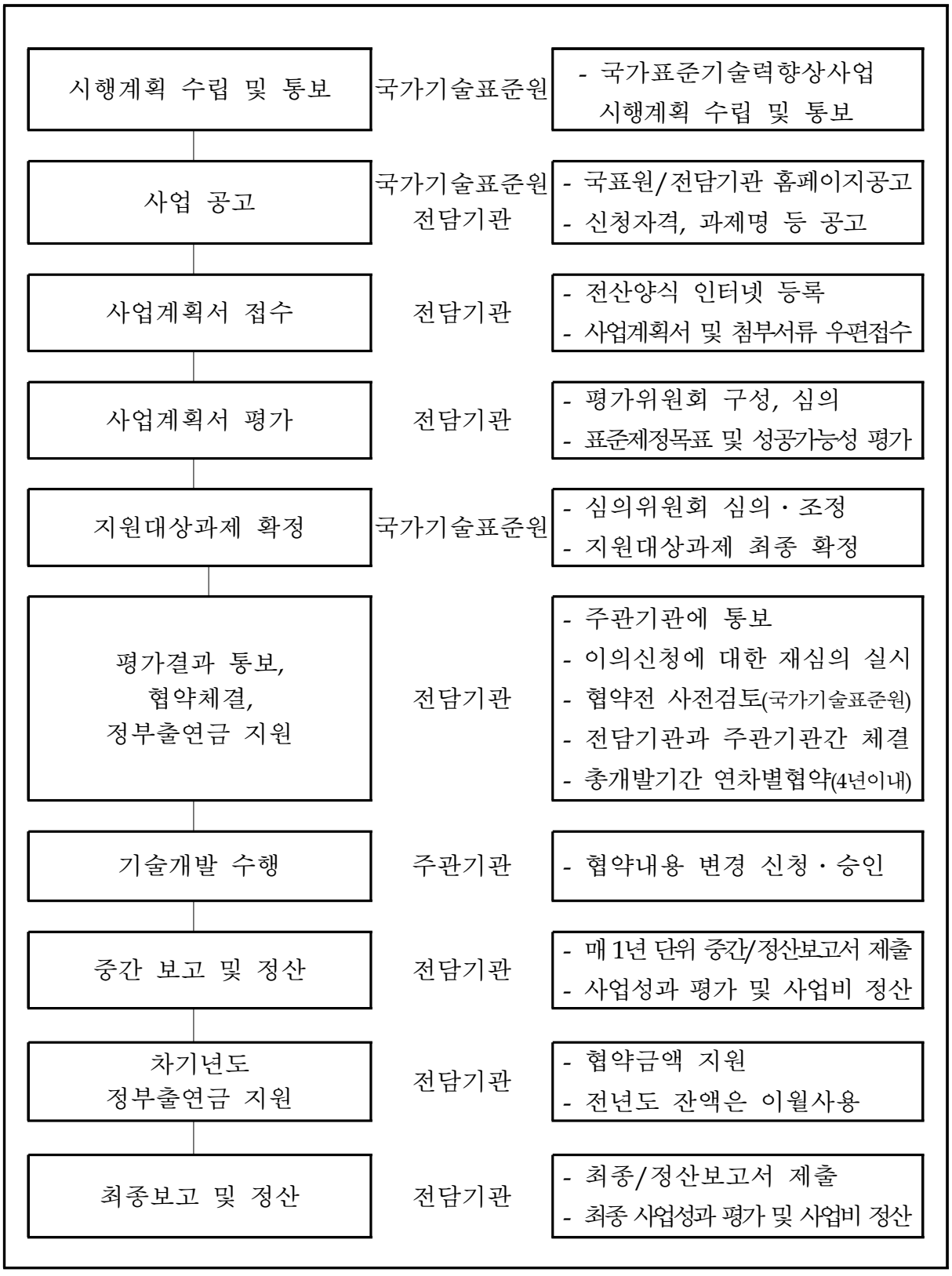
- 한·미, 한·독 등 정부 간 표준협력 및 국제포럼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표준화 로드맵 마련,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예상
-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의 미래시장 선점 가능·국제표준 개발 추진 용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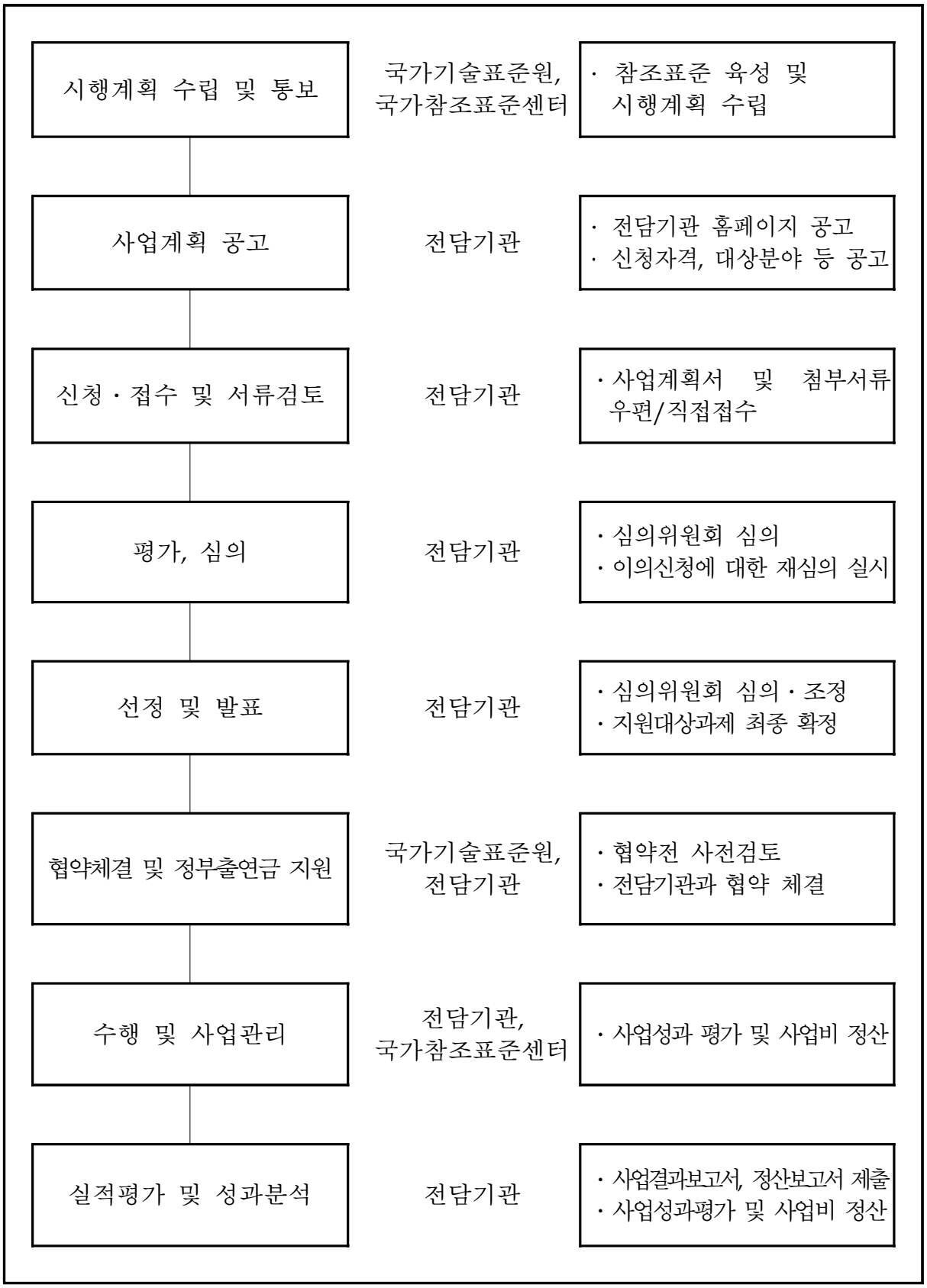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R&D사업화표준연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시행 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신문,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 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국제표준화협력**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국제표준화협력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신문,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 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74,495	42,187	53,100	68,797	71,273	
'24~'28		42,187	53,100	68,797	71,273	73,83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산중위 '20년 결산보고서) 지적

ㅇ 지적사항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으로 수행한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과제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음

ㅇ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ㅇ 향후추진 방향

-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 유망 첨단산업 분야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 기반조성 추진
  ·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과 중소·중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ㅇ 세부추진 계획

- 표준화 정책과 국가 상위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ㅇ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과 데이터센터간 연계을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ㅇ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R&D사업화표준연계

ㅇ 향후추진 방향

- 산업부 위주의 R&D 표준연계에서 범부처 R&D 표준연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제고 마련

ㅇ 세부추진 계획

-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전략연구, R&D 표준성과에 대한 전담 관리·유통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④ 국제표준화협력

ㅇ 향후추진 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세계지형이 재편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을 강화

ㅇ 세부추진 계획

-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류,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 평가 결과('23.4월) : 우수(91.2점)

12) 부처 건의사항

ㅇ 최근 “표준”이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과학기술적 연구성과로 인정된 만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표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全 산업분야를 다루는 만큼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정의 (‘20.12 개정)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ㅇ 표준이 연구성과로 인정되는 등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표준화 기반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 지원 필요

- 개별표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참고 :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처: ISO paper, "Standards & economic growth"(2021)
KOTIS, 표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분석(2022)

ㅇ WTO/TBT 협정에 따라,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별로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해당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 국가는 “표준” 개발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

- 반도체·양자기술·AI 등 핵심분야에 대한 美·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미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62,235	-	62,235	-	-	-	62,235	62,235	100	100	-	-
2022	69,995	-	69,995	-	-	-	69,995	69,995	100	100	-	-
2023	74,495	-	74,495	-	-	-	74,495	74,495	100	100	-	-
2024	42,187	-	42,187	-	-	-	42,187	42,187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0	56,664	58,464	58,464	58,464	-	58,464	58,464	-	-	100
2021	62,235	62,235	62,235	62,235	-	62,235	62,235	-	-	100
2022	69,995	69,995	69,995	69,995	-	69,995	69,995	-	-	100
2023	74,495	74,495	74,495	74,495	-	74,495	74,495	-	-	100
2024	42,187	42,187	42,187	42,187	-	42,187	42,187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해당없음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붙임)

붙 임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07~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윤승환 연구사(☏ 043-870-5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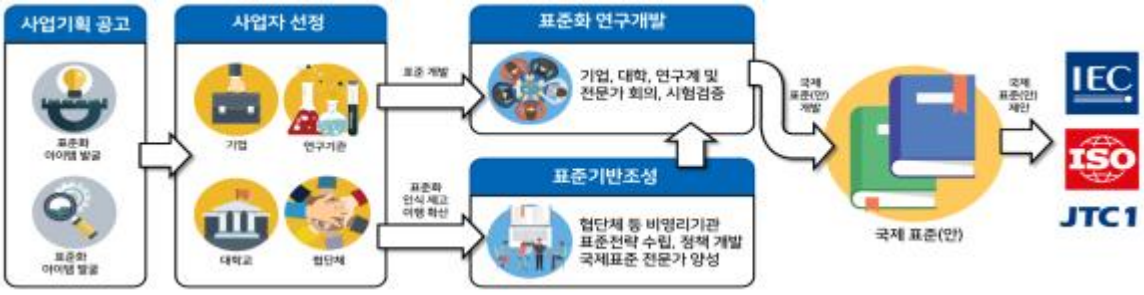
○ 우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

*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차세대 기술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표준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ISO/IEC) 개발 지원사업('07년~계속, 일몰관리혁신)

□ 사업내용

○ **(표준화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제안

○ **(표준기반조성)**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제도 발굴, 국제동향·이슈 대응, 국제협력 등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 '25년 주요 추진계획

○ **(산업기반 지원)** 우리 기술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저탄소 기술, 공공산업 기반, 서비스 표준화 등 범부처 全분야 지원

○ **(첨단산업 집중)** ❶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을 반영한 신규 국제표준 개발과 ❷ **다부처 필수산업 분야 표준화**

* 韓.美 산업 정책 비교를 통해 선정한('23.6월)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21)**을 발표

** (산업정책 연계) 초격차 프로젝트별 중점 표준화 수요 대상 발굴 → 국내 산업계 영향,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국제표준화 개발 추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12개 분야	**AI, 양자기술, 반도체, 청정에너지, 스마트제조, 핵심소재, 이차전지, 미래차, 미래선박, 차세대 원자력, 지능형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❶ **통합·병렬형*** 과제 추진을 통한 첨단 요소기술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적시 국제표준화

* 기존 소형·파편형 나열식 과제 → 개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대형·통합형 과제 추진**

❷ 과학기술, 항공·방산, 생활·의료, 환경 등 필수 산업분야에 대한 **다부처 협력** 국제표준화 확대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기술표준을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국가·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추이: ('19) 3,336건 → ('21) 3,966건 → ('23) 4,079건

○ **(시급성)** AI·양자기술·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美, EU, 中 등과 같이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가 시급

* (美) 민간 중심이었던 미국이 정부 주도의 「국가표준전략」 발표(`23.5월, 백악관) : 8대 핵심기술과 6대 응용 분야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

(中) 2035년까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 분야 표준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22.7)

○ **(Risk)** 자율차*·AI 등의 첨단분야는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 → 우리기술 주도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와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불가

* 자율차 핵심부품 및 V2X 데이터 호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세계시장('35년 약 1조 1,204억 달러)에서 주도권 확보가 곤란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보급사업('11~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11 ~ 계속(일몰관리혁신)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보하 연구관(☏ 043-870-5341)		

□ 사업내용

○ **(참조표준 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高품질 국가공인데이터 개발*·보급**

* 초격차 프로젝트 및 국가전략기술 등 수요 기반 참조표준 집중 개발, 해외기관 협력

○ **(참조표준 활용지원)** 수요자(기업 등)의 **참조표준 활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인식제고·수요발굴을 위한 **참조표준 홍보 실시**

* (정책) 참조표준 가치평가 실시, 활용가이드 개발, 만족도 조사, 개발기관간 협업 확대, (홍보) 개발·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전시회 등 현장 홍보, 기고 등 기획홍보

○ **(참조표준 비즈니스화)**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 新산업 창출 지원**

□ '25년 주요 추진계획

○ **(산업지원 확대 지속)** 고품질 데이터(참조표준) 개발 확대, 산업접목 AI 개발과 같은 사업화 확대 등을 지속 추진

○ **(첨단 AI 집중)** 신규과제는 **AI 분야**에 집중 투자

의료 진단 AI(MRI영상 참조표준)**, 반도체 공정예측 AI**(플라즈마 물성 참조표준) 등과 같이 「**산업접목 AI 개발**」과 「**관련 참조표준**」 **보급**에 '25년도 증액 요구 **예산 집중 투자**

* 現 참조표준 데이터 개발·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❶ 연구 효율성 향상, ❷ 중복 실험 등 사회 비용 감소, ❸ 국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반도체, 첨단제조, 바이오, 환경 등 **각 산업 분야 참조표준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AI 개발·접목)** 추진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생성형 AI(ChatGPT)를 선두로 각 산업계와 AI의 접목이 확산되면서, AI 개발의 핵심 경쟁력 요소인 똘똘한 데이터* 확보 절실

* 참조표준 :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이터

- 초격차 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분야와 민생분야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필요한 高품질 데이터* 필수

* (예시) 반도체용 가스 물성, 원자력 소재, 한국인 인체치수, 혈압, 중력 참조표준 등

○ **(시급성)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참조표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유사·저품질 데이터 개발 방지**와 함께 **고품질 데이터 개발이 시급**

* 50건 이상의 참조표준-AI 연계를 통한 신사업 창출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정책 부합성, 시급성, 사회적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추진 시급

○ **(Risk)** 표준화 미추진 시 AI 기술의 핵심이 되는 입력데이터(input)의 신뢰성 하락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 → 정확도·신뢰도를 검증·공인한 참조표준 개발·확산 필요

*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 회사마다 평균 약 $12.9백만 손실 발생('21년 Gartner)

* 미국에서 저품질 데이터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비용을 3조달러로 추산('16년 IBM)

- 특히,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국내 개발 애로·문제점 해소에 참조표준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데이터의 양 부족(33.3%)과 더불어 낮은 정확성(21.2%)을 지적 ('21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행안부)

3. R&D사업화표준연계 ('22 ~ '26)

□ 사업개요

사업기간	`22년 ~ `26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ㅇ (**사업목적**) 첨단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연구기관의 표준개발 지원
- ㅇ (**주요정책 부합성**) '글로벌기술협력 종합전략' 등 주요정책에서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

□ 사업내용

-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R&D 전주기에 걸쳐 표준연계 수행**

① **(기획단계)** 표준동향분석*을 통해 표준선점이 시급한 기술 발굴

* 분야별 R&D 신규과제의 표준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술동향분석, 표준수준조사, 공백표준발굴, 표준개발 타당성 분석 등 수행

② **(연구단계)** R&D와 연계한 국제표준(안) 개발 지원*

* 국제표준기구 의장간사 등 기술표준 전문가가 연구기관과 함께 표준화 아이템 발굴, 국제상호평가(RRT) 등을 포함한 실증을 통해 표준(안) 개발 지원

③ **(완료단계)**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표준성과관리전담기관을 통해 표준연구성과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제28조)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관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야하며, 해당성과를 유지, 보관, 관리 필요

□ '25년 주요 추진계획

- ㅇ **(표준화 선제적 검토)** R&D 기획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가능성을 검토하고, R&D단계에서 국제표준 병행개발로 표준 선점 추진

- ㅇ **(산업정책 연계) 초격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R&D 단계의 국제표준 개발 병행이 시급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첨단바이오 등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우리나라의 신기술 및 첨단제품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의 진검승부가 성패를 좌우

- 따라서 첨단산업 R&D는 시작단계부터 표준화 검토가 필요하고, R&D와 연계한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확대 필요**

* 연구개발 이후 표준개발시, 표준제정까지 약 3년의 추가시간이 소요되어 경쟁국의 국제표준선점으로 상용화 곤란

** 국가R&D 예산은 30조인데 반해, 표준연계를 위한 예산은 12억원에 불가(0.004%)

○ **(시급성)** 첨단산업에 대한 美·中 등 주요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연계 표준개발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이 시급

* (美) 핵심산업 표준개발을 목표로 「국가표준전략」 발표('23.5, 백악관)
(中) 미래산업 표준선점을 위한 「신산업 표준화 실시방안」 발표('23.8, 과학기술부 등)

○ **(Risk)** 표준연계 미추진 시, 사업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불가능**

* 초격차 프로젝트 R&D 결과물에 대한 표준화 추진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개발 완료 시점에 글로벌 시장진출 한계 예상

4. 국제표준화협력 ('24 ~'28)

□ 사업개요

사업기간	`24년 ~ `28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시험인증기관, 업종별 단체 등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사업목적**) 선도국과의 첨단산업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및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정책 부합성**)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등 주요정책에서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

□ 사업내용

○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국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 운영

* '24년도에는 주요선도국(美·獨)과의 표준 협력이 시급한 인공지능, 차세대선박, 지능형 로봇, 핵심소재, 첨단소재, 수소 등 6개 분야 운영

□ '25년 주요 추진계획

○ **(국제포럼)**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국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 운영

○ **(선도국과의 협력)** 한·미, 한·독 등 정부 간 표준협력에 합의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마련,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 **국가간 협력 강화**

* (韓-美) 양자기술, 반도체, AI 등 원천기술 분야 강국으로 표준개발·선점을 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정부간 실무협의('23.8), 고위급 협력 채널 신설(`24.1))

(韓-獨) 미래모빌리티(배터리 등), 스마트제조 등에 대한 양자간 협력 채널 구축 (`23.10)

※ 선도국 기술인프라 활용가능성 및 국제적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신규 추진 예정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 강화**가 필수

ㅇ **(시급성)** 주요국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교류를 포함해 선도국과의 표준 공동개발이 시급한 상황

* **주요국가별 표준개발 협력 사례**

① (미-EU) 핵심유망기술 분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의 상호운용 가능한 공동의 기술표준 개발 공동성명('23.5)

② (EU-일) 첨단소재, 반도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24.4)

ㅇ **(Risk)** 첨단 기술표준 분야의 선도국과 선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가속화 곤란**

- 결국 첨단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국제표준 경쟁력이 뒤처져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지연 우려**

* (타국 견제로 국제표준 미승인 사례) 국내 기술을 반영한 반도체 표준오염도 측정 표준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했으나, 미국, 유럽 등 타국의 견제로 미승인

사 업 명
(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상호인정 협정체결유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남 하 욱	박 응 조	강 수 경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34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남 하 욱	박 응 조	한 정 민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491
	사업시행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남 하 욱	박 응 조	강 수 경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345
	사업시행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1,991	2,088	1,620	1,620	△468	△2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29	2,029	1,991	-	38	2,088	2,088	2,002.5	2,088	2,002.5	-	85.5	1,620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905	905	867	-	38	1,064	1,064	978.5	1,064	978.5	-	85.5	750
·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804	804	804 [804]	-	-	724	724	724 [724]	724	724 [724]	-	-	570
·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지원	320	320	320 [32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2,029	2,029	1,991	-	38	2,088	2,088	2,002.5	2,088	2,002.5	-	85.5	1,620
· 일반수용비(210-01)	310.9	278.9	259.7	-	19.2	442.6	352.8	298.7	352.8	298.7	-	54.1	292
· 임차료(210-07)	30	30	29.8	-	0.2	50	139.8	130.3	139.8	130.3	-	9.5	30
· 관리용역비(210-15)	98	98	97	-	1	98	98	97	98	97	-	1	98
· 국외여비(220-02)	45.7	77.7	76.6	-	1.1	76	76	69.8	76	69.8	-	6.2	52.5
· 사업추진비(240-01)	11.4	11.4	11.4	-	-	11.4	11.4	11.4	11.4	11.4	-	-	11.4
· 일반연구비(260-01)	409	409	392.5	-	16.5	386	386	371.3	386	371.3	-	14.7	266.1
· 민간경상보조 (320-01)	320	320	320 [32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 사업출연금(350-02)	804	804	804 [804]	-	-	724	724	724 [724]	724	724 [724]	-	-	570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29	2,029	1,991	-	38	2,088	2,088	2,002.5	2,088	2,002.5	-	85.5	1,620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905	905	867	-	38	1,064	1,064	978.5	1,064	978.5	-	85.5	750
- 일 반 수 용 비 (210-01)	310.9	278.9	259.7	-	19.2	442.6	352.8	298.7	352.8	298.7	-	54.1	292
-임차료 (210-07)	30	30	29.8	-	0.2	50	139.8	130.3	139.8	130.3	-	9.5	30
- 관 리 용 역 비 (210-15)	98	98	97	-	1	98	98	97	98	97	-	1	98
- 국 외 여 비 (220-02)	45.7	77.7	76.6	-	1.1	76	76	69.8	76	69.8	-	6.2	52.5
- 사 업 추 진 비 (240-01)	11.4	11.4	11.4	-	-	11.4	11.4	11.4	11.4	11.4	-	-	11.4
- 일 반 연 구 비 (260-01)	409	409	392.5	-	16.5	386	386	371.3	386	371.3	-	14.7	266.1
·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804	804	804 [804]	-	-	724	724	724 [724]	724	724 [724]	-	-	570
-사업출연금(350-02)	804	804	804 [804]	-	-	724	724	724 [724]	724	724 [724]	-	-	570
·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 지원	320	320	320 [32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320	320	320 [320]	-	-	300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공인(시험·교정 등)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시험·교정 등)가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 가입한 회원국(약 116개국)간 상호통용이 되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과 유지하고 공인기관의 신뢰성에 기반이 되는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국제인정기구와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설립·운영 중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국제인정기구포럼, Int'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국제인정기구(ILAC/IAF)와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유지를 위한 인정제도와 공인기관 관리, 국제상호인정분야 유지·확대 및 국제동등성평가** 대응

  * 국제인정기구의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 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등의 성적서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 국제인정기구는 국제상호인정을 받은 분야에 대해 정기(4년주기) 및 수시(국제개정시 국제기준의 준수·이행여부) 평가

-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국제기준은 숙련도시험을 통해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 대해 시험측정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인기관이 국제적인 업무 역량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수준 높은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과운영

  * 시험기관 간 비교 등을 통해 시험기관의 시험측정능력을 비교·평가하는 것

-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인기관 인정·관리 업무를 지원(평가계획 수립, 평가반 구성 등)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민간보조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국가표준기본법>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 · 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 · 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 · 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 ·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 · 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 · 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 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98. 6월 : APLAC-MRA 체결(시험 분야)
- '00. 8월 : APLAC-MRA 체결(교정 분야)
- '00. 11월 : ILAC-MRA 체결(시험 분야)
- '01. 2월 : 제품인증기관 인정기구(KAS) 운영체계 도입
- '01. 2월 : PAC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1. 5월 : ILAC-MRA 체결(교정 분야)
- '02. 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2. 9월 : IAF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4. 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월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07. 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 '07. 10월 : PAC-MLA(IAF-MLA) 체결(제품인증 분야)
- '08.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0. 7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2. 5월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방안 마련
- '12.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4. 8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6.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및 MRA 확대(메디컬 분야)

- ’18. 5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8. 9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ISO/IEC 17025:2017) 계획 수립 및 시행(‘19. 4월)
- ’20. 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4월)
- ’21. 3월 : AP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및 메디컬 분야)
- ’21. 5월 :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전환 완료
- ’22. 4월 : KOLAS-KAS 통합 및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도입 실시
- ’22. 8월 : ILAC-MRA/IAF-MLA 갱신(제품인증) 및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평가 수검
- ’23. 1월 : 검증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 ’24. 5월 : APAC-MRA 갱신 및 확대 평가 수검(시험·교정·제품인증 Global G.A.P·메디컬 시험·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 분야 및 검증분야 확대)
- ‘24. 9월 :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계획 수립 및 공고(’24.10월)
- ’24. 11월 : 교정, 시험 등 7개분야 ILAC-MRA/IAF-MLA 지위 유지 국제기구 승인
  * ILAC-MRA(5개분야) : 시험, 교정,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IAF-MLA(2개분야) : 제품인증(GLOBALG.A.P포함) 및 검증기관
- ’24. 12월 : KOLAS 운영문서(요령 및 지침 등) 개정 예고 고시(‘24.12월)
- ’25. 1월 : KOLAS 메디컬 시험·숙련도시험운영 전환평가 시행(‘25.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4,134	1,995	2,029	2,088	1,6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출연, ’24년 보조)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표준물질,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 등) 공인기관, 성적서를 활용·수출하는 기업·연구소 및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한국계량측정협회	570백만원	100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9.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ㅇ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민간 보조	공모선정 ('24 : 한국계량측정협회)	300백만원	100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 750백만원

('24) 1,064백만원 → ('25) 750백만원, △314백만원, △29.5%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월) 종료 및 신규인정제도** 운영 안정화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관련 예산 감액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운영비, 수검장 임차료, 국제평가반 여비 등

** 생물자원은행('22년) 및 검증('23년)분야 인정제도 도입

- (산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대응 △190여백만원 감액, 운영기준 정비 관련 △120여백만원 감액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4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42.6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288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60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14.6백만원 : 14.6백만원 × 1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통역비 40백만원 : 5명 × 1.33백만원 × 6일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운영비 100백만원 : 100백만원 × 1건 ○ **임차료(210-07) : 50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장 임차 20백만원 : 20백만원 × 1회 ○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 -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 ○ **국외여비(220-02) : 76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대응 46백만원 : 3명 × 3.1백만원 × 5회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평가반 여비 30백만원 : 5명 × 6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 ○ **일반연구비(260-01) : 386백만원** -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386백만원 = 35.1백만원 × 11과제	75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92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288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60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4백만원 : 4백만원 × 1회 ○ **임차료(210-07) : 30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 -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 ○ **국외여비(220-02) : 52.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대응 52.5백만원 : 3명 × 3.5백만원 × 5회 ○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 ○ **일반연구비(260-01) : 266.1백만원** -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266.1백만원 = 33.3백만원 × 8과제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 570백만원

('24) 724백만원 → ('25) 570백만원, △154백만원, △21.3%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旣개발 및 유사과제 축소 등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

- (산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57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4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724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724백만원 : 29.8백만원 × 24건	57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70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570백만원 : 30백만원 × 19건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 300백만원

('24) 300백만원 → ('25) 300백만원, +0.0%

- '24년 대비 동일 예산 요구(300백만원)

- (산출)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300백만원×1건)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수 (단위: 개)	목표	40	40	40	-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건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 프로그램 참여기관수/총 숙련도프로그램 운영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42	41	40	-	-			
	달성도	105	103	100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79	80	80	-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합격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 프로그램 참여 기관수)×100	·숙련도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및 KOLAS 시스템 자료
	실적	83	90	92	-	-			
	달성도	105	113	115	-	-			
인정 공인기관 수 (단위: 건)	목표	-	-	-	1,212	1,260	·공인기관 연평균 증가율(최근 10년간)을 고려하여 산출	·해당 년도 말(12월 기준) 인정 공인기관 수(누적)	·KOLAS 인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
	실적	-	-	-	1,287	-			
	달성도	-	-	-	10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건축 자재의 불연성 시험 분야 숙련도시험 등 26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배터리팩 내부저항 및 방전성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 등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68건 운영 • 新 국제기준에 따른 국내 KOLAS 공인기관(시험·교정) 운영체계 전환 완료 • 2021년 APLAC-MRA 동등성평가 수검 대응 완료 및 시정조치 완료 • 2022년 APLAC/PAC-MRA 동등성평가 수검을 위한 KOLAS/KAS 통합 추진 • 신규 MRA 스킴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기관, Global G.A.P) 확대 추진
2022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태블릿 PC의 접촉 온도 측정 숙련도시험 등 25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염기성 용액 중 베타 방출 핵종 방사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0건 운영 • 인정기구 통합(KOLAS+KAS) 및 홈페이지(www.knab.go.kr/kolas) 개편 완료 •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인정 도입 • 2022년 APLAC/PAC-MRA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 탄소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2023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등 24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시험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3건 운영 •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 완료 •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및 국제상호인정협정(MLA) 확대 신청 • KOLAS 국제동등성평가 수검대비를 위한 절차, 기준개정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국제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규정·품질문서 개정 및 영문화 - 국제표준 개정(메디컬시험, 숙련도운영)대응을 위한 전환계획 수립 등
2024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대기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질 등 20건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마스크 흡기저항 시험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82건 운영 •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상호인정협정(APAC-MRA) 유지 및 확대*를 위한 2024년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완료 *국제인정기구로부터 4년 주기 재평가(시험, 교정 등 6개분야) 및 확대(검증분야) 평가 수검 •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라 메디컬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25.) 추진 준비 예정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기준에 따른 안정적인 인정체계를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및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국제기구(ILAC, IAF)는 각 국의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MRA/MLA)을 통하여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검/인증 등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고, 인정기구에 대해 주기적(4년)으로 동등성평가 실시

- MRA/MLA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가 국제기구(ILAC, IAF)와 MRA/MLA를 체결한 116개국에서 추가·중복시험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ㅇ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신수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 확대*(연평균 약 7.7%)

* 공인기관 수(개) : ('20) 984 → ('21) 1,049 → ('22) 1,140 → ('23) 1,218 → ('24) 1,287

ㅇ 국제인정기구에서 운영하는 상호인정체계을 국내 실정을 파악하여 지속 확대*(예, 생물자원은행('22.4) 및 검증분야('23.1))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인정체계 유지를 통한 기업지원

* 한국인정기구 인정분야 : (기존) 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 제품인증 총 7분야 → (추가) 기존 분야 + 생물자원은행, 검증 총 9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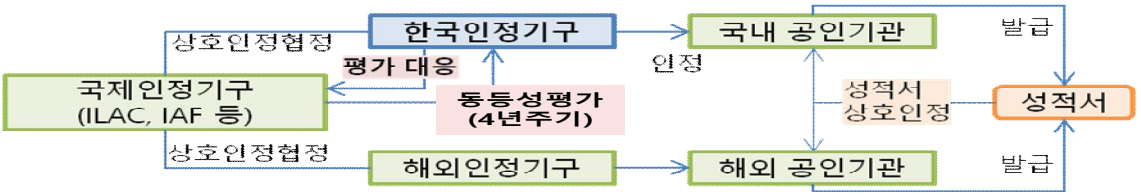
○ 환경규제·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수요 대응 및 기업지원을 위해 탄소발자국에 대한 검증('24.11.)외에 ESG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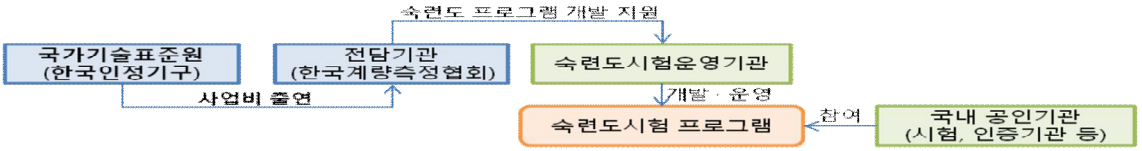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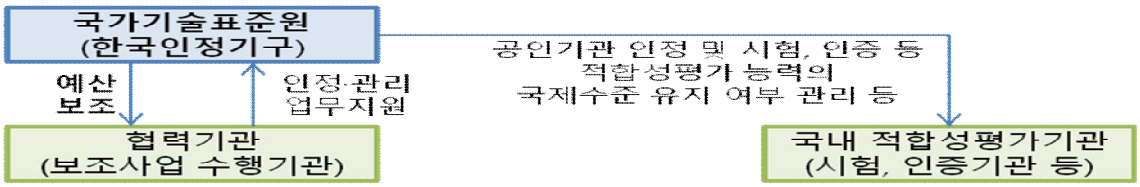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	산업부 및 국제기구	교정, 시험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 MRA/MLA 체결국은 성적서 등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준 준수/유지 필요
⇩		
② 국제평가 수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로서 인정체계 국제수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4년마다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동등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이 없는 경우 MRA/MLA 유지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조사/분석	산업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 교정 등 적합성평가 능력, 평가 분야 국내외 규정, 표준 등 기술문서, 숙련도시험 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②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시험평가용 숙련도 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③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숙련도시험(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		
④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시험 실시(국내·외)
⇩		
⑤ 후속조치	참여기관	시험능력 비교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적합성평가능력 제고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보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고	산업부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공고
⇩		
②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산업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③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인정업무 및 평가사 등록 업무 지원 - (기관 관리지원) 현장평가 후보군 구성, 평가 일정 조율, 인정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인정서 발송 등 - (평가사 관리 지원) 심의 대상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검토 및 등록증 발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2,029	2,088	1,620	1,796	1,907	
'24~'28		2,088	1,620	2,412	2,532	2,65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을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및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지속적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을 통한 국제기준 부합화 추진

○ 국내 인정분야 신규도입,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 및 유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국제인정기구에서 운영하는 상호인정체계을 국내 실정을 파악하여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인정체계 유지를 통한 기업지원

- 정기적인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을 통한 시험, 교정, 제품인증 등 한국인정기구(KOLAS)가 운영하는 7개 국제상호인정분야 지속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유지

- 환경규제·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수요 대응 및 기업지원을 위해 검증분야의 국제상호인정 확대 신청 등 지속적인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 추진

○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라 메디컬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준비 및 성공적 전환 추진('25.)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①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69.2)
- ㅇ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제동등성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 인정
  - 전체사업에 대한 상반기 집행률 미흡
  - 예산절감 노력 필요

②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0.0)
- ㅇ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비대면평가 진행 등 탄력적 대응 등 노력 인정

③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75.1)
- ㅇ (결과 요약)
  - 예산 보조 법적 정비 필요
  - 세부사업명(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과 실질 내역사업명(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이 일치하지 않아 내역사업명 변경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4,134	-	4,134	49	-	-	4,183	4,035.6	97.6	96.5	-	147.4
2022	2,009	△14	1,995	-	-	-	1,995	1847.9	92.6	92.6	-	147.1
2023	2,029	-	2,029	-	±89.8	-	2,029	1,991	98.1	98.1	-	38.0
2024	2,088	-	2,088	-	±89.8	-	2,088	2,002.5	95.9	95.9	-	8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2,372	2,372	2,372	2,372	-	2,372	2,372	-	-	100
2022	300	300	300	300	-	300	300	-	-	100
2023	1,124	1,124	1,124	1,124	-	1,124	1,124	-	-	100
2024	1,024	1,024	1,024	1,024	-	1,024	1,02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집행잔액 147.4백만원(업무용역 정산잔액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동등성 평가가 원격평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비용(평가반 국외출장비, 임차료 등) 절감
2022	- (불용) 집행잔액 147백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평가 및 회의가 원격회의로 전환되어 국외여비 (66백만원) 절감. 또한 국제기구 동등성평가 수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용역비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나 평가 수검결과, 정책용역 및 기준개정 등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 비용(연구비 등)을 절감)
2023	- (불용)집행잔액 38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 (전용)자체전용 32백만원(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월)대비 관련 국제기구 규정변경사항 파악·대응, 한국인정기구 대표자의 국제기구 총회참석 및 의견제출(투표 등) 등 필수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자체전용
2024	- (불용) 집행잔액 150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 및 정산잔액, 국제동등성평가의 성공적 수검에 따른 관련 비용(번역비 등)을 절감) - (조정) 국제동등성평가에 대비한 국제평가반 인원, 평가일수 등의 변경에 따라 임차료가 증가되어 필수적인 회의, 행사 등에 대한 필수 임차료 지급이 어려워 일부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세목간 조정함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4.6.18./10.18.)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사업 (3731-306)	210-01	89.8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사업 (3731-306)	210-07	국제동등성평가에 대비한 국제평가반 인원, 평가일수 등의 변경에 따라 임차료가 증가되어 필수적인 회의, 행사 등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어려워 일부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세목간 조정함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7)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이위로	-	지새한울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81
	사업시행주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381정보지원팀	함종오 팀장	13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인증제도 혁신기반구축	1051	947	758	758	△189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1 [1,051]	-	1	947	947	946 [946]	947	630 [590]	946 [946]	1	758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1,015.45	1,015.45	1,015.3 [1,015.3]	-	-	911.863	911.863	911.863 [911.863]	911.863	620 [580]	911.863 [911.863]	-	723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6.55	16.55	16.55 [16.55]	-	-	15.137	15.137	15.137 [15.137]	15.137	10 [10]	15.137 [15.137]	-	15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19 [19]	-	1	20	20	20 [19]	20	-	20 [19]	1	20
○ 비목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1 [1,051]	-	1	947	947	946 [946]	947	630 [590]	946 [946]	1	758
· 일반수용비(210-01)	71.45	71.45	71.34 [71.34]	-	-	60.863	60.863	60.863 [60.863]	60.863	20 [20]	60.863 [60.863]	-	32
· 국내여비(220-01)	3.8	3.8	3.8 [3.8]	-	-	3.484	3.484	3.484 [3.484]	3.484	2 [2]	3.484 [3.484]	-	3.5
· 사업추진비(240-01)	12.75	12.75	12.75 [12.75]	-	-	11.653	11.653	11.653 [11.653]	11.653	8 [8]	11.653 [11.653]	-	11.5
· 일반연구비(260-01)	20	20	19	-	1	20	20	20 [19]	20	-	20 [19]	1	20
· 민간경상보조(320-01)	944	944	944 [944]	-	-	851	851	851 [851]	851	600 [560]	851 [851]	-	69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1 [1,051]	-	1	947	947	946 [946]	947	630 [590]	946 [946]	1	758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1,015.65	1,015.65	1,015.3 [1,015.3]	-	-	911.863	911.863	911.863 [911.863]	911.863	620 [580]	911.863 [911.863]	-	723
-일반수용비(210-01)	71.45	71.45	71.34 [71.34]	-	-	60.863	60.863	60.863 [60.863]	60.863	20 [20]	60.863 [60.863]	-	32
-민간경상보조(320-01)	944	944	944 [944]	-	-	851	851	851 [851]	851	600 [560]	851 [851]	-	691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6.35	16.35	16.55 [16.55]	-	-	15.137	15.137	15.137 [15.137]	15.137	10 [10]	15.137 [15.137]	-	15
-국내여비(220-01)	3.8	3.8	3.8 [3.8]	-	-	3.484	3.484	3.484 [3.484]	3.484	2 [2]	3.484 [3.484]	-	3.5
-사업추진비(240-01)	12.75	12.75	12.75 [12.75]	-	-	11.653	11.653	11.653 [11.653]	11.653	8 [8]	11.653 [11.653]	-	11.5
· 인증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19	-	1	20	20	20 [19]	20	-	20 [19]	1	20
-일반연구비(260-01)	20	20	19	-	1	20	20	20 [19]	20	-	20 [19]	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개선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KC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만족도·인지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의무 인증을 KC마크로 수렴하고 KC마크를 국내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의7 (국가통합인증마크의표시기준 등)①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인증제도 혁신 T/F팀」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주요내용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 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80 FTA 콜센터과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특수번호 : 1381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사용번호 : 1381　　•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922	1,052	1,052	947	7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또는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보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91	100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위탁운영)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24) 911.863 → (`25) 723백만원 188.863백만원 감액

- 다양하고 복잡한 인증·표준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상담 전문성 강화

- (산출)

  ■ 인건비 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 560백만원
  * (’24) 18명 × (3.33백만원 × 12개월) → (’25) 14명 × (3.33백만원 × 12개월)

  ■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320-01, 민간경상보조) : 20백만원
  * (’24) 80회 × 0.25백만원 → (’25) 80회 × 0.25백만원

  ■ 유지보수, 관리비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 102백만원
  * (’24) 12개월 × 8.5백만원 → (’25) 12개월 × 8.5백만원

  ■ 상담원 재교육 (320-01, 민간경상보조) : 9백만원
  * (’24) 9회 × 1백만원 → (’25) 9회 × 1백만원

  ■ 1381 이용 유도 및 활성화 (210-01, 일반수용비) : 32백만원
  * (’24) 5회 × 12.5726백만원 → (’25) 3회 × 10.67백만원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4) 15.137 → (`25) 15백만원 0.137백만원 감액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예산 요구

- (산출)

  ■ 인증제도 실태조사 (220-01, 국내여비) : 3.5백만원
  * (`24) 2명 * 0.1백만원 * 19회 → (`25) 2명 * 0.097백만원 * 18회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범부처 실무자 협의 등) (240-01, 사업추진비) : 11.5백만원
  * (’24) 25명 * 0.03백만원 * 17회 → (’25) 25명 * 0.03백만원 *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4) 20 → (`25) 20백만원

- 사업 효과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과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산출) (’24) 1개과제 x 20백만원 → (’25) 1개과제 x 2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7 백만원	**(1)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944백만원** (1-1) 인건비 보조 : 720백만원 - 18명 × 40백만원 (1-2)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20백만원 - 0.25백만원 x 140회 (1-3) 유지보수, 관리비, 시스템고도화 : 102백만원 - 8.5백만원 x 12개월 (1-4) 상담원 재교육 : 9백만원 - 1백만원 x 9회 (1-5) 1381 정보센터 이용유도 및 활성화 : 60.863백만원 - 12.1216백만원 x 5건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5.137백만원** (2-1) 인증제도 실태조사 : 3.484백만원 - 0.1백만원 x 2명 x 19회 (2-2) 인증제도 혁신 범부처 회의 : 11.653백만원 - 27천원 x 25명 x 17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20백만원 x 1건	758 백만원	**(1)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758백만원** (1-1) 인건비 보조 : 560백만원 - 14명 × 40백만원 (1-2)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20백만원 - 0.25백만원 x 140회 (1-3) 유지보수, 관리비, 시스템고도화 : 102백만원 - 8.5백만원 x 12개월 (1-4) 상담원 재교육 : 9백만원 - 1백만원 x 9회 (1-5) 1381 정보센터 이용유도 및 활성화 : 32백만원 - 10.6732백만원 x 3건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5백만원** (2-1) 인증제도 실태조사 : 3.5백만원 - 0.97백만원 x 2명 x 18회 (2-2) 인증제도 혁신 범부처 회의 : 11.5백만원 - 30천원 x 25명 x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20백만원 x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건 (단위: 건)	목표	64,120	67,326	70,692	64,023	64,000	실적 추이를 감안하여 목표치 산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건수 합계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통계
	실적	71,222	57,024	57,595	-	-			
	달성도	111	84.7	81.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산업단지 승강기, 지하철 광고 등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서비스 다양화 추진 및 질적 개선 - 화상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문 상담의 어려움 해소 - 1381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상담 유형별 만족도 조사 강화)
2022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산업단지 승강기, KTX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도입 추진(카카오플러스)
2023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대형디지털 전광판, 지하철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서비스 제공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제작
2024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버스 외부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활성화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배포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인증·표준 관련 정보취득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국내 시장출시에 필요한 국내 인증 관련 정보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특히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선호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 제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② 보조금 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691백만원)	=> (691백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91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052	947	758	1,092	1,135	
'24~'28		947	758	1,092	1,135	1,16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국내 시장출시 및 해외수출 관련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對기업 인지도 제고 - 안정적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 노후 장비 단계적 교체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의 D/B구축(자료집 제작)을 통한 고객의 활용성 증대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향상 -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서비스(챗봇, 인터넷 상담 등) 활성화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성 높은 전화상담 비중이 높은 편 - 수요자 측면의 성과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전달 방법을 다원화·고도화할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922	922	922	-	-	-	922	921	99.9	99.9	-	1
2022	1,052	1,052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3	1052	1052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4	947	947	947	-	-	-	947	946	99.9	99.9	-	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814	814	814	814	-	814	814	-	-	100
2022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023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024	851	851	851	851	-	851	85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2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3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4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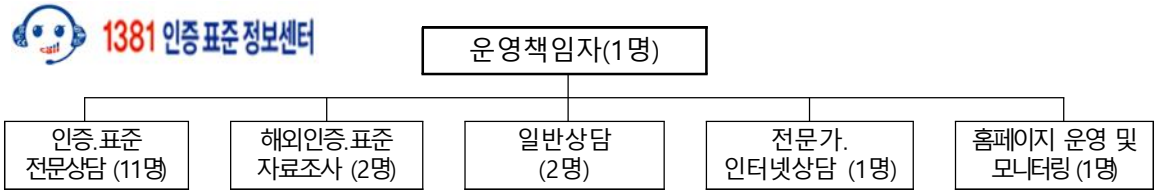
○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제품 출시 또는 수출시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맞춤식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 지원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품목별·국가별 인증 및 획득절차 정보가 가장 필요 ('13.6 한국무역협회)

* 기업의 41.7%가 정보탐색(품목,종류,절차 등)에 어려움('20.4.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내용

○ **(운영조직)**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리 총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운영 실무 및 상담 업무 수행(운영책임자 포함 총 1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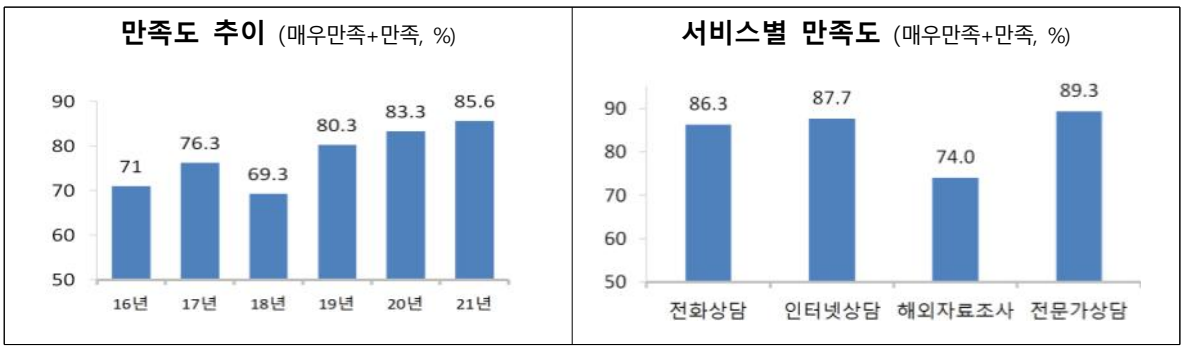
○ **(서비스 고도화)** 전화 · 인터넷 ·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가 대면상담 등으로 심층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인터넷 상담·정보제공('18), 전문가대면상담('18), 화상상담('21), 신기술·신제품 Help Desk('22)

○ **(상담 현황)** 23년 상담 50,982건(207건/일), 페이지뷰 268,533회(735회/일)

* 누적('14.3.~) : 전화상담(555,976), 인터넷상담(16,044), 전문가상담(1,101), 해외인증자료제공(1,889)

○ **(이용자 만족도)**



참고2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 사례

□ 사례1 - 제품 통관 후 바이어 상담 진행, 수출 진행

- ㅇ (기업개요) 리OOO사는 헤어샴푸, 헤어에센스 미국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함.
- ㅇ (기업애로) 미국 수출 상담을 위해 바이어에 샘플(무상)을 보내려고 하였음. 운송사를 통해 미국 통관시 FDA인증 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신제품이라 FDA 인증이 없는 상태였음.
- ㅇ (지원사항) 전문가용으로 살롱이나 스파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제품이거나 교육용(institutional use), 혹은 무료샘플이나 호텔 편의용품(amenities)의 경우 제품의 라벨링(성분표시, 사용법, 경고문구 등) 규제에서 면제되나 돈을 받고 일반 소비자에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함. 이에 따라 미국 세관 통관 시 무료샘플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통관은 세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 발송 시 제품의 용도와 무료 샘플임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해당제품의 정보를 포함한 인보이스를 동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ㅇ (지원성과) 제품 통관하여 미국 바이어와 상담 진행 중이며, 수출 타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준비 중에 있음. 사업 신청 예정

□ 사례2 - 1381 제공 정보로 유관기관과 협력,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 예정

- ㅇ (기업개요) M사는 일본으로 육아 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하고자 하였음.
- ㅇ (기업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인증과 같이 어린이/유아용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어 일본 내 판매 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음
- ㅇ (지원사항)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부여하는 SG(Safe Goods) 마크에서 유모차와 아기띠가 대상임을 안내하고 임의인증으로써 제조자가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본 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인증임을 고려하여 판매 촉진에 유리함을 안내. 또한, SG마크 획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경로를 첨부하였음. 하지만 유아용품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인증기관이 부재하며 기업 내 해당 언어에 대한 인력이 없어 직접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 ㅇ (지원성과) S-Mark는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으로 2022년 1차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하여 선정 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인증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교육 과정 등을 1381로부터 안내받아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

사 업 명
(8)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37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8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정계량 선진화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하정운	최대현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043-870-5518	043-870-5515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	1849.11	1,517	1,161	1,161	△356	△2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86	1,886	1849.11 [1849.11]	-	36.89	1,517	1,517	1509.04 [1509.04]	1,517	1509.04 [1509.04]		7.96	1,161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4.69	614.69	608.33 [608.33]	-	6.36	581.025	581.025	576.625 [576.625]	581.025	576.625 [576.625]		4.4	581.18
・법정단위정착 홍보	122	122	119.73 [119.73]	-	2.27	-	-	-	-	-		-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45	245	219.55 [219.55]	-	25.45	221	221	217.45 [217.45]	221	217.45 [217.45]		3.55	221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904.31	904.31	901.5 [901.5]	-	2.81	714.975	714.975	714.965 [714.965]	714.975	714.965 [714.965]		0.01	358.82
○ 비목별 분류(합계)	1,886	1,886	1849.11 [1849.11]	-	36.89	1,517	1,517	1509.04 [1509.04]	1,517	1509.04 [1509.04]		7.96	1,161
일반수용비(210-01)	26.6	26.6	26.4 [26.4]	-	0.2	17.4	17.4	17.4 [17.4]	17.4	17.4 [17.4]		-	17.25
임차료(210-07)	7.51	7.51	7.51 [7.51]	-	-	7.51	7.51	7.51 [7.51]	7.51	7.51 [7.51]		-	8
시험연구비(210-13)	874.64	874.64	872.06 [872.06]	-	2.58	684.005	684.005	683.995 [683.995]	684.005	683.995 [683.995]		0.01	328
일반용역비(210-14)	80	80	77.73 [77.73]	-	2.27	-	-	-	-	-		-	-
관리용역비(210-15)	200	200	174.55 [174.55]	-	25.45	176	176	172.45 [172.45]	176	172.45 [172.45]		3.55	176
국내여비(220-01)	13.07	13.07	13.04 [13.04]	-	0.03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	13.57
국외업무여비(220-02)	15.57	15.57	15.21 [15.21]	-	0.36	15.57	15.57	13.42 [13.42]	15.57	13.42 [13.42]		2.15	15.57
사업추진비(240-01)	4.61	4.61	4.6 [4.6]	-	0.0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	4.61
일반연구비(260-01)	120	120	114.01 [114.01]	-	5.99	91.34	91.34	89.09 [89.09]	91.34	89.09 [89.09]		2.25	91
민간경상보조(320-01)	544	544	544 [544]	-	-	506.995	506.995	506.995 [506.995]	506.995	506.995 [506.995]		-	-
민간위탁사업비		-	-	-									507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320-0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86	1,886	1,849.11 [1,849.11]	-	36.89	1,517	1,517	1509.04 [1509.04]	1,517	1509.04 [1509.04]		7.96	1,161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614.69	614.69	608.33 [608.33]	-	6.36	581.025	581.025	576.625 [576.625]	581.025	576.625 [576.625]		4.4	581.18
-임차료(210-07)	7.51	7.51	7.51 [7.51]	-	-	7.51	7.51	7.51 [7.51]	7.51	7.51 [7.51]		-	8
- 국외업무여비 (220-02)	15.57	15.57	15.21 [15.21]	-	0.36	15.57	15.57	13.42 [13.42]	15.57	13.42 [13.42]		2.15	15.57
- 사업추진비 (240-01)	4.61	4.61	4.6 [4.6]	-	0.01	4.61	4.61	4.61 [4.61]	4.61	4.61 [4.61]		-	4.61
- 일반연구비 (260-01)	120	120	114.01 [114.01]	-	5.99	91.34	91.34	89.09 [89.09]	91.34	89.09 [89.09]		2.25	91
- 민간경상보조 (320-01)	467	467	467 [467]	-	-	461.995	461.995	461.995 [461.995]	461.995	461.995 [461.995]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2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122	122	119.73 [119.73]	-	2.27	-	-	-	-	-		-	-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10]	-	-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80	80	77.73 [77.73]	-	2.27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32	32	32 [32]	-	-	-	-	-	-	-		-	-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45	245	219.55 [219.55]	-	25.45	221	221	217.45 [217.45]	221	217.45 [217.45]		3.55	221
- 관리용역비 (210-15)	200	200	174.55 [174.55]	-	25.45	176	176	172.45 [172.45]	176	172.45 [172.45]		3.55	176
- 민간경상보조 (320-01)	45	45	45 [45]	-	-	45	45	45 [45]	45	45 [45]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5
· 계량기·정량표시 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904.31	904.31	901.5 [901.5]	-	2.81	714.975	714.975	714.965 [714.765]	714.975	714.965 [714.765]		0.01	358.82
- 일반수용비 (210-01)	16.6	16.6	16.4 [16.4]	-	0.2	17.4	17.4	17.4 [17.4]	17.4	17.4 [17.4]		-	17.25
- 시험연구비 (210-13)	874.64	874.64	872.06 [872.06]	-	2.58	684.005	684.005	683.995 [683.995]	684.005	683.995 [683.995]		0.01	328
- 국내여비 (220-01)	13.07	13.07	13.04 [13.04]	-	0.03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13.57]		-	13.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계량기 기술기준·지침 개발, 계량공무원/사업자 교육, 불법계량기 신고제도 및 소비자감시원 운영,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과 국제협력 등을 통한 법정계량 제도 관리

- **(법정단위 홍보 및 모니터링)** '평(坪)', '돈'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언론, 사업자 등 모니터링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지자체, 검정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계량기 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계량기·정량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법정계량기(13종) 및 정량표시상품(27종)에 대한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 6, 14, 41, 54, 57, 60, 61, 65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 · 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 · 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 · 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 · 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1961년)

  * 면적의 단위에 대하여 평(坪)단위는 1983년부터 사용을 금지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05)에 따라 법정단위 정착을 추진
  - '07년 7월부터 "평", "돈" 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홍보 부족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홍보·계도(경고) 위주로 추진
  - '10.6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

- "계량제도 선진화 종합계획" 수립(장관/'12.16) : '12년부터 현장 중심의 홍보·계도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나라 법정계량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정계량선진화 추진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추진 및 시행('1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200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400	1,386	1,886	1,517	1,16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계량기 사용 전국민 및 관련 기업, 유관기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5년 예산 산출 내역 : 1,161백만원(전년대비 356백만원 감액, 23.5% ↓)**

ㅇ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24) 581.025백만 → (’25) 581.18백만(0.155백만, 0.027% ↑)**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백만=4건×22.75백만
*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260명×0.4백만
* 불법계량기 신고 제도 운영: 90백만=37.5건×2.4백만
* 소비자 감시원제도 운영: 268백만=200명×1.34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8.18백만
  - 국제회의 참석: 15.57백만(5회×3.114백만)
  - 국제회의 개최: 8백만(1회×8백만)
  - 간담회: 4.61백만(3회×10명×0.153백만)

ㅇ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24) 221백만 → (’25) 221백만(전년대비 동일)**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6백만=1식×176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서비스: 45백만=9,000건×5천원

ㅇ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24) 714.975백만 → (’25) 358.82백만(356.155백만, 49.8% ↓)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 조사: 179.42백만(60종x0.997백만x3개)
*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2명x0.15백만x2개 기관x2일)
  - 출장비: 0.935(2명x0.117백만x2개 기관x2일)
* 사용중인 계량기 오차검사: 28.685백만원
  - 전문가 수당: 16.05백만(4개권역x0.1486백만x3명x9일)
  - 출장비: 12.635백만(4개권역x0.117백만x3명x9일)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백만(2,477품목x5천원x3개+2,477품목x45천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17 백만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581.025백만**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34백만 - 연구 및 조사 용역 : 91.34백만 (일반연구비)4건x22.835백만=91.34백만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 104백만 (민간경상보조) : 260명x0.4백만=104백만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90백만 (민간경상보조) 37.5건x2.4백만=90백만 · 소비자감시원 운영: 267.995백만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267.995백만 (민간경상보조) 153.14명x1.75백만=267.995백만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7.69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 15.57백만 (국외업무여비) 4.91회x3.17백만=15.57백만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7.51백만 (임차료) 1회x7.51백만=7.51백만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4.61백만 (사업추진비) 3.07회x0.15백만x10명=4.61백만 **②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21백만**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176백만 (관리용역비)1식x176백만=176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45백만 (민간경상보조) 9,000건x5천원=45백만 **③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714.975백만**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535.420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535.420백만 (시험연구비) 59.5종x3백만x3개=535.420백만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 (일반수용비) 2명x0.15백만x2개기관x2일 - 출장비: 0.935백만 (국내여비) 2명x0.117백만x2개기관x2일=0.935백만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28.835백만 - 전문가 수당: 16.2백만 (일반수용비) 4개권역x0.15백만x3명x9일=16.2백만 - 출장비: 12.635백만 (국내여비) 4개권역x0.117백만x3명x9일=12.635백만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5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48.585백만 (시험연구비) 2,477품목x5천원x3개+2,477품목x45천원=148.585백만	1,161 백만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581.18백만** · 정책·기술기준·표준·지침 개발: 91백만 - 연구 및 조사 용역 : 91백만 (일반연구비)4건x22.75백만=91백만 · 지자체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104백만 - 교재 제작, 강사료, 임차료, 워크숍 개최 등 : 104백만 (민간위탁) : 260명x0.4백만=104백만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신고센터 운영비, 조사단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 등: 90백만 (민간위탁) 37.5건x2.4백만=90백만 · 소비자감시원 운영: 268백만 - 감시원 수당, 교육, 운영비 등: 268백만 (민간위탁)200명×1.34백만원=268백만 ·국제법정계량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 : 28.18백만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등 국제회의 참석 : 15.57백만 (국외업무여비) 5회×3.114백만=15.57백만 - 일본, 중국 등 양자 협력 회의 개최: 8백만 (임차료) 1회x8백만=8백만 - 국제기구 대응 등 간담회 개최 : 4.61백만 (사업추진비) 3회×10명×0.153백만원=4.61백만 **②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221백만** · 계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DB구축: 176백만 (관리용역비)1식x176백만=176백만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45백만 (민간위탁) 9,000건x5천원=45백만 **③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358.82백만**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179.42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79.42백만 (시험연구비) 60종x0.997백만x3개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 사업자 사후관리: 2.135백만 - 전문가 수당: 1.2백만 (일반수용비) 2명x0.15백만x2개기관x2일 - 출장비: 0.935백만 (국내여비) 2명x0.117백만x2개기관x2일=0.935백만 · 사용중인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28.685백만원 - 전문가 수당: 16.05백만원 (일반수용비) 4개권역x0.1486백만원x3명x9일=16.05백만원 - 출장비: 12.635백만 (국내여비) 4개권역x0.117백만x3명x9일=12.635백만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148.58백만 - 시료구입 및 시험수수료: 148.58백만 (시험연구비) 2,477품목x5천원x3개+2,477품목x45천원=148.58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량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150,000	160,000	165,000	170,000	'24년(정기검사 실시, 짝수해) 목표 대비 3% 증가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주요 메뉴 서비스 접속 건수	계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metrology.kr)
	실적	-	181,662	164,259	170,389	-			
	달성도	-	121%	103%	103%	-			
계량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82.5	84.0	84.4	84.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로 설정	계량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점수	계량 공무원 및 일반인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	84.0	85.9	85	-			
	달성도	-	102%	103%	10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전력량계 프로토콜 권고안 개발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중('21.4~11월)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 sns홍보 : 27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접수/처리 : 50/50**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4개 품목 36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1.000개 제품)**
2022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스마트전력량계 프로토콜 권고안 개발 등 연구용역 3과제 수행 완료('22.4~11월) □ 소비자감시원 운영 및 사전알림 서비스 **• 22개 지역 200여명 활동으로 판매업소 5,000개소 1900여 제품 수검확인** **• 정기검사 안내문 배포(지자체 및 시장상인회 등 1,049개소), 재검정 대상 사업자 SMS 알림** □ 사후관리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 접수/처리 : 158건/행정처분35건(고발 17건, 과태료 11건, 사용중지 7건)**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4개 품목 25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702개 제품)**
2023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OIML Digitalisation 추진에 따른 현황 파악 및 국내 디지털 계량측정기술 대응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4개 과제 수행 ('23.4~10월)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 대학생 법정단위 홍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사후관리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전력량계, 적산열량계 등 등 개 5개 품목 27개 모델**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700여개 제품)**
2024	□ 계량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 개발 • 법정계량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 2개* 과제 수행 - ❶법정계량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 연구,❷국가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전시환경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 법정단위 계도・홍보관련 : 대학생 법정단위 홍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공모전(어린이포스터, 유튜브쇼츠, 수기) 홍보(23,341건) 및 서포터즈(20명) 선발** **• 온·오프라인 법정단위 모니터링(149건), 오프라인 계량기 모니터링(8,948건)** □ 사후관리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실시(시중 유통상품 식품류, 위생용품 등 27종 천여 개 제품)** - 1차 조사(514개) 결과, 총 19개 부적합상품 확인(내용량 미달 4개, 정량 미표기 3개, 표시사항 오기 12개 등) ▶ 2차 조사(총 514개 조사 및 부적합 제품 재조사 중, 최종 결과가 확인되면 품목 담당 부처로 결과 전달 및 사후조치 요청 예정) **• 형식승인 계량기 시판품조사 : 계량기 시판품 시료 수집(온라인/현장구매) 완료** - 수도미터(9), 전력량계(23), 전기차충전기(4), 전기식지시 저울(3)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법정계량의 선진화 기반마련

  ·국제무역, 상거래 및 측정의 기본인 법정계량에 대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 법정단위 사용 정착률 향상을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

  ·법정단위의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언론·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율 향상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과 국제교역 촉진

- 불법·불량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손실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886	1,517	1,161	2,121	2,163	
'24~'28		1,517	1,161	1,752	2,540	1,93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정계량제도 운영**

○ 전세계 나라간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을 결정하는 체계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최근 계량기 산업 실태조사 결과, 법정계량기를 사용한 거래규모는약 700조원으로 추정되며, 모든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산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 필요

* 비자동 저울 534.5조, 주유기 53.3조, 전력량계 55.6조, 가스미터 15.7조, LPG미터 4.7조 등

○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OIML 등 국제기준 대응 및 주요국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 여건 마련

□ **불법·불량 계량기 사후관리 대응체계 강화**

○ 시판품 조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판품 조사 부적합 계량기의 철저한 재조사 및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현장조사단 운영을 확대

□ **비법정단위사용 거래관행 변화를 위해 국가주도의 국민 인식전환을 지속 추진**

○ 정책 인지도 확대하고, 고의성일 경우만 단속을 추진했던 '인치', '파운드' 등 국제적인 비법정단위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홍보 및 단속 정책을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3.4)

- **(평가결과)** : 80점, 사업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및 제도개선 노력 등이 인정되어 보통 이상의 결과로 정상 추진

2) 보조사업 연장평가 ('24.)

- (평가결과) 민간위탁비목으로 전환이 필요

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을 비롯한 내역사업이 국가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으로의 비목전환이 필요하며, 사업의 중단이 없도록 행정처리가 필요함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400	-	1,400	-	-	-	1,400	1342	95.9	95.9	-	58
2022	1,386	-	1,386	-	-	-	1,386	1304.08	94.09	94.09	-	81.92
2023	1,886	-	1,886	-	-	-	1,886	1849	98.03	98.03	-	36.89
2024	1,517		1,517	-	-	-	1,517	1509.04	99.47	99.47	-	7.9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554	554	554	554		554	554	-	-	100
2022	540	540	540	540		540	540	-	-	100
2023	544	544	544	544		544	544	-	-	100
2024	506.995	506.995	506.995	506.995		506.995	506.995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7.9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27.5백만원)
2022	- 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및 행사 취소(24.6백만원),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56.55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36.89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용역 낙찰 차액 등의 집행 잔액(7.96백만원)

□ 2024년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계량에 관한 법률』 요약

❑ **계량**은 **경제활동의 근간**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음



<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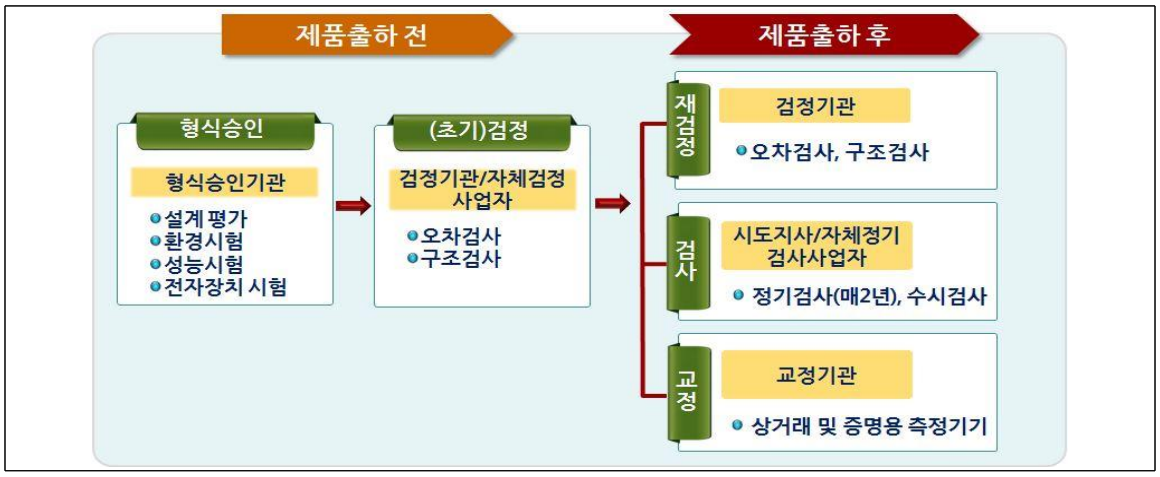
① **(법정단위)** 상거래 기본수단으로 7개 기본단위* 등의 법정단위를 규정하고, 상거래 및 증명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

* m(길이), ㎏(질량), s(시간), K(온도), mol(물질량), A(전류), cd(광도)

② **(법정계량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값의 오차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사전관리(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재검정·정기검사) 의무화

<법정계량기 13종>





< 법정계량기 관리 체계 >

③ **(정량표시상품)** 포장 개봉없이 실제량 확인이 어려운 상품을 법으로 정하여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곡류, 과자류, 육류, 유제품, 음료 및 주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27종



참고 2 계량정보시스템 현황

❑ **(배경)** 전국 지자체 및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계량업무 처리의 체계화**

* 2개의 형식승인, 1개의 검정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에서 계량 관련 정보가 전자·비전자문서 형태로 년간 약 900만건 이상 발생

Before	After
·비체계화 계량업무처리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단절	·업무 체계화 및 계량기의 생애주기 관리체계* 마련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공유

*"최초시험(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재검정) → 폐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



< 계량정보시스템 개념도 >

○ **(법정계량기 관리)** 계량정보시스템(www.metrology.kr)을 통해 승인 및 검정·재검정 등 시험 진행상황과 최종승인 여부 등 계량기 이력정보의 관리 및 공유

* 시스템의 일평균 이용건수: '21(7,624건)→'22(181,662건)→'23(164,259건)→'24(170,389건)

○ **(수입계량기 관리)** 법률로 규정된 수입계량기 형식승인·검정 여부가 통관 단계에서 관리되도록 계량정보시스템과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을 연계

○ **(사전알람)** 계량기 사용자에게 재검정·정기검사 일정 알림을 제공

참고 3 법정계량관련 국제 대응 현황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étrolgie Légale)

○ **(설립목적)** 계량기의 국제적 통일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1955년 24개국이 참가한 프랑스 파리에서 OIML 협약 체결

※ OIML 협약 : Convention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 **회원국 현황**('24년 기준)

- 정회원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3개국, 준회원국은 필리핀, 이란, 북한, 우크라이나 등 64개국
- 우리나라는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1978년 가입

○ **(주요활동)**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통일을 위한 법·제도·기술관련 국제기준 제정 및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

- 상거래, 안전, 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정계량제도 규제 및 개발도상국의 법정계량기관을 지원 등

❑ 아태 법정계량 포럼(APLMF, Asia-Pacific Legal Metrology Forum)

○ **(설립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의 정부 간 회의로, 회원국 간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조화로 기술장벽 해소 및 국제교역 촉진을 위해 1994년 설립

○ **회원국 현황**('24년 기준)

- 정회원국: 20개국(한국, 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 준회원국: 6개국(부르나이,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라오스)

○ **(주요활동)** 아·태 지역 내의 법정계량기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 유지 및 개발 / 법정계량분야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 및 행정 장벽 제거 등

❑ 한·일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1975년 양국의 계량측정분야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한·일 계량계측표준협력위원회」를 구축, 이후 2016년 법정계량중심의 「한·일 법정계량협력위원회」로 전환하여 개최

○ **(추진경위)** 한·일과학기술장관회담에서 위원회 설립 합의('75.8월) / (韓) 공진청 국립공업시험원—(日)공업기술원 계량연구소간 회의('76~' 00) / (韓) 산업부 기술표준원—(日)계량표준종합센터간 회의('01~현재)

○ **(주요활동)** 상설 대화기구로 계량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계량 기술 및 법규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

* 개최방식 : 매년 하반기 짝수년은 우리나라 홀수년은 일본에서 개최

❑ 한·중 계량협력위원회

○ **(배 경)**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양국 간 계량기 교역 증대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등 법정계량분야의 협력 채널 필요에 따라, 2016년 한중법정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

○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간 한·중 계량협력 양해각서 체결하고, 제1회 한중 법정계량협력위원회 회의 개최('16.3월) / (韓)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中)시장관리감독총국(SAMR)간 회의(' 18~현재)

○ **(주요활동)** 계량 및 기술 정보교환 및 R&D 공동 수행, 국제 및 지역별 기구에서의 상호협력 등을 도모

* 개최방식 : 매년 상반기 홀수년은 우리나라 짝수년은 중국에서 개최

참고 4 2024년 계량측정제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중점 추진 목표

-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계량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 미래 모빌리티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계량제도 기반 조성
- ▶ 초격차 계량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 예산확보 추진
- ▶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차단 등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세부 추진계획

1 법정계량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① 계량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
② 계량기 전주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및 국제 표준화 대응

③ 전기차 충전기 국내 기술기준 등 정책 홍보 및 국제 표준화 추진

3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계량 기술 변화 대응

④ 전기차 충전기(전력량계 포함) 기술기준 개정 추진
⑤ 수소차 충전기 법정 계량 제도 기반 고도화

4 초격차 계량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예산('25년) 확보

⑥ 초격차 계량R&D 예산확보를 위한 新 사업 기획 추진

5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⑦ 계량제도 운영 지정기관 사후관리 강화
⑧ 상거래 유통 법정계량기 사후관리 강화
⑨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및 제도 개선
⑩ 시중 유통 저울의 정기검사를 통한 신뢰성 제고
⑪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⑫ 소비자 감시원 활동 강화

6 계량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⑬ 계량산업 종사자 역량 제고 및 협력 강화
⑭ 국민 참여를 통한 법정단위 정착
⑮ 「계량·측정의 날」 정부 포상 및 기념행사 개최
⑯ 계량유물 보존관리 및 중장기 홍보 강화

참고 5 2024년 한국계량측정협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 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원 및 선진 계량기 관리 기반 구축

❑ 추진 방향

- 신고시스템 및 감시원 운영으로 시장감시제도 인식 강화 필요
- 자체검정/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및 민간 자율 감시 체계 활성화 필요

❑ 추진 전략

사업자 자율관리 확산 및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 소비자감시원 운영
▶ 계량검사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

❑ 보조사업 전개 전략

구축단계 (2015년~2017년)	성장단계 (2018년~2020년)	확산단계 (2021년~2023년)	성숙단계 (2024년 이후)
• 시스템 구축 • 전담인력 확보 • 시범사업 운영	• 시스템 운영 • 전문성 함양 • 지속사업 발굴	• 시스템 개선 • 전문성 향상 • 지속사업 확대	• 선진계량제도 정착 • 전담기관 운영 • 계량산업 육성지원

참고 6 법정계량 관련 지정기관 현황

□ 형식승인기관(지정주체 : 중앙부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기관 지정

< 형식승인기관 지정 현황 >

기관명	지정 범위	지정일	비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비자동저울 등 13품목 (전 품목)	'98.5.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2품목	'18.5.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2품목	'23.6.1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지정주체 : 중앙부처)

○ **(검정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개 기관 지정

< 검정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지정 범위	지정일	비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비자동저울 등 13품목 (전 품목)	'91.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2품목	'21.11.2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2품목	'23.6.1	

○ **(자체검정사업자)** ㈜카스 등 **12개 사업자**(계량기 제조업자) 지정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현황 >

사업자명	지정 범위	지정일	비 고
㈜카스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	'15.1.27.	
카스전자(절강)유한공사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	'15.1.27.	
마성계량기시스템㈜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 분동	'16.1.11.	
서창전기통신㈜	전력량계	'16.2.29.	
디와이캘텍 주식회사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	'18.1.25.	
에이.엔.디 전자저울㈜	비자동저울(전기식지시저울)	'18.7.26.	
옴니시스템(주) 목포지점	전력량계	'20.2.17.	
㈜디엠파워	전력량계	'21.7.28.	
㈜위지트에너지 목포지점	전력량계	'22.3.23.	
㈜엘엔에스	비자동 저울	'22.3.23.	
㈜한산에이엠테스테크	전력량계	'22.12.15.	
㈜피에스텍	전력량계	'24.5.27	

사 업 명
(9)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표준정책국	-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박종섭	김영국 연구관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6	
	사업시행주체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박종섭		박정민 연구사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3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표준R&D센터	김단비 위원	02-6240-4584

표준화 실태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김은영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0		043-870-5383
	사업시행주체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이재준	
	사업시행주체		043-870-5380	043-870-5388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표준정책국	박종섭	이보하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1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표준활성화	6,763	6,000	6,278	6,278	278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34	6,834	6,763	-	70.4	6,000	6,000	5,972 [3,862]	6,000	5,972 [3,862]	-	28	6,278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11	1,111	1,076.8	-	34.2	1,088	1,088	1,063	1,088	1,063	-	25	800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4,317	4,317	4,317	-	-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3,524]	-	-	3,978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70	70	64.9	-	5.1	70	70	67	70	67	-	3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국가표준화 혁신생태계조성	356	324.9	324.9	-	31.1	-	-	-	-	-	-	-	-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	-	-	-	-	-	-	-	-	-	-	450
○ 비목별 분류(합계)	6,834	6,834	6,763	-	70.4	6,000	6,000	5,972 [3,862]	6,000	5,972 [3,862]	-	28	6,278
· 일반수용비 (210-01)	86	86	85.5	-	0.5	88	88	87	88	87	-	1	88
· 시험연구비	1,328	1,328	1,328	-	-	1,329	1,329	1,325	1,329	1,325	-	4	1,329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10-13) · 일반용역비 (210-14)	356	356	324.9	-	31.1	-	-	-	-	-	-	-	450
· 국내여비(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여비(220-02)	5	5	4.5	-	0.5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 (240-01)	29	29	28.8	-	0.2	29	29	29	29	29	-	-	29
· 일반연구비 (260-01)	630	630	597	-	33	604	604	584	604	584	-	20	31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0	70	64.9	-	5.1	70	70	67	70	67	-	3	70
· 사업출연금 (350-02)	4,317	4,317	4,317	-	-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	-	3,97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834	6,834	6,763	-	70.4	6,000	6,000	5,972 [3,862]	6,000	5,972 [3,862]	-	28	6,278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111	1,111	1,076.8	-	34.2	1,088	1,088	1,063	1,088	1,063	-	25	800
- 일반수용비 (210-01)	86	86	85.5	-	0.5	88	88	87	88	87	-	1	88
- 시험연구비 (210-13)	348	348	348	-	-	348	348	346	348	346	-	4	348
- 국내여비 (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국외여비 (220-02)	5	5	4.5	-	0.5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 (240-01)	29	29	28.8	-	0.2	29	29	29	29	29	-	-	29
- 일반연구비 (260-01)	630	630	597	-	33	604	604	584	604	584	-	20	317
· 표준개발협력기관지정운영	4,317	4,317	4,317	-	-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	-	3,978
- 사업출연금 (350-02)	4,317	4,317	4,317	-	-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3,862]	-	-	3,978
· 표준화실태조사	70	70	64.9	-	5.1	70	70	67	70	67	-	3	7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0	70	64.9	-	5.1	70	70	67	70	67	-	3	70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시험연구비 (210-13)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356	356	324.9	-	31.1	-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356	356	324.9	-	31.1	-	-	-	-	-	-	-	-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	-	-	-	-	-	-	-	-	-	-	450
-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	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활성화**) 국가표준체계 확립·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 예산으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국가표준활성화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과 기업 지원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표준화 정책연구 등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③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의무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사업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

⑤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및 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현행화 및 이행점검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27조 제2항

> * **제127조**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2.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11.「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개선과제 발표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 및 유사·동일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추진

○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립
: 2023년까지 10대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수립

○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300-60 프로젝트」-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배출 목표

○ 2021.4.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수립 : 2025년까지 유망·생활안전·사회안전 분야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개발

○ 2021.6.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23.4. ‘희토류 표준화 전략’ 수립(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 203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2종 개발, 국제표준 8종 신규 제안 목표

○ 2024.5.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350종 제정 목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6,042	7,024	6,834	6,000	6,27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출연	한국표준협회	3,978	100	산업표준화법 5조3항, 산업표준화법 5조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4) 1,088백만원 → ('25) 800백만원, 288백만원 감액

-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및 국가표준심의를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을 위한 800백만원
- (산출) 80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317백만원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348백만원 + 기타 수용비 여비 등 135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8,258천원** 가. 신산업, 신구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868천원) ・ 발표수당 : 150,000원*10명*9회=13,5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6회=21,870천원 ・ 조정재원 : -502천원 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390천원) ・ 회의수당 : 150,000*10명*14회=21,0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9회=32,805천원 ・ 조정재원 : -415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349,000천원** 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9,000천원) ・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201=349,74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237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 시외 : 120,000원*3명*20분야=4,800천원 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3,720천원) ・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01천원**	8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8,258천원** 가. 신산업, 신구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868천원) ・ 발표수당 : 150,000원*10명*9회=13,5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6회=21,870천원 ・ 조정재원 : -502천원 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390천원) ・ 회의수당 : 150,000*10명*14회=21,000천원 ・ 자료인쇄 : 12,150*60p*5분야*9회=32,805천원 ・ 조정재원 : -415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349,000천원** 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9,000천원) ・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201=349,74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237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 시외 : 120,000원*3명*20분야=4,800천원 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 ・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3,720천원) ・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01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101천원) 가.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 ・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 일비 : $30*7일*2명=546천원($420) ・ 숙박비 : $137*5일*2명=1,781천원($1,370)) ・ 식비 : $59*7일*2명=1,074천원($826) ・ 조정재원 : -1,7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404천원** 1.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100천원 2.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 3.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 ・ 조정재원 : 40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04,000천원** 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604,000천원) ・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제 연구 : 43100000*14개 과제=603,400천원 ・ 조정재원 : 600천원		1.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101천원) 가.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 ・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 일비 : $30*7일*2명=546천원($420) ・ 숙박비 : $137*5일*2명=1,781천원($1,370)) ・ 식비 : $59*7일*2명=1,074천원($826) ・ 조정재원 : -1,7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404천원** 1.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100천원 2.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 3.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 ・ 조정재원 : 40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17,000천원** 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317,000천원) ・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제 연구 : 39625000*8개 과제=317,000천원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24) 3,862백만원 → ('25) 3,978백만원, 116백만원 증액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KS 개발정비를 위한 3,978백만원
- (산출) 3,978백만원 = 고유표준개발 760백만원 + 국제표준부합화 135백만원 + 국가표준정비 2,478백만원 + 기관운영비 405백만원 + 대표기관운영비 20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62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862,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862,000천원) ・ 고유표준개발 : 30종*20,000,000원=600,000천원 ・ 국제표준부합화 : 78종*1,000,000원=78,000천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612종*750,000원=2,709,000천원 ・ 기관별 TC, SC 대응 : 69개*5,000,000=345,000천원 ・ 대표기관운영비 : 1개개관*130,000,000원=130,000천원	3,9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978,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978,000천원) ・ 고유표준개발 : 38종*20,000,000원=760,000천원 ・ 국제표준부합화 : 135종*1,000,000원=135,000천원 ・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305종*750,000원=2,478,000천원 ・ 기관별 TC, SC 대응 : 81개*5,000,000=405,000천원 ・ 대표기관운영비 : 1개개관*200,000,000원=200,000천원

③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24) 70백만원 → ('25) 70백만원, 전년동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화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70백만원
- (산출) 70백만원 = 1,000개업체 X 7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업체=70,000천원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업체=70,000천원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24) 980백만원 → ('25) 980백만원, 전년동

- 불법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를 위한 980백만원
- (산출) 980백만원 = 1.44백만원 X 680개 업체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업체=980,00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업체=980,000천원 • 조정재원 : 800천원

⑤ 민간주도 첨단산업 기반조성

: ('24) 0 → ('25) 450백만원, 순증

- 국가표준역량 결집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정례운영을 위한 450백만원
- (산출) 450백만원 = 포럼총회 240백만원 + 리더십포럼 3회 X 7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 백만원		450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50,000천원** 가. 포럼총회(240,000천원) • 행사운영비 : 90,000천원 • 임차비 : 72,000천원 • 연사수당 : 20,000천원 • 인쇄비 등 : 10,000천원 • 인건비 등 : 48,000천원 나. 리더십포럼(70,000천원 X 3) • 임차비 : 20,000천원 X 3 • 위원수당 : 9,000천원 X 3 • 연사수당 : 3,000천원 X 3 • 운영비 : 5,000천원 X 3 • 포털 유지보수 : 2,000천원 X 3 • 기획홍보 : 5,000천원 X 3 • 전략전문가검토 : 12,000천원 X 3 • 인건비 등 : 14,000천원 X 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단위: %)	목표	75	75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Σ신산업.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수 /Σ국가표준 개발수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실적	76.2	75.3	75.6	-	-			
	달성도	101	100.4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ㅇ 국가표준(KS) 심의('21년 12월 말 기준 KS 21,221종 유효) - 제정 469종 개정 1,641종, 확인 2,878종, 폐지 176종 등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 65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약 16,500여종) 관리 이양 ㅇ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제조기업 대상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조사 (1,000개) ㅇ KS인증제품 시판품 및 현장조사 - 조사건수 661건, 표시/판매정지 41건, 인증취소 27건, 개선명령 43건
2022	ㅇ 국가표준(KS) 심의('22년 12월 말 기준 KS 21,347종 유효) - 제정 356종, 개정 1587종, 확인 3,227종, 폐지 130종 등 ㅇ 한국인 최초 ISO 회장 당선(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으로 국제표준기구 내 표준강국 입지 강화 및 우호국 확보로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22.9)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66개 기관 지정, KS 중 약 80%(17,000여 종) 관리 이양 ㅇ '22년 표준화 실태조사 (22.10~11)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로 표준정책 수립에 활용 ㅇ KS인증제품 시판품 및 현장조사 - 조사건수 635건, 표시/판매정지 60건, 인증취소 9건, 개선명령 121건
2023	ㅇ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23년 12월 기준) - 제정 351종, 개정 832종, 확인 2,439종, 폐지 92종 등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69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16,000여 종) 관리 이양 ㅇ '23년 표준화 실태조사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1,000개) ㅇ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ㅇ 630여개 KS인증업체대상으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2024	ㅇ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등 추진('24년 12월 기준) - 제정 290종, 개정 832종, 확인 2,373종, 폐지72종 등 3,567종 정비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82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9.8%(17,600여 종) 관리 이양 ㅇ '24년 표준화 실태조사 -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 ㅇ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시판품조사 대상 업체(680여개 업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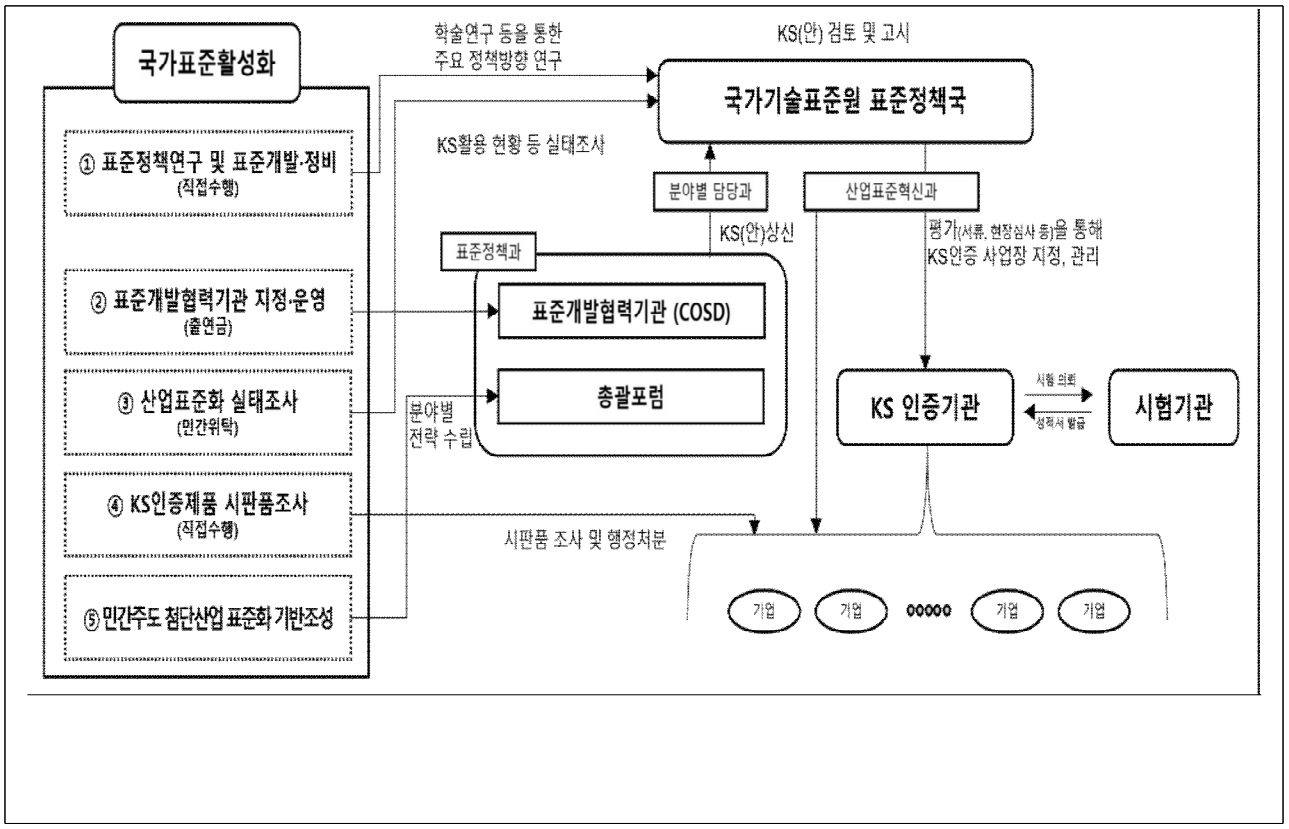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2025	ㅇ 국가표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 제·개정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200회 운영 ㅇ 5개년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을 위한 8건의 학술연구용역 수행 ㅇ 82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가 기대되며, 국가표준 제정 및 현행화(개정, 확인, 폐지) 등 3,478건 정비 추진 ㅇ '25년 표준화 실태조사 : 1,000개 기업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ㅇ 680여개 KS인증제품 대상 시판품조사를 수행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 근절로 국민 안전 확보 ㅇ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年4회 정례운영으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이행 점검 및 12개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 현행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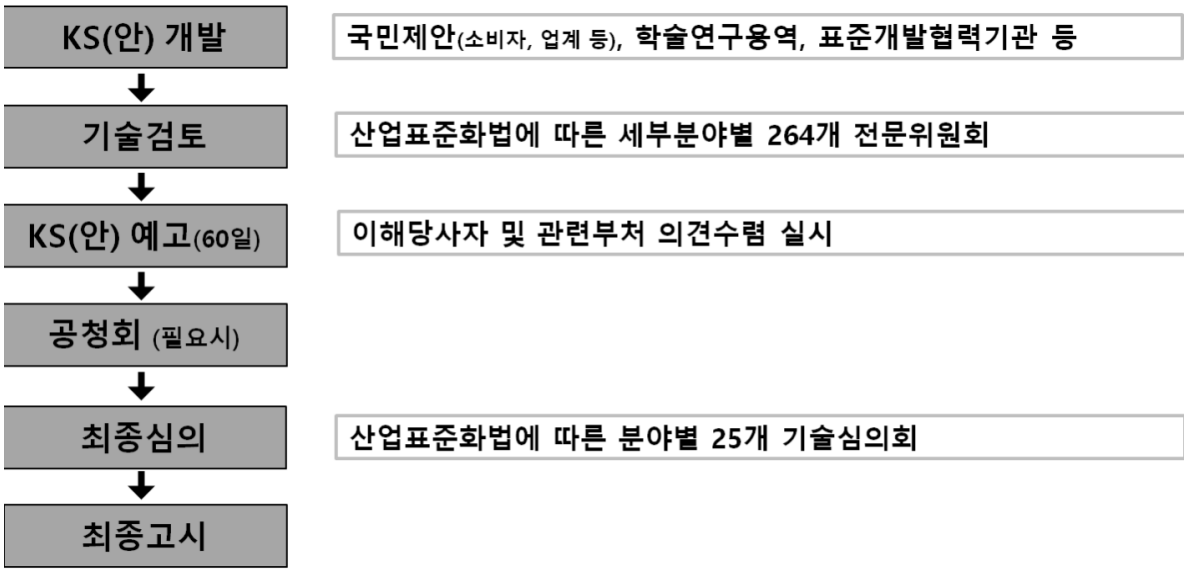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 < KS 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조사대상 품목 선정 등 계획 수립	국가기술표준원
↓	
KS인증 품목 시료 채취	심사원(인증기관 등)
↓	
제품 시험 및 분석	공인시험기관
↓	
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공인시험기관
↓	
부적합 제품 대상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	
행정처분	국가기술표준원

▪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조사기관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	
실태조사 세부 기획	조사기관
↓	
실태조사 수행	조사기관
↓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전문가 위원회
↓	
유관기관 배포	국가기술표준원

▪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일반용역으로 수행>

첨단산업 리더십 포럼	용역공고 및 접수 ▸ 수행기관 선정 ▸ 포럼 운영계획 수립 ▸ 포럼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6,660	6,000	6,278	6,352	6,669	
'24~'28		6,000	6,278	6,352	6,669	7,00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❶ '21년 결산 산중위 ('22)

- (지적사항) 표준화실태조사사업(7,000만원)은 사업출연금(350-02)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실태조사사업 비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것(박수영 위원-시정, 구자근 위원-제도개선)

→ (대응결과) '23년 예산안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반영

❷ '23년 예산안 예결위 ('22)

- (지적사항) 내역사업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9억 3,700만원)의 시험연구비(산업표준심의회 수당 1억 7,400만원)는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횟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7억원 증액 필요(구자근·김경만·노용호·박영순·송기헌·신영대·양금희·이인선·이철규·정운천·정일영·최형두·한무경 위원)

→ (대응결과) '23년 예산 확정시 증액되어 348백만원 반영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고,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집행률 제고 노력을 인정함('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 예산 미집행에 대한 원인분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은 정책용역 등으로 일부 사용을 위해 노력('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한 노력이 확인됨, 추진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사업성과 제고에 기여('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상기 국회 지적사항 내용에 기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본 사업 관련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및 그 내용에 따라 표준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겠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ㅇ 국가표준체계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으로 지속적인 증액 필요 - 국가대표 기술기준인 국가표준*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을 수행 * 全분야 2만여종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 마다 의무적 검토를 통해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절차를 진행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 필요 ㅇ 반도체·디스플레이·AI 등 미래전략기술 및 글로벌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6,042	-	6,042	-	-	-	6,042	5,981	99.0	99.0	-	61
2022	7,135	△111	7,024	-	+80	-	7,104	7,078	100.8	99.6	-	26
2023	6,834	-	6,834	-	-	-	6,834	6,763	98.9	98.9	-	70.4
2024	6,000	-	6,000	-	-	-	6,000	5,972	99.5	99.5	-	2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3,456	3,456	3,456	3,456	-	3,456	3,456	-	-	100
2022	3,932	3,932	3,932	3,932	-	3,932	3,932	-	-	100
2023	4,317	4,317	4,317	4,317	-	4,317	4,317	-	-	100
2024	3,862	3,862	3,862	3,862	-	3,862	3,862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세목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에 비해 국내출장수요 증가, 국외여비 6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61백만원
2022	- 2차추경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고통분담 감액 - 시험연구비(210-13) 66,400천원, 일반용역비(210-14) 43,279천원, 사업추진비(240-01) 1,705천원 - 전용 :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80백만원을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사업의 시험연구비(210-13)으로 전용 80백만원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6백만원
2023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70.4백만원
2024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8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붙임1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1.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 정비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김영국 연구관(☏ 043-870-5346)		

○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심의검토를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고, 표준화 정책 사전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내용

○ (심의회 운영) 국가표준체계 운영의 핵심사항인 국가표준 재개정 심의 등 KS 정비를 위한 260여개의 전문위원회,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정책연구) 국가표준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 연구, 분야별 표준화 정책 및 전략로드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25년 사업계획

○ (심의회 운영) 국가표준(KS)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산업표준심의회 등 총 800여회 운영 계획

- '25년 심의회 요구예산(348백만원)으로 200회 운영이 가능하며, 부족한 수당은 국표원 기본경비 등 다른 예산 활용이 불가피

* (참고자료) 최근 4개년 전문위원회 및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건수 및 예산 현황

구분	'20	'21	'22	'23
심의회 개최 건수	536	678	710	807
편성 예산(백만원) (A)	348	348	348	348
집행 예산(백만원) (B)	633.9	842.4	885.5	1,025.3
초과예산(백만원) (B-A)	285.9	494.4	537.5	677.3

○ (정책연구) 5년 도래 법정계획인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등 학술연구용역 추진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 운영

□ 사업개요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043-870-5343)		

○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고 운영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사업내용

○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생태계 운영

○ (추진체계) 사업총괄(국표원) - 대표협력기관(한국표준협회)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협력기관 지정(대한전기협회 등 80여개 기관)

- (대표협력기관) 협력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등 실무 전담
- (협력기관) 국가표준(KS) 제정 및 정비(개정·확인·폐지 등) 수행

□ '25년 사업계획

○ (기관운영) 대표협력기관 및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 (표준개발) 총 3,478건 표준 제정·정비 목표

- 중점 표준화 분야(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12대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산업계 표준수요를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 적기개발

○ (성과공유) 표준화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25.12)

3. 표준화 실태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은영 주무관 (☏ 043-870-5383)		

○ 정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 실시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0조의2(실태조사)

□ 사업내용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25년 사업계획

○ (국가표준 현황조사) 표준활용 기업, 활용표준 종류, 표준화 활동 등

○ (단체표준 현황조사) 단체표준 제개정 현황, 인증기업, 인증활용현황 등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1,000여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 (모집단) 10인 이상 제조업*(약7만개사) 중 표준 1,000개사

*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펄프·종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종 24개 분야

■ ' 24년 실태조사 시사점

① 비대면화 ·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표준보급 서비스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② 국제표준 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진 필요

③ 인증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표준 · 인증 분야 산업계 참여 확대 기획 추진

④「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초 통계 확보

4.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이재준 사무관(☏ 043-870-5388)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 등에서 채취한 KS 제품의 표준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판매정지 등 처분

-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판품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직접 주관·실시

□ '25년 사업계획

○ (조사계획) 66개 KS인증 품목, 68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 실시

- 중점관리 품목(레미콘, PVC/PE관, LED 조명), 일반관리 품목(배선용 꽂음접속기 등) 등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조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 발생품목에 대해서 수시조사 실시

-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 업체의견 접수·검토 및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실시

5.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2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보하 연구관(☏ 043-870-5341)		

○ 미·중 등 첨단산업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화전략을 검토하는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의 정례운영(年4회)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임채민 前장관 등 사회 각계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표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표준 전략의 검토 확정

〈국가표준화전략 수립배경 및 내용〉

○ 첨단산업분야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23.5, 백악관) 등 주요국은 '국가표준화전략' 발표 → 미, 중, 일 등은 공통적으로 표준 역량 집중을 위해 '민간의 표준개발 참여확대 및 정부-민간 표준소통 강화'에 주력

○ 우리정부도 정부-민간 표준소통 강화 및 민간 표준개발 참여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포럼'을 구성하고, AI, 반도체 등 12개 첨단분야 표준화로드맵을 포함한 韓국가표준화전략 발표('24.5)

- (韓 국가표준화전략)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250건 개발, KS 400여건 보급

□ '25년 사업 계획

○ 매 분기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되, 1분기는 포럼총회로 개최

- (1분기) 리더십 포럼 활동계획 검토·수립, 국가표준화 전략 전년 이행실적 점검 및 '25년도 계획 확정
- (2분기) 첨단산업 표준화 로드맵(6개) 현행화 및 산업분야별 홍보 방안 논의
- (3분기) 12개 첨단산업 분야 중 미검토한 6개 분야 로드맵 현행화
- (4분기) 표준화 이행실적 점검

사 업 명
(10)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37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노학엽 연구관	이진구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7	043-870-5482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김병억 센터장	070-5223-1392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권영상 센터장	02-6240-463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6,332	4,760	3,818	3,818	△942	△1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45	6,345	6,332 [6,332]	-	13	4,760	4,760	4,755 [4,755]	4,760	4,755 [4,755]	-	5	3,818
· 부정행위 조사센터 운영	300	300	292 [292]	-	8	300	300	295 [295]	300	295 [295]	-	5	400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250	1,250	1,250 [1,250]	-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	1,100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양성	320	320	317 [317]	-	3	-	-	-	-	-	-	-	-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3,725	3,725	3,725 [3,725]	-	-	2,785	2,785	2,785 [2,785]	2,785	2,785 [2,785]	-	-	1,718
·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750	750	748 [748]	-	2	550	550	550 [550]	550	550 [550]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6,345	6,345	6,332	-	13	4,760	4,760	4,755 [4,755]	4,760	4,755 [4,755]	-	5	3,818
· 일반연구비 (260-01)	225	225	220	-	5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550	550	550	-	-	550	550	550 [550]	550	550 [550]	-	-	6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292	-	-	300	300	295 [295]	300	295 [295]	-	5	400
· 사업출연금 (350-02)	5,270	5,270	5,270	-	8	3,910	3,910	3,910 [3,910]	3,910	3,910 [3,910]	-	-	2,818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345	6,345	6,332 [6,332	-	13	4,760	4,760	4,755 [4,755]	4,760	4,755 [4,755]	-	5	3,818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	300	292 [292]	-	8	300	300	295 [295]	300	295 [295]	-	5	4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292 [292]	-	8	300	300	295 [295]	300	295 [295]	-	5	400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250	1,250	1,250 [1,250]	-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	1,100
-사업출연금 (350-02)	1,250	1,250	1,250 [1,250]	-	-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	-	1,100
・시험인증산업 현황 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320	320	317 [317]	-	3	-	-	-	-	-	-	-	-
-일반연구비 (260-01)	25	25	22 [22]	-	3	-	-	-	-	-	-	-	-
-사업출연금 (350-02)	295	295	295 [295]	-	-	-	-	-	-	-	-	-	-
・항바이러스 국제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3,725	3,725	3,725 [3725]	-	-	2,785	2,785	2,785 [2,785]	2,785	2,785 [2,785]	-	-	1,718
-사업출연금 (350-02)	3,725	3,725	3,725 [3725]	-	-	2,785	2,785	2,785 [2,785]	2,785	2,785 [2,785]	-	-	1,718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750	750	748 [748]	-	2	550	550	550 [550]	550	550 [550]	-	-	600
-일반연구비 (260-01)	200	200	192 [192]	-	2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550	550	550 [550]	-	-	550	550	550 [550]	550	550 [550]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 시험인증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역량을 제고하고, 부정성적서 발행·유통·사용을 방지하여 적합성평가체계 신뢰성 강화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제품·서비스의 안전기준, 성능 미달 사례 등 부정 성적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적합성평가*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자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운영

* 적합성평가 : 제품·서비스·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시험, 검사, 인증 등의 활동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미래 유망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개발(기반 조성, 공인성적서 발행 등)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함

*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안전과 수출기업 및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

-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단일제품에 관리부처 및 목적이 다른 다수의 인증 취득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시간·비용)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부정 또는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 산업표준화법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01.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04. : '2015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18.09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규제혁신 방안으로 'LED제품 인허가 간소화 과제' 채택
- '20.0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포
- '20.05.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관련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지원 검토
- '21.04.0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시험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 '21.05.18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한국제품안전관리원)
- '21.07.29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및「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개최 (산업부장관 주관)
- '22.09.15 :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22. :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제품군 확대(총 22개 제품군)
- '22. : '22년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7개 과제 지원
  * ①감염병 예방 개인 보호구 시험인증 서비스,
    ②정온유통(콜드체인) 설비 시험인증 서비스,
    ③척추용 임플란트의 성능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④인체 착용형 IoT 융합 제품의 사용 환경 내구성 시험인증 서비스,
    ⑤태양광 경보등의 안전 및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
    ⑥테스트 해머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강도 추정 시험인증 서비스,
    ⑦국제상호인정이 가능한 항만안전시설 시험인증 서비스
- '23.05 : 항바이러스 민간 인증시스템 구축 및 제품인증 시범운영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5,595	6,345	4,760	3,81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위탁,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민간위탁), 한국표준협회(보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출연/전담기관)
- 사업 수혜자 : 적합성평가기관 및 사업자, 일반 국민(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출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100백만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1,718백만원	8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보조	한국표준협회	60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24) 300백만원 → (’25) 400백만원

- ‘적합성평가관리법’(’21.04.08 시행)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업자의 부정성적서 발행·유통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획·특별조사 등 직권조사 기능 강화 등 부정행위 조사 활성화 필요
- (산출)
  - 조사센터인건비 : 20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57.1%
  -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0.1백만원×3명×50회
  -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105백만원
    = 현장조사 30백만원(0.3백만원×2명×50회) + 자문회의 75백만원(0.3백만원×5명×50회)
  - 시험수수료 : 25백만원 = 1백만원×25회
  -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55백만원

②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24) 1,125백만원 → (’25) 1,100백만원

-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시험인증서비스 기반이 미약하거나 없는 유망분야의 시험절차서, 치공구(지그)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 (산출)
  - 과제수행비 : 1,071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3백만원(지원금액)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9백만원

③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24) 2,785백만원 → (’25) 1,718백만원

- 항바이러스 제품의 초기 기능성 뿐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인증기준 및 기반을 구축하여 생활제품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산출)
  -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94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21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4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유효성 검증 150백만원(50백만원x3품목) + 지속성 국제기반 마련 135백만원
  - 시험인프라 구축 : 735백만원 = 3품목 x 350백만원 x 70%(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원율)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38백만원

④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 (’24) 550백만원 → (’25) 600백만원

- 단일품목 다수인증 취득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원스톱처리 플랫폼(다수인증 지원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
- (산출)
  -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60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50백만원(25품목x10백만원) + 전문창구 운영 200백만원(8개기관x25백만원)
    + 다수인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15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6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550백만원** 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550백만원) ・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55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00백만원=25품목x8백만원 + 센터운영지원 230백만원=6개기관x38.5백만원 +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 12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00백만원** 가.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백만원) ・ 조사센터인건비 : 15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42.8% ・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 = 0.1백만원×3명×50회 ・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84백만원 = 현장조사 24백만원=0.3백만원×2명×40회 + 자문회의 60백만원=0.3백만원×5명×40회 ・ 시험수수료 : 20백만원 = 1백만원×20회 ・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3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910백만원** 가.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25백만원) ・ 과제수행비 : 1,103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7.6백만원(지원금액)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2백만원 나.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2,785백만원) ・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1,700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 40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 750백만원(150백만원x5회) + 시범운영 : 550백만원(11품목x5회x10백만원) ・ 시험인프라 구축 : 1,050백만원(5품목x300백만원x70%)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35백만원	3,818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00백만원** 가.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600백만원) ・ 다수인증 지원센터 운영 : 600만원 = 원스톱처리 서비스 250백만원=25품목x10백만원 + 전문창구 운영 200백만원=8개기관x25백만원 + 다수인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150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0백만원** 가.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300백만원) ・ 조사센터인건비 : 200백만원 = 35백만원 x 10명 x 57.1% ・ 조사센터출장비 : 15백만원 = 0.1백만원×3명×50회 ・ 외부전문가 조사수당 : 105백만원 = 현장조사 30백만원=0.3백만원×2명×50회 + 자문회의 75백만원=0.3백만원×5명×50회 ・ 시험수수료 : 25백만원 = 1백만원×25회 ・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 : 55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818백만원** 가.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1,100백만원) ・ 과제수행비 : 1,071백만원 = 7개(과제선정 수)x153백만원(지원금액)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29백만원 나.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구축 (1,718백만원) ・ 민간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945백만원 = 운영체계 마련 : 210백만원 + 인증기준 마련 : 4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유효성 검증 : 150백만원(150백만원x3품목) ・ 시험인프라 구축 : 735백만원(3품목x350백만원x70%) ・ 사업관리비(기획평가관리비) : 3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OLAS 인증 시험절차서·시험성적서 발행 (단위 : 건)	목표	-	7	7	7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시험절차서 및 기술로드맵 개발 또는 시험성적서 발행 과제 수	시험절차서 및 성적서 발행 과제 집계 (수행기관)
	실적	-	7	진행중	진행중	-			
	달성도	-	100	-	-	-			
유망시험서비스 교육·세미나 개최 (단위 : 건)	목표	-	7	7	7	7	당해연도 선정과제 수 7개	신규 개발 유망시험서비스 관련 산업계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과제 수	개발 시험서비스 교육·세미나 개최 과제 집계 (수행기관)
	실적	-	7	진행중	진행중	-			
	달성도	-	100	-	-	-			
시험인증 기관 채용 인원* (단위 : 명)	목표	-	15	15	-	-	-	시험인증 기초인력 채용연계 인원수	교육수료자에 대한 채용확인서 (수행기관, 채용기관)
	실적	-	15	21	-	-			
	달성도	-	100	140	-	-			

* 시험인증산업 현황파악 및 기초인력 양성 24년 이후 예산 미반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실내 유입 (초)미세먼지 차단망 성능평가개발」등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관련 시장 창출에 기여('14~'21 동안 총 28개 시험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22년도 15건 접수·처리 * 부실·부정 성적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소비자) 보호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발전사*와 부정·부실 시험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 MoU 체결 *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다수인증 지원센터 개소 운영 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6개소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본·심화 상담 및 인증 취득 시나리오 제공
2023	- 「인체 착용형 IoT 융합 제품의 사용 환경 내구성 시험인증 서비스」등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관련 시장 창출 기여('14~'22 동안 총 35개 시험 서비스 개발)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운영, '23년도 23건 접수·처리 - 적합성평가기관 및 성적서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2회) -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충 및 온라인 플랫폼 개시 (오프라인) 전국 기업 대상 다수인증 제품 관련 인증제도 안내, 상담, 기술지도 등을 위한 다수인증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통합창구 11개소, 전문창구 7개소) (온라인) 다수인증 온라인 플랫폼 개시('23.7월~, 누적방문 8,703건)를 통해 온라인 상담(1,055건), 다수인증 시나리오 생성(967건) 등 다수인증 지원 서비스 제공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대상으로 부정행위 조사센터를 운영하여 신뢰성* 확보

* 부정성적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 방지

▪ **(산업 및 소비자 지원)** 신수요 시험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상용화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움

* 시장출시와 유통 촉진 및 국제 상호인정 성적서를 통한 수출 지원

▪ **(국민 안전 확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민간 국제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신뢰도 및 국민 안전 확보

▪ **(인증업무 지원)** 한제품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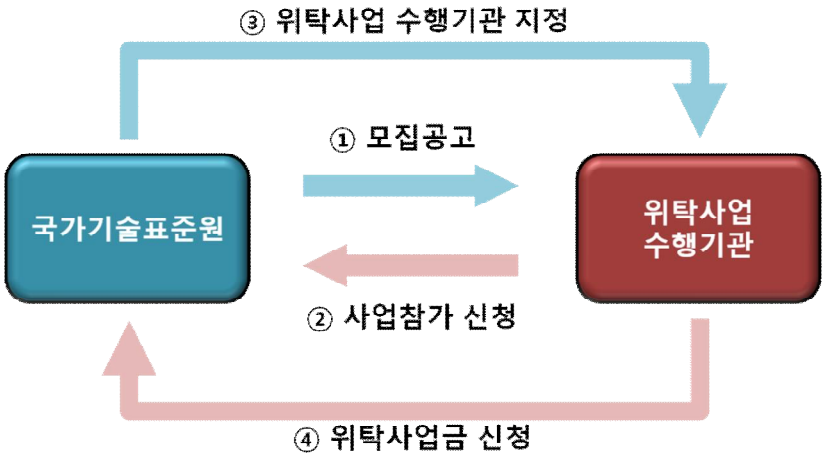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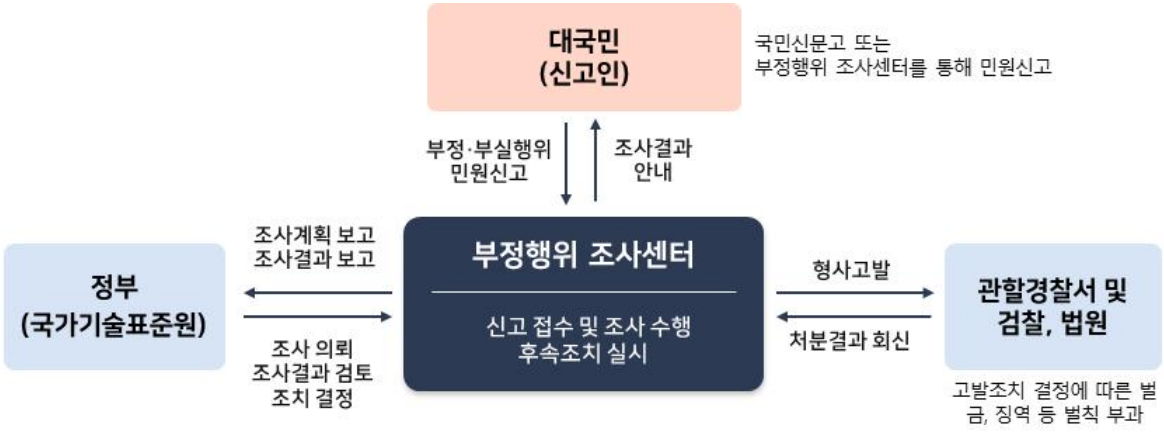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 (320-02)민간위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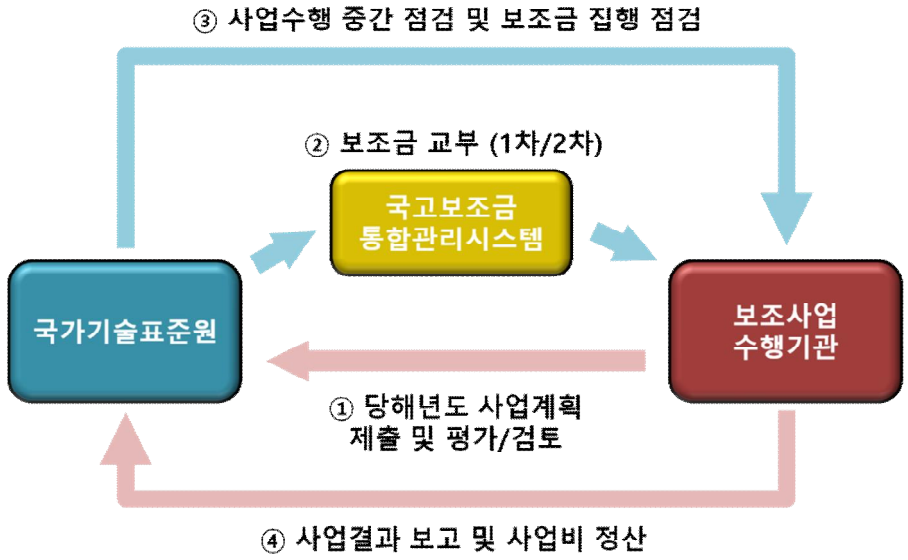
-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체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400백만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400백만원)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400백만원)	-	-

□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 (320-01)민간경상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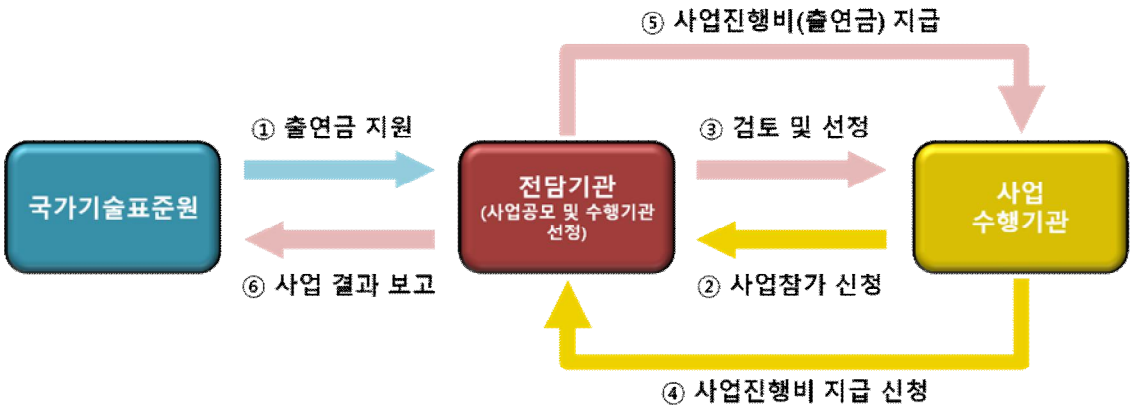


부처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600백만원)	=> (60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600백만원)	-	-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 (350-02)사업출연금



부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2,818백만원)	=> (2,818백만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818백만원) *사업관리비 67백만원	=> (2,751백만원)	수행기관 (2,751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6,345	4,760	3,818	8,637	7,279	
'24~'28		4,760	3,818	7,137	7,279	7,6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부정행위 조사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방안 및 센터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예결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센터 조사범위가 확대되었고 적합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산중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신기술 개발 증가에 따른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성 강화 및 신기술 및 제품의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20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부정행위 조사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신고제도 교육, 설명회 개최 및 다매채 홍보 활용

-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필요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

○ '24년 및 '25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 조사범위 확대 등 적합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신기술에 대한 시험인증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지속 추진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통해 허위인증 및 부정성적서 등을 근절하여 적합성평가 신뢰성 제고 추진
- 4차산업의 도래로 인한 신제품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분야 시험인증서비스 선제적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설계를 통한 시험·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항바이러스 제품·성능에 대한 인증체계 고도화(실증체계 마련) 및 안정화 추진
-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완화 지원 서비스를 기존 통합인증 간접 지원 중심에서 인증업무 대행 등으로 직접지원 기능 확대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ㅇ '적합성평가관리법'을 기반으로 시험인증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 성적서 발행을 방지하여 신뢰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21.04.08)에 따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의 업무 확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직권조사 등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조사인력 참여율 및 조사확대 필요

ㅇ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분야, 미래 유망한 기술 등이 시장진출 및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시험인증서비스가 적기에 적합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필요

- 다양한 법적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용품에서부터 첨단산업분야 까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기반구축 등을 위한 꾸준한 지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5,595	-	5,595	-	-	-	5,595	5,587	99.9	99.9	-	8
2023	6,345	-	6,345	-	-	-	6,345	6,332	99.8	99.8	-	13
2024	4,760	-	4,760	-	-	-	4,760	4,755	99.9	99.9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	-	-	-	-	-	-	-	-	-
2022	5,245	-	5,245	5,245	-	5,245	5,245	-	-	100
2023	5,820	-	5,820	5,820	-	5,820	5,820	-	-	100
2024. 12월 말	4,460	-	4,460	4,460	-	4,460	4,46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해당없음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사업의 조달청 계약과정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8백만원 발생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등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13백만원 발생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부정행위조사센터 운영' 등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 5백만원 발생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적합성평가의 정의 및 종류**

□ 적합성평가의 정의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

- ❶제품출시를 위한 성능검증, ❷국민안전, 환경 등 정부정책 이행, ❸R&D 성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



○ **신뢰성이 핵심요소**로, 부정·부실시험 등이 있을 경우 ❶소비자 피해 발생, ❷성능 및 안전 미확보, ❸시험·인증 자체의 공신력 상실 우려

□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성평가**에는 시험·검사·교정·인증 등이 있으며, **적합성평가기관**이라 함은 교정기관·인증기관·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함



참고 2 「적합성평가관리법」 주요내용

1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2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3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 >

○ (1장)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장) 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업무,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조사)

○ (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인정기구, 정기검사, 인정취소, 과징금)

○ (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강화 지원(실태조사,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의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 (5장) 보칙(자료요구 및 검사, 청문, 권한 위임·위탁)

○ (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참고 3 부정행위 조사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부정성적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제품·서비스의 성능·안전 미확보, 성적서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정성적서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제도 필요

< 참고 : 부정·부실행위 사례>

◇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 인증등급 96% 부실 ('19.5.3., 동아일보 등)

- 감사원 조사결과 시공업체 A는 공인 받지 않은 기관에서 발급한 '허위성적서'를 제출, 시공업체 B는 품질 시험성적서 위조했으나 인정기관이 성능인정서 발급

◇ 원전 납품 발전차 성적 조작해 66억 챙겼다. ('20.12.30., 조선일보)

- C사는 한수원이 발주한 비상용발전차 4대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성적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법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법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부정행위 조사를 이행하고 부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조치 이행

<조사추진 순서>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조사 이행	⇨	결과 보고서 검토	⇨	자문위 검토	⇨	결과 확정	⇨	처벌·공표

참고 4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참고 자료

□ 사업 목적

○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기반 조성, 공인성적서 제공 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의 **조기 산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 객관적인 제3자가 표준 혹은 안전기준에 기반한 시험·인증 평가 결과를 제공

< 그간 사업 추진 성과 >

○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시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과 더불어 관련 시장 창출에 기여('14~'22년 동안 총 35개 시험서비스 개발)

- ('23) 인공지능(AI)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서비스(KTR) 등
- ('22) 감염병 예방 개인보호구 시험인증 서비스(KOTITI) 등
- ('21) 치과용 임플란트의 피로성능 시험인증 서비스(KTL) 등
- ('20) 소형 무인동력 비행장치 배터리 수명시험 서비스(KTL) 등

□ 사업 주요내용

○ **(과제 내용)** ❶ 과제 발굴 → ❷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 ❸ 보급·확산

* '23년 사업의 경우 65건의 기술수요가 발굴되었고 그 중 7건이 최종 개발 과제로 선정(과제당 1.75억원 이내/1년)

❶ **(과제발굴)** 시험인증기관, 제조·서비스 기업, 학계·연구계 등 시험인증 분야 기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❷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시험방법(절차서) 개발,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인증 기반 조성, KOLAS 인정 획득 및 공인성적서 발급 서비스 제공 등

목표	내용
기반조성	시험인증 서비스를 위한 시험장비 구축, 국제표준 기반 시험방법 개발, 전략수립 등 시험인증 기반조성
공인성적서 발급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 절차서 개발, KOLAS 인정 획득을 통한 공인성적서 발급 등

❸ **(보급·확산)** 시험 서비스에 대한 교육·세미나 개최 및 현장 기술지도 등

참고 5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구축지원 참고자료

□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신뢰성 있는 방역제품 및 이에 대한 인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대두

- 그러나, 국내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인증은 부재

  * 현재 출시되고 있는 손소독제, 항균마스크, 항균필름 → 섬유제품, 생활가전용품 및 벽지·페인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사용되는 제품군으로 점차 확대 예상

○ 국제 민간인증체계구축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민 안전확보, 국내 수출기업 지원

- **(연차별 추진현황)** (22년)인증체계 설계→(23년)실증체계 마련→(24년)안정화

□ 주요 사업내용

○ 항균필름 등 표면방역제품에 대한 항바이러스 민간 인증체계 수립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요청

  * ❶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❷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❸ 기획평가관리비

-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국제표준 기반의 항바이러스 생활용품 민간 인증제도를 확립하고 대상 품목범위 확대 및 시범운영

-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품목별 특화된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인프라 마련

□ 기대효과

○ 바이러스 전파·확산으로부터 ❶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❷수출기업과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 제고

- **(소비자)** 항바이러스 인증마크를 통해 신뢰성 있는 K-방역 생활용품 구별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 제품의 오남용 방지

- **(기업)** K-방역 생활용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을 지원

- **(시험인증기관)** 세계시장에서 항바이러스 시험인증서비스 시장 선점

참고 6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운영 참고자료

□ 배경 및 현황

○ 한 제품에 대해, 관리부처 및 목적은 상이하나 인증 방법, 시험 항목 등이 유사한 인증들이 존재하여 기업의 부담(시간·비용) 발생

* 다수인증 예시 : LED조명 제품 관련 7개 인증제도는 시험내용 및 방법 유사·중복
(의무) KC안전, KC전자파, 효율등급 (임의) KS, 고효율, 녹색, 환경표지

- 이에,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사업을 추진·이행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9월)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채택되
('19년도) 시범사업 → ('20~'24년도) 사업 확대, 본사업 수행 중

<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품목 현황 >

개발연도	제품군명(세부제품 수)	제품군 수
`19년	LED조명(14)	1개
`20년	펌프(10), 가구(7), 창호(5), 수도꼭지(20), 전선(6)	5개
`21년	환풍기(2), 조명(2), 꽂음접속기(2), 플라스틱 기타 배관(4), 도료(4), 차단기(4), 밸브(2), PE배관(3), 문세트(5), 생활가전(2), 위생도기(2), 전선관(2), 무정전전원장치(4), 생활용품(3)	14개
`22년	스마트LED조명(2), 체육시설바닥재(2)	2개
`23년	전기차충전기(2), 영상감시장치(4), 공기청정기(1)	3개
합계	**25개 제품군(114개 세부제품)**	

□ 사업 주요내용

① 다수인증 서비스 품목 전문상담사 양성,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 25개 제품군에 대하여 '다수인증 기업지원 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접근성·편의성 제고
- 다수인증 품목 서비스 매뉴얼을 통한 상담사 양성으로, 기업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및 시나리오 제공) 역량 강화

② 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 방안 수립

-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기능 확대 등의 사업 고도화 방안 추진

→ 다수인증 품목 외에도 일반 제품군 인증정보 통합 제공 가능한 포괄적인 지원 플랫폼으로의 확대 방안 등 추진

사 업 명
(11)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R&D)(3731-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0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기술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	김낙현 연구사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0	-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바이오안전산업 본부	장동규 수석	053-718-835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	5,208	2,788	4,425	4,425	1,637	58.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08	5,208	5,208 [5,208]	-	-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	-	4,425
· 제품안전기준및 평가기법개발	3,183	3,183	3,183 [3,183]	-	-	1,668	1,668	1,668 [1,668]	1,668	1,668 [1,668]	-	-	2,545
· 제품안전성향상기반조성	2,025	2,025	2,025 [2,025]	-	-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	-	1,88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5,208	5,208	5,208 [5,208]	-	-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	-	4,425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5,208	5,208	5,208 [5,208]	-	-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	-	4,425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	-	-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08	5,208	5,208 [5,208]	-	-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2,788]	-	-	4,425
· 제품안전기준및 평가기법개발	3,183	3,183	3,183 [3,183]	-	-	1,668	1,668	1,668 [1,668]	1,668	1,668 [1,668]	-	-	2,545
-연구개발활동비 (360-05)	3,183	3,183	3,183 [3,183]	-	-	1,668	1,668	1,668 [1,668]	1,668	1,668 [1,668]	-	-	2,545
· 제품안전성향상기반조성	2,025	2,025	2,025 [2,025]	-	-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	-	1,880
-연구개발활동비 (360-05)	2,025	2,025	2,025 [2,025]	-	-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1,120]	-	-	1,880
· 기획평가관리비	-	-	-	-	-	-	-	-	-		-	-	-
-기획평가관리비 (360-06)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사고 및 소비자요구, 시장환경 등으로 출시되는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제품 안전성향상 기반 조성 등 R&D 사업 지원

-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융복합 신기술 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제품 평가기법 개발

-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의 제품 위해정보에 대한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안전성 시험·평가 등의 플랫폼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10.2.4), 시행('11.2.5)
- '11. 1월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병합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14.6.3), 시행('15.6.4)

- ’16. 1월 :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재기획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12.1.)
- ’18. 1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으로 재기획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7.17)
- ’20.12월 :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종료
- ’21. 4월 :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으로 재기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 ‘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5,826	6,690	5,208	2,788	4,4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2,545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 조성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880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24) 1,668백만원 → (’25) 2,545백만원, 877백만원 증액

- 제5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및 정부시책을 반영하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현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을 감안한 예산

- (산출) 14개 과제 x 181.8백만원 x 12/12개월 = 2,545백만원

ㅇ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68백만원	9개 과제 x 185.3백만원 x 12/12개월	2,545백만원	14개 과제 x 181.8백만원 x 12/12개월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 (’24) 1,120백만원 → (’25) 1,880백만원, 760백만원 증액

-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안전 플랫폼개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감안한 예산

- (산출) (4개 과제 x 337.5백만원 x 12/12개월 = 1,350백만원) + (3개 과제 x 176.7백만원 x 12/12개월 = 530백만원)

ㅇ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0백만원	3개 과제수 x 240백만원 x 12/12개월 2개 과제수 x 266.6백만원 x 9/12개월	1,880백만원	3개 과제수 x 176.7백만원 x 12/12개월 4개 과제수 x 337.5백만원 x 12/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안전기준(안) 개발건수(건)	목표	신규	7	8	10	12	중기계획상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업비 대비 매년 20% 상향된 목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안) 개발 건수	융복합신기술제품안전기술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과제 조사(성과분석 통계자료 또는 최종보고서)
	실적	-	7	8	10	-			
	달성도	-	100	100	100	-			
안전기준(안) 채택율(%)	목표	신규	14	20	20	20	'21'~23년 3개년 안전기준(안) 채택율 평균 18% 보다 상향된 목표	(개발된 안전기준(안) 중 당해년도 제·개정 고시건수/안전기준(안) 개발건수)×100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14.3	22.2	-	-			
	달성도	-	102.1	125	-	-			
제품안전정보 일일 평균 이용 건수(건)	목표	신규	277,078	304,786	335,264	368,791	'24년 목표치에서 10% 상향조정	제품안전정보포털 일일 평균 접속건수 + 일일 평균 제품안전정보 이용(Open API) 건수	제품안전관련 통계자료
	실적	-	302,535	390,287	415,239	-			
	달성도	-	109.2	128.1	123.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0	-
2021	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4,146백만원 반영) - '융복합신제품 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위해관리 및 위해성 평가 방법 개발' 등 15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3,146백만원)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rack Lighting System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등 5개 자유공모 과제 수행 (1,000백만원)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500백만원 반영) - '제품사고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사체계 기반조성' 등 5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1,500백만원)
2022	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4,190백만원 반영) - '전기차 사용후전지의 내부 이력정보를 활용한 평가기법 개발' 등 31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3,146백만원)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500백만원 반영) - '기업자율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기반조성' 등 6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1,500백만원)
2023	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3,183백만원 반영) - '안전한 전기용품 제조를 위한 시험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22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3,183백만원)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2,025백만원 반영) - '제품사고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사고조사 프로세스 고도화' 등 10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2,025백만원)
2024	①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1,668백만원 반영) - '융복합 어린이용 승용제품 대상 안전기준 개정(안) 수립' 등 10개 품목지정 과제 수행 (1,668백만원) ②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1,120백만원 반영) - '제품안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통합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9개 지정 공모 과제 수행 (1,120백만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품안전 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을 연간 8건 이상 개발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에 대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 기대
- 산업·기술의 발전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현하는 융복합 신기술 제품과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제품의 안전 기준·평가기법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안전 사고 예방

○ 제품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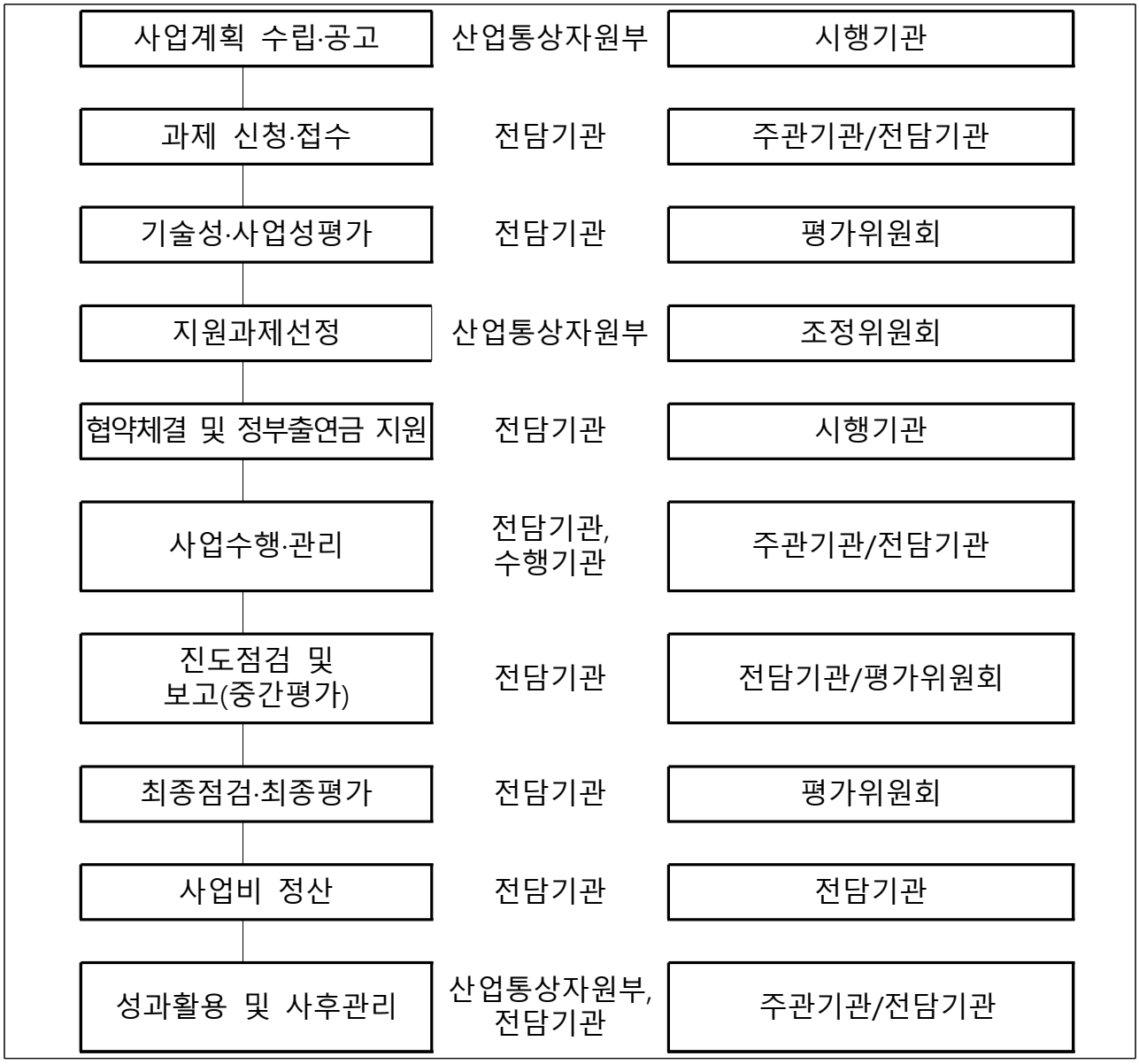
- 제품사고조사체계 기반, 실시간 제품안전관리 기반 및 제품위해도 평가센터 플랫폼 기반조성 등 연간 4건 이상 개발하여 국민 생활안전 관리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등 내역 사업 동일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5,208	5,234	5,443	-	-	
'24~'28		2,788	4,425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향후 추진방향

- 제4차 산업혁명 도래, 융·복합 신기술 제품 출시 증가 등 제품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비관리 제품 및 사고 다발·사고 우려 제품의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 및 위해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ㅇ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안전성 강화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현 시장 상황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선정·진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ㅇ 본 R&D 사업에 따른 법령은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제품안전과 관련된 유일의 R&D 사업

ㅇ 제품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에 의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R&D 사업 취지는 명확하며,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

ㅇ 본 R&D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내 재난안전분야 중 생활제품 안전사고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새로이 출현하는 제품에 대한 대응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5,826	-	5,826	-	-	-	5,826	5,826	100	100	-	-
2022	6,690	-	6,690	-	-	-	6,690	6,690	100	100	-	-
2023	5,208	-	5,208	-	-	-	5,208	5,208	100	100	-	-
2024	2,788	-	2,788	-	-	-	2,788	2,788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5,826	5,826	5,826	5,826	-	5,826	5,826	-	-	100
2022	6,690	6,690	6,690	6,690	-	6,690	6,690	-	-	100
2023	5,208	5,208	5,208	5,208	-	5,208	5,208	-	-	100
2024	2,788	2,788	2,788	2,788	-	2,788	2,78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1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특이사항 없음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 2024년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참고] 참조

참고1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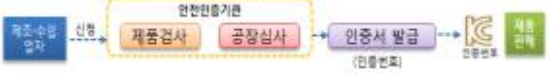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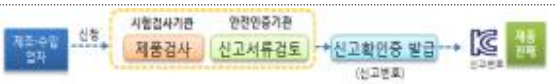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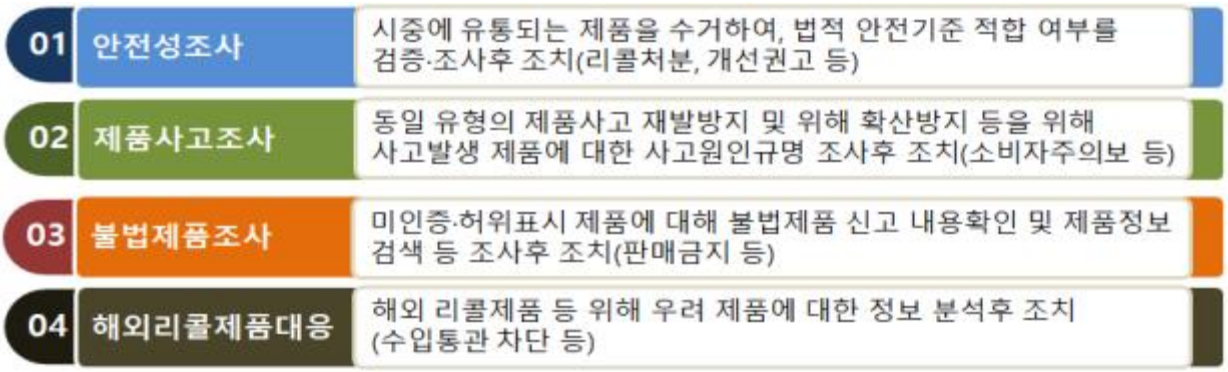
** 정부는 안전관리품목 282개에 대한 610여개의 안전기준을 관리(안전기준은 강제 의무사항)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36	5	4
② 안전 확인 (107개 품목)		65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75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	24	-
총 282개 품목		**176**	**72**	**34**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참고2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 ~ '25년) 관련 내용

비 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1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2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3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1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2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3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4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1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2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3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4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1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2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3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4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참고3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1.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 '25	총사업비	해당없음, 기투자액 131.9억원
주관기관	대학/연구소/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낙현 연구사(☏ 043-870-5412, 010-4652-2843)		

□ 사업내용(지원내용)

○ 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사고 및 위해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신기술제품,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특성 및 사용환경에 따른 제품의 안전 기준·평가기법 개발

□ 25년 요구내용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및 정부시책을 반영하고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출현한 융복합신기술 제품 및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 융복합신기술제품 생산기업 60%*가 신규 안전인증을 필요로 하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서의 안전기준에 대한 수요 증가

* (참고)'21년 학술용역, 제품안전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품목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

○ 제품시장의 변화에 따라 안전인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의 국제표준부합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비건수 확대

* 안전인증 유지현황 : ('21년) 231,465건 → ('22년) 265,156건 → ('23년) 271,984건

□ 사업성과

○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중 '21년 ~ '22년에 협약한 51개 과제 중 제품의 안전기준(안) 31건*이 개발되었으며 6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

< 주요 과제 성과 >

구분	과제명	정책반영	비고
1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안)	O	
2	최신 IEC 표준으로 현행화된 전기용품 안전기준(안)	O	
3	국제표준기반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기준 제개정(안)	예정	행정예고 中
4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안전기준(안)	O	
5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rack Lighting System의 안전기준 및 평가방법 개발	예정	안전관리 품목으로 도입('22년), 안전기준 개정 中
6	가죽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안) 개발	예정	2023년 이후
7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검사 결과와 BMS 정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성능 검사방법 개발	예정	예비 안전기준에 반영('22년)
8	가정용상업용 전기기기 및 개인이동수단 무선 전기충전기 안전기준(안)	예정	예비 안전기준에 반영('23년)
9	다운제품(원모 재생우모) 안전기준(안)	O	
10	전기차 사용후전지의 내부 이력정보를 활용한 평가기법 개발	O	안전기준 개정
11	운동용 안전모 유지시스템 성능 시험방법 개발	O	안전기준 개정
12	국내 환경을 고려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안)	예정	예비 안전기준에 반영('23년)

2. 제품안전성향상 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21 ~ '25	총사업비	해당없음, 기투자액 71.5억원
주관기관	기업/대학/연구소/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낙현 연구사(☏ 043-870-5412, 010-4652-2843)		

□ 사업내용(지원내용)

○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의 제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및 플랫폼 등 시스템 구축

○ 융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리고 노출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안전성 기반 조성

□ 25년 요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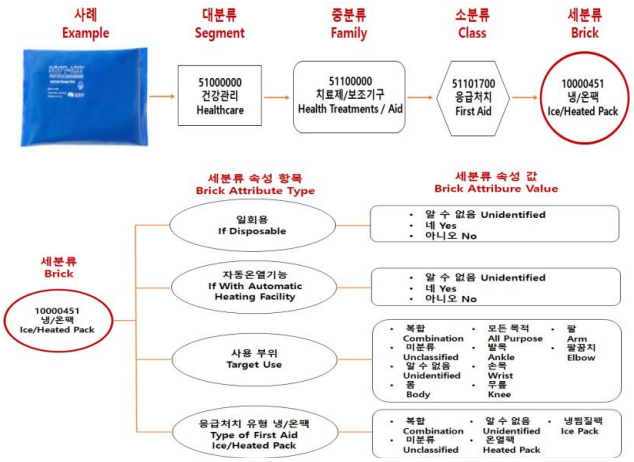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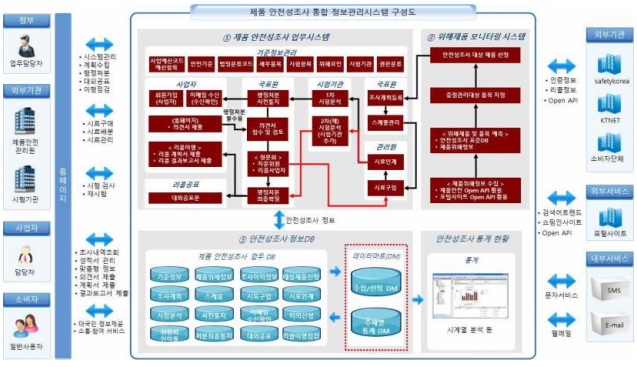
○ 제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 등 위해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안전 플랫폼 개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제품시장의 확대와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 과제 필요

* 온라인쇼핑 구매동향(통계청) : ('21년) 193조원 → ('22년) 206조원 → ('23년) 227조원

○ 융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리고 노출 위험이 높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성 향상 기반 예산 요구

□ 사업성과

구분	과제명	내용
안전관리체계 개선	제품안전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표준제품분류체계 개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의 분류체계 개발에 대해 요구(감사원) -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각 소관부처 통합에 따른 표준화된 제품분류체계 필요 - 융복합·신제품 등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안전 기반 분류체계 필요 → 국가 차원의 제품안전 통합관리를 위해 범부처 표준제품분류체계(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시스템 구축	제품 안전성조사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제품출시 후 위해제품 시장감시를 위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 행정업무의 온라인 인프라 미흡 - 제품 안전성조사 DB 구축 및 내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조사체계 고도화 필요 → 제품안전성조사 업무자동화 및 위해제품 모니터링 시스템개발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사 업 명
(12)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3731-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0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28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해외인증지원체계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세부사업) 해외인증 지원체계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원영호팀장	양희찬	홍성진
		해외인증지원단	02-6240-4778	02-6240-4771	02-6240-4769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KS인증센터	권영상 센터장	02-6240-4620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내역사업)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이위로	-	황상훈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02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구축	-	1,860	1,070	1,070	△790	△4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860	1,860	1,860 [1,713]	1,860 [1,713]	1,860 [1,713]	-	-	1,070
· 해외인증 종합 지원체계 구축·운영	-	-	-	-	-	320	320	320 [173]	320 [173]	320 [173]	-	-	370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	-	-	-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	-	600
· 해외인증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	-	-	-	-	-	-	-	-	-	-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60	1,860	1,860 [1,713]	1,860 [1,713]	1,860 [1,713]	-	-	1,070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20	320	320 [173]	320 [173]	320 [173]	-	-	370
· 사업출연금 (350-02)	-	-	-	-	-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	-	7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860	1,860	1,860 [1,713]	1,860 [1,713]	1,860 [1,713]	-	-	1,070
· 해외인증 종합 지원체계 구축·운영	-	-	-	-	-	320	320	320 [173]	320 [173]	320 [173]	-	-	370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20	320	320 [173]	320 [173]	320 [173]	-	-	370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	-	-	-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	-	600
-사업출연금 (350-02)	-	-	-	-	-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1,540]	-	-	600
· 해외인증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	-	-	-	-	-	-	-	-	-	-	-	-	100
-사업출연금 (350-02)	-	-	-	-	-	-	-	-	-	-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국 우선주의 확산, 기술규제(인증) 심화에 대응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인증취득 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인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
-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비용 저감 및 기간 단축)하는 시험 인프라 구축
  *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항목을 국내 시험인증기관 이용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험 인프라 고도화 추진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혁신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적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인증 맞춤형 성능개선 및 수출 대상국 현지화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의 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이하 생략)

ㅇ 산업표준화법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 국제표준·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자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2.11.23. : 제1차 수출전략 회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全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정보제공부터 컨설팅, 사업신청까지 원스톱 지원 추진
- '22.12.27. : 산업부 업무보고, 「해외인증지원단」(국표원) 신설을 통한 全 주기 인증 지원체계 확충 추진 보고
- '22.12.29. : 산업부-복지부 합동 업계 간담회, 해외인증 취득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해외인증 지원기관(12개) 협의체를 국표원이 총괄) 체결
- '23.1.18. :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1차 회의, 지원사업기관 및 시험인증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등 논의
- '23.2.23. : 제4차 수출전략 회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를 통해 해외인증 지원 강화 방안 전략 수립
- '23.2.23.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 수출기업 해외인증 애로사항 청취 및 종합 지원포탈 소개·시연회
- '23.3.13. :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를 구축(4월 예정)하여 지원대상 기업의 편의 제고 추진
- '23.4.4. : "해외인증지원단" 개소, 해외인증 全주기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23.5.16. :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	1,860	1,07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보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출연/전담기관)

- 사업 수혜자 : 수출 중소·중견기업, 시험인증기관, 적합성평가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보조	한국표준협회	37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출연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600백만원	7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출연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100백만원	수행기관 유형별 달리 적용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24) 320백만원 → (’25정부안) 370백만원 → (’25확정) 370백만원

-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 고도화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 요청
- (산출)
  - ■ 인건비 : 150백만원
    - • 책임연구원 : 42백만원 (7백만원x12개월x1명x50%(참여율))
    - • 연구원 : 64.8백만원 (5.4백만원x12개월x1명)
    - • 연구보조원 : 43.2백만원 (3.6백만원x12개월x1명)
  -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220백만원
    -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85백만원
    - • 해외인증취득지원 : 135백만원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품목별 가이드라인 50백만원(5백만원×10개)

②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 (’24) 1,540백만원 → (’25정부안) 600백만원 → (’25확정) 370백만원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시험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시험비용절감 및 시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인증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유럽인증 강화(MDD→MDR)에 따라 국내 인증 대비, 해외인증 취득시 요구되는 추가/강화 시험·검사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여 인증 애로 해소 및 기업수요 대응

- (산출)
  - ■ 시험 인프라 구축 : 600백만원
    - • 인프라구축 : 580백만원(828백만원x1식x70%(매칭율))
    -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③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 (’24) - 백만원 → (’25정부안) 370백만원 → (’25확정) 100백만원, 순증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성능개선 : 100백만원
- (산출) (성능개선) 1개 과제×90백만원 = 90백만원
  (사업관리비) 10백만원(총 사업비의 10%)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60	○ **민간경상보조(320-01) : 320백만원** 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20백만원 ■ 인건비 : 150백만원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170백만원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85백만원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 **사업출연금(350-02) : 1,540백만원** 가.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1,540백만원	1,070	○ **민간경상보조(320-01) : 370백만원** 가.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70백만원 ■ 인건비 : 150백만원 ■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 220백만원 • 종합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135백만원 - 회의수당 5백만원(0.2백만원x5명x5회) + 맞춤형 컨설팅 70백만원(0.35백만원x200회) + 업계 설명회 10백만원(5백만원x2회) + 품목별 가이드북 발간 50백만원(5백만원x10개) ○ **사업출연금(350-02) : 700백만원** 가.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 구축 600백만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해외인증 수요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1,540백만원 • 전기·전자기기 美방폭(UL)인증 시험 장비 구축 1,500백만원 = (1,640백만원x1건 + 500백만원x1건)x70% • 사업관리비 : 40백만원		■ 해외인증 수요 분야 시험인프라 구축 : 600백만원 • 의료기기 분야 시험 장비 구축 580백만원 = 828백만원x1건x70%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실증지원 100백만원 ■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성능개선 : 90백만원 • 성능개선·시험검증 : 90백만원 = 1개x90백만원 • 사업관리비 : 10백만원(총 사업비의 1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현장 컨설팅 및 기술자문 기업 수 (단위 : 개)	목표	-	-	신규	130	14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10% 이상 상향	설명회 상담부스 운영 등을 통한 상담 기업 수 및 기업 방문을 통한 기술자문 기업 수	상담 및 자문 지원 기업 수 집계(수행기관)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2022	-
2023	-
2024	ㅇ 해외인증 설명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회 개최(~'24.5.) ㅇ 국내 인증획득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간담회(6.25.) ㅇ 방폭분야 시험 인프라 구축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해외인증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을 연계한 全주기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 절감)**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협약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비용·시간 절감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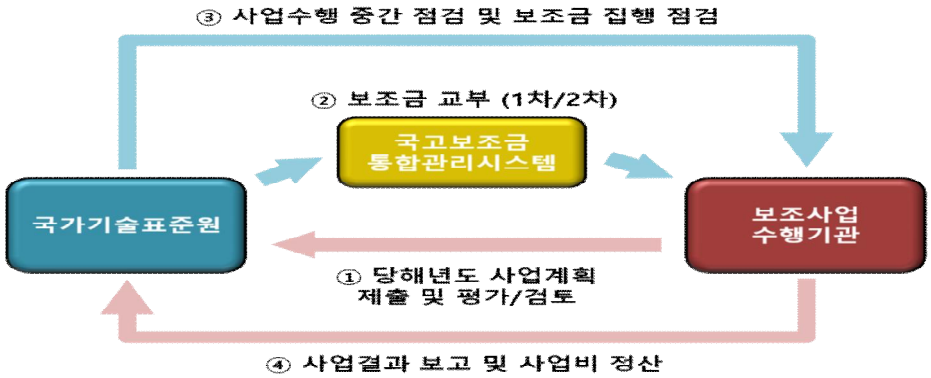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 심사가 원칙
→ 국내 시험기관에서, 국내 시험을 통한 비용 저감과 기간 단축 효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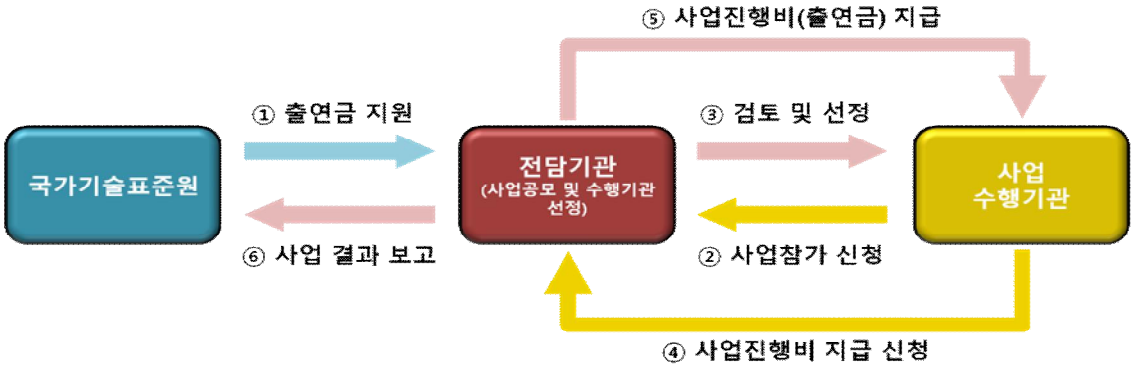
7) 사업 집행절차

□ (320-01)민간경상보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370백만원)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37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370백만원)	-	-

□ (350-02)사업출연금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부 (700백만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 (7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원 (7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관리원 과제관리지침 => (700백만원)	수행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	1,860	1,070	6,447	1,447	
'24~'28		1,860	1,070	6,447	6,447	6,4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적) '24년 예산안 검토시 유사사업*과 연계·차별화 방안검토(산중위, '24년 예산)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기획재정부 수출수주지원단 사업

○ (조치) 기재부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해외인증제도 및 지원사업 관련 설명회 등 개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인증 콜센터)는 기본 전화상담 후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외인증지원단으로 이관하여 심층 상담·자문 지원

* 기획재정부 수출수주지원단 공동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24.3월~5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보제공)** 각 부처·기관에 제공하는 해외인증 관련 정보를 '해외인증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통합 정보제공
- **(상담·자문)** 해외인증 전문성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원포인트 자문 및 해외인증 신청, 심사, 획득까지 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단계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상호협약 확대)** 해외인증에 요구되는 제품시험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협약(MOU) 확대 추진

* 국내 인증 대비, 해외인증 취득 시 요구되는 추가/강화 시험·검사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수요 대응 및 애로 해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해외인증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사업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全 주기 종합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요청 *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중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애로사항 - 해외인증 지원 관련 기관·사업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인증 정보제공,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인증 대응 역량 강화, 상호협약 활용 비용·시간 절감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 요청 - 해외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기반이 부족하고, 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지원 분야 및 신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시험장비 구축 지원할 예산 증액 편성 요청 * 유럽 인증(MDR) 강화에 의료기기 외 K-뷰티(필러, 렌즈 등)에 포함됨에 따라 원재료 및 성능, 안전성 등 정밀 분석장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시험비용절감 및 시험기간 단축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860	-	-	-	-	-	1,860	1,86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	-	-	-	-	-	-	-	-	-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12월기준	1,860	-	1,860	1,860	-	1,860	1,86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해당 없음
2022	해당 없음
2023	해당 없음
2024	진행 중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4.2.1.)						
전용 ('24.2.3.)						
조정 ('24.2.5.)						
이체 ('24.2.9.)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합 계				

참고 1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사업개요

○ **(지원내용)**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구축·운영 등 인건비, 종합정보 플랫폼구축·운영, 컨설팅·설명회 등을 통한 해외인증 애로 해소

○ **(사업기간)** : 계속('24년~)

○ **(수행주체)** : 한국표준협회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지원율 100%)

○ **(지원대상)** : 수출 중소·중견기업

□ 추진 경위

○ **(제1차 수출전략 회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全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정보제공부터 컨설팅, 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지원('22.11.23)

○ **(산업부 VIP업무보고)** 「해외인증지원단」(국표원) 신설을 통한 全 주기 인증 지원체계 확충('22.12.27)

○ **(산업부-복지부 합동 업계 간담회)** 해외인증 취득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해외인증 지원기관(12개) 협의체를 국표원이 총괄) 체결('22.12.29)

○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1차회의)** 지원사업기관 및 시험인증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운영방안 등 논의('23.1.18)

○ **(수출투자 책임관 회의)** 정보제공·컨설팅·취득지원 등 기업의 편의 제고 및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 구축방안 논의('23.3.13)

○ **(해외인증 지원단 발족)** "해외인증지원단" 개소, 해외인증 全 주기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3.4.4)

○ **(전략 발표)**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23.5.16)

□ 예산 산출내역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 및 기관을 종합·연계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인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 **370백만원**

- (인건비) 해외인증 지원 업무 전년대비 2배 급증*에 따른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구축·운영 등 인건비 **150백만원**

* '수요증대: 전화·온라인·부스인증상담('23년 34.4건(월평균)→'24.1~5월: 68.0건 ▲197.7%)

- (해외인증원스톱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해외인증취득지원 등 **220백만원**

· (종합정보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유관기관의 산재된 해외인증 정보 취합·분석 후 해외인증 관련 정보 제공 85백만원

· (해외인증취득지원)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해외인증 제도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증 애로 해소 135백만원

참고 2 해외인증지원 시험인프라구축

1. 필요성 및 현황

○ 해외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기반이 부족하고, 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지원 분야 및 신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시험장비 구축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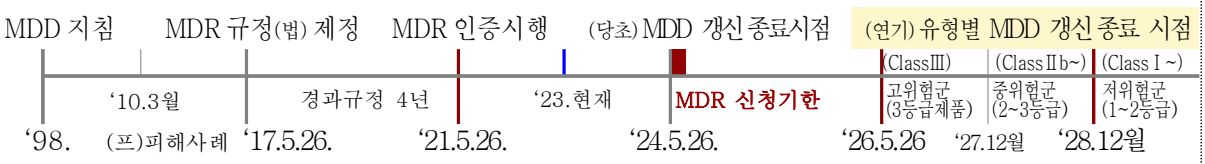
* 기재부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기업 간담회시 유럽의료기기 인증(MDR) 애로건의('23.7, '24.5)

- 의료기기 분야 유럽인증이 인증(MDD)에서 규제가 강화된 인증(MDR)의 대체됨에 따라 동 분야 신규 인증수요 확대가 예상

* 17.05.25 MDD→MDR 규정 공포 발효, '21.05 시행, '26~'28년 까지 단계적용 연장('23.02)
** 국내 CE 인증 업체 약 525업체('21년 식약처), 현재 국내 CE 인증 소요 시간 1년 이상

<의료기기분야 유럽인증 관련 현황>

○ **(유럽)** CE Marking(유럽인증마크) / MDD('98) → MDR('17)'21.5.26 시행



* (용어) **CE** (Conformite Europeenne),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 CE MDR 인증 연기 사유 : '22.10월까지 21,376개 인증 중 10%만 MDR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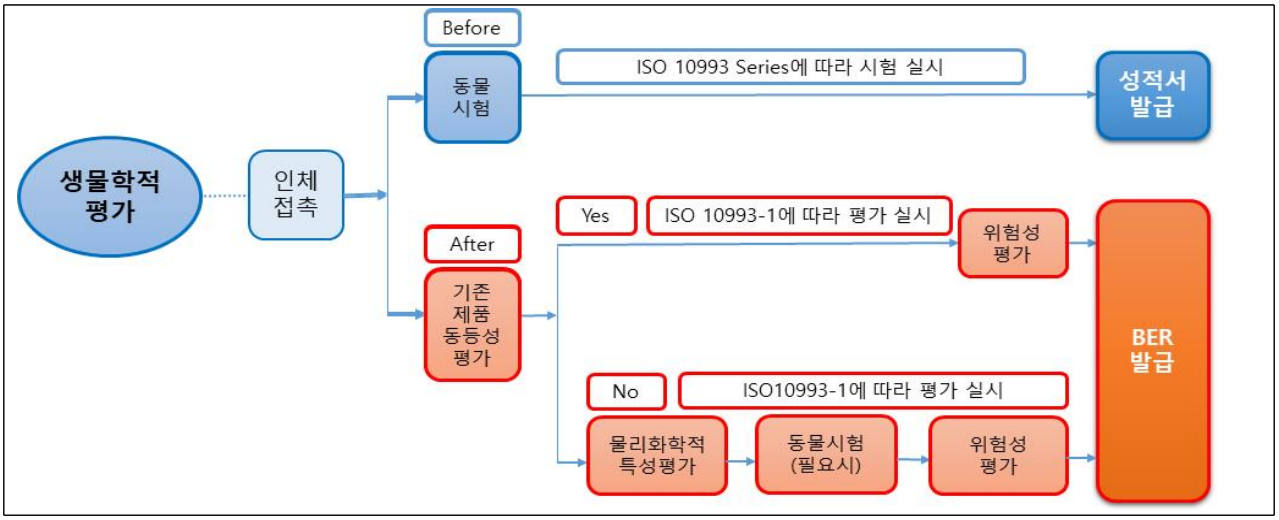
○ **(국내 인증 현황)** '22년 6월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중견기업 ㈜메가젠, 신풍제약 등 약 20개사 MDR 인증,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고비용, 인증 기간, 필수 추가자료 준비(생물학적 평가(BER) 등) 등으로 인증 취득의 어려움 가중

2. 사업내용

○ 의료기기 인증 개정(ISO-10993)에 따른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물리 화학적 특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폴리머, 유기화합물, 중금속, 가스융합분석기 등 물리 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의료기기 분야 생물학적평가 프로세스 >



○ ‘26년 고위험군 위주로 MDR 인증이 시작되기에 ‘25년 선제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생태계 조성할 필요

* MDR 관련 국내기업 대기 수요는 300~400개사 추산(525개사×60~75%(전환율) 추산

** 글로벌 인증기관의 한국지사(9개사)를 통해 유럽인증을 받을시, 과점에 따라 시험인증 비용 상승(품목당 최소 1억원 이상) 및 대기시간 과다, 피드백 지원 부족 등으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 동 인프라구축시 우선 시험 등과 연계하여 수출 지원

3. 예산 산출 내역

○ (총예산) 600백만원

-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유럽인증(CE-MDR) 등 강화에 따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580백만원*

* 산출내역: 580백만원(828백만원×1건 × 70%)

- (사업관리비) 20백만원

- (지원조건) 시험인증기관 매칭율 30%

참고 3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 실증 지원 설명자료

□ 사업 목적

○ 혁신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성능개선 및 현지 실증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확대 추진

* 혁신융합 신제품이란 초격차프로젝트 기술, 국가전략 기술 등의 혁신기술과 IT, NT, BT등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융합기술이 적용된 인증 대상 신제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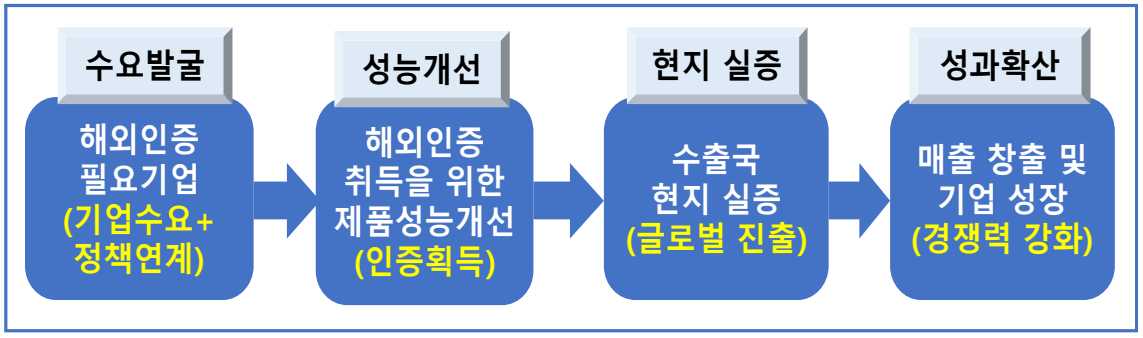
- **(성능개선)** 시장 출시 단계의 혁신융합 신제품 등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성능개선 지원**

* 해외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외 통합 성능평가기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 기반 조성
⇒ 성능평가기준 제도화 및 인증 활용을 위해 융합신제품 신속지원제도(적합성인증) 연계

- **(실증지원)** 수출 대상국 **현지 실증**을 통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입증과 제품 현지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추진

* 수출 시 '시장 최초 진입자'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의 실증 및 트랙레코드를 요구받는 경우가 다수

< 사업 개념 및 내역사업 구조 >



□ 추진 배경

○ 국내 기업, 제품 수출에 필요한 **인증 획득**에 어려움 호소(제4차 수출 전략회의)

- 해외 인증은 기업이 겪는 '**수출 3대 애로**'(무역금융, **인증**, 마케팅)에 포함

* KOTRA 수출애로 상담의 약 20%는 인증 관련으로 기업의 해외 인증 대응력이 낮음

** 각국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기술규제(기술기준인증 등) 강화 추세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 전략회의('23.2.23)에서 '신기술 융합제품'의 경우 국내와 해외 모두 인증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하고 국내 신기술 인증 관련한 제도개선 약속

○ 이에, 정부는 『**수출 기업을 위한 해외 인증 종합지원 전략**』 마련('23.5.16)

*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 全과정에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민관합동 해외 인증지원단』신설·운영 중('23.4~)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인증 종합지원 전략」중점 추진과제 :
① 국내외 기관간 상호협약 ② 해외 인증 정보 통합제공 ③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자문, 인력, 디버깅·성능개선) ④ 지원체계·거버넌스 강화

□ 정책 부합성

○ (국정과제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근거 법령

○「산업융합촉진법」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 '25년 예산 및 시행주체

○ **(예산)** 총 100백만원(출연, 민간 25% 매칭)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주관/참여기관)**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

□ '25년 사업 주요내용 및 단가

○ **(성능개선*)** 성능개선·시험검증: 90백만원(1개 과제 x 90백만원)

* 특정 시험항목 또는 인증기준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제품 설계 및 구조 개선, 소재 변경 등

○ 사업관리비: 10백만원(총 예산의 10%)

사 업 명
(13)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3731-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3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박 종 섭	윤 남 식	-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8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표준실	장근영 실장	053)718-849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	-	3,300	3,300	3,300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300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	-	-	-	-	-	-	-	-	-	-	3,3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300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	-	-	-	-	-	-	-	-	-	-	-	3,3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300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	-	-	-	-	-	-	-	-	-	-	3,300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4)	-	-	-	-	-	-	-	-	-	-	-	-	3,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국가전략기준물질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품질 검증을 위해 필요한 물질로서, 소재 등의 특성값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중, 국내 기준물질 부재로 수급 불안정 시,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사례) '19년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3년 중국 희토류, 미국 첨단반도체 수출규제 등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불화수소 등 공급 차질 피해규모 : 약 20조원(KERI, '23)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09년 4월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표준물질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19년 8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년~‘23년 : 선행사업 ‘상용표준물질개발ㆍ보급’
- ‘23년 10월~‘24년 5월 : 신규사업 기획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 ~ ’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3,3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첨단산업 분야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전략 기준물질 개발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표준물질생산기관 등	3,300	7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24) 000백만원 → (’25) 3,300백만원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 (산출) 국내기관 중심 R&D 과제(신규 6건) 1,800백만원
  국제협력 R&D 과제(신규 4건) 1,50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3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300백만원 가. 국내기관 중심 R&D 과제 (1,800백만원) ・ 6개x300백만원 = 1,800백만원 ・ (인건비) 4명 * 22.5백만원 = 9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30백만원 = 150백만원 ・ (시험·인증비) 3건 * 10백만원 = 30백만원 ・ (간접비) 30백만원 나. 국제협력 R&D 과제 (1,500백만원) ・ 4개×500백만원×9/12개월 = 1,500백만원 ・ (인건비) 6명 * 25백만원 = 150백만원 ・ (연구재료비) 표준물질개발 생산 재료 5건 * 50백만원 = 250백만원 ・ (국내외 시험·인증비) 5건 * 10백만원 = 50백만원 ・ (간접비)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건 수 (단위: 건)	목표				-	10	당해연도 개발 완료된 국가전략기준물질 건 수 (4대 중점분야 개발 완료된 국가전략기준물질)	∑ 4대 중점분야별 개발 완료된 국가전략기준물질	결과보고서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u>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u>**

○ 4대 중점분야 관련 국가전략기준물질 50건 이상 개발

- 국외 의존도가 높은 표준물질 개발, 보급을 통해 표준물질 관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산업의 측정 정밀도 향상 효과 기대
- 산업계의 니즈 파악을 통한 중장기적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및 보급 체계 수립으로 다양한 산업분야 활용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산업통상자원부 (3,300백만원)	=> (3,3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300백만원)	=> (3,300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신문,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 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	-	-	-	-	
'24~'28		-	3,300	6,800	6,500	5,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5년 1월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공고 과제 선정
- '25년 2월~3월 : 사업 공고 및 선정
- '25년 4월~12월 : 사업수행 및 단계평가
- ~'25년 10월 : 2차년도 신규공고 과제 선정
- '25년 11월~12월 : 2차년도 사업공고 및 선정
- '26년 1월~12월 : 2차년도 사업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사업 개요 및 설명자료

□ 사업개요

○ **(목적)**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지원

○ **(추진방향)** 첨단산업 관련 산업계 수요 기반으로 수립한 RM(Road-Map)에 근거하여 연차별 국가전략기준물질 과제를 지원

* 과제별 지원규모(예산, 기간) 차별화

○ **(지원과제 기간)** 과제당 지원기간 1~2년

* ① 국내 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1년), ② 국제공동연구 연계 국가전략기준 물질 개발형(2년)

※ 단, 국내 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도 과제 성향에 따라 2년까지 확대지원 가능

○ **(지원 규모)** 4년간 총 216억 원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사업 지원내용

○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보급 추진

- (지원유형1) 국내기관 중심의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
- (지원유형2) 국제공동연구 연계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형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사업 추진체계

○ 내역사업1, 2* 공통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국가전략물질 기획·관리,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내역사업1)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시험·인증기관 (수행기관) 산·학·연

□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사업 소요예산

○ **(지원)** 출연(정부-민간 매칭, 기관유형에 따라 20~100% 민간부담

○ **('25년 예산)** 3,300백만 원

* 유형1 (신규) 6개 × 300백만 원 × 12/12개월 = 1,800백만 원
* 유형2 (신규) 4개 × 500백만 원 × 9/12개월 = 1,500백만 원

○ **('26년 예산)** 6,800백만 원

* 유형1 (신규)11개 × 300백만원 × 12/12개월 = 3,300백만원
* 유형2 (계속) 4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신규) 4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1,500백만원

○ **('27년 예산)** 6,500백만원

* 유형1 (신규)10개 × 300백만원 × 12/12개월 = 3,000백만원
* 유형2 (계속) 4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신규) 4개 × 500백만원 × 9/12개월 = 1,500백만원

○ **('28년 예산)** 5,000백만원

* 유형1 (신규) 10개 × 300백만원 × 12/12개월 = 3,000백만원
* 유형2 (계속) 4개 × 5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참고 2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 수요 품목

○ 핵심 소재로 대체재가 없을 시 국내 첨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 67종 예시

분류	No	품목	용도
반도체 (13)	1	*질화 갈륨*	반도체 소재용
	2	Tantalum(V) ethoxide	용액 및 기체 증착 전구체
	3	강유전체 물질	반도체용 유전체
	4	On wafer 측정용 임피던스 기준물질	반도체 패키징 특성 평가용
	5	금속 전기 전도도 기준물질	비파괴 검사 등 전기전도도 측정용
	6	Silicon carbide	반도체 소재용 산화물 및 세라믹
	7	On-Site 교정용 임피던스 측정표준	저항, 커패시턴스 등 측정용
	8	Niobium(V) ethoxide	용액 및 기체 증착 전구체
	9	Graphene FET chip	기판 및 사전조립식 전자부품
	10	Tetrakis(dimethylamido) hafnium(IV)	전자 화학물질 및 부식제
	11	고출력 Green LED	전자 화학물질 및 부식제
	12	반도체 공정장비용 YF3	반도체 공정장비 관리
	13	SiNx내 Hydrogen, SIGe내 B.P SiC 3-5 내 미량성분원소(도펀트) 기준물질	반도체 친환경 소재
디스플레이 (12)	14	Indium tin oxide coated glass slide, square	디스플레이 소재용
	15	Poly-TPD	OLED 및 PLED 소재용 고분자
	16	Hexagonal boron nitride ink	인쇄 전자 소재
	17	Indium tin oxide coated PET	디스플레이 소재용
	18	Silver nano ink	인쇄 전자 소재
	19	QD blue	인쇄 전자 소재
	20	Griphene fet chip	디스플레이 소재용
	21	IGZO (indium galium zinc oxide) 박막	디스플레이 소재용
	22	Zinc oxide nanoparticle ink	인쇄 전자 소재
	23	광변성코팅용액	전자 화학물질
	24	전기변성코팅용액	전자 화학물질
	25	polyanline	디스플레이 소재용
이차전지 (22)	26	Lithium nickel cobalt aluminium oxide	배터리 소재
	27	Lithium nickel manganese cobalt oxide	배터리 소재
	28	Silicon	배터리 소재
	29	Lithium hydroxide	양극재 합성용
	30	양극재 잔류리튬 기준물질	양극재 분석용
	31	이차전지 NCM계 및 LFP계 양극재 도핑소재	양극재 분석용
	32	Lithium hydroxide monohydrate	고순도 염류

분류	No	품목	용도
	33	Lithium carbonate	배터리 소재용
	34	황화물계 고체전해질 기준물질	고체 전해질 분석용
	35	SiOx	리튬 이차전지 음극 물질 분석용
	36	전고체전지용 황화물 고체전해질	배터리 소재
	37	Lithium iron(II) phosphate	배터리 소재
	38	Lithium phosphorus sulfur chloride(LPSCl)powder	배터리 소재
	39	LHM	배터리 소재
	40	Lithium 고순도금속분석	고순도 금속 및 합금
	41	이온전도도 측정 기준물질	배터리 소재용
	42	양극재용 리튬코발트산화물	양극재 분석용
	43	잔류리튬	양극재 분석용
	44	양극재용 리튬철인산염	양극재 분석용
	45	음극재용 흑연	리튬 이차전지 음극 물질 분석용
	46	음극재용 금속산화물	리튬 이차전지 음극 물질 분석용
	47	양극재 전극용 TiO2 나노튜브	양극재 분석용
첨단 바이오 (20)	48	Amino Acids Mix Solution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표준
	49	의료영상기기용 유수분비율 기준물질	MRI 및 X선 촬영 기준 표준
	50	HPLC peptide standard mixture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표준
	51	Heavy Metals in Pharmaceuticals	중금속 분석용 숙련도 표준
	52	의료영상 분석용 팬텀	의료영상품질 측정용
	53	Gold nanoparticles	무기 및 금속 나노 소재
	54	Tau	의료용 표준물
	55	골무기질량 기준물질	의료용 표준물
	56	자기공명 이완시간 기준물질	MRI 및 X선 촬영 기준 표준
	57	VitaminD metabolites in frozen human serum	의료용 표준물
	58	아미노산, 펩타이드 기준물질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표준
	59	아미노산 표준용액	아미노산 표준
	60	타겟특이적핵산	생체 의료용 고분자
	61	교정용 아미노산 기준물질	의료 분석(아미노산)
	62	혈장분석용 아미노산 기준물질	의료 분석(아미노산)
	63	3D 프린팅용 인산칼슘	의료 장비
	64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기준물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표준
	65	3D 프린팅용 질화규소	의료 장비
	66	bio glass	의료 장비
	67	FDA 기준 45S5조성 위한 균질 기준물질	의료/의료기기용 표준물

참고 3 사업의 필요성 등

□ 사업 필요성

○ **(기준물질 개발)**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67개 핵심 소재의 경우 국내 기준물질이 부재한 상황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산업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국내 납품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지

* 일본 등에서 만들었던 불화수소는 그간 반도체 소재 등을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므로 검증없이 사용하였으나, '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 발생 (약 20조원, 한국전기연구원, '23)

국가전략기준물질

개발된 소재를 ① 분석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을 교정하는데 있어 기준물질로 활용되거나 ② 개발된 소재와 비교하여 완성도를 확인하는데 사용됨

○ **(안정적 보급)**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기준물질이 많아 민간 자체적으로 생산·보급체계를 유지하는데 한계

-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수급 불안정* 시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전략기준물질은 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 要

*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거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국내 기준물질 생산·보급망 소실 우려가 있는 기준물질의 국내 재고량은 약 2~3개월로 추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소재부품사업과의 관련성

○ 소재부품개발사업(R&D) 등을 통해 개발된 소재를 분석하는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을 교정하고, 개발된 소재의 완성도를 확인하는데 사용됨

참고 4 국가전략기준물질

○ **(용어)** 다양한 '표준물질' 중 동 사업의 방향성(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에 맞는 표준물질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로 표현을 정의*

> ※ '**국가전략기준물질**'이란, **국가전략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확보**, **공급망 안정화**, **정부주도 공급** 등에 **필요한** 물질로서 다른 물질의 양의 값과 측정 불확도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
> ※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 **국가전략 : 국가전략**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검증에 필수적인 물질 개발이라는 동 사업의 방향성* 반영

  * 국가전략기준물질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조기 상용화 (예: 국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체들의 양극재 조성비 성능 검증에 필요한 국내·외 기준물질 부재 → 세계 최초의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표준물질 개발·활용)

- **공급망 안정화 :** 우리산업(특히 첨단분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발생 시 **산업피해 측면 중요성 높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기준물질**

  * ('19년, 日) 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3년) 中 희토류 vs 美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제조 핵심 공정(식각)에 필요한 불화수소 ('19년 日화이트리스트) 순도 측정 국가전략기준물질(가스) 개발 → 고순도불화수소 국산화 기여로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

- **정부 주도 공급 :** 국내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국내 시장이 작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 상 경제성 등 사유로 **민간보다 국가 주도 공급이 필요**한 국가전략기준물질

  * LGC에 따르면, 전세계 약 22만종의 국가전략기준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NIST(미국), BAM(독일) 등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서 약 80% 개발 및 보급** 중

○ **(낮은 인지도)** 최근 표준물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표준물질' 등 표현에 대한 국민 이해도 및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

사 업 명
(14)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3731-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3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노학엽 연구관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7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장동규 수석	053-718-835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3,600	3,600	3,6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600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	-	-	-	-	-	-	-	-	-	3,6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6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3,6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600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	-	-	-	-	-	-	-	-	-	3,60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	-	-	-	-	-	3,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장비개발을 통한 첨단제품의 품질 확보로 수출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3.4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발표
- ’23.4월 : 2023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 수립
- ‘23.5월 :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	-	3,6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출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600	총사업비의 3/4 이내 정부매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24) 0 → ('25) 3,600백만원, 순증
- 국내 초격차 첨단기술이 세계로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국제표준 이해도가 높은 실수요자 주도 시험장비 개발을 위해 '25년 3,600백만원 요구
- (산출) 신규 : 4개 x 1,200백만원 x 9/12개월 = 3,60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신규사업	3,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600백만원 가. 신규과제 (3,600백만원) ・4개x1,200백만x9/12개월 = 3,6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제품 제작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신규	신규과제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 건수의 합	개발된 시험장비의 교정 성적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신규)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u>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u>**

- 국제표준별 다양한 유형의 장비들을 발굴하여, 동일 혹은 이상의 성능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확보
- 장비개발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장비 개발을 통해 각 기업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주도의 첨단기술력 확보
- 국내 시험장비 개발 기업의 기술력 성장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설계·제작·시험·양산을 위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전담기관 홈페이지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심의결과 통보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국가기술표준원)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총개발기간 연차별협약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 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매 1년 단위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	-	-	-	-	
'24~'28		-	3,600	5,000	5,000	5,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국내 초격차 첨단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시험장비를 발굴하여 개발을 지원

  * 국제표준(ISO, IEC 등)에 기반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적 수준의 시험장비 개발을 통해 시험인증서비스 인프라 구축

- 국내 시험장비 개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신규)

12) 부처 건의사항

ㅇ 시험인증산업은 대표적인 장비 의존형 사업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유럽 등 외산장비에 의존하며, 국내에서도 대부분 외산 장비를 구축 中 - 국내 시험장비 시장을 국제표준에 기반한 국내 개발 장비로 대체하고, 국내 개발 장비의 수출까지 연계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 분야임 ㅇ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공략 등을 위해서는 국산 시험평가 장비 개발이 시급 -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표준 기반 자국의 장비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의 장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현재 시험장비 시장의 약 95%를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안정적 수요 확보가 불확실한 첨단기술 시험평가 장비개발에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신규사업)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사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 인증(기술규제) 도입 증가 및 전기차(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새로운 시험인증 요구가 증대

- 해외 인증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

* 시험인증산업은 장비 의존형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기술 분야 시험평가 장비가 필요

○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적시에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시험평가 장비를 국내 개발 장비로 대체하고, 국산 장비의 수출 및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필요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시험장비 시장의 약 95% 점유

□ 사업내용

○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험장비 개발 수요분야에 대한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 장비의 국내 제작·보급을 통한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제조 시스템 구현 및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인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 지원

- 산업용 IoT, 미래차, 전력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내구성·신뢰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비 개발

참고 2 사업의 비전, 전략 및 중장기 계획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 비전

우리 산업의 우월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高성장하기 위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목표 및 기대효과

목 표

첨단기술 시험인증을 위한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개발 및 고도화

▸ 첨단제조 시스템 구현 및 조기 상용화에 요구되는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하여 산업의 초격차 성장 지원

기대효과

초격차 첨단기술 기반의 국내 기업 수출 역량 향상

▸ 첨단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시장의 주도권 강화에 기여

추진전략

추진전략 1	첨단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조성
추진전략 2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국내 장비개발 기업 기술력 성장 지원
추진전략 3	초격차 유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추 진 과 제	세 부 내 용
1 국제표준에 기반한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표준화 전문가와 장비 개발 기업의 매칭을 통한 시험서비스 기반 구축
2 첨단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고도화	▸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위한 산업 트렌드에 맞는 고도화된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 구축

참고 3 시험인증산업 국내외 시장 규모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규모는 약 15.5조원**(연평균 성장률은 6.1%)로 추정

○ 그간 시험인증산업은 제조업의 부가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

* 매년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인증)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시험인증 수요를 증가시켜 관련 기업에 시장 확대 기회로 작용

산업별 매출액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2년	연평균 성장율
시험인증산업	12.2	14.1	14.7	15.5	6.1%
반도체산업	139.6	129.4	170.6	176.9	8.2%
자동차산업	182.2	189.1	192.2	207.1	4.4%
조선산업	35.0	37.0	37.6	32.8	-2.1%
이차전지산업	17.5	22.0	29.1	34.0	24.7%

* 출처 :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 **해외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282조원**으로 국내 시장 대비 **약 18배 규모**

○ **글로벌 상위 10개 시험인증기관의 매출은 약 46조원 규모**, 대형 시험인증기관이 해외 시험인증시장 규모의 대부분(19%)을 차지

* 해외 TIC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해외 시험인증시장은 4.4%의 연평균 성장률로 2,69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측

사 업 명
(15)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경도현	-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5	-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관리실	박종수 실장	070)5223-3839
		대한상공회의소	데이터정보팀	김성열 팀장	02)6050-1480
시중유통 제품안전 성조사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연구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박순영	경도현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7	043)870-5425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시장관리실	박종수 실장	070)5223-3839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내역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이재윤	-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1	-
	사업시행주체	대한상공회의소	데이터정보팀	김성열 팀장	02)6050-148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제품시장감시 역량강화	7,211	7,211	4,364	4,364	△2,847	△3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11	7,211	7,211 [7,211]	0	0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	-	4,364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466	3,466	3,466 [3,466]	0	0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	-	4,024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2,126	2,126	2,126 [2,126]	0	0	-	-	-	-	-	-	-	-
· 불법·불량제품단속	-	-	-	-	-	1,595	1,595	1,595 [1,595]	1,595	1,595 [1,595]	-	-	-
· 리콜이행점검	-	-	-	-	-	531	531	531 [531]	531	531 [531]	-	-	-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340 [340]	0	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40
·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779	779	779 [779]	0	0	779	779	779 [779]	779	779 [779]	-	-	-
○ 비목별 분류(합계)	7,211	7,211	7,211 [7,211]	0	0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	-	4,364
· 시험연구비 (210-13)	3,134	3,134	3,134 [3,134]	0	0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	-	3,684
·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20]	0	0	20	20	20 [20]	20	20 [20]	-	-	20
· 민간경상보조 (320-01)	4,057	4,057	4,057 [4,057]	0	0	4,057	4,057	4,057 [4,057]	4,057	4,057 [4,057]	-	-	6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11	7,211	7,211 [7,211]	0	0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7,211]	-	-	4,364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3,466	3,466	3,466 [3,466]	0	0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3,466]	-	-	4,024
- 시험연구비 (210-13)	3,134	3,134	3,134 [3,134]	0	0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3,134]	-	-	3,684
-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20]	0	0	20	20	20 [20]	20	20 [20]	-	-	20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민간경상보조 (320-01)	312	312	312 [312]	0	0	312	312	312 [312]	312	312 [312]	-	-	320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2,126	2,126	2,126 [2,126]	0	0	-	-	-	-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2,126	2,126	2,126 [2,126]	0	0	-	-	-	-	-	-	-	-
· 불법·불량제품단속	-	-	-	-	-	1,595	1,595	1,595 [1,595]	1,595	1,595 [1,595]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1,595	1,595	1,595 [1,595]	1,595	1,595 [1,595]	-	-	-
· 리콜 이행점검	-	-	-	-	-	531	531	531 [531]	531	531 [531]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531	531	531 [531]	531	531 [531]	-	-	-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등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
·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구축 및 확산	340	340	340 [340]	0	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40
- 민간경상보조 (320-01)	340	340	340 [340]	0	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	-	340
· 안전기준준수대 상감시체계 구축	779	779	779 [779]	0	0	779	779	779 [779]	779	779 [779]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779	779	779 [779]	0	0	779	779	779 [779]	779	779 [779]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시중 유통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검사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 개선조치 권고 등 행정조치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09년 시스템을 구축, 환경부, 식약처 등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 중으로, 각 부처별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위해제품(리콜제품) 정보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동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26만여개 유통매장에서 실시간 유통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안전인증 등)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등

ㅇ「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②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어린이 안전원년」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8. 5월 대통령 대국민담화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도록 모든 조치강구"

- ‘08. 9월 대통령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빨리 조치하여 유통을 중단해야함”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09. 7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10.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산 본 사업 추진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5월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 기본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 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12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기준준수대상 신설)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 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리콜이행점검, 보완명령 등 규정 신설)
- ‘23. 9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7,171	6,844	7,211	7,211	4,36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지속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32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보조	대한상공 회의소	340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4) 3,466백만원 → ('25) 4,024백만원, 558백만원 증액

-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국내유통 제품 안전성조사에 더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신규 추진을 위한 예산
- (산출) 가. 시험연구비(210-13) 3,684백만원

⇒ 시료구입비 785백만원(5650건×0.139), 시험수수료 2,808백만원(5650건×0.497), 일반수용비 67백만원, 국내여비 24백만원 (※ 5650건 = 국내유통제품 4,650건 + 해외직구 1,000건)

나. 사업추진비(240-01) 20백만원

다. 민간경상보조(320-01) 320백만원

⇒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 268백만원(5명×53.6백만원), 출장비 16.5백만원, 차량유지비 23.5백만원, 운영비 12백만원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24) 340백만원 → ('25) 340백만원, 전년 동일

- 위해한 제품(리콜제품 등)을 전국 유통매장에 통보하여 실시간 판매 차단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 (산출) 시스템유지보수 88백만원, 사업운영비 14,백만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51백만원, 중소유통매장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87백만원, 시스템 홍보 100백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11,000	○ **시험연구비(210-13) : 3,134,099천원** 가. 시료구입비 (663,960천원) ・ 5,533건×120,000원=663,960천원 나. 시험수수료 (2,379,190천원) ・ 5,533건×430,000원=2,379,190천원 다. 일반수용비 (66,68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분석 보고서(7,560천원) : 12,000원×70부×9개 분야=7,56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위해 내용 홍보(8,000천원) : 2,000,000원×2종×2회=8,000천원 ・ 제품안전관련 회의 수당(36,000천원) : 150,000원×10명×24회=36,000천원 ・ 리콜제품 리플렛 및 신종 위해제품 현황 보고서(15,120천원) : 12,000원×140부×9개 분야=15,120천원 라. 국내여비 (23,760천원) ・ 근무지내 출장(4,000천원) : 20,000원×10개 제품 품목×2명×11회=4,400천원 ・ 근무지외 출장(19,760천원) : 76,000원×13개 제품 품목×2명×10회=19,760천원 마. 조정재원 (10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9,901천원** 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간담회(8,800천원) ・ 400,000원×22회=8,800천원 나.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간담회(5,600천원) ・ 400,000원×14회=5,600천원	4,364,000	○ **시험연구비(210-13) : 3,684,099천원** 가. 시료구입비 (785,350천원) ・ 5,650건×139,000원=785,350천원 나. 시험수수료 (2,808,050천원) ・ 5,650건×497,000원=2,808,050천원 다. 일반수용비 (66,68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분석 보고서(7,560천원) : 12,000원×70부×9개 분야=7,560천원 ・ 안전성조사결과 위해 내용 홍보(8,000천원) : 2,000,000원×2종×2회=8,000천원 ・ 제품안전관련 회의 수당(36,000천원) : 150,000원×10명×24회=36,000천원 ・ 리콜제품 리플렛 및 신종 위해제품 현황 보고서(15,120천원) : 12,000원×140부×9개 분야=15,120천원 라. 국내여비 (23,760천원) ・ 근무지내 출장(4,000천원) : 20,000원×10개 제품 품목×2명×10회=4,000천원 ・ 근무지외 출장(19,760천원) : 76,000원×13개 제품 품목×2명×10회=19,760천원 마. 조정재원 (25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9,901천원** 가.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간담회(8,800천원) ・ 400,000원×22회=8,800천원 나.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간담회(5,600천원) ・ 400,000원×14회=5,6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시장감시망 등 운영 간담회(5,200천원) ・ 400,000원×13회=5,200천원 라. 조정재원 (301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057,000천원** <u>1) 불법불량제품 단속(1,595,000천원)</u> 가. 인건비(1,395,000천원) ・ 45,000,000원×31명=1,395,000천원 나. 출장비(129,150천원) ・ 63회×31명×50,000원=97,65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39,600천원) ・ 5대×660,000원×12개월=39,60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13,538천원) ・ 5대×25,000km/대×108.3원/km=13,538천원 마. 일반운영비(49,000천원) ・ 49,000,000원×1식=49,000천원 바. 조정재원 (212천원) <u>2) 리콜이행점검(531,000천원)</u> 가. 인건비(450,000천원) ・ 45,000,000원×10명=450,000천원 나. 출장비(31,500천원) ・ 63회×10명×50,000원=31,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23,760천원) ・ 3대×660,000원×12개월=23,76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8,123천원) ・ 3대×25,000km/대×108.3원/km=8,123천원 마. 일반운영비(45,000천원) ・ 45,000,000원×1식=45,000천원 바. 조정재원 (117천원) <u>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340,000천원)</u> 가. 시스템유지보수비(88,000천원) ・ 88,000,000원×1식=88,000천원 나. 사업운영비(14,000천원) ・ 14,000,000원×1식=14,000천원 다. 시스템기능고도화(51,000천원) ・ 51,000,000원×1식=50,000천원 라.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87,000천원) ・ 87,000,000원×1식=88,000천원 마. 시스템 홍보 지원(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u>4)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 감시체계 구축(779,000천원)</u> 가. 인건비(200,000천원) ・ 50,000,000원×4명=200,000천원 나. 출장비(32,000천원) ・ 160회×4명×50,000원=32,000천원		다. 시장감시망 등 운영 간담회(5,200천원) ・ 400,000원×13회=5,200천원 라. 조정재원 (301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60,000천원** <u>1)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지원(320,000천원)</u> 가.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268,000천원) ・ 53,600,000원×5명=268,000천원 나. 출장비(16,500천원) ・ 66회×5명×50,000원=16,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18,000천원) ・ 2대×750,000원×12개월=18,00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5,415천원) ・ 2대×25,000km/대×108.3원/km=5,415천원 마. 운영비(12,000천원) ・ 12,000,000원×1식=12,000천원 바. 조정재원 (85천원) <u>2)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340,000천원)</u> 가. 시스템유지보수비(88,000천원) ・ 88,000,000원×1식=88,000천원 나. 사업운영비(14,000천원) ・ 14,000,000원×1식=14,000천원 다. 시스템기능고도화(51,000천원) ・ 51,000,000원×1식=50,000천원 라. 중소유통매장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87,000천원) ・ 87,000,000원×1식=87,000천원 마. 시스템 홍보 지원(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시료구입비(100,000천원) ・ 1,000개×100,000원=100,000천원 라. 시험수수료(347,000천원) ・ 1,000개×347,000원=347,000천원 마. 안전기준 준수 가이드북 제작 및 홍보(100,000천원) ・ 100,000,000원×1식=100,000천원 5)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지원(312,000천원) 가. 시료구입 및 인계 인건비(260,000천원) ・ 52,000,000원×5명=260,000천원 나. 출장비(16,500천원) ・ 66회×5명×50,000원=16,500천원 다. 차량유지비-임차료(15,840천원) ・ 2대×660,000원×12개월=15,840천원 라. 차량유지비-유류비(5,415천원) ・ 2대×25,000km/대×108.3원/km=5,415천원 마. 운영비(15,000천원) ・ 15,000,000원×1식=15,000천원 바. 조정재원 (△755천원) **6)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500,000천원)** 가. 제품안전감시원 관리(120,000천원) ・ 6개 단체×20,000,000원=120,000천원 나. 제품안전감시원 수당(260,400천원) ・ 160명×32.5일×50,000원=260,000천원 다. 업무역량 및 후속조치 연계 강화(120,000천원) ・ 인건비 45,000,000원×2명=90,000천원 ・ 운영비 30,000,000원=30,000천원 라. 조정재원 (△4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운용점포수(개)	목표	185,000	222,800	250,000	263,000	266,000	대형 유통매장(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은 사실상 보급이 완료되어 중소유통매장 도입 확산 중이며, 온라인몰은 매장수를 1개로 계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치 설정	Σ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점포	시스템 설치 점포 확인 (내부자료)
	실적	222,481	248,478	259,523	260,352 ('24.10)	-			
	달성도	122.5	111.5	103.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811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38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7,889개 업체를 조사하고 3,941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746), 지자체 통보(610), 판매금지요청(2,579), 인증기관통보 (6)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27,847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4,43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48,478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0년(180,891개) → '21년(222,481개) → '22년(248,478개) 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78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계도 : 519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812개 업체
2023	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645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34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9,744개 업체를 조사

	하고 4,51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637), 지자체 통보(643), 판매금지요청(3,231), 인증기관통보(5)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61,483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2,285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 온라인 리콜제품 감시 전담요원제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59,523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2년(248,478개) → '23년(259,523개) 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80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계도 : 522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1,911개 업체
2024	① 시중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성조사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4,696개 제품에 대해 조사 실시 -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등 240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②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단속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의심제품 신고건에 대해 9,107개 업체를 조사하고 4,556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등을 실시 * 형사고발(790), 지자체 통보(841), 판매금지요청(2,924), 인증기관통보(1) ③ 제품안전 모니터링 -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 등 3개 분야에 대해 170,460건 모니터링 실시 - 불법 의심제품 10,01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등 실시 ④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24.10월기준)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260,352개 매장(누적)에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매장 수 : '23년(259,523개) → '24년10월(260,352개) 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감시체계 구축 - 안전기준 준수대상 안전실태조사 : 70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실시 - 부적합 사업자 점검 및 계도 : 454개 업체 - 안전기준준수대상 사업자 제도 홍보 : 2,215개 업체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 제품 적발 및 유통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등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강화

-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추진으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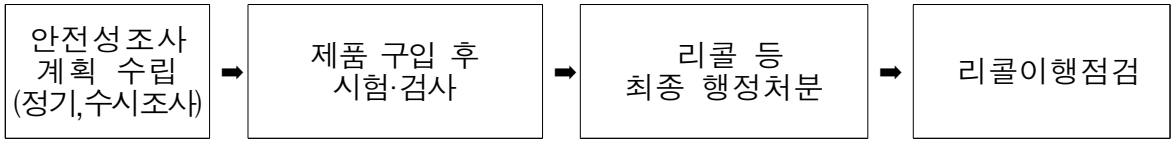
ㅇ 중소매장까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을 확산하여 위해제품(리콜제품)의 실시간 유통차단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등)



ㅇ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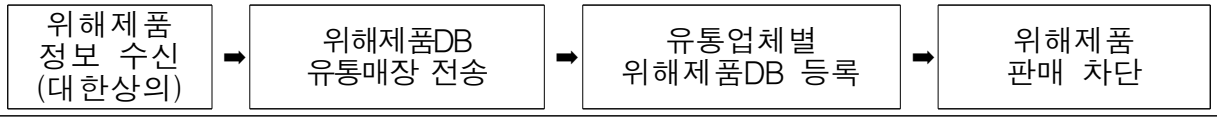
ㅇ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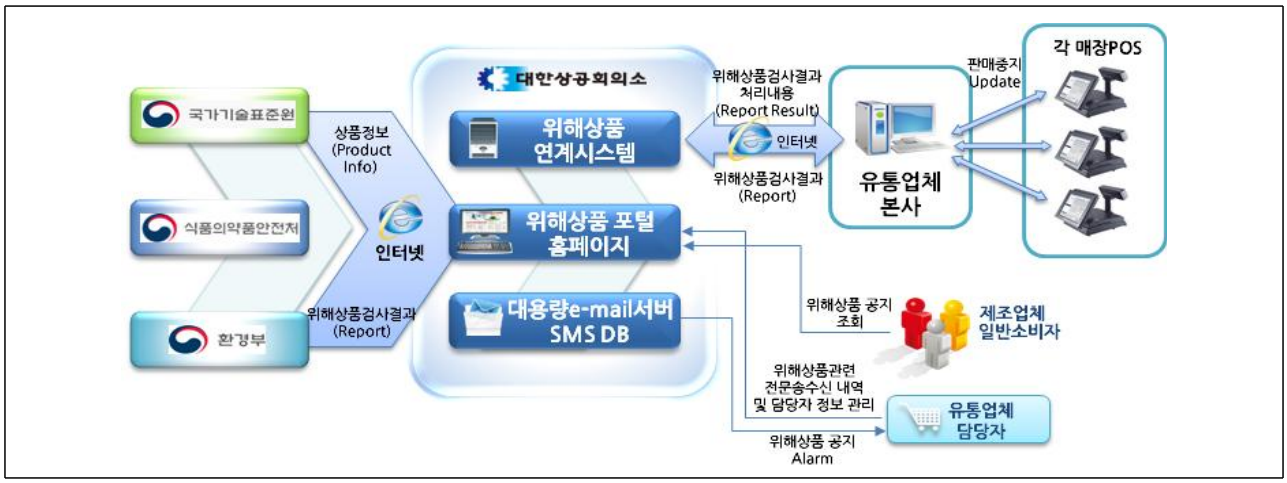
ㅇ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ㅇ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②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7,211	7,211	4,364	4,689	4,993	
'24~'28		7,211	4,364	4,393	4,612	4,8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4.5, '23.5)	ㅇ (최종의견 및 점수) : (`24.5) 88.3점, 보통 / (`23.5) 87.5점, 보통 ㅇ (결과 요약) - 재원분담 적정성, 사업방식의 적정성, 사업추진주체의 명확성, 사업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등 행정조치로 소비자 보호

-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

  *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통계청) : ('21) 5.1조 → ('22) 5.3조 → ('23) 6.8조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미구축 유통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을 확산·지원하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위해제품(리콜제품) 유통을 실시간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22.5)	ㅇ (최종의견 및 점수) 정상추진 / 87.4 ㅇ (결과 요약) - 사업추진 법적근거와 국고지원의 필요성, 효과성과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적절히 추진 - 재정사업평가 등과 연계운영하여 성과지표 목표 달성 및 지난 3년간 실집행률 100%로 사업관리도 적정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7,171	-	7,171	-	-	-	7,171	7,171	100.0	100.0	-	-
2022	7,091	△247	6,844	-	-	-	6,844	6,843	99.9	99.9	-	1
2023	7,211	-	7,211	-	-	-	7,211	7,211	100.0	100.0	-	-
2024	7,211	-	7,211	-	-	-	7,211	7,211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3,325	3,325	3,325	3,325	0	3,325	3,325	0	0	100.0
2022	3,245	3,245	3,245	3,245	0	3,245	3,245	0	0	100.0
2023	4,057	4,057	4,057	4,057	0	4,057	4,057	0	0	100.0
2024	4,057	4,057	4,057	4,057	0	4,057	4,057	0	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특이사항 없음
2022	- 제2차 추경 편성시 '22 본예산중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 일부 감액: △ 247백만원 * 시험연구비 246백만원, 사업추진비 1백만원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 2024년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제품안전관리 제도

□ 개요

○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 제품출시 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정 : 2016.1.27., 시행 :2017.1.2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정 : 2014.6.3., 시행 : 2015.6.4.)」

** 제품출시 후 :「제품안전기본법(제정 : 2010.2.4., 시행 : 2011.2.5.)」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제품 위해정도에 따라 4단계로 안전관리

구분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품목		
				전기	생활	어린이
인증	⬆ 위해도 ⬇	①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인증기관)→KC 표시	36	5	4
		②안전확인	**제품시험**(안전확인시험기관)→KC 표시	64	26	16
		③공급자적합성	자체 제품시험 可→KC 표시	76	17	14
		④안전기준준수	KC 표시 안함(별도 사전 인증 규제 없음)	-	24	-
	합계		**282개 [전기·생활(248개)/어린이(34개)]**	**176**	**72**	**34**
검사		**안전성검사** (2개) [재사용전지 2개 품목]	**제품 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기관)→KC 표시	2	-	-
합계			**284개 [전기·생활(250개)/어린이(34개)]**	**178**	**72**	**34**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대응 등

01	안전성조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법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조사후 조치(리콜처분, 개선권고 등)
02	제품사고조사	동일 유형의 제품사고 재발방지 및 위해 확산방지 등을 위해 사고발생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규명 조사후 조치(소비자주의보 등)
03	불법제품조사	미인증·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불법제품 신고 내용확인 및 제품정보 검색 등 조사후 조치(판매금지 등)
04	해외리콜제품대응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정보 분석후 조치 (수입통관 차단 등)

참고 2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개요

○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 품질과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

*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

□ 안전성 조사 절차

계 획 수 립

○ 연중 안전성조사 계획수립(정기조사)

○ 기타 사회이슈, 수요발생시(수시조사)

안 전 성 조 사

○ 시료구입 : 시중 유통제품 중 무작위 구입
- 국표원 관리 하에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구입

○ 시험·분석: 안전기준 위반 여부 조사
- 시험인증기관

○ 청문회 개최 : 이의제기 기회 부여
- 기업계도 병행(안전관리제도 홍보 및 교육)

행 정 처 분

○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

리콜이행점검

○ 리콜이행 점검
- 제품안전관리원에서 리콜 이행실적 점검

참고 3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운영

□ **(개요)** '09년부터 **위해상품 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년 예산 3.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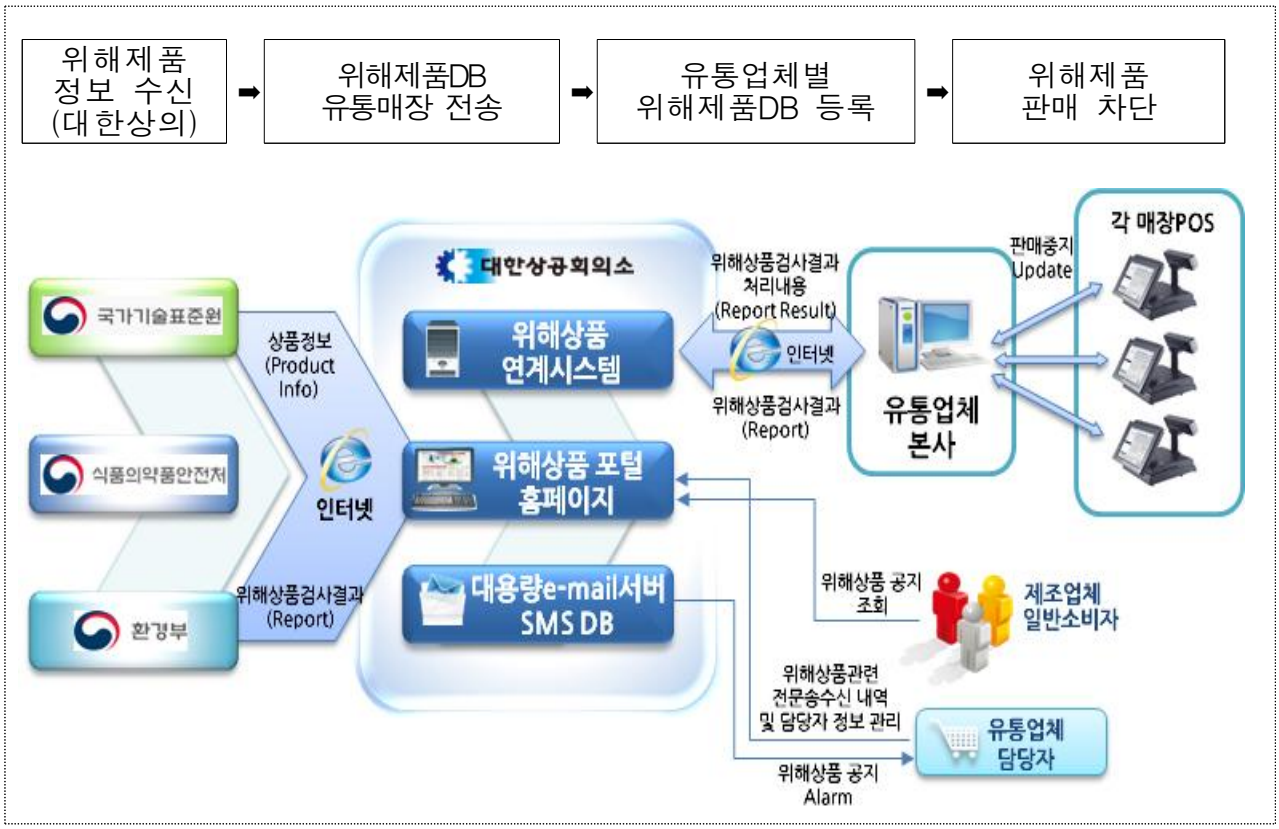
* 중국산 분유 멜라민 파동('08), 석면 함유 화장품('09) 등 위해상품 판매사고로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운영('09.4~)

□ **(현황)** '23년 기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 및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몰** 포함 **77개 업체, 약 25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

□ **(구성)** 산업부(국표원), 환경부, 식약처 등에서 등록한 위해상품 정보*를 시스템(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유통사에 전송하면 **개별 매장에서 판매 차단**

* 제조사, 모델명, 제조국, 바코드 등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흐름도**



사 업 명
(16)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안전제도 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김묘경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0		043-870-5413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안전제도기반조성	2,877	3,888	1,685	1,685	△2,203	△56.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15	2,915	2,877 [2,877]	-	38	3,888	3,888	3,881 [3,881]	3,888	3,881 [3,881]	-	7	1,685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00	600	575 [575]	-	25	586	586	579 [579]	586	579 [579]	-	7	586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957	957	944 [944]	-	14	957	957	957 [957]	957	957 [957]	-	-	959
·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시스템운영	92	92	92 [92]	-	-	90	90	90 [53]	90	90 [53]	-	-	140
·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1,266	1,266	1,266 [1,266]	-	-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	-	-
○ 비목별 분류(합계)	2,915	2,915	2,877 [2,877]	-	38	3,888	3,888	3,881 [3,881]	3,888	3,881 [3,881]	-	7	1,685
· 일반수용비 (210-01)	351	382	381 [381]	-	1	351	376	376 [376]	376	376 [376]	-	-	351
· 임차료(210-07)	41	48	48 [48]	-	-	41	54	54 [54]	54	54 [54]	-	-	41
· 재료비(210-11)	38	0	0 [0]	-	-	38	0	0 [0]	0	0 [0]	-	-	38
· 관리용역비 (210-15)	92	92	92 [92]	-	-	90	90	90 [90]	90	90 [90]	-	-	90
· 국내여비(220-01)	18	34	34 [34]	-	-	18	18	18 [18]	18	18 [18]	-	-	20
· 국외업무여비 (220-02)	28	12	12 [12]	-	-	28	28	28 [28]	28	28 [28]	-	-	28
· 사업추진비 (240-01)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15 [15]	-	-	15
· 일반연구비 (260-01)	600	600	575 [575]	-	25	586	586	579 [579]	586	579 [579]	-	7	636
· 민간경상보조 (320-01)	1,266	1,266	1,266 [1,266]	-	-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6	466	454 [454]	-	12	466	466	466 [466]	466	466 [466]	-	-	466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15	2,915	2,877 [2,877]	-	38	3,888	3,888	3,881 [3,881]	3,888	3,881 [3,881]	-	7	1,685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00	600	575 [575]	-	-	586	586	579 [579]	586	579 [579]	-	-	586
- 일반연구비 (260-01)	600	600	575 [575]	-	-	586	586	579 [579]	586	579 [579]	-	7	586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957	957	944 [944]	-	-	957	957	957 [957]	957	957 [957]	-	-	959
-일반수용비(210-01)	351	382	381 [381]	-	-	351	376	376 [376]	376	376 [376]	-	-	351
-임차료(210-07)	41	48	48 [48]	-	-	41	54	54 [54]	54	54 [54]	-	-	41
-재료비(210-11)	38	0	0 [0]	-	-	38	0	0 [0]	0	0 [0]	-	-	38
-국내여비(220-01)	18	34	34 [34]	-	-	18	18	18 [18]	18	18 [18]	-	-	20
- 국외업무여비 (220-02)	28	12	12 [12]	-	-	28	28	28 [28]	28	28 [28]	-	-	28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15 [15]	-	-	1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6	-	454 [454]	-	-	466	466	466 [466]	466	466 [466]	-	-	466
·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92	466	92 [92]	-	-	90	90	90 [90]	90	90 [90]	-	-	140
-관리용역비(210-15)	92	92	92 [92]	-	-	90	90	90 [90]	90	90 [90]	-	-	9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50
·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1,266	1,266	1,266 [1,266]	-	-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1,266	1,266	1,266 [1,266]	-	-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 제품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제품안전정책·정보제공시스템 운영

-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고우려·사고 다발 제품의 안전사고 및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위해에 대응하여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기업·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교육과 콘텐츠 개발·보급 및 시장변화를 반영한 법·제도개선과 국제기구 교류·협력채널 구축
  ① 제품안전 보급·확산 : 제품안전 사고예방 및 선제대응을 위한 대국민 제품안전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 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내외 제품안전 협의체·포럼 등 운영
  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관리제도 및 안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명회 등 운영 및 제품안전 국제기구 간 교류·협력 채널 구축

- (제품안전정책·정보안내 시스템운영) 제품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안정적인 제품안전 정보 제공(시스템 고도화)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제21조의4(운영재원) ①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6월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 '06.12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7.12월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 개정
- '10. 1월 :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 인정제도 시행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2.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시행
- '15. 1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5. 5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6.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 '16. 3월 :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17. 1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 ’17.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2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8. 3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2. 1월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3. 4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579	1,549	2,915	3,888	1,68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안전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24) 586백만원 → (’25) 586백만원 전년동일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제품의 안전사고에 대응한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감안한 연구용역 예산

- (산출) 45백만원(연구용역 평균단가) × 13종(1년 필요 수요 과제)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24) 957백만원 → (’25) 959백만원, 2백만원 증액

- 온라인쇼핑 구매(해외직구 등) 증가 등 제품환경 변화에 제품안전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 (산출①) 제품안전 교육·홍보 : ('24) 466백만원→ ('25) 466백만원, 전년동일
  *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등 : 466백만원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관리제도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38백만원
    . 제품안전 인식제고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공모전 운영 등 : 201백만원
    . 제품안전 협의체·포럼 구성·운영 및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발굴·포상 : 107백만원
    . 정보관리 운영 및 지원 : 20백만원
- (산출②) 제품안전 문화확산 및 국제협력 등 : ('24) 491백만원 → ('25) 493백만원, 2백만원 증액
  * 제품안전 관련 회의(자문위, 자료제작·인쇄, 강사수당 등), 재료비, 국제회의 등
    . 일반수용비 351, 임차료 41, 재료비 38, 국내여비 20, 국외업무여비 28, 사업추진비 15백만원

③ 제품안전정책·정보제공 시스템운영 : ('24) 90백만원 → ('25) 140백만원, 50백만원 증액

- 제품위해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전략계획(ISP)」수립' 예산
- (산출①)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유지·보수 등 관리 용역 비용 : 90백만원
- (산출②)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비용 : 50백만원

④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24) 2,255백만원 → ('25) 0원

- 내역사업 이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 "신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3732-312) 사업으로 이관"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88	○ **일반수용비(210-01) : 350,543천원** 가. 제품안전 자료제작, 제도홍보 등(40,547천원) ・ 설명회 자료인쇄서 및 홍보물제작 : 3,682천원x11종=40,511천원 나. 회의 및 강사수당(130,000천원) ・ 제품안전기준개발회의 수당 : 150천원x40회x10명=60,000천원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기술세미나 강사수당 등 : 200천원x20회x10명=40,000천원 다. 제품조사 및 평가수수료(180,000천원) 라. 조정 : △4천원 ○ **임차료(210-07) : 41,000천원** 가. 제품안전 국제 및 국내워크숍(41,000천원) ・ 행사장 임차 : 41,000천원 ○ **재료비(210-11) : 38,000천원** 가. 안전기준개발용 시험제품구입 : 38품목x1,000천원=3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0,000천원** 가.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 : 1식 x 9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338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발 : 9,442천원 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 8,957천원 다. 조정 : △6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8,467천원, 외화 $8,784** 가. 제품안전국제협력(28,369천원, $8,784) ・CPSC 국제회의 참석 : 8,204천원($2,196) ・ICPHSO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 참석 : 12,306천원($3,294) ・OECD CCP 및 소비자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 12,306천원($3,294)	1,685	○ **일반수용비(210-01) : 350,543천원** 가. 제품안전 자료제작, 제도홍보 등(40,547천원) ・ 설명회 자료인쇄서 및 홍보물제작 : 3,682천원x11종=40,511천원 나. 회의 및 강사수당(130,000천원) ・ 제품안전기준개발회의 수당 : 150천원x40회x10명=60,000천원 ・ 제품안전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150천원x20회x10명=30,000천원 ・ 기술세미나 강사수당 등 : 200천원x20회x10명=40,000천원 다. 제품조사 및 평가수수료(180,000천원) 라. 조정 : △4천원 ○ **임차료(210-07) : 41,000천원** 가. 제품안전 국제 및 국내워크숍(41,000천원) ・ 행사장 임차 : 41,000천원 ○ **재료비(210-11) : 38,000천원** 가. 안전기준개발용 시험제품구입 : 38품목x1,000천원=38,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0,000천원** 가.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유지 및 보수관리 : 1식 x 9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338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발 : 9,442천원 나,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 평가방법 개발 : 8,957천원 다. 조정 : △6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8,467천원, 외화 $8,784** 가. 제품안전국제협력(28,369천원, $8,784) ・CPSC 국제회의 참석 : 8,204천원($2,196) ・ICPHSO 국제회의 및 심포지움 참석 : 12,306천원($3,294) ・OECD CCP 및 소비자협력 국제회의 참석 등 : 12,306천원($3,294)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조정 : △4,34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652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정 간담회 등 : 30천원x14회x20명=8,400천원 나. 제품안전정책개발 간담회 등: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다. 제품안전의 날 사업추진 : 10천원x1회x100명=1,000천원 라. 조정 : △14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86,000천원** 가.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3종x45,000천원=586,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255,000천원** 가. 기관운영관리(2,255,000천원) ・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비 : 1식x2,255,000천원=2,255,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66,000천원** 가. 민간위탁(466,000천원)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1식x466,000천원=466,000천원		・조정 : △4,34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652천원** 가. 제품 안전기준 개정 간담회 등 : 30천원x14회x20명=8,400천원 나. 제품안전정책개발 간담회 등: 30천원x9회x20명=5,400천원 다. 제품안전의 날 사업추진 : 10천원x1회x100명=1,000천원 라. 조정 : △14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36,000천원** 가.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3종x45,000천원=586,000천원 나. 제품안전정보포털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비용 : 1식 × 5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66,000천원** 가. 민간위탁(466,000천원)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 : 1식x466,000천원=466,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안전포털 정보이용건수 (건)	목표	34,408	41,754	45,000	49,767	49,374	최근3년간평균 접속건수와 외부환경변화	제품안전포털 일평균방문건수 =년 방문건수/365	제품안전포털 통계확인 (SafetyKorea.kr)
	실적	50,887	41,990	49,313	48,589	-			
	달성도	147.8	100.5	109.5	97.6	-			
제품안전교육 수료자수(명)	목표	1,500	2,800	3,000	5,200	4,500	최근3년평균과 전년 교육자수 반영	제품안전관련 교육 수강인원 합계	교육주관 기관확인 및 온라인교육 접속자수 확인
	실적	3,385	3,860	5,147	6,500	-			
	달성도	226%	138%	172%	12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안전 빅데이터 구축 로드맵 개발, 비관리제품 분류 가이드라인 개발 등 학술연구용역 21개 과제를 통한 안전제도 기반 조성 - 제4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내 정보분석, 제품출시 전관리, 제품출시 후관리, 기반조성 등 4대전략 21개 중점과제 적시추진(실적점검 5월, 12월) - 비대면 안전인증 심사절차 도입, 전자적 인증표시제품 대상 확대, 인증기관 KOLAS 중복평가 개선 등 규제 개선 추진 * 리콜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2개월→1개월),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심사방식 도입 - 스타트업 기업지원을 위한 MoU 체결('21.4.), 모듈형 인증도입('21.9.),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인증면제('21.10.) 등 기업부담 완화

	- 국제적 수준과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및 기업애로 해소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기준 정비(총 35건)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ㅇ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제품안전 노출위험 및 영향력이 높은 청소년 대상 5개교 700여명 교육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 품목별 안전기준 관련한 소상공인, 유통업자, 기업체 대상 13회 900여명 교육 - 소비자단체 연계한 소비자 교육 14회 1,800여명 교육(노약자 대상 3회 110명 포함) - 리콜이행매뉴얼북, 표시사항 가이드북 등 제품안전 관련 가이드북 등 교육자료 게시(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 제품안전 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ㅇ "2021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시/장소 : 11.23.(화) / COEX 컨퍼런스룸 *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최소인원 130여명 참석, 자체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 * 접수/포상 : ('20년) 87건 → ('21년) 98건 / ('20년) 42점 → ('21년) 98점 ** 중소기업 포상수여율 : ('20년) 40.0% → ('20년) 23.1% → ('21년) 46.3% - 어린이제품 관심제고와 참여유도를 위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장관상 등 시상 - 제품안전 관련 온라인콘텐츠 홍보활동을 위한 대학생 홍보단 우수단원 장관상 등 시상 - 제품 안전성조사 및 검증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에 대한 위촉장 수여 ㅇ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정기안전성 조사 및 해외리콜 정보 카드뉴스 등 제품안전 정보 및 정책관련 카드뉴스 제작·SNS 게시 40여건 * SNS 조회수 : ('19년) 61만건 → ('20년) 106만건 → ('21년) 330만건 - 제품안전 관련 법령, 정책 등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대학생의 제품안전 관심과 참여를 위해 대학생 홍보단 운영 * 대학생 제품안전 온라인콘텐츠1,050여건 제작 및 SNS게시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접수(350여건, 8~9월) → 전문가심사(9~10월) → 국민심사(광화문1번가, 10월) → 시상(30점, 11월, 제품안전의 날) ** SafetyKorea 계간지 소개('21년 겨울호) 및 전국 어린이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가정 내 리콜제품 확인 및 제품안전관리제도, '21.12.) ㅇ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OECD, ISO 등)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안전 기술기준의 제·개정 동향 파악을 위해 개최 - 일시/장소 : 11.23.(화) / COEX 컨퍼런스룸 - 주제 : IoT, AI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대응 및 향후 운영방향 - 진행방식 : 해외연사(Zoom 접속), 참가자(실시간 유튜브 접속) * 제품안전정보센터 유튜브 중계(www.youtube.com/kats_safetykorea) ㅇ 국제협력 활동 강화 - (다자회의) OECD WPCPS 등 소비자제품안전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ICPHSO(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 참석(2월, 6월), OECD WPCPS(제품안전작업반) 회의 참석(4월), ISO COPOLCO(소비자정책위) 참석(5월), 국제소비자컨퍼런스(6월) - (양자회의)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 회의(5월),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 등 양자회의를 통해 제품안전분야 협력 방안 논의 - OECD('21.11), 글로벌제품안전포럼('21.11) 등 제품안전 관련 회의에 참석·개최를 통해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시행 중('21.5~) - 최신 국제표준 동향을 파악하여 안전기준 개정 계획 수립 * IEC 일치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 33건 개정, 62건 폐지(~'21.12.) - 유아용 섬유제품 한-EU FTA TBT 협의*('21.07., 비대면) 및 전기용품 KC인증 관련 주한프랑스상의 업무협력**('21.09.) *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시험인증 현황 등 관련 현황 공유 ** 우리측 안전관리제도 소개 및 IECEE CB Scheme 등의 정보 제공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운영**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 소비자 위해 사례 접수현황: ('19) 23,367건 → ('20) 19,945건 → ('21) 16,361건 **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건수: ('19) 34,592건 → ('20) 33,729건 → ('21) 50,887건 *** 제품안전정보(OPEN API) 제공건수: ('19) 13.6만건 → ('20) 20.7만건 → ('21) 25.3만건
2022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등 13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정책연구 및 제도정비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o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제품안전교육이 미비했던 청소년 및 취약 계층(노인, 장애인 등) 대상의 제품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제품안전 순회교육 실시(15회 883명) - 위해제품 확인 및 신고 등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활용 교육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 대상 제품안전 교육 실시(18회 1,923명) - 사업자 인식개선을 통한 불법·불량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온라인교육 11회(총 1,054명) 실시 - 제품안전 정책 인터뷰를 통한 제품안전관심 유도 및 KC 인증 중요성 전파(연합뉴스TV "출근길인터뷰", '22.11.9.) o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안전 정책, 동향 및 리콜정보 등 콘텐츠 제작 확대 ('21) 59회 → ('22) 82회 - 유튜브 채널 내 "가정내 리콜제품찾기" 등 영상 2건 게시(조회수 11만회) o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개 등 지킴이 운영을 통해 콘텐츠 408개 제작 및 674회 배포 - 활동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1점 등 표창('22.11.8. 제품안전의 날 수여) o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접수 확대를 위해 알림장앱 및 공모전 사이트 홍보로 공모전 접수 확대 ('21) 354점 → ('22) 674점
-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상 2점 등 표창('22.11.8. 제품안전의 날 수여)

ㅇ "2022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일시/장소 : '22.11.8.(화) / 코엑스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등 정부포상
  * 접수 건수 : ('21) 98건 → ('22) 107건
  ** 포상 규모 : 정부포상 6점 등 42점 시상
- 산업단지공단,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포상 안내(접수 107건)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제품안전그림공모전 우수자 시상
- 제품안전성 강화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대통령표창 기업)

ㅇ 제품안전혁신 포럼 운영
- 제품안전제도 및 안전성 기술에 대한 제도·분과위원회 4회 개최
- 2022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온라인 개최
  :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효율적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주제로 미국 CPSC, 호주 ACCC, 중국 DPAC, 영국 등 해외 제품안전 전문가 참여 (22.11.8. 코엑스)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제품안전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부담완화 추진
- (제3차 어린이제품 기본계획)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 ❶ 안전사고예방, ❷ 불법제품 근절, ❸ 기업·소비자 지원강화, ❹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ㅇ (규제개선) 물가·환율·금리 3고 시대,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개발·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 ❶ 공장심사 수수료를 한시적 인하('22.11.) ❷ 2륜 전기자전거, 운동용 슬라이더 불합리한 요건 개선 등 ❸ 영세기업지원을 위한 '無니켈 도금 공정' 보급, 제품안전관리제도 가이드 보급 등

ㅇ (안전기준)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등 안전기준 마련, 완구 등 수입제품 표시사항 개선, 운동용 안전모 시험법 단일화, 전기용품 국제표준 부합화 등 규제 정비(56건)

ㅇ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운영('22.5., '22.11.)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1개 기관, '22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ㅇ 국제협력 활동 강화
- 글로벌 포럼, OECD 제품안전정책 회의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동향 파악(OECD WPCPS 정례회의)
- 한-미, 한-일 등 양자 협의 채널을 기반 국내 안전 정책품질 제고
  * 국표원-CPSC(美), 국표원-경산성(일) 등 5차례 회의 참석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운영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 홈페이지 1일 평균 접속건수: ('21) 50,887건 → ('22) 41,990건

** 제품안전정보(OPEN API) 제공건수: ('21) 25.3만건 → ('22) 30만건

2023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안전 국내외 정책동향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등 16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정비 연구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사업자, 소비자 및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제품안전교육 (‘22) 44회 3,860명 → (‘23) 72회, 5,147명 ○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유튜브 채널 내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등 영상 3건 게시(조회수 5.3만회) - 제품안전정보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품안전 정책, 동향 및 리콜정보 등 콘텐츠 제작 확대 (‘22) 82회 → (‘23) 96회 - 제품안전 정책홍보 및 대국민 제품안전 관심 유도를 위한 TV인터뷰(연합뉴스TV, 1차관님 “행사리포트”, ‘22.11.9. 녹화, 11.10.방송)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제품안전관리제도, 리콜제도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소개 등 지킴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22) 674회 → (‘23) 726회 - 활동우수자에 대한 장관상 1점 등 표창(’23.11.9. 제품안전의 날 수여)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공모전 접수 확대를 위해 알림장앱 및 공모전 사이트 홍보로 공모전 접수 확대 (‘22) 674점 → (’23) 1,555점 -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장관상 2점 등 표창(’23.11.9. 제품안전의 날 수여) ○ “2023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 일시/장소 : ‘23.11.9.(목) / 건설회관 -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훈포장, 장관표창 등 45점 포상 * 접수 건수 : (’22) 107건 → (‘22) 127건 -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제품안전그림공모전 우수자 시상 - 제품안전성 강화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동탑산업훈장 엘지전자(주))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위원회(’23.9.26.,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제도·기술분과 통합위원회(23.12.11.~14. 건설회관) - 2023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23.11.9., 건설회관) ○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2회 개최(‘23.4.14./12.14. 서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23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 신제품 출현 및 온라인시장 확대 등 제품환경변화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23.4.), 제품안전기본법, 전안법 등 제품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안전기준 정비(71건) ○ 국제기구 협력 강화 - 글로벌 포럼, OECD 등 다자회의, 한-미 등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제품안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품질 제고 추진(7회) * 국표원-CPSC 간 양자회의(’23.1.12.) 및 세미나(‘23.7.16.),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23.4.11.~13. / 11.13.~15. 비대면), ISO COPOLCO 총회(‘23.5.23.~25.), GS1 CEO 간담회(‘23.9.6.) 등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 운영**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④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ㅇ 지원부서(기획조정, 전략기획, 인사 등) 인건비 지원 ㅇ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확장 이전 - (구)서울 금천구에서 (신)서울 서초구로 확장·이전하여 근무환경 개선
2024	**①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新제품안전 사후관리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연구" 등 14개 연구용역과제를 통한 제품안전 정책 및 제도정비 연구 **②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ㅇ 제품안전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사업자, 소비자 및 취약계층(노인) 등 제품안전교육 ㅇ 제품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게시 - 유튜브 채널 내 "크리에이터 우수콘텐츠등" 등 영상 16건 게시(조회수 1.1천회) - 제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정보 등 카드뉴스 제작 및 SNS 채널 게시 ㅇ 대학생·고등학생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대학생·고등학생 50명 대상 운영, 현재 5개 미션(콘텐츠 185회 배포), 정책홍보 ㅇ 유치부 및 초등부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 - 공모전 계획수립('24.7.) 및 접수('24.7.3.~8.30. 총 2,397점) ㅇ "2024 제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11.12.) (엘타워) - 기본계획 수립('24.3.) 및 포상요령 공고('24.3.~4.) - 제품안전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실시 ㅇ 제품안전 혁신포럼 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 운영위원회 및 통합분과위원회(6월) - 2024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개최(11.8.) ㅇ 국표원-소비자단체 간 간담회 운영('24.3.22. / '24.11.20.)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기관, '24년 제품안전 관련 주요계획 공유 ㅇ 국제협력활동 강화 - 국표원-CPSC 간 양자회의('24.5.) - OECD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정례회의('24.4. 비대면) **③ 제품안전「정책·정보 안내 시스템(SafetyKorea.kr)」운영** - 소비자, 기업의 제품안전정보 수집 및 안전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안전정보센터 유지·관리 **④ 제품안전관리원 기관운영비** ㅇ 「제품안전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안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 과제 연간 14건 이상 수행

ㅇ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신기술 제품 및 소비자 요구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전문가·인증기관·업계 간 자문회의, 공청회 등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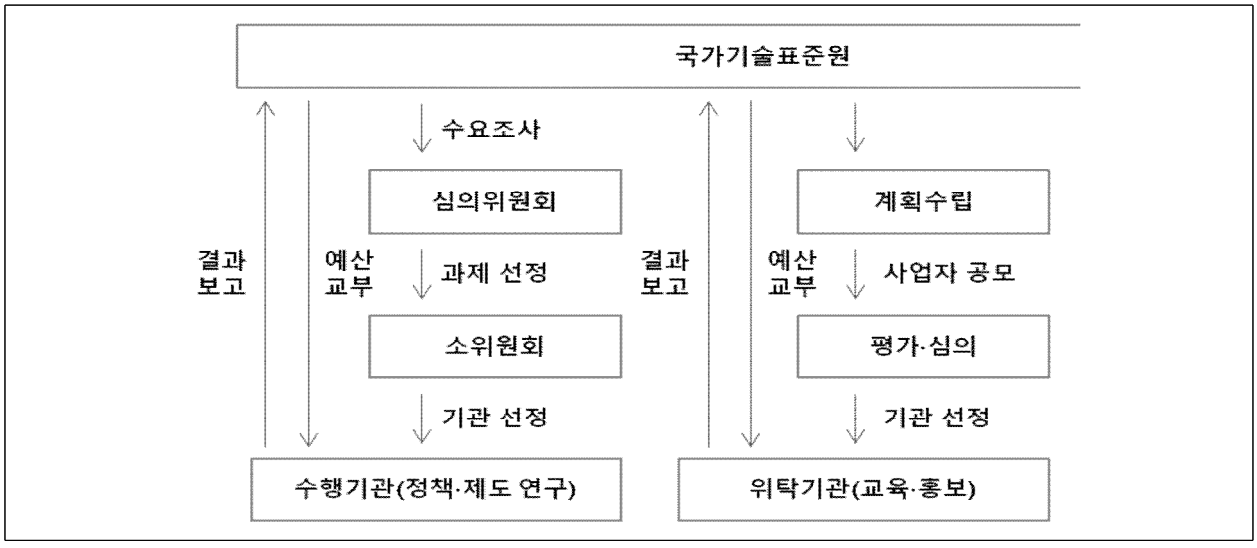
-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제품안전관리 선진화 등을 위하여 제품안전 국제기구(OECD, CPSC 등) 간 교류·협력 채널 구축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을 연간 6,500회 이상 실시하고 선진화된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확대
- 제품의 인증,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를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제작 및 SNS 채널에 게시하고 참여형 프로그램(대학생·청소년 제품안전크리에이터, 그림공모전 등)를 통해 제품 안전의식 제고

ㅇ 제품안전정보시스템(SafetyKorea) 운영
- 국민의 제품 사고 예방 및 소비자·생산자의 제품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제품안전정보 OPEN API 활용 일 평균 40만건 이상 제공
- 제품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안전 정보(인증, 리콜 등)의 수집·보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2,915	3,888	4,434	4,567	4,658	
'24~'28		3,888	1,685	4,491	4,715	4,9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 '23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22.11.)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23년 결산 산중위 검토보고서('24.9.)

- 제품안전 교육·홍보 사업 추진에 재위탁구조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안 강구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20~21년)

- 제품안전포털 방문건수(일평균)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국민의 인식/민감도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인바, 방문건수 감소 추세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접근 때문인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접근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20년, 보통)

- 제품안전 사업목적에서 언급한 법/제도 정비 혹은 정책개발 등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가 바람직함 ('21년,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재정사업자율평가) '20, '21회계연도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법령·제도개선 등 성과지표 추가 검토하였으나 미반영*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사업규모 30억원 미만 사업)

○ ('23년 결산) 신규 사업수행시 재위탁에 따른 추가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공동계약 등을 통해 사업구조 개선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제품 시장 환경과 사회·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지속 추진

ㅇ 제품안전문화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확대

- 제품안전관리 선진화와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등 제품안전 관련하여 국제기구(OECD, CPSC 등) 간 협력 관계 구축
- 산업·기술 발전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 소비자 요구에 출현하는 제품,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품에 대한 산업·전문가·인증기관과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 기업·소비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 및 참여형 홍보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에 게시하여 제품 안전의식 제고

ㅇ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kr) 운영

- KC인증정보 및 국내·외 리콜 정보 등 제품 안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용자(소비자, 사업자) 중심의 대국민시스템 제공
- 제품안전정보포털 DB와 연계하여 제품의 안전인증, 리콜 등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 운영 강화, 제품안전 관련 기업 및 소비자·유관기관에 신속 제공함으로써 제품 안전사고에 예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보조사업연장평가('22년)

- (사업방식변경) 상위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추진, 질적 성과지표로의 개선
- (조치) 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접수행(민간위탁)으로 사업방식 변경('23년 예산안 반영)

12) 부처 건의사항

ㅇ 동 사업은 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

ㅇ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조사, 리콜 등 제품안전관리 체계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분 검출, 화재·감전사고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민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동 사업 예산 지원 필요

ㅇ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른 기술의 발전 및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안전 정책이 필요하고 국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품 안전관리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동 사업

추진 필요

○ 또한, 제품의 다변화와 제품 기대수명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기업·소비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등 대국민 제품안전정책과 정보에 대한 교육과 홍보·안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579	-	1,579	-	±27	-	1,579	1,496	94.7	94.7	-	83
2022	1,549	-	1,549	-	±84	-	1,549	1,530	98.8	98.8	-	19
2023	2,915	-	2,915	-	±54	-	2,915	1,641	98.7	98.7	-	38
2024	3,888	-	3,888	-	±38	-	3,888	3,881	99.8	99.8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450	450	450	450	-	450	450	-	-	100
2022	416	416	416	416	-	416	416	-	-	100
2023	1,266	1,266	1,266	1,266	-	1,266	1,266	-	-	100
2024	2,255	2,255	2,255	2,255	-	2,255	2,255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세목조정 : ±27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수당(20백만원) 부족으로 임차료(△20백만원)로 조정하고 국내여비(7백만원) 부족으로 국외여비(△7백만원)로 조정 - 불용 : 83백만원, 학술연구용역(20백만원)과 관리용역비(2백만원) 낙찰가액으로 집행잔액, 국제회의·대면회의 제한에 따른 국외여비(26백만원), 대면교육·회의 제한에 따른 임차료와 제품 분석·조사 등 시료채취 제한으로 재료비 미집행액(35백만원)
2022	- 세목조정 : ±84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62백만원)으로 임차료(△27백만원), 재료비(△35백만원)를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족(22백만원)으로 국외여비(△22백만원)를 조정 - 불용 : 19백만원, 학술연구용역(14백만원)과 관리용역비(2백만원)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국제회의, 대면교육·회의 제한에 따른 국외여비(1백만원), 임차료(1백만원) 등 미집행액
2023	- 세목조정 : ±54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31백만원)으로 임차료(△7백만원), 재료비(△38백만원)를 조정하고 국내여비 부족(16백만원)으로 국외여비(△16백만원)를 조정 - 불용 : 38백만원, 학술연구용역(25백만원)과 관리용역비(12백만원)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1백만원) 등 집행잔액
2024	- 세목조정 : ±38백만원, 사업수행을 위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일반수용비 부족(25백만원), 임차료 부족(13백만원)으로, 재료비(△38백만원)를 조정 * ±0.5백만원: 국내여비 부족(0.5백만원 / 503천원)으로 국외여비 잔액(△0.5백만원 /△503천원) 조정 - 불용 : 7백만원, 학술연구용역(7백만원) 낙찰차액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첨부] 참고

첨부 1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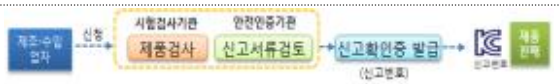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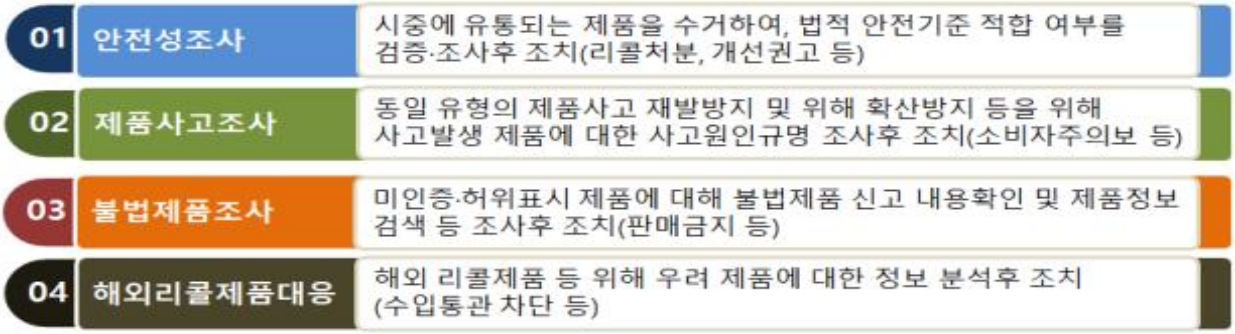
** 정부는 안전관리품목 282개에 대한 610여개의 안전기준을 관리(안전기준은 강제 의무사항)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36	5	4
② 안전 확인 (107개 품목)		65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6개 품목)		75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	24	-
총 282개 품목		**176**	**72**	**34**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첨부 2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비 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②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③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④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①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②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③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④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①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②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③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④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①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②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③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④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사 업 명
(17)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 안전관리(37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박해범	최준환	
		제품안전정보과	043-870-5430	043-870-543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1,747	1,679	1,527	1,527	△152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5	1,865	1,747 (1,747)	-	118	1,679	1,679	1653.6 [1653.6]	1,679	1653.6 [1653.6]		25.4	1,527
・사고조사제도이행	1,005	1,005	913 (913)	-	92	904	904	890.8 [890.8]	904	890.8 [890.8]		13.2	864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314	314	301 (301)	-	13	284	284	282.8 [282.8]	284	282.8 [282.8]		1.2	172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546	546	533 (533)	-	13	491	491	480 [480]	491	480 [480]		11	491
○ 비목별 분류(합계)	1,865	1,865	1,747 (1,747)	-	118	1,679	1,679	1653.6 [1653.6]	1,679	1653.6 [1653.6]		25.4	1,527
・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30)	-	-	20	20	20 [20]	20	20 [20]		-	20
・시험연구비(210-13)	95	95	61 (61)	-	34	95	95	95 [95]	95	95 [95]		-	70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	-	5	5	5 [5]	5	5 [5]		-	5
・일반연구비(260-01)	859	859	803 (803)	-	56	758	758	744.8 [744.8	758	744.8 [744.8		13.2	79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76	876	848 (848)	-	28	801	801	788.8 [788.8]	801	788.8 [788.8]		12.2	63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65	1,865	1,747 (1,747)	-	118	1,679	1,679	1653.6 [1653.6]	1,679	1653.6 [1653.6]		25.4	1,527
・사고조사제도이행	1,005	1,005	913 (913)	-	92	904	904	890.8 [890.8]	904	890.8 [890.8]		13.2	864
- 시 험 연 구 비 (210-13)	95	95	61 (61)	-	34	95	95	95 [95]	95	95 [95]		-	70
- 일 반 연 구 비 (260-01)	859	859	803 (803)	-	56	758	758	744.8 [744.8	758	744.8 [744.8		13.2	79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1	51	49 (49)	-	2	51	51	51 [51]	51	51 [51]		-	-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314	314	301 (301)	-	13	284	284	282.8 [282.8]	284	282.8 [282.8]		1.2	172
- 일 반 수 용 비 (210-01)	30	30	30 (30)	-	-	20	20	20 [20]	20	20 [20]		-	20
- 사 업 추 진 비 (240-01)	5	5	5 (5)	-	-	5	5	5 [5]	5	5 [5]		-	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79	279	266 (266)	-	13	259	259	257.8 [257.8]	259	257.8 [257.8]		1.2	147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546	546	533 (533)	-	13	491	491	480 [480]	491	480 [480]		11	49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46	546	533 (533)	-	13	491	491	480 [480]	491	480 [480]		11	4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 안전관리)**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사고조사**(사고조사 결과 결함발견 시 리콜 등 후속조치), 소비자 **위해정보 · 수집 · 분석 · 보급** 및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제품사고·결함신고제품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결함제품에 대해 리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사고다발 제품 등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 보완 등의 전주기적 제품안전관리 수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제품사고조사를 통해 결함확인 시 제10조, 1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의 행정조치 추진

  *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을 통해 **연평균 80여 건의 제품사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연평균 약 2.5만여 건의 제품사고 관련 위해정보가 수집**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제품인증정보, 리콜정보, 사고·위해정보 등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국민(소비자, 기업, 관련단체 등)에게 보급**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

  * (정보원) 안전인증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 (위해정보 보급)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 제품안전매거진 연 4회 발간, "제품사고이야기 WHY" 연 1회 발간 등

-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국표원-관세청간 정부3.0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전기·생활·어린이제품에 대한 선별·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여 해외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14.8.21) → ’14.9월 시범사업 시작으로 국표원-관세청 간 협업으로 통관단계 수입제품안전관리 실시

  * ‘23년 국표원-관세청 간 협업검사를 통해 9,282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669건(291만점)에 대해 국내반입 사전 차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이행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14. 3.5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15.9.23 "행자부-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간 정부3.0 협업검사체계" 협약식
- '16.1.27 "4개 세관 협업사무소" 상시운영(평택세관 파견 인원 고정배치)
- '17. 1月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4→5명)
- '19. 7月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5→6명, 인천본부, 인천공항, 인천신항, 부산, 평택)
- '23. 4月 "세관협업사무소 파견인원" 증원(6→7명, 인천본부 · 공항, 인천신항, 부산, 부산신항, 평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862	1,244	1,865	1,679	1,52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제품사고조사 이행 내역 : (2024년) 904 → (2025년) 864백만원, (△4.4%)

■ 사고접수제품 결함조사 등 (70백만원)
1) 시험비 : 35백만원 = 70건 × (40만원(시험수수료)) + 70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및 수당 : 35백만원 = 70건×2명×10만원 + 70건×2명×15만원

■ 사고다발제품 원인 평가·분석(794백만원) : 26.5백만원×30개 품목

< '24년도 : 904백만원 >

■ 사고접수제품 결함조사 등(95백만원)
1) 시험비 : 47.5백만원 = 95건 × (40만원(시험수수료)) + 95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및 수당 : 47.5백만원 = 95건×2명×10만원 + 95건×2명×15만원

■ 사고다발제품 원인 평가·분석(758백만원) : 47.5백만원×16개 품목

■ 중소기업 결함제품 개선 등 지원 (51백만원, 전년동) : 34건×1.5백만원
1) 제품개선비 : 34백만원=34건*80만원(개선자문비) + 34건*2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6.8백만원=34건*2명*10만원
3) 조사자 등 수당 : 10.2백만원 = 34건*2명*15만원

(2)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2024년) 284 → (2025년) 172백만원, (△40%)

■ 정보수집 및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홍보비 : 73백만원
1)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비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 25백만원 = 지하철홍보등(5백만*4회)+소비자 유관기관 업무협의(0.2백만*25회)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30백만원

* 각종 제품안전 분석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오프라인으로 보급(약 650부 배포)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30백만=14.5백만*4회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해외리콜모니터링 사업 : 69백만원 = 5.8백만원(인건비)*12개월

< '24년도 : 284백만원 >

■ 정보수집 및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홍보비 : 73백만원

1)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 : 48백만원 = 4백만원*12월
2) 제품안전정보 수집·홍보 및 업무협의 : 25백만원 = 6.25백만원*4건

■ 사고정보, 리콜정보, 위해정보, 제품안전제도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142백만원

* 각종 제품안전 분석 정보를 소비자단체, 지자체, 연구소, 기업 등에게 오프라인으로 보급(약 1,300부 배포)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웹진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여 소비자 제품안전강화와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 제고를 유도

1) 계간SafetyKorea발간·보급 : 58백만=14.5백만*4회
2) 웹진 제작 및 운영 : 84백만원=12개월*7백만원

■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69백만원

* 해외 리콜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 국내 유통업체에게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주의·환기하는 서비스

1) 해외리콜모니터링 사업 : 69백만원 = 5.8백만원*12개월

(3)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2024년) 491 → (2025년) 491 백만원, (-)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491백만원

1) 시험·평가비 : 142백만원=284건*40만원(시험수수료) + 284건*1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318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7명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 '24년도 : 491백만원 >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조사(제품시험) 수행 : 491백만원

1) 시험·평가비 : 142백만원=284건*40만원(시험수수료) + 284건*1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318백만원=17.2만원*22일*12개월*7명
3) 통관단계 협업조사시스템 운영 : 31백만원=31백만원*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적발율 (단위: %) (하향지표)	목표	24	-	-	-	-	-	관세청과 합동 실시한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율 = 적발 건수/선별 조사 건수 × 100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24	-	-	-	-			
	달성도	100	-	-	-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 (단위: 건)	목표		4,700	5,640	6,204		최근 3년 간 실시한 수입제품 선별조사 건수를 평균하여 '24년 목표치 산출	관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입제품의 선별조사 건수	안전성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318	9,282	-	-			
	달성도		155	16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사고조사 80건 접수 중 불법조사 조치 13건 등 50건 조치 - 정기 제품사고조사 연구과제(1건) 및 「제품사고조사 운영 개선방안」 연구과제 등 총 3건 수행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4회) - "제품사고이야기 WHY" (사고조사 사례집)발간 발간 (1회) - 해외 리콜제품 2,278건을 모니터링하여 구매대행 중지 26건, 자발적 리콜 6건, 불법조사 의뢰 13건, 해외리콜 보고 11건 등 조치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협업사업 실시 : 총 6,691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1,603건(318만점) 적발
2022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 제품사고조사 46건 진행, 불법조사의뢰(7건) 등 24건 조치('22.7월) - 제품사고조사 관련 연구과제(2건) 수행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2회)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22년말 누계 실적 : 총 7,318건을 선별·조사하여 불법 · 불량제품 2,019건 적발(27.6%), 수입차단 442만점
2023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2회)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 '23년말 누계 실적 : 총9,282건을 선별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 2,669건 적발, 수입차단 291만점
2024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 글로벌 제품안전매거진 (계간SafetyKorea) 발간 (1회) ③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매일 실시중으로 '24년말 9천여건의 조사예정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사고 다발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제품사고조사: 85건 이상)

- 각종 사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안전기준 및 표준 등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제품안전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대(행정조치: 3건 이상)

-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적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선별·조사 : 9,000건 이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제품시험) 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소비자 신고 및 사고정보 수집	국가기술표준원	■ 소비자 제품사고 신고 접수 ■ 사고사례 정보수집·분석
⇩		
② 현장조사	국가기술표준원	■ 사고조사센터(외부전문가) 선정 ■ 사고내용 확인, 사고제품 수거 등
⇩		
③ 제품 결함조사 (제품시험)	사고조사센터 (외부전문가)	■ 동일모델 제품 구매(필요시) ■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품시험 실시
⇩		
④ 사고조사 결과 종합	국가기술표준원	■ 현장조사 및 결함조사 결과 분석 ■ 종합 보고서 작성
⇩		
⑤ 결과조치 (리콜 등)	국가기술표준원	■ 사고조사 결과 통보(신고인) ■ 결함제품 수거 등의 조치(명령, 권고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소비자, 기업 등에 보급

* 인증정보, 소비자위해정보, 안전성조사결과정보 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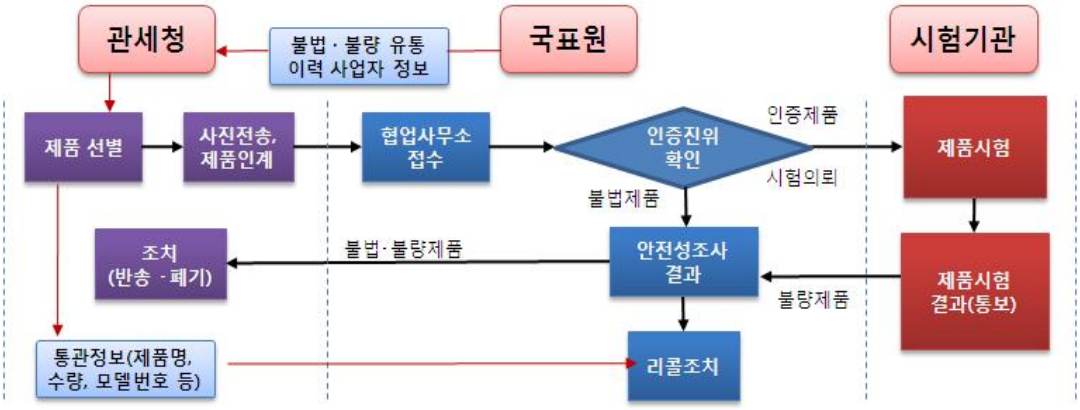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 분석 · 보급 업무 흐름도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고조사 사례 홍보 등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사고조사 사례 분석 ■ 제품사고조사 사례집 발간·배포
제품사고정보센터 운영	공모사업자	■ 위탁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 공고(조달청) → 기술제안평가(국표원) 및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일상감사(산업부) → 낙찰자 선정(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제품안전 정보보급 (Safety Korea 계간지 발간·보급)	공모사업자	■ 위탁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 공고(조달청) → 기술제안평가(국표원) 및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일상감사(산업부) → 낙찰자 선정(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해외 리콜정보 모니터링)	공모사업자	■ 위탁사업계획수립 → 위탁사업 공고(조달청) → 기술제안평가(국표원) 및 입찰가격평가(조달청) → 일상감사(산업부) → 낙찰자 선정(조달청) → 계약체결(조달청)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협업 업무 흐름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747	1,679	1,527	2,097	2,138	
'24~'28		1,679	1,527	1,939	2,036	2,1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목표)**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관리제도 이행

- **(제품사고 조사제도이행)** 제품사고 및 위해제품 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조치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 · 분석 · 보급)**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한 제품 위해 정보·인증정보 수집· 분석 및 보급 체계 구축, 통합 제품안전정보망 운영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단위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22.4)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88 - (결과요약)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이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사고조사 제도 이행) 국내에서 매년 3만 건 이상의 제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 제품의 경우 사고 원인 분석에 많은 시험비용*이 소요되어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16년 갤럭시노트7(70백만원), '17년 아웃라스트 섬유제품(90백만원), '19년 ESS(1,350백만원), '20년 애플워치 SE(73백만원), '21년 차량용 보조배터리(73백만원) 등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제공) 사고정보, 해외리콜, 인증정보 등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실시간 반응형 온라인 웹진)하여 선제적인 국민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매년 감소 추세로 예산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포털 일평균 접속건수 및 API활용건: ('20) 241,505 → ('21) 303,993 → ('22) 354,309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수입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불량·불법 제품 적기 차단, 통관 前 안전성 조사의 회피 수단인 우회 통관 방지를 위한 세관 파견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연례적으로 예산 과소 편성**, 향후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협업조사(건) : ('19) 4,759 → ('20) 5,495 → ('21) 6,691 → ('22) 7,318건 →('23) 9,282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862	-	862	-	-	-	862	841	97.6	97.6	-	21
2022	1,244	-	1,244	-	-	-	1,244	1,226.7	98.6	98.6	-	17.3
2023	1,865	-	1,865	-	-	-	1,865	1,747	93.6	93.6	-	118
2024	1,679	-	1,679	-	-	-	1,679	1653.6	98.4	98.4	-	25.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20.3백만원, 일반연구비 0.7백만원)
2022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12.4백만원, 일반연구비 1.7백만원, 시험연구비 3백만원)
2023	- 세목조정 : 해당사항 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28백만원, 일반연구비 56백만원, 시험연구비 34백만원)
2024	- 세목조정 : 해당없음 - 불용액 발생 사유 : 집행잔액 25.4백만(조달공고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잔액 등, 민간위탁사업비 12.2백만원, 일반연구비 13.2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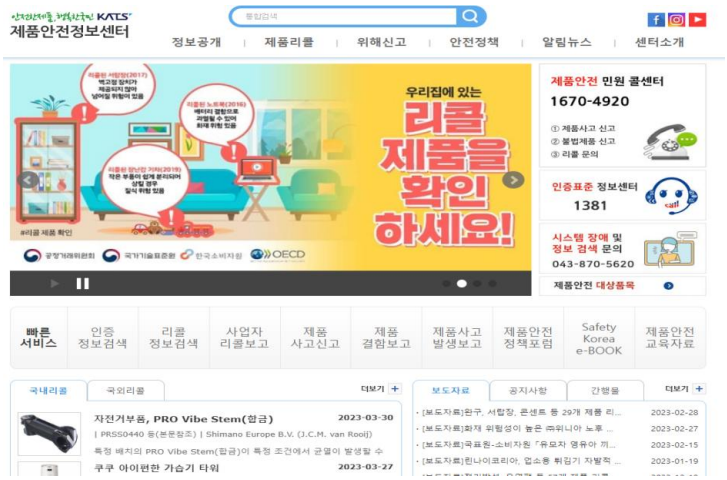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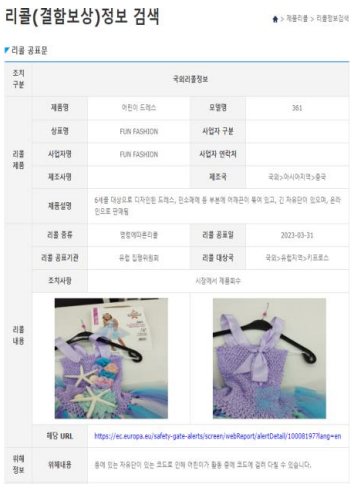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 안전관리 사업 주요 사례

참고 1 제품사고조사 주요 사례

사고제품	주요내용	
 (스타벅스 캐리백)	사고 개요	o 언론보도를 통해 스타벅스 가방에서 발암물질 의혹 제기
	조사 과정	o 제품사고 신고는 없었으나 사회적 이슈를 감안하여 즉각적인 직권조사 착수
	결 과	**o 폼알데하이드 검출로 인한 제조사 자발적 리콜 진행**
 (식기세척기)	사고 개요	o 유사모델의 지속적인 화재사고 발생
	조사 과정	o 직권조사 착수, 사고발생 원인분석 및 타브랜드 제품과 비교분석
	결 과	**o 설계상 취약점으로 인한 화재발생 사실 확인** **o 제조사 자발적 리콜 지원**
 (폴딩 유모차)	사고 개요	o 유모차 사용중 폴딩 부분이 접혀, 다시 펴는 과정에서 유아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 발생
	조사 과정	o 동일제품 및 유사모델 안전기준 전항목 검사
	결 과	**o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 확인, 주의문구 표시 등 개선 유도**
 (드럼 세탁기)	사고 개요	o 세탁기 사용중 세탁물 전면 유리부 폭발사고 발생
	조사 과정	o 제조사 자체 사고조사 보고서 심층분석 및 전문가 자문, 재현시험 절차 검토
	결 과	**o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 실시**
 (스마트워치)	사고 개요	o 국내외에서 스마트워치 발열로 인한 화상피해 주장
	조사 과정	o 제품 위해성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o 시중 유통중인 스마트워치 발열시험 등 결함조사
	결 과	**o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참고 2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 분석 · 보급 주요 내용

위해정보 보급	주요내용
	ㅇ **제품안전정보포털 운영** - 민원콜센터(1670-4920)운영 - 인증・리콜정보 검색 - 제품사고관련 보고・신고 - 사업자리콜, 결함보고, 사고발생보고 - 해외리콜정보 게시
 	ㅇ **제품안전정보 보급** - safety korea 계간지 4회 발간 및 웹진(safetynews.or.kr)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제품안전 정보의 실시간 제공
 	ㅇ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전파** - 해외42국에서 리콜된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유통 차단실시 - 온라인몰 중심으로 해외리콜제품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후 구매대행중지 요청 등 후속조치 실시

참고 3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적발 사례

적발제품	주요내용	
 (충전지)	위반	o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단전지, 보호회로 부품상이
	위해	o 부품변경으로 충전중 화재 발생 우려
	조치	**o 통관 보류하고, 수입자 통보 후 폐기 조치**
 (완구)	위반	o 안전확인 회피 목적으로 최소 사용연령 표시라벨 임의 변경 *최소 사용연령 3세이상 → 14세 이상
	위해	o 안전확인 미실시로 유해 화학물질 위험 우려
	조치	**o 통관 보류, 수입자 통보 후 폐기 조치**
 (완구)	위반	o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7배 초과 검출
	위해	o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유아의 피부,눈,간 손상 우려
	조치	**o 통관보류, 수입자 통보 후 적출국(중국)에 반송**
 (완구)	위반	o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시험 미실시
	위해	o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어린이 건강 위험 우려
	조치	**o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 실시**
 (노트북)	위반	o 인증정보 미표시(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등)
	위해	o 안전확인이 되지 않은 전자제품으로 사용 중 화재 우려
	조치	**o 통관보류 후 수입자 보완조치 통보**

사 업 명
(18)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37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정대환		김용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0		043-870-5455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	송지환 팀장	070-5223-142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생태계조성	1,857	1,543	1,247	1,247	△296	△1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7	1,857	1,857 [1,843]	-	-	1,543	1,543	1,543 [1529.5]	1,543	1,543 [1529.5]	-	-	1,247
·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역량강화	520	520	520	-	-	468	468	468 [468]	468	468 [468]	-	-	358
·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기반조성	230	230	230	-	-	-	-	-	-	-	-	-	-
·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320	320	320	-	-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288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787	787	787 [773]	-	14	787	787	787 [773.5]	787	787 [773.5]	-	13.5	601
○ 비목별 분류(합계)	1,857	1,857	1,857 [1,843]	-	-	1,543	1,543	1,543 [1529.5]	1,543	1,543 [1529.5]	-	13.5	1,247
· 일 반 수 용 비 (210-01)	50	50	50	-	-	10	10	10 [10]	10	10 [10]	-	-	10
· 임차료(210-07)	30	30	30	-	-	-	-	-	-	-	-	-	-
· 일 반 연 구 비 (260-01)	140	140	140	-	-	-	-	-	-	-	-	-	-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830	830	830	-	-	746	746	746 [746]	746	746 [746]	-	-	63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87	787	787 [773]	-	14	787	787	787 [773.5]	787	787 [773.5]	-	13.5	601
· 자 산 취 득 비 (430-01)	20	20	20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57	1,857	1,857 [1,843]	-	-	1,543	1,543	1,543 [1529.5]	1,543	1,543 [1529.5]	-	-	1,247
· 어린이제품안전 확보역량강화	520	520	520	-	-	468	468	468 [468]	468	468 [468]	-	-	358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520	520	520	-	-	468	468	468 [468]	468	468 [468]	-	-	358
· 어린이제품안전	230	230	230	-	-	-	-	-	-	-	-	-	-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교육기반조성													
- 일 반 수 용 비 (210-01)	40	40	40	-	-	-	-	-	-	-	-	-	-
- 임차료(210-07)	30	30	30	-	-	-	-	-	-	-	-	-	-
- 일 반 연 구 비 (260-01)	140	140	140	-	-	-	-	-	-	-	-	-	-
- 자 산 취 득 비 (430-01)	20	20	20	-	-	-	-	-	-	-	-	-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운영	320	320	320	-	-	288	288	288 [288]	288	288 [288]	-	-	288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310	310	310	-	-	278	278	278 [278]	278	278 [278]	-	-	278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787	787	787	-	-	787	787	787 [773.5]	787	787 [773.5]	-	13.5	60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87	787	787 [773]	-	14	787	787	787 [773.5]	787	787 [773.5]	-	13.5	6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증진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어린이제품에 대한 선제적 유해성 검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안전확보 역량을 강화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검증·분석하여 안전관리 방안 도출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통해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 안전교육 선도학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학교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안전교육: 권역별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위해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영세·소기업의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 5, 27, 31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 · 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 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4.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5. 6월 시행)
- ’16. 2월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17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 사업 시작
- ‘19. 11월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22. 11월 “제3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25. 1월 “제4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공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070	1,070	1,857	1,543	1,24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어린이(13세 미만) 및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35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운영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278백만원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 (’24) 468백만원 → (’25) 358백만원, 110백만원 감액

-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수행 필요에 따른 예산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358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8,000	○ **민간경상보조(310-01) : 468,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468,000천원) ・ 12개품목 × 39,000천원 = 468,000천원	358,000	○ **민간경상보조(310-01) : 358,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358,000천원) ・9개품목 × 40,000천원 = 358,000천원

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4) 288백만원 → (’25) 288백만원

- 연구학교,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유지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백만원
  찾아가는 안전교육 53백만원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0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8,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000천원** 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000천원) ・ 15개교 × 9,000천원 = 135,000천원 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53,000천원) ・ 18개교 × 3,000천원 = 53,000천원 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90,000천원) ・ 1개소 × 90,000천원 = 9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000천원) ・ 20개교 × 500천원 = 10,000천원	288,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288,000천원** 가. 안전교육 연구학교 (135,000천원) ・ 15개교 × 9,000천원 = 135,000천원 나. 찾아가는 안전교육 (53,000천원) ・ 18개교 × 3,000천원 = 53,000천원 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90,000천원) ・ 1개소 × 90,000천원 = 9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찾아가는 안전교육 물품 구입 (10,000천원) ・ 20개교 × 500천원 = 10,000천원

③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24) 787백만원 → (’25) 601백만원, 186백만원 감액

-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이 가장 부담으로 체감하는 시험·인증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어린이제품 관련 시험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601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7,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87,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787,000천원) ・ 500개사 × 1,574천원 = 787,000천원	601,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01,000천원** 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601,000천원) ・ 382개사 × 1,574천원 = 601,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참가자(단위: 명)	목표	5,000	5,500	6,100	6,710	7,381	매년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조정 해왔으며,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 전년 목표의 약 10%를 높인 최대 목표치 설정	Σ 연간 교육이수 인력	연구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참여자 명단
	실적	7,079	10,006	15,091	15,737				
	달성도	141.6	181.9	247.4	234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아용침대, 유아용섬유제품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90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4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55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0개(유치원 10개, 초등학교 10개) 지정·운영(4,032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50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3,047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한국안전체험관(강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2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바닥재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131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4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72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27개(유치원 24개, 초등학교 3개) 지정·운영(6,473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55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3,533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부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3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아용 섬유제품(유아 침구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추가), 어린이공통안전기준(간이시험방법 추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557개) - (안전교육교재 등 콘텐츠 개발) 국내·외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콘텐츠 조사·분석을 통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3건)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196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3개(유치원 26개, 초등학교 7개) 지정·운영(9,966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69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25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충북안전체험관(청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2024	-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분석) 유해성 검증이 필요한 어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학용품, 유아용 침대 등 12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신규 유해물질 조사 등 진행 중 - (제조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인증비용 지원(551개) - (안전교육 전문가 육성)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강사 대상 교육 실시(292명) - (어린이제품 선도학교) 30개교(유치원 20개, 초등학교 10개) 지정·운영(10,587명) -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 77개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방문교육 추진(5,150명) -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경남안전체험관(합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구축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품안전 사고의 선제적인 예방·관리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조사·분석 등을 통한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제품안전 인식 함양
- (어린이제품 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인증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민간경상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

보조사업 계획접수 ⇨ 보조사업 점검평가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및 결과평가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민간위탁): 일반경쟁입찰(조달공고)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조달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수행 및 결과평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857	1,543	1,247	4,355	5,130	
'24~'28		1,543	1,247	1,782	1,871	1,9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 지적사항 말미에 괄호( )로 기관명 및 출처 표시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어린이 안전체험관 미구축 지역 어린이를 위한 이동형 체험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황운하 의원(더민주))

→ (조치) 예산 증액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o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의 권역별, 소외지역 등 고려 설치 필요(고민정 의원(더민주))

→ (조치) '21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지자체 선정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강원태백, 한국안전체험관) 선정

o 기업 수요대비 지원기업 비율이 저조(20% 수준)하여 예산 확대 필요('22년 결산)

→ (조치) '23년 예산 확보(신규내역, 787백만원)

o 어린이제품 교육프로그램이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 필요('23년 예산 산중위 검토보고서('23.11.))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2억 8,800만원)은 교육 대상 및 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11억 7,000만원 증액 필요(노용호 위원('23년 산중위))

o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7억 8,700만원)은 신청기업 수 대비 지원기업 수가 제한적이므로,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위해 3억 1,500만원 증액 필요(노용호 위원('23년 산중위))

o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치할 필요(정청래 위원('23년 산중위))

o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등 다양한 사업방식 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정청래 위원('23년 산중위))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o 재정사업자율평가('19~21년)

- 외부지적에 대한 조치결과가 인정되나, 성과목표의 적극성 확인이 어렵고, 학회, 언론보도 등 사업성과 우수성은 다소 부족함('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 제품안전포털 방문건수(일평균)는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국민의 인식/민감도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인바, 방문건수 감소 추세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접근 때문인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간접접근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 제품안전 사업목적에서 언급한 법/제도 정비 혹은 정책개발 등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가 바람직함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단위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 '21회계연도)에 따라 제품안전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 강화

- 어린이제품에 대한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선제적 유해성 검증·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안전확보 역량을 강화

o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선제적 예방 및 제품안전 인식 함양

o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 영세·소기업의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어린이제품 보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o 보조사업연장평가('23년)

-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
- (결과요약) 현재의 사업내용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방식 개선 필요, 특히 융복합 신규 제품의 출시 등 새로운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및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안전성 검증 강화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12) 부처 건의사항

-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전주기의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동 사업 지속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070	-	1,070	-	-	-	1,070	1,062	99.3	99.3	-	8
2022	1,070	-	1,070	-	-	-	1,070	1,070	100	100	-	-
2023	1,857	-	1,857	-	-	-	1,857	1,843	99.2	99.2	-	14
2024	1,543	-	1,543				1,543	1529.5	99.1	99.1		13.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1,070	-	830	830	-	830	830	-	-	100
2022	1,070	-	830	830	-	830	830	-	-	100
2023	1,857	-	830	830	-	830	830	-	-	100
2024	1,543	-	746	746	-	746	74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액(7.5백만원) 발생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6백만원), 임차비 (1.5백만원)
2022	- 해당없음
2023	- 불용액(14백만원) 발생 : 조달 낙찰차액(14백만원)
2024	- 불용액(13.5백만원) 발생 : 조달 낙찰차액(13.5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3.2.1.)	-	-	-	-	-	-
전용 ('23.2.3.)	-	-	-	-	-	-
조정 ('23.2.5.)	-	-	-	-	-	-
이체 ('23.2.9.)	-	-	-	-	-	-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	-	-	-	-
-	-	-	-	-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사업 설명자료

[참고 2]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참고1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조성사업 설명자료

□ 사업개요

○ **(목적)** 어린이(소비자), 제조·유통기업(사업자), 규제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용환경 구축('17년~)

□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만 13세 이하)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 정규교육과정으로 교통, 재난 등을 위주로 안전교육(학기당 51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품안전 관련 교육은 매우 미흡(학기당 1~2시간 수준)

- **(선도학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선도학교를 운영

- **(찾아가는 안전교육)** 권역별 유치원·초등학교(선도학교 미선정 지역 우선)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전문강사 양성: 선도학교 교사, 안전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교육 방법 교수

- **(체험관 구축)**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제품관련 위해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기존 지자체 안전체험관 내에 설치)

* 국내 안전체험관은 제품안전보다는 교통, 재난 등을 위주로 체험시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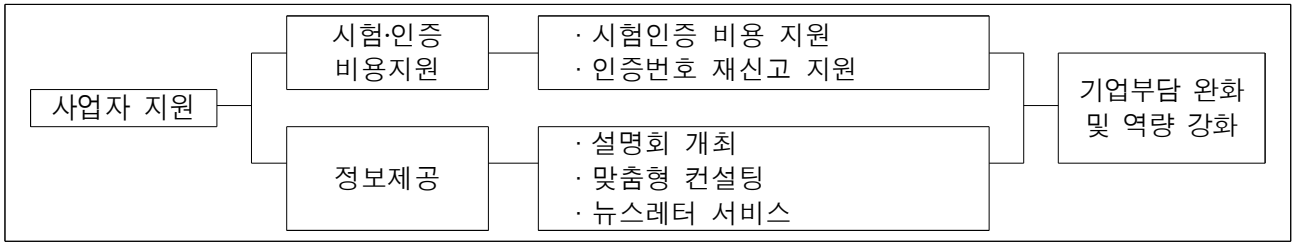
○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우리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시험인증 비용 부담을 해소

* 제품안전제도, 안전기준 등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 **(어린이제품 안전확보 역량강화)** 어린이제품 유해성 검증, 해외동향 분석 등을 통해 적시에 합리적인 안전관리 규제 마련·운영

참고2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 체계 >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비용 지원

○ **(시험·인증 비용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시험인증 비용 부담을 해소

* 어린이제품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제작 상품이 많고, 유행 주기가 짧아 제품의 시험·인증 비용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

< 지원비용 >

구분	국내제조	국내제조 외
비용	최대 1.5백만원	최대 1백만원

○ **(인증번호 재신고 지원)** 소비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어린이제품 대상으로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제품안전 관리 유도

*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만료 예정으로 재신고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기존 인증번호 유지·사용 → 라벨 교체 등 비용 절감 효과

□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 **(설명회 개최)** 어린이제품 사업자 대상으로 시험·인증 관련 법령·제도 안내, 품목별 안전기준 해설 등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컨설팅)** 어린이제품 품목별 시험·인증 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으로 안전하게 어린이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뉴스레터 제공)** 어린이제품 관련 법령, 안전기준 제·개정사항 등 제품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발송

사 업 명
(19)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37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10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박해범	박수진	유예린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30	043-870-5333	043-870-543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제품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1049.1	954	592	592	△362	△37.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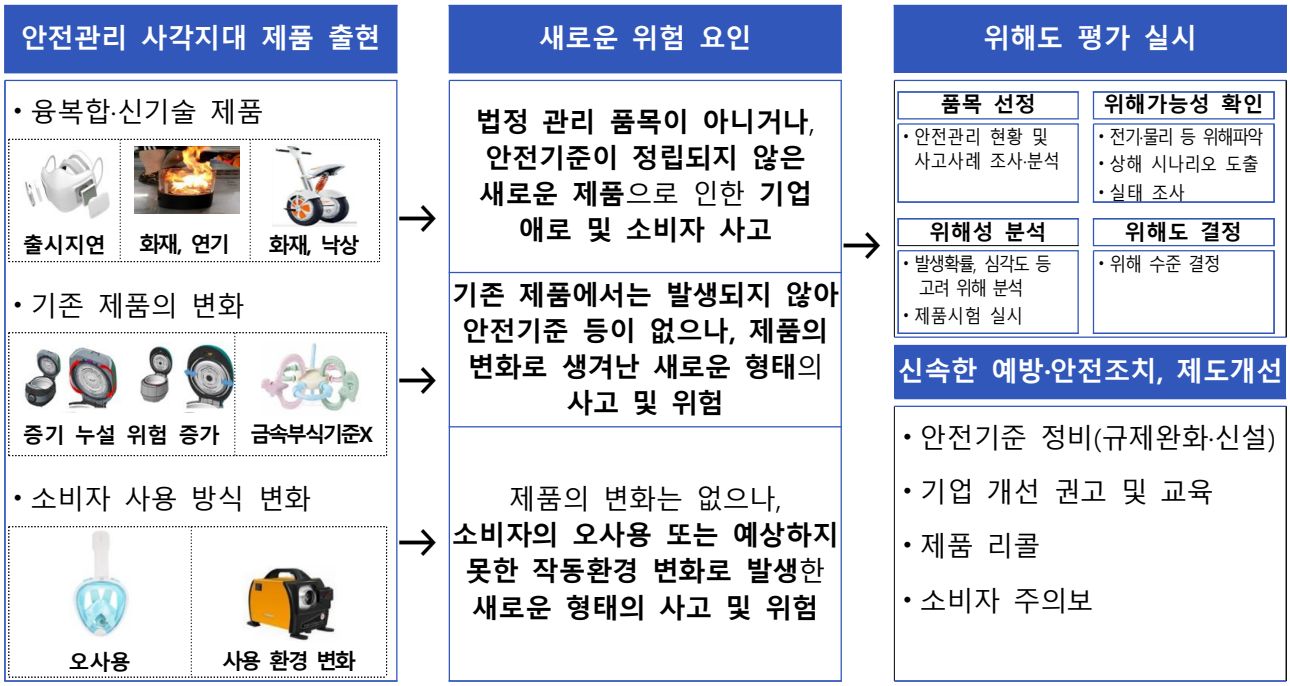
	2023					2024('24.12월말 예상)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0	1,060	1049.1 [1049.1]	-	10.9	954	954	937 [937]	954	937 [937]	0	17	592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10	10	10 [10]	-	0	9	9	9 [9]	9	9 [9]	0	0	9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1,050	1,050	1039.1 [1039.1]	-	10.9	945	945	928 [928]	945	928 [928]	0	17	583
○ 비목별 분류(합계)	1,060	1,060	1049.1 [1049.1]	-	10.9	954	954	937 [937]	954	937 [937]	0	17	592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10 [10]	-	0	9	9	9 [9]	9	9 [9]	0	0	9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50	1,050	1039.1 [1039.1]	-	10.9	945	945	928 [928]	945	928 [928]	0	17	58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60	1,060	1049.1 [1049.1]	-	10.9	954	954	937 [937]	954	937 [937]	0	17	592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10	10	10 [10]	-	0	9	9	9 [9]	9	9 [9]	0	0	9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	10	10 [10]	-	0	9	9	9 [9]	9	9 [9]	0	0	9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1,050	1,050	1039.1 [1039.1]	-	10.9	945	945	928 [928]	945	928 [928]	0	17	583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50	1,050	1039.1 [1039.1]	-	10.9	945	945	928 [928]	945	928 [928]	0	17	5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융·복합 신기술 제품, 소비자 사용패턴 변화 제품 등 사각지대 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 필요성 및 여부(기준 제·개정)를 판단하고 규제의 수준(강제인증, 자율규제 등)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 제품시험, 전문가 자문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제품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리콜, 소비자 안전주의보 안내 및 계도 등)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제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10.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 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 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17.11월 : 제3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0. 7월 : 제4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21. 1월 : 제품 위해성 평가 사업 기획
- '22. 1월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860	1,060	954	59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시험인증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및 관련 산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 (2024) 945백만원 → (2025요구) 583백만원, -38% (362백만원 감액)
-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출현, 제품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7개 품목의 위해 수준(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4) 945백만원 → ('25) 583백만원 요구

- (산출) 583백만원(86백만원/품목 X 7 품목)

②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 : (2024) 9백만원 → (2025요구) 9백만원, (전년동)
- 위해성 평가 후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를 위하여 전년수준의 예산 요구 ('24) 9백만원 → ('25) 9백만원 요구

- (산출) 9백만원(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 (예) 무시동히터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소비자 경보 등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54	○ **일반수용비(210-01) : 9백만원**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9백만원) ・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비용 ○ **일반연구비(260-01) : 945백만원**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945백만원) ・86백만원 X 11 품목	592	○ **일반수용비(210-01) : 9백만원** - 위해제품 소비자 안내·계도 및 운영(9백만원) ・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소비자주의보 등 안내·홍보 비용 ○ **일반연구비(260-01) : 583백만원** -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583백만원) ・86백만원 X 7품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해성평가 품목 발굴 건수 (단위: 건)	목표	-	10	13	11	7	'22~24년도 위해성 평가 목표 건수 및 '25년 예산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 산출	위해성 평가 실시 건수	위해성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	12	15	-				
	달성도	-	120	11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2022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 평가 : 12회 (에탄올난로, 전기마사지기 등 신기술·신소비 트렌드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유해물질, 유아용 치발기 녹물 등)
2023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5회 (반려동물 용품, UV 램프 완구 등 신기술·신소비 트렌드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무시동 히터 안전사용 캠페인, 제품 리스크평가 관련 간담회 개최 등)
2024	①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위해성평가 : 11회 (무선충전기, 기저귀 교환대 등 신기술·신소비 트렌드 제품) ② 소비자 안내 계도 및 운영 : 안전주의보 등 언론을 통한 소비자 계도 2회 실시 (에탄올 화로, 식품모방완구 안전사용 캠페인 등)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제품 위해성 평가** (7건) : 국내외 제품 위해사례 등 실태조사, 위해 심각도파악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위해수준 결정 및 위해도 평가 실시 (규제 완화, 안전사각지대 해소)

*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등 안전 유관기관 수요조사('24.1~3월) 결과, 70여개 품목 확인

ㅇ **소비자 안내·계도** (2회) :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제품 안전사용 안내 콘텐츠 개발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도

* '24년 결과가 중대위험인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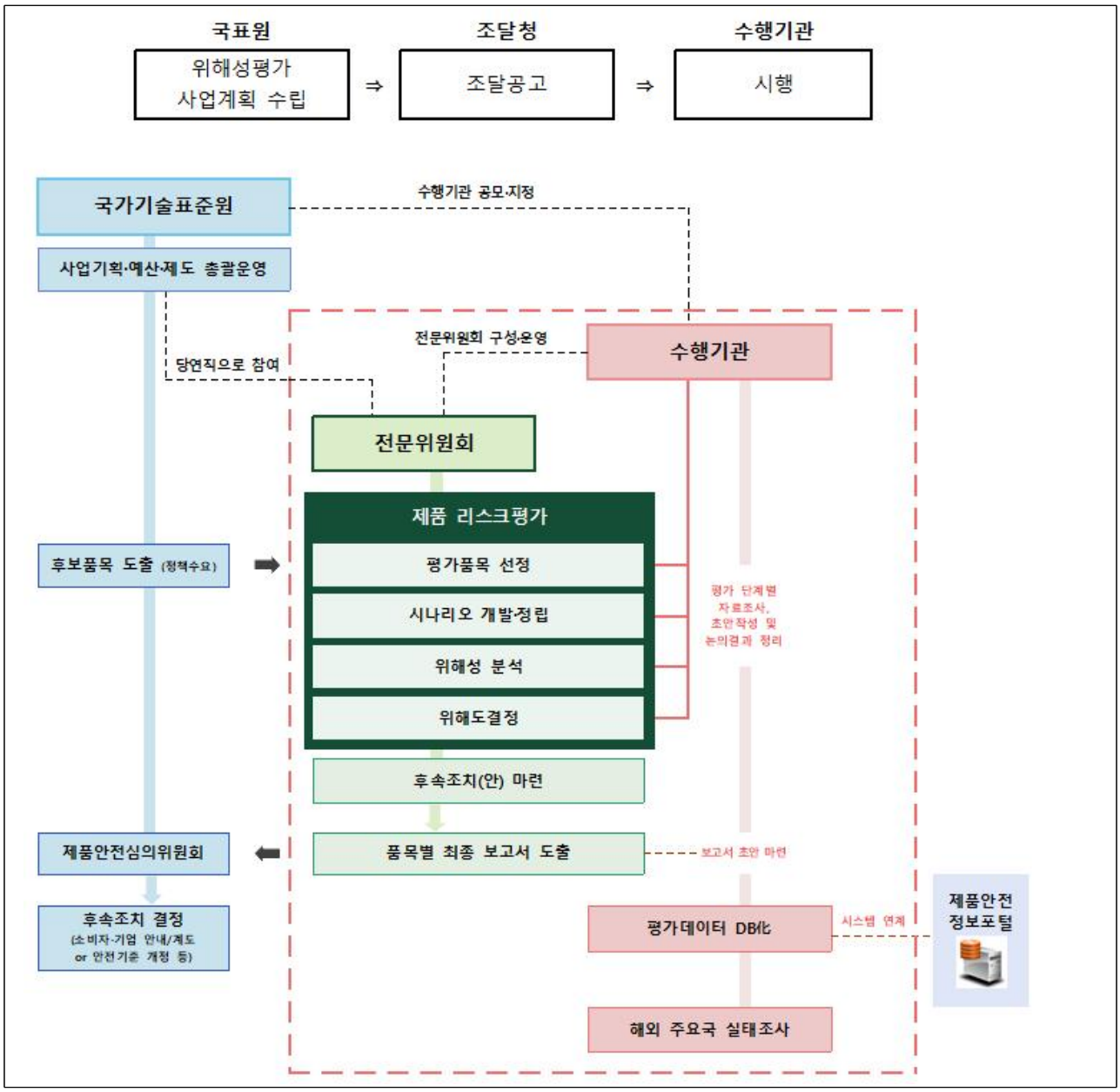
ㅇ **유관기관 협업조치** : 소비자원, 소방청 등 타부처 간 사고·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 위해요인 DB 구축 실태조사

*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 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활용하여 안전관리대상 전 품목 리스크 평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870	954	592	1,191	1,214	
'24~'28		954	592	1,102	1,157	1,21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식약처, 소비자원, 소방청 등 타부처 간 사고·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하여 위해요인 DB 구축에 대한 실태조사
- 전문가, 전담기관, 시험기관 등을 활용하여 위해 가능성 제품 선정과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 등 제품 위해성평가
- 각 위해분야별 평가를 위한 기관 지정 및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제품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및 위해수준결정, 위해성 평가를 위한 각 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컨소시엄을 통한 제품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등장과 비관리제품의 증가 등 국민의 제품 위해에 대한 노출이 심해지고 있어 선제적 제품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품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을 요청 드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	-		-	-	-	-	-	-	-	-	-
2022	860	-	860	-	-	-	860	835.6	97.16	97.16	-	24.4
2023	1,060	-	1,060	-	-	-	1,060	1049.1	98.97	98.97	-	10.9
2024	954	-	954	-	-	-	954	937	98.21	98.21	-	17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해당없음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24.4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10.9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조달공고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8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첨부1 제품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관련 참고자료 (기재부 제출)

(1) 위해성평가 개요

○ **(개념)** 위해·사고정보를 수집하여 제품의 위험한 요소에 사람이 노출 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과정

○ **(필요성)** 정부 당국의 제한된 자원으로 **방대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우선순위 선정 필요

○ **(활용)** 美, EU 등에서 **제조기업은 시장출시 전, 감독기관은 시장출시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 리스크평가 활용

< (EU 사례) 제품안전을 위한 평가의 종류 및 구분>

구분	안전관리 감독기관	제품인증기관	제조자 등 기업
제품 출시 전	-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 **리스크평가**
제품 출시 후	▶ 안전기준 준수평가 ▶ **리스크평가**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 시장출하 이전 시험.인증, (준수평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시장 사후관리

< 미국의 리스크평가 운영사례 >

▸ **리스크평가 추진체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위험식별저감국(Hazard Identification & Reduction)은 **위해관리그룹**(Risk Management Group)과 **자문패널**을 운영하여 리스크평가 실시

- **(위해관리그룹)** ①어린이, ②전기, ③화재·연소, ④기계·스포츠·노인, ⑤화학·나노기술·신소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로 **프로그램 리스크 매니저들을 구성.운영**
- **(자문패널)**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 전문가 등으로 위험자문 패널**(CHAP*) 구성

* Chronic Hazard Advisory Panel : 위험성(Hazards),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 수행

▸ **리스크평가 처리절차**

① **(위해·사고 정보수집)** 소비자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정보, 사고정보, 잠재적 위해가능 정보 및 사망정보 등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

* ① 위해감시시스템, ② 사망확인서, ③ 상해·잠재적 위해사고, ④ 심층조사

② **(위해·시험 평가대상 선별)**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고된 제품 등에 대한 리스크 시험평가·분석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美CPSC는 상근직원 20명, 비상근 직원 20명 정도가 담당)

③ **(리스크 평가·분석)** 위해발생 가능 시나리오에 따른 위해와 법령상 의무기준, 표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

④ **(소비자보호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 평가결과를 기초로 유통금지, 리콜 등의 적합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이나 규칙 제정

(2) 해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제품안전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 · 노약자 ·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 · 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 · 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품 위해성평가 주요 사례

❑ 융복합 · 신기술 제품의 새로운 출현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마련 ('21년)



- 마스크에 공기청정 기능과 유해물질 차단성능(KF 94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관리품목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출시 지연**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필터 기능, 유해물질 및 배터리 등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예비 안전기준** 공고 및 시행('21.12.22~)

전동 이륜차,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마련 ('22년)



- 급발진, 과속 등으로 인한 충돌 사고, 내장 배터리의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언론 등을 통해 다수 이슈화
- 급발진·속도제한 임의해제·충전 중 화재 등이 리스크 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안전기준 개정 근거로 활용(개정, 22.9.6.)

에탄올 난로 화재 사고 관련 안전기준 마련 추진 ('23년)



- **홈캠핑(불멍) 유행·확산 → 가정 등 실내에서 분위기를 위해 사용**
- **관리 외 제품**, 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장식용 화로의 화재** 사고가 2년 3개월간 13건 발생되어 15명 상해, 5,000만원 이상 재산 피해
- 전도 또는 연류 누수로 인한 화재 등이 리스크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안전기준 제정 및 신규 안전관리 추진(`24~)

❑ 제품 사용 형태 · 방식의 변화

스노쿨링 마스크 누수 사고 ('23년)



ㅇ **마스크 상단에 공기흡입구를 부착**하여 **마스크만으로도 스노클링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물놀이용품이나 누수로 인한 위해 사례 발생

ㅇ 안전관리 비대상(어린이용은 관리대상)이나 잠수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제품 개선 권고** 실시(표시사항 및 사용 설명 보완 등, `24.2)

무시동 히터 CO중독 사고로 인해 안전기준 마련 추진 (`24년)



ㅇ 캠핑 유행·확산 → 차량(화물차)에 설치되는 제품에서 텐트 및 **캠핑용 차량의 난방을 위한 제품으로 용도 확대**

ㅇ 안전관리 외 제품이나 **CO중독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지속 발생하는 등 리스크 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소비자 안전 사용 캠페인** 실시(`24.3월) 및 **안전기준 제정** 추진(행정예고, 24.5.16.)

❑ 기존 시장 유통 제품의 다변화

쿠첸 압력밥솥 뚜껑 체결방식 변화로 인한 증기 누설 사고(화상) 우려 ('22년)



ㅇ 기존 압력밥솥은 회전형으로 뚜껑을 고정하는 구조이나, 슬라이드-락 방식의 뚜껑 고정 구조로 **변화된 제품이 새롭게 출시** 됨에 따라, **부품불량발생 시 증기누설사고 위험성 확대**

ㅇ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리콜 유도**('22.2월)

유아용 치발기 구조 변화 ('22년)



ㅇ 기존 유아용 치발기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 지고 있었으나,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존에 없던 나사 등 금속 물질이 사용 → 녹 발생 등 우려**

ㅇ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리콜 유도**('22.6월)

(4) 해외 리스크 평가 제도 관련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해외 안전관리 제도의 리스크평가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을 위한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구축 및 시범배포('23.11.7)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 리스크평가 플랫폼(kipsrisk.co.kr) 통해 무료 제공

- △ 국내 사고발생(신고) 및 안전기준 관련 위해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 사용자 편의를 위해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실습 등 기업 실무자 교육 2회 실시**('23.11.17, '23.12.7)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제품안전평가를 위한 전담실(Office of Hazard Identification & Reduction)을 두고 위험 확인·분석 및 평가, 안전기준을 개발 - NEISS* 등을 통해 수집된 사고정보를 위해성 평가에 이용 *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전미 위해감시 전산시스템 - 위해성 평가수식 수립부터 결과도출까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 - 평가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독성정보는 NTP*를 통해, 자문은 CHAP**과 NAS***에서 받음 * National Toxic Program : 국가독성프로그램 ** Chronic Hazard Advisory Panel : 유해물질자문위원회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국립과학원 ㅇ (시사점) 위해성 평가결과는 소비자홍보 및 규정정비로 이어짐
EU	ㅇ (개요)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 지침(GPSD*) 안에 위험평가 지침을 두고 제품위험 수준에 따라 채택할 조치를 식별 *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 심각한 위험이 확인시, RAPEX*를 통해 EU 회원국과 공유하도록 규정 *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 신속 정보교환 시스템 ㅇ (시사점) EU는 회원국에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며, 확인된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독일	ㅇ (개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는 제품안전법(ProdSG) 근거로 위해도평가 전담팀을 운영, 시장감시 차원에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 * Bunderd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물리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는 '제품 및 업무 시스템 부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는 '유해물질 및 생물학적 작용제 부서'에서 진행 ㅇ (시사점) 위해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사고예방 및 노동위험 감소
일본	ㅇ (개요) 경제산업성 독립행정법인인 NITE*에서 제품안전센터를 운영, 제품의 위험분석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선제적 대응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NITE는 정부의 행정집행 법인이라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제품 위해정보를 소방서, 병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ㅇ (시사점) 위해성 평가결과를 통해 사고 미연 방지 및 재발 억제

□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실시·보고 해외 규제 동향

EU	ㅇ 신기술 제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 실시 의무화('24.12월~) ㅇ 리콜 방법(수리, 환불 등)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24.12월~) ㅇ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규제당국에 리스크 평가 결과 제출('20년)
영국	ㅇ 신기술 제품 출시 및 사고 발생 시 보고(EU와 동일) ㅇ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실시 요구(기업·규제당국) -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리콜 방법 협의·조정('23년)
미국	ㅇ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 요구(사실상 강제화) ㅇ CPSC Strategy Plan('23-'26)에 따라 기업 의무 강화 추진 중
호주	ㅇ 제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의무('23.4월)
일본	ㅇ 기업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하거나,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을 결정할 때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11년~)

국가/기관	기업 의무	'10년	'15년	'20년 ('23.1월)	근거
미국 /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사실상 강제** (규제기관이 기업에 요구)	● ('11년) 수입제품대상 리스크평가(RAM) / CPSC staff ● ('06년) 리콜 등 안전조치 결정 리스크평가(RIDM) / CPSC Staff ('23년~'26년) 리크스 평가 관련 방법론 체계 강화 추진(CPSC Strategy Plan)		●	CPSIA section 222 CPSA-16 CFR1009.8 CPSC directrive 0606.1
EU / RAPEX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System)	**강제**	● ('08년) 제품 위험 통보 시 리스크평가(RAPEX) / EU회원국 규제기관	('20년) 리콜 시 리스크평가 / 기업 ●	● 신기술 제품 출시 및 리콜 방법(부품교체, 환불 등)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실시	GPSD (Directive 2001/95/EC) GPSR('22)
일본 /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권고	● ('11년) 리콜 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조치 수준 결정에 활용 / 기업			리스크평가 핸드북 ('11)
영국 / OPSS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강제**			('22년) 사고발생 시 규제당국의 리스크평가 실시 / 기업 ●	Product Safety Risk Assessment Methodoogy(PRISM)(22.12)
호주 /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강제**			('23.4월) 사고보고 및 리콜 시 리스크평가 자료 의무 제출 / 기업 ● ('23.4월) 제품 개발 시 리스크평가 활용 권고 / 기업 ●	A guideline for suppliers The Australian Consumer Law

첨부2 `24년 제품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Ⅰ 추진 배경

□ 기술 발전과 제품 소비 문화 변화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❶**융복합·신기술 제품** 출현, ❷**기존 제품의 다변화**, ❸**소비자의 사용 방식 변화**로 생긴 **새로운 안전 위협(위해) 요인**에 신속한 대응 필요

< 1.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현 > 전동 이륜차, 전동 (킥)보드의 충돌 및 화재 사고
 ○ 급발진, 과속 등으로 인한 충돌 사고, 내장 배터리의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언론 등을 통해 다수 이슈화 ○ 급발진·속도제한 임의해제·충전 중 화재 등이 리스크 평가 결과 중대위험으로 분류 → 안전기준 개정 근거로 활용(개정, '22.9.6.)
< 2. 기존 유통 제품의 변화 > 스노우체인 체결방식 변경으로 유압호스 절단사고 발생
 ○ 스노우체인이 사슬형(기존제품)에서 벨트형으로 변화된 제품 신규출시→ 제품 결함 또는 소비자 부주의 시 차량사고 위험↑ ○ 전안법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 중이나, 이러한 위해 유형은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3. 제품 사용 방식의 변화 > 무시동 히터 CO중독 사고
 ○ 캠핑 유행·확산 → 차량(화물차)에 설치되는 제품에서 텐트 및 캠핑용 차량의 난방을 위한 제품으로 용도 확대 ○ 관리 외 제품, 경유 등 연료로 하는 무시동히터 사용으로 인해 CO중독에 의한 매년 겨울 사망사고 발생('23.11, '21.11, '20.12)

□ **제품안전 규제합리화**('25년까지 인증품목 10%축소) **추진 등에 필요한, 現 안전기준·규제수준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요구**

○ 안전기준 제·개정 근거자료 마련, 안전관리품목 재검토(매2년), 한-EU FTA 전기용품 관리수준 검토(매 3년) 시, **단발성 연구용역에 의존**

* 전안법 시행규칙 제61조(규제 재검토), 어린이제품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한-EU FTA 부속서 2-나-3 전자제품(상품무역위원회에서 위해평가 검토)

○ 美, EU 등은 **한정된 자원**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방대한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평가***

* (美) 리스크 평가관리(Risk Assessement Mangement), (EU) 리스크 평가지침(Risk Assessment Guideline), (日) R-MAP 기반 제품 리스크 평가

◆ 제품 리스크 평가 ◆

□ **제품 리스크 평가** : 시중 유통 중이거나 유통 준비 중인 품목 및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위해수준*) 평가하는 기법

* 중대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4단계로 위해수준을 구분

□ 제품 리스크 평가 방법 분류 :

구분	대상	위해 시나리오	발생 빈도	위해의 심각성	위해수준 평가	후속조치
포괄적 품목 리스크 평가	안전관리 대상 全 품목	사고 발생, 위해 보고 (신고) 시나리오	위해 보고 건수 / 유통현황 (통계 등)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Map	안전관리 수준 조정 심층 리스크 평가 항목 발굴
심층 품목 리스크 평가	신제품, 규제완화 수요 등 주요 관심 품목	전문가의 정성적 시나리오 유추 + 유사 품목 기준 및 사고사례 참고	시나리오 각 단계별 발생 확률의 조합 (관련 제품시험 및 실태조사 실시)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APEX RAG	안전기준 제·개정 소비자 안전사용 홍보
특정 제품 리스크 평가	사고·위해 신고 제품	사고 발생, 위해 보고 (신고) 시나리오	위해 보고 건수 / 유통현황 (사업자 보고 등)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Map	제품 리콜 등 안전조치 소비자 안전사용 홍보
제품 리스크 자가진단	기업 출시 준비 제품 소비자불만 다수 제품	사업자의 정성적 시나리오 유추 + 정부가 사고·위해 사례 등 정보(DB) 지원	시나리오 각 단계별 발생 확률의 조합 (사업자 추론)	경상~사망 (4단계) 구분	RAPEX RAG	출시 전 제품 개선 출시 후 문제 제품 자율조치

□ 국외 리스크 평가 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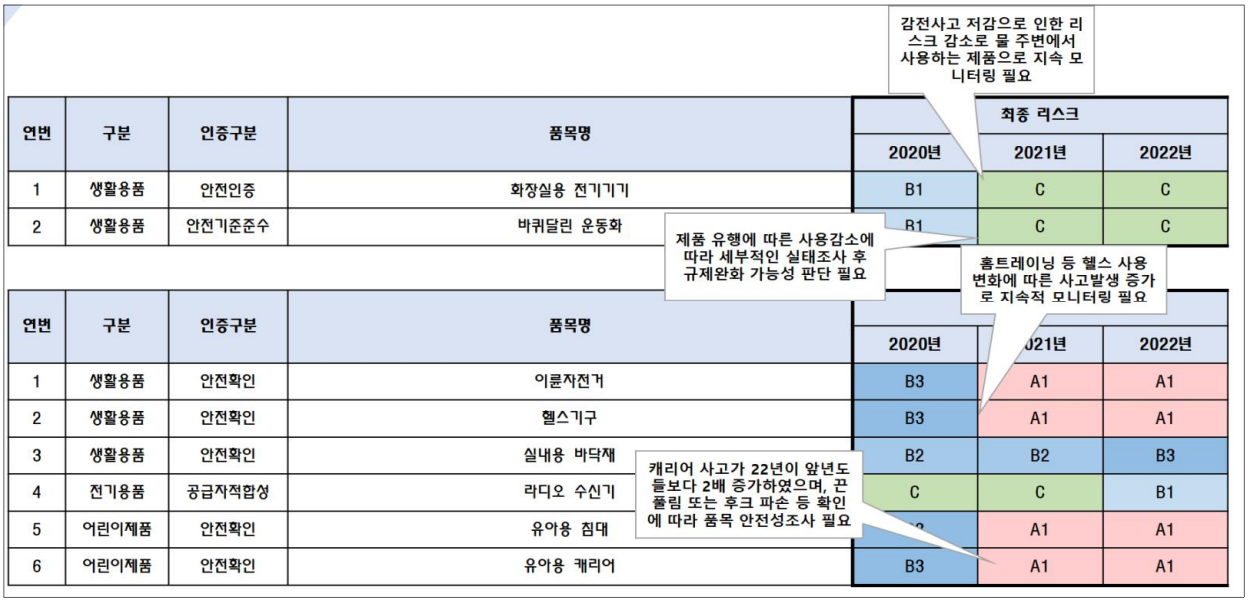
국가	방법론	관련 기관	특이사항	비고
EU	RAPEX RAG	EC 및 EU 회원국	RAPEX RAG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성적+관련 위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유추	심층 품목 리스크 평가 유사
일본	R-MAP	METI + NITE	사고 보고제도 활성화로, 일본 내 사고 발생 데이터가 충분 → R-MAP	특정 제품 리스크 평가 유사
미국	Risk Assessment	CPSC	사고 보고자료, 상해 위해정보, 사고조사 등을 통해 쌓은 DB로 위해 시나리오 분석 실시 → 리스크 평가 수행	포괄적 품목 리스크 평가 유사

Ⅱ '23년 사업 성과 및 '24년 추진 방향

1 '23년 사업 주요 성과

□ **전안법 및 어린이제품법 안전관리대상 품목(262개)***에 대한 **국내 제품 사고 및 위해 모니터링 자료 확보**('20년~'22년) [상세: 붙임1]

* 안전관리 대상 전 품목 282개 중 부품 및 부속품으로 사고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품 제외



감전사고 저감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로 물 주변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연번	구분	인증구분	품목명	최종 리스크		
				2020년	2021년	2022년
1	생활용품	안전인증	화장실용 전기기기	B1	C	C
2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바퀴달린 운동화	B1	C	C

제품 유행에 따른 사용감소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조사 후 규제완화 가능성 판단 필요

홈트레이닝 등 헬스 사용 변화에 따른 사고발생 증가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연번	구분	인증구분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1	생활용품	안전확인	이륜자전거	B3	A1	A1
2	생활용품	안전확인	헬스기구	B3	A1	A1
3	생활용품	안전확인	실내용 바닥재	B2	B2	B3
4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	라디오 수신기	C	C	B1
5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아용 침대	[illegible]	A1	A1
6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아용 캐리어	B3	A1	A1

캐리어 사고가 22년이 앞년도 들보다 2배 증가하였으며, 곤 풀림 또는 후크 파손 등 확인에 따라 품목 안전성조사 필요

□ **기존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규제수준조정 근거 마련** 및 **새로운 위해 제품 검토**를 위해 **'23년 15개 품목을 선정, 심층 리스크 평가 실시** [상세: 붙임2]

○ **서빙 로봇, 식물생장용 조명, 전기충격 장난감, 반려동물용 가구** 4개 품목은 **안전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저위험)

○ **무시동 히터, 반려동물용 목줄, UV램프 완구, 스노우 체인, 서랍장** 5개 품목은 위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중대위험, 고위험)

○ **반려동물용 장난감과 식품유사완구** 2개 품목은 **소비자 계도**(주의보) 및 **유통제품 조사**(사업자 계도)를 통해 **위해 저감 가능**(고위험, 중위험)

○ **가열식 가습기와 전기온수기**는 현행 유통제품의 위해수준(부적합 제품 비율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관리수준 완화(인증→확인) 제안**

* 제습기, 공기청정기 2개 품목은 현행 안전관리수준 유지 의견

□ 우리 기업의 해외 리스크 평가 제도 관련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안전관리 제도의 리스크평가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을 위한 전기·생활·어린이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11.7일)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 리스크평가 플랫폼(kipsrisk.co.kr) 통해 무료 제공

- △ 국내 사고발생(신고) 및 안전기준 관련 위해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 사용자 편의를 위해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실습 등 기업 실무자 교육 2회 실시**(11.17일, 12.7일)

프로그램	소비자 제품 리스크평가 소개	소비자 제품의 사고 및 리콜 사례와 리스크평가	리스크평가 관련 해외 규제 및 평가 사례	평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강사	관리원 위해도평가팀	LG전자 등 기업전문가	김앤장 등 법률전문가	관리원 위해도평가팀
학습 단위	• 용어 및 정의 • 국가별 평가 방법 • 주요 표준 소개	• 소비자 제품의 사고 및 리콜 사례 • 사전 리스크평가를 통한 선제적 예방	• 국가별 리스크평가 활용 • 규제문서 개요 및 작성	• 유럽 RAG 및 지원 프로그램 소개 • 리스크평가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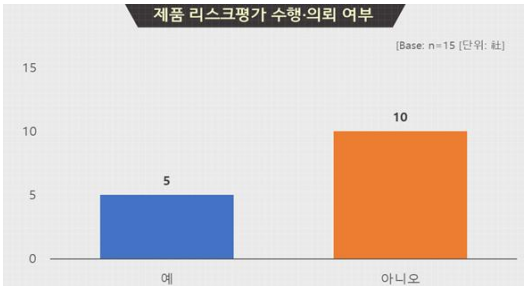
□ 제품 리스크 평가 기법 및 제도 이행 지침 등 기본적 절차 마련

○ 소비자, 산업계, 학계 대상 **리스크 평가 인식도 조사*** 실시('23년)

* 제품 리스크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성 대비 **기업의 리스크 평가 경험 및 인지도는 낮음**



소비자 인식



기업의 경험

○ 사업자의 제품 리스크 평가 수행을 돕기 위한 **이행지침 개발**('23년)

2 '24년 사업 개선 방향

-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한 제품 리스크 평가 및 기업지원 강화
- 규제 완화 품목 발굴, 후속조치 모니터링 등 정책 수요 반영

□ 규제 완화 수요 발굴 확대를 위한 평가 품목 수요조사 대상 확대

○ 리스크 평가 **품목 수요조사**(1~2월 실시) 대상을 **기존 소비자·규제 당국 관련 기관들**에서 기업 관련 **중기중앙회·옴부즈만으로 확대**

* '23년 수요조사 대상 기관 : 7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7개 KC인증기관, 품목 소관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신기술·신소비유형 제품 안전관리 필요성과 안전성 이슈 제품의 규제 수준 조정 검토를 위한 **포괄적·심층 제품 리스크 평가 지속** 추진

□ 사회 이슈(물의) 기업·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 강화

○ **사고신고제품, 위해우려제품**(언론 이슈 등)에 대한 사고조사 시 **리스크 평가* 활용을 확대**하여 개선조치 등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계도

* 자료제출 요구(기본법 제15조, 전안법 제41조, 어린이제품법 제14조)를 통해 해당 제품 생산량과 위해사례(VOC) 등 입수 → 리스크 평가(위해사례/제품수)

○ 안전성 조사 결과 경결함·중결함이 확인된 제품 등에 대해서도 리스크 평가를 선별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선제적 안전조치** 유도

□ 기업용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국제표준(ISO) 양식 기반의 **평가보고서 작성 도구 개발**을 통해 기업 편의성·활용성 강화

○ 교육용 교재·**사용 매뉴얼**(영상 등) 제공 및 **기업 실무자 교육** 지속 실시

□ 리스크 평가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매뉴얼 마련

○ 법 근거 마련(장기과제)과 병행하여, 현행 법 조항*을 활용한 **리스크 평가제도 이행지침** 세부 매뉴얼** 마련 등 제도 이행 기반 보완

* 자료수집(기본법 15조, 16조), 조사(기본법 9조), 위해기반 리콜(기본법 10조, 11조) 등

** '제품안전관리제도 내 리스크평가 제도적 이행지침'(안) 세부 매뉴얼 개발

Ⅲ '24년 제품 리스크 평가 세부 추진 과제(案)

추진 목표

리스크 평가 제도의 전주기 기반 구축을 통해
제품 안전관리 선순환 체계 도모

추진 방향

◇ (품목선정) 소비자·기업·정부로 리스크 평가 품목의 수요조사를 확대하여 필요성, 시급성, 중요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사후관리) 안전기준 제·개정 중심 조치에서 소비자·기업 교육·홍보 등 제품 위해 수준에 따른 후속조치 차별화

◇ (역량강화)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 위해수준 점검을 위한 지원 강화

세부 추진 과제

품목 단위 리스크 평가 강화
(출시 前 안전관리: 안전기준/관리수준)

1 **포괄적 리스크 평가 체계 보완**
[안전관리대상 全 품목]

2 **심층 리스크 평가 후속조치 강화**
[선별된 관심 품목]

안전 이슈 제품 리스크 평가 활성화
(출시 後 사후관리 지원: 리콜/주의안내)

3 **위해 신고·우려 제품 평가**
[사고조사(신고·직권인지) 지원]

4 **안전성 조사 적발 제품 평가**
[안전성 조사 지원]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기업 안전역량 강화)

5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프로그램 고도화**
[제조·유통기업 활용]

6 **지원 프로그램 활용 확대 지원**
[교재·매뉴얼·교육 등]

리스크 평가 기반 확보
(실무 및 제도 이행 지침 등)

7 **제도 이행 지침 세부 매뉴얼 개발**
['23년 개발 제도 이행 지침의 구체화]

8 **리스크 평가 전문성 및 역량강화**

1 (사전) 품목 단위 리스크 평가 확대 및 후속조치 강화

1 안전관리대상 전 품목에 대한 포괄적 리스크 평가 지속 실시('23년~)

○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등 우리원 **안전관리 대상** 全 **제품**(부품류 外)의 **위해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포괄적 리스크 평가***를 매년 실시

* **포괄적 리스크 평가** : 품목 유통량(인구대비 사용률 추정) 및 위해 건수와 심각성(소비자원 병원데이터)을 활용해 제품 위험 등급을 단순 정량 평가

연번	인증구분	품목명	위해 수준			
			2020	2021	2022	2023
1	안전확인	전동보드	B3	B3	B3	평가 진행
2	안전확인	스키용구	B3	B3	B3	평가 진행
3	안전확인	이륜자전거	A1	A1	A1	평가 진행
4	안전확인	헬스기구	B3	A1	A1	평가 진행

○ 기존 소비자원 위해정보 外, **화재 및 폭발 등 소방청**(화재)·**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설비화재) **데이터**를 **확보**해 위해 모니터링 체계 보완

< 포괄적 리스크 평가 소방청 사례(예시)>

【 리스크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 화재 관련 리스크평가(안)

리스크평가 심각도 산정(안)

심각도	정성적 표현	화재
4	매우 심각한	화재 + 사망
3	심각한	화재 + 부상
2	보통	화재
1	경미한	-



▶ 화재 관련 사고 리스크평가 결과 일부 (2022년 기준)

연번	구분	인증구분	품목명	최종 리스크
1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냉장·냉동기기	A1
2	전기용품	안전인증	냉방기	A1
3	전기용품	안전인증	일반조명기구	A1
4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정기 내장형램프	A1
5	전기용품	안전인증	백열등기구	A1
6	전기용품	안전인증	방전램프	A1
7	전기용품	안전인증	그밖의 램프	A1

○ 포괄적 평가 결과가 규제(안전관리수준) 검토 및 조정을 위한 근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선정 기준·방법 개발**

2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한 심층 리스크 평가 유형화 및 후속조치 강화

○ **융복합·신기술 품목 등** 제품 리스크 평가로 **안전관리 필요성 검토**

- **(품목선정)** 소비자원·단체, 유관기관, **중기중앙회, 중기옴브즈만** 등 이해관계자* 수요조사를 확대하여 **위해 우려 및 규제 완화 품목 수요** 발굴

  * 소비자(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규제당국(인증기관, 규제담당 정부부서), 기업(중기중앙회, 중기옴브즈만) 등 제품 안전관리 관련 이해관계자

- **(위해 시나리오)** 제품 **전문가 경험 및 유사 제품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제품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위해요인으로 시나리오를 구성

- **(시험·평가)** 유사기준 등을 활용하여 **위해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제품 시험**과 **소비자 실태조사 등 실시**하여 **RAPEX RAG(EU)에 따라 평가**

- **(후속조치)** 품목별로 **차별화된 위해 저감조치 방안*** **제언**

  * 저감조치: 소비자안전주의·홍보 → 시장감시 강화 → 안전(인증) 등 도입

< 리스크 저감 조치 방안(사례) >

품목	리스크평가 결과	안전조치 별 리스크 변화 검토		
	평가결과	소비자 안전주의·홍보	시장감시 강화	안전규제(인증) 등 도입
무시동 히터 (비대상)	**(중대위험)** 밀폐된 공간의 배기관 미비로 CO중독 질식사고 발생	**(고위험)** 주의홍보로 환기, 배기관 가스 위험 인지로 사고 확률 감소	**(고위험)** 안전성 조사 강화로 사용 설명서 추가 등 사고 확률 감소	**(저위험)** 출시전 인증규제로 구조적 결함 등 대폭 감소
식품 유사 완구 (안전확인)	**(중위험)** (사고) 어린이 질식사고 발생 (화학) 화학물질 경구 노출	**(저위험)** 식품 유사제품의 영유아 사용 관련 안전 주의 홍보	**(저위험)** 안전성 조사 강화로 식품 유사완구의 유해물질 확인	-

○ **규제 조정 수요**가 있는 **기존 관리 품목**에 대한 리스크 평가로 **현행 안전기준의 재조정 등 안전관리 수준 조정 필요성 검토**

- **(품목선정) 포괄적 리스크 평가** 결과(위해 감소제품), **민원** 제기(담당과 설문, 기업)등으로 **규제 강화 또는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을 선정

- **(위해 시나리오)** 기준 재조정(완화, 추가예방)이 필요한 상황을 **역으로 시나리오化** 하거나, **유사 사고 상황을 모사**(전문가)하여 구성

- **(시험·평가) 위해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제품 시험**과 **소비자 실태조사 등 실시**하여 **RAPEX RAG(EU)에 따라 평가** (융복합 품목 동일)

- **(후속조치)** 시나리오별 **위해 수준에 따라 조정된 안전관리 수준 제언**

○ **'23년 품목별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저감 활동 후속조치**

  * 15개 품목에 대해 안전조치 5건, 소비자계도 2건, 규제완화 2건, 현행유지 6건 도출

- 한국소비자원 공동 카드뉴스 제작 등 **소비자 안전주의·홍보** 추진 및 **안전기준 제·개정 사항 검토** 등 후속조치 강화

2 (사후) 안전 이슈 제품 리스크 평가 활성화

3 제품 사고 등 위해 신고·우려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 확대

○ **언론 이슈, 소비자 신고 다발 제품** 등에 대한 사고조사와 연계하여 **신속한 리스크 추정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제품 평가** 추진

- **(제품선정 / 시나리오)** 이슈 발생 제품 / 해당 사고 시나리오
  * 예) UV네일 램프 광안전성, 스타벅스 서머캐리백 유해물질 등
- **(시험 / 평가)** 기본적으로 시험 미실시 / 특정 **제조·유통사의 판매량, 위해 건수(VOC, 신고 등)를 바탕**으로 **R-MAP(일본)에 따라 평가**
- **(후속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리콜 권고·명령, 소비자 안내 등 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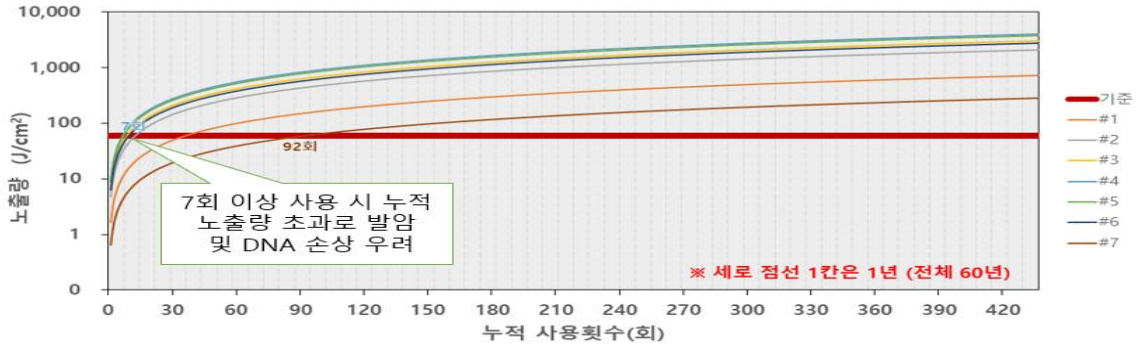
< 안전 이슈 제품 리스크 평가 사례(UV 네일램프 예시)>

【 리스크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

파장 범위	< 시료별 방사조도 W/㎡ >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시료5	시료6	시료7
UV-A	49.2449	141.3371	206.1452	271.4680	253.8285	187.8839	19.3313

* KC60335 관련 방사선 등 기준의 경우 0.001W/㎡을 초과하면 안됨

【 리스크 평가 결과 】



【 저감조치 제언 】

- 사용상 권고(선크림, 네일용 보호장갑 사용 등)
- 시장의 지속적 확대 및 수입 저가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예방책 마련

4 최중결함 外 안전기준 위반(중결함, 경결함) 제품 리스크 평가 추진

○ **경·중결함에 해당**되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 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리콜 권고 등 강화된 안전조치 유도**

* 해당 제품과 관련된 **위해 신고가 다수 확인**되거나,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경우** 등

- 위해 우려 높은 제품에 대해 **정량적 리스크 평가를 통해 추가조치 근거 마련**

3 (기업) 기업의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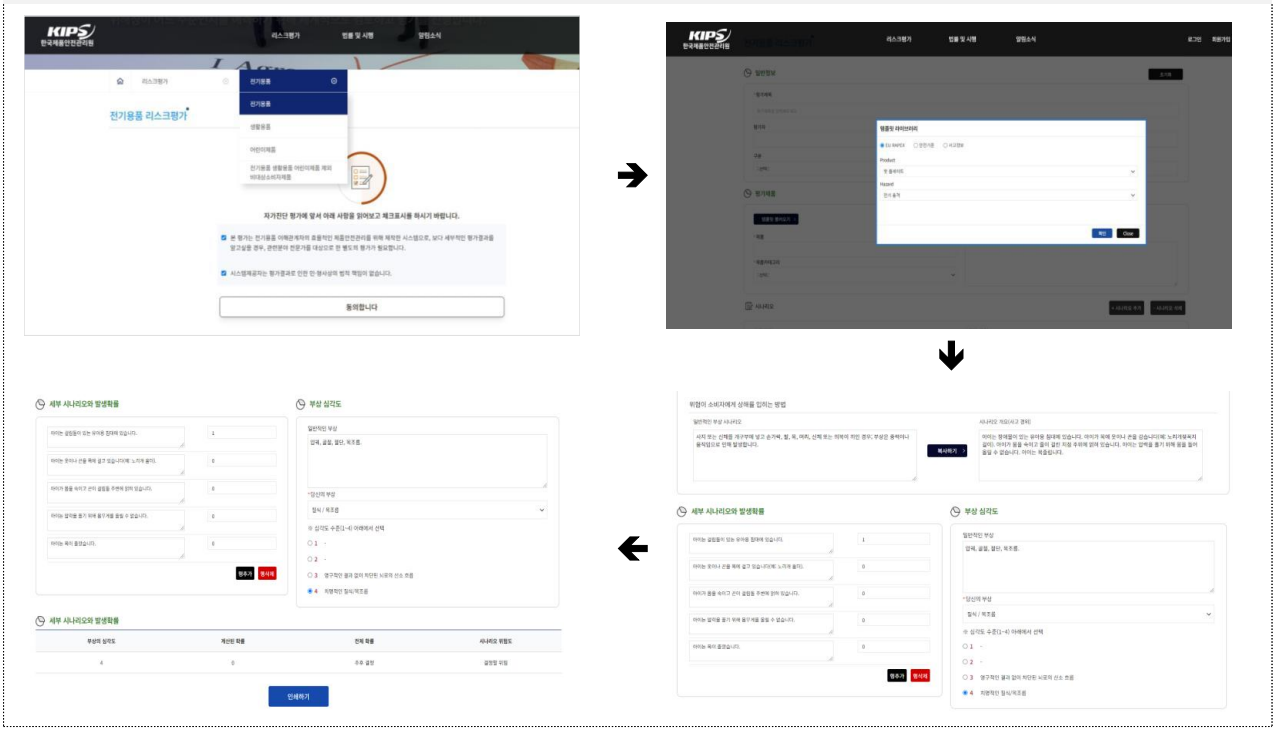
5 기업용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 **기업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제품 리스크평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해외 리스크평가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 도구**** **개발**

* 온라인 플랫폼(kipsrisk.co.kr)을 통해 국내 제품 사고(위해), 해외 리스크 평가사례, 국내 안전기준 등을 기반으로 구성한 제품 리스크 평가 예제(템플릿) 무료 제공

** 국제표준(ISO, IEC)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양식 개발 후 기업 배포

< 리스크평가 지원프로그램 (예시)>



6 기업의 지원프로그램 활용 확대 지원

○ **(교육 개발)** 기업 활용 확산을 위한 교재 개편 및 **사용 매뉴얼(동영상) 개발**

연번	커리큘럼	내용
1	리스크평가 개요	✓ 리스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해외 관련 규제 도입 현황 ✓ 개발단계에서 자가 진단에 활용 시 이점 등
2	리스크평가 사례	✓ 실제 리스크평가를 수행한 모범사례
3	리스크평가 방법	✓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리스크평가 방법 ✓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 자가 진단 방법

○ **(실무 교육)** 제조·유통 기업 대상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지속 실시

4 (기반) 리스크 평가 기반 확보

7 리스크 평가 제도 이행지침을 위한 세부 매뉴얼 개발

○ '23년 개발된 리스크 평가의 **제도적 이행 지침(안)* 활용 확대를** 위해 시장 출시 전·후 평가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한 **매뉴얼 마련**

* 자료수집(기본법 15조, 16조), 조사(기본법 9조), 위해기반 리콜(기본법 10조, 11조) 등 현행법을 근거로 「소비자 제품의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안) 마련('23년)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등 법 근거 강화는 이행실적을 축적 후 추진

구분	리스크 평가 수행	정부기관 (국표원)	사업자 (제조·수입업자)
시장 출시 전	제품 개발 단계	리스크평가 작성 도구·해설서 등의 가이드라인 제공	**(권고)** 리스크평가 수행을 통한 제품 안전 자가진단
시장 출시 후	규제수준 검토	리스크평가 기반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검토 및 신규 안전관리 필요성 검토	규제에 따른 제품 안전인증 및 안전성 평가 이행
	시장 감시 위해정보 확인	필요 시 정부주도 리스크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	심각한 위해 발생 시 자발적 또는 리콜 권고·명령
	제품결함/ 불만 접수	접수된 리스크 평가보고서 결과 검토 리스크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리스크평가 전문인력 양성 리스크평가 위탁수행 업체 연계 지원	**(권고)** 리스크평가를 기반 리스크 저감전략 수립·대응 또는 자발적 리콜 결정
	안전사고 접수	접수된 리스크 평가보고서 결과 검토 리스크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리스크평가 전문인력 양성 리스크평가 위탁수행 업체 연계 지원	**(권고)** 리스크평가 내용을 포함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추후 리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리스크 저감전략을 포함한 (재)평가 보고서 제출

8 리스크 평가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리스크평가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문·품목별 위원회 인력풀 강화**

* 유관 부처, 위해요인 및 리스크 평가 전문가, 품목별 안전기준 및 법률 전문가 등

○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평가 규제 대응 및 기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관련 기관과 전문가 교류 확대**

* 미국 CPSC, 영국 OPSS(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 일본 NITE(국립기술평가원) 등

사 업 명
(20)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3732-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2	312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오유천 과장	이동진 연구관	김낙현 연구사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0	043-870-5415	043-870-5412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실	민경윤 실장	070-5223-1429
제품안전 관리사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최형기 과장	경도현 연구관	고하은 연구사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0	043)870-5425	043-870-5426
	사업시행주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경영지원실	민경윤 실장	070-5223-14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지원	-	-	5,657	5,657	5,657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5,657
· 제품안전관리 사업 지원	-	-	-	-	-	-	-	-	-	-	-	-	1,270
· 기관운영 지원	-	-	-	-	-	-	-	-	-	-	-	-	4,387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5,657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5,65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5,657
· 제품안전관리 사업 지원	-	-	-	-	-	-	-	-	-	-	-	-	1,270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1,270
· 기관운영 지원	-	-	-	-	-	-	-	-	-	-	-	-	4,387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4,3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품안전관리사업 지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① (불법·불량 제품단속)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수된 KC 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 신고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② (리콜이행점검)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 사업자의 본사, 물류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콜이행실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진도점검(업체당 2~6회)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
  ③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안전감시원(약 200명)을 활용,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불법의심제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실시(조사결과 적발된 제품은 행정조치 요청)
  ④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구축) 전안법 개정('18.7)에 따라 사전규제가 완화되어 사후관리만 가능한 24 품목에 대해, 시장현황조사, 안전기준 준수율 조사를 거쳐 부적합제품 사업자 대상 재발방지 계도·홍보 등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기관운영 지원)**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관리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 ·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 · 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 · 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4.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5.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작성・관리
8. 제품사고조사분석 및 위해도평가
9. 기업 및 단계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②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 3월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4.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정
- ‘15.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
- ‘16.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
- ‘16. 3월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17.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
- ‘17.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7.11월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18. 3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 ‘19.12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19.12월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0. 7월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고
- ‘22. 1월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22. 2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3. 4월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23. 9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제품안전관리원 보조사업 지원의 법적근거 명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	-	-	-	5,6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소비자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1,270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 (운영재원)
기관운영 지원	보조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4,387	100%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 (’24) 0 → (’25) 1,270백만원, 순증

㉮ 불법.불량제품 단속 (200백만원)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단속·행정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 (산출) 출장비 97백만원, 차량유지비 54백만원, 일반운영비 49백만원

㉯ 리콜이행점검 (81백만원)
- 시중유통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대상제품에 대한 사업자방문 및 이행점검·독려를 통해 국민 생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예산
- (산출) 출장비 31.5백만원, 차량유지비 32백만원, 일반운영비 17.5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운영 등 (410백만원)
- 안전감시원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안전감시원 교육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 (산출)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120백만원,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260백만원, 일반운영비 30백만원,

㉱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579백만원)
- 사전인증의무 등이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 (산출) 출장비 32백만원, 시료구입비 100백만원, 시험수수료 347백만원, 제도홍보비 100백만원

② 기관운영 지원
: (’24) 0 → (’25) 4,387백만원, 순증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 인력 등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 (산출) 인건비 2,914백만원, 경상비 1,473백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5,657	○ 민간경상보조**(320-01) : 5,657,000천원** 가. 기관운영 지원(4,387,000천원) ・ 인건비 및 경상비 : 4,387,000천원x1식=4,387,000천원 나. 제품안전관리원 사업지원(1,270,000천원) ・ 불법불량제품단속 : 200,000천원x1식=200,000천원 ・ 리콜이행점검 : 81,000천원x1식=81,000천원 ・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 감시체계구축 : 579,000천원x1식=579,000천원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 410,000천원x1식=4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불법제품 현장 조사수(건)	목표				-	2,100	최근 4개년('20~'23) 불법제품 현장조사수 대비 15% 이상 상향	∑현장조사수	불법제품 단속 실적 보고서 (내부자료)
	실적				-	-			
	달성도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 해외직구 등 유통채널의 다변화에 따른 온라인시장 대응 강화 및 기존 유통시장 불법제품 단속강화를 위한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위법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 지자체 리콜이행 점검 지원을 통한 리콜 이행 강화 도모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제품 단속의 실효성 강화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회수에 대한 리콜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여 위해제품 재유통 차단 강화
- 온라인 쇼핑몰社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리콜 회수율 제고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지원하여 불법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역량 확보
-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감시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하여 불법제품 상시 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제도 인식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 대상 홍보 활성화
- 시중 유통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취약제품 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계도를 통한 시중유통 차단 강화

ㅇ 기관운영 지원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공공기관으로서 재정안정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제품안전 업무 추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업계획승인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세부계획 실행	확정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최종결과보고 및 사업평가분석	최종 결과 사업 평가 및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차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	차년도 사업계획 시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① 불법·불량 제품단속(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계획수립 및 소비자신고접수 ➡ 조사계획 통지 ➡ 업체 방문조사 ➡ 조사업체 조치 (지자체, 경찰청 등)

ㅇ (신고접수) 국민신문고, 제품안전관리원 직접신고 등을 통해 민원 접수

ㅇ (계획통지) 조상대상업체에 조사계획 통지

- 필요에 따라, 통지없이 불시 방문조사

ㅇ (방문조사) 신고건에 대해 실제 불법·불량제품 여부 확인

- 확인서 및 증빙서류 확보

ㅇ (조사업체 조치) 불법제품 확인 시 고발 및 행정조치

② 리콜이행점검(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제품 구입 후 시험·검사 ➡ 리콜 등 최종 행정처분 ➡ 리콜이행점검

ㅇ (계획 수립) 연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조사품목, 조사시기 등)

ㅇ (시험·검사) 무작위로 선정된 시판품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적합 여부 조사

ㅇ (행정처분)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

- 최초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시험 등 신청 기회 부여 후 최종 행정처분

ㅇ (이행점검) 리콜이행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고발, 보완명령 등)

③ 안전모니터링 구성 운영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등)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 · 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모니터링단체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 · 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ㅇ (체계) 위촉된 제품안전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품시장 감시 실시

ㅇ (모니터링대상) 불법제품(KC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미비 등) 및 리콜제품

④ 안전기준준수대상감시체계 구축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등)

계획 수립 ➡ 시장현황 조사 ➡ 안전실태 분석 ➡ 홍보 및 계도

ㅇ (계획수립) 안전기준준수대상 24개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ㅇ (시장현황조사) 품목별 제품 유통현황, 사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파악

ㅇ (안전실태분석) 품목별 업체규모별 안전기준 준수율, 부적합 부위 등 실태분석

ㅇ (홍보 및 계도) 취약원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후 계도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	-	-	-	-	
'24~'28		-	5,657	8,925	9,371	9,84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ㅇ '25년 예산 산중위(강승규, 김성원, 박성민, 송재봉, 오세희 위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ㅇ '25년 예산 예결위(서일준, 임미애 위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정보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5년 예산)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시급에 따라 예산 증액을 검토하였으나 미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기관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지원

- 시중 유통중인 불법·불량제품을 현장조사하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의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 리콜 조치된 위해제품에 대한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으로 사업자의 신속한 리콜제품 회수를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

- 제품안전감시원을 통해 KC마크 미부착, KC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을 모니터링 하여 불법제품 및 리콜제품의 시중유통을 감시 및 방지

- 시중 유통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에 대해 안전실태조사, 사업자 계도 등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소비자에게는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 인력 등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신규)

1 기관운영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제품안전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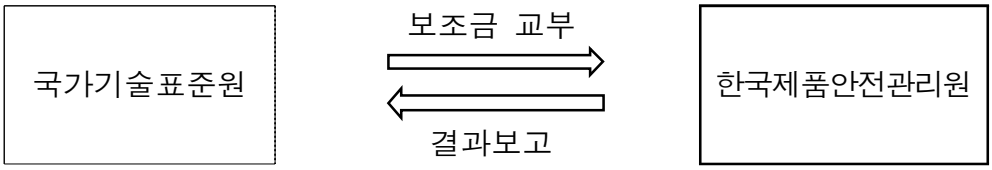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5 ~ 계속

○ **수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전 국민

< 사업 진행 프로세스 >



2 제품안전관리 사업지원

2-1 불법·불량제품 단속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국민신문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수된 KC 미인증, 도용 등 각종 불법·불량제품 신고건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시정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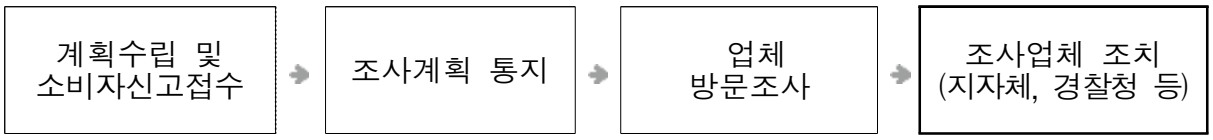
○ **사업기간** : ‘06 ~ 계속

○ **수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전 국민

< 사업 진행 프로세스 >



2-2 리콜이행점검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 사업자의 본사, 물류창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리콜이행실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진도점검(업체당 2~6회)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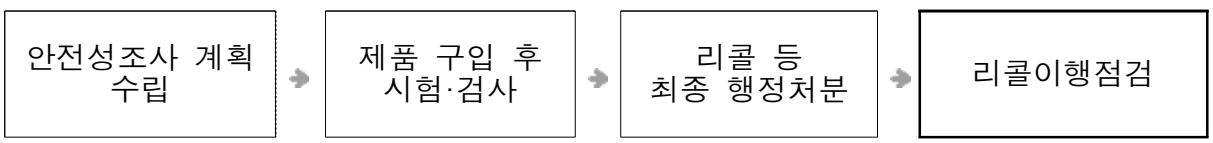
○ **사업기간** : ‘06 ~ 계속

○ **수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전 국민

< 사업 진행 프로세스 >



2-3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안전감시원을 활용,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대해 리콜제품, 불법의심제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연중 상시 모니터링(조사결과 적발된 제품은 행정조치 요청)

○ **사업기간** : '06 ~ 계속

○ **수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전 국민

2-4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 감시체계 구축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부적합요인(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등)을 분석, 부적합제품 사업자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부적합 내용 고지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해당 제품 취급 사업자 대상 현장 방문 홍보, 가이드북 배포 및 대중매체를 활용한 제도 홍보

○ **사업기간** : '19 ~ 계속

○ **수행주체**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전 국민

참고 기타 참고자료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25년)

비전	국민생활 안심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목 표	소비자의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안전인증 품목수)	45 개('22년) (170개 세부품목)	→ 10% 축소 조정('25년)
		(안전기준 정비)	52 건('22년)	→ 전수 검토·개정('25년)
		(제품사고조사)	73 개사('22년)	→ 150 개사('25년)
		(위해차단시스템)	235,129 개('22년)	→ 246,000 개('25년)
		(제품안전 모니터링)	127,847 건('22년)	→ 150,000 건('25년)
		(제품안전정보 활용)	350,000 건/일('22년)	→ 380,000 건/일('25년)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1 [제도] 기업·소비자 Win-Win을 위한 제도 개선	1 안전관리대상 규제수준 정비 2 안전기준 전면 재검토 및 일제 정비 3 민간주도 안전관리 기반 마련 4 국제적 환경변화 신속 대응
2 [사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1 비관리제품 규제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 정비 2 신기술·신수요제품 안전관리 3 사회적 배려계층 안전관리 지원 4 제품 리스크평가 활성화
3 [사후] 촘촘한 시장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의 디지털 전환	1 데이터 기반 제품사고조사 추진 체계 구축 2 위해상품 유통·판매 차단 강화 3 안전성조사 원스톱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4 온라인쇼핑몰 위해우려 유통제품 안전관리
4 [기반] 효율적인 제품안전 관리 기반 조성	1 국내외 제품안전 채널 협력 확대 2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3 맞춤형 제품안전정보 제공 및 활용 확대 4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역량강화

○ 제품안전관리제도

□ (**개요**)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출시 전·후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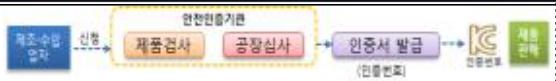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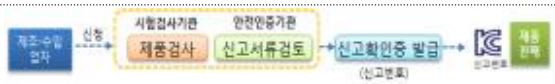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진입 및 유통 허용 등 **사전안전관리**

*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안전기준준수)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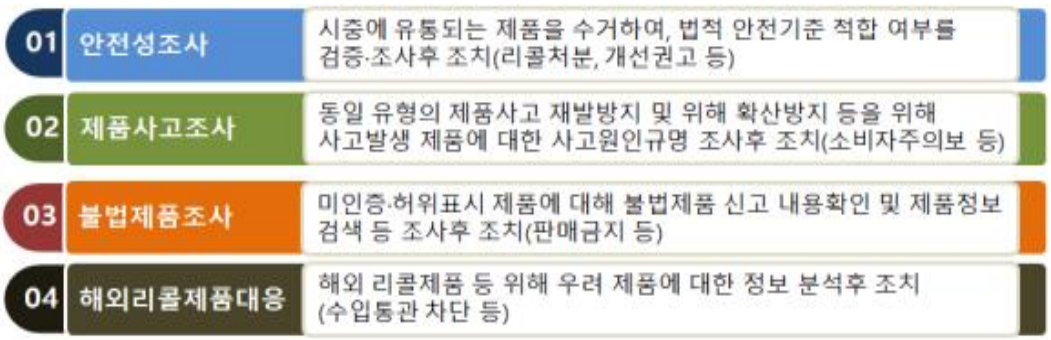
< 안전관리 수준, 절차 및 품목현황 >

관리수준	인증 등 준수절차	안전관리 품목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① 안전 인증 (45개 품목)		36	5	4
② 안전 확인 (106개 품목)		64	26	16
③ 공급자적합성 (107개 품목)		76	17	14
④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		-	24	-
총 282개 품목		**176**	**72**	**34**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

○ (**시장출시 後**) 시중 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확인 시 제품수거, 유통차단, 개선권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 사후안전관리

* 안전성 조사, 제품사고조사, 불법제품조사, 해외리콜제품 대응 등



사 업 명
(2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37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술규제대응국	전민영	김용태	
		기술규제정책과	043-870-5520	043-870-5524	
	사업시행주체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TBT종합지원센터	오기수 센터장	02-3487-61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8,379	7,869	6,688	6,688	△1,181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474	8,489	8,379 [8,379]	15	95	7,869	7,884	7,774 [7,774]	7,869	7,759 [7,759]		110	6,688
· 해외기술규제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5,800	5,800	5,800 [5,800]		-	6,039	6,039	6,039 [6,039]	6,039	6,039 [6,039]		-	5,133
·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309	309	295 [295]		14	230	230	171 [171]	230	171 [171]		59	196
·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230	245	226 [226]	15	4	186	201	197 [197]	186	182 [182]		4	158
· FTA TBT 종합 지원	1,535	1,535	1504 [1,504]		31	1,414	1,414	1,367 [1,367]	1,414	1,367 [1,367]		47	1,201
· 한-아세안 표준 협력 및 기반조성	600	600	554 [554]		46	-	-			-			-
○ 비목별 분류(합계)	8,474	8,489	8,379 [8,379]	15	95	7,869	7,884	7,774 [7,774]	7,869	7,759 [7,759]		110	6,688
· 일반수용비(210-01)	209	164	147 [147]		17	150	110	66 [66]	110	66 [66]		44	136
· 임차료(210-07)	50	50	50 [50]		-	50	50	40 [40]	50	40 [40]		10	30
· 일반용역비(210-14)	405	405	384 [384]		21	386	386	378 [378]	386	378 [378]		8	383
· 국외업무여비(220-02)	103	148	145 [145]		3	75	115	89 [89]	115	89 [89]		26	75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11]		-	12	12	12 [12]	12	12 [12]		-	12
· 일반연구비(260-01)	1,810	1,825	1,756 [1,756]	15	54	1,071	1,086	1,064 [1,064]	1,071	1,064 [1,064]		22	833
· 사업출연금(350-02)	5,886	5,886	5,886 [5,886]		-	6,125	6,125	6,125 [5,117]	6,125	6,125 [5,117]		-	5,219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474	8,489	8,379 [8,379]	15	95	7,869	7,884	7,774 [7,774]	7,869	7,759 [7,759]		110	6,688
·해외기술규제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5,800	5,800	5,800 [5,800]		-	6,039	6,039	6,039 [6,039]	6,039	6,039 [6,039]		-	5,133
- 사업출연금(350-02)	5,796	5,796	5,796 [5,796]		-	6,035	6,035	6,035 [6,035]	6,035	6,035 [6,035]		-	5,129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4	4	4 [4]	4	4 [4]		-	4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309	309	295 [295]		14	230	230	171 [171]	230	171 [171]		59	196
-국외업무여비(220-02)	103	148	145 [145]		3	75	115	89 [89]	115	89 [89]		26	75
- 임차료(210-07)	50	50	50 [50]		-	50	50	40 [40]	50	40 [40]		10	30
- 일반수용비(210-01)	149	104	93 [93]		11	97	57	34 [34]	57	34 [34]		23	83
- 사업추진비(240-01)	7	7	7 [7]		-	8	8	8 [8]	8	8 [8]		-	8
·FTA TBT 협상 및 이행강화	230	245	226 [226]	15	4	186	201	197 [197]	186	182 [182]		4	158
- 일반연구비(260-01)	230	245	226 [226]	15	4	186	201	197 [197]	186	182 [182]		4	158
·FTA TBT 종합 지원	1,535	1,535	1504 [1,504]		31	1,414	1,414	1,367 [1,367]	1,414	1,367 [1,367]		47	1,201
- 일반연구비(260-01)	980	980	976 [976]		4	885	885	867 [867]	885	867 [867]		18	675
- 일반용역비(210-14)	405	405	384 [384]		21	386	386	378 [378]	386	378 [378]		8	383
- 일반수용비(210-01)	60	60	54 [54]		6	53	53	32 [32]	53	32 [32]		21	53
- 사업출연금(350-02)	90	90	90 [90]		-	90	90	90 [90]	90	90 [90]		-	90
·한-아세안 표준 협력 및 기반조성	600	600	554 [554]		46	-	-						-
- 일반연구비(260-01)	600	600	554 [554]		46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황)**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며, 이에 WTO 통보 및 미통보 규제건수 증가추세에 있음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비관세장벽)

** WTO TBT 통보문 추이: '18)3,065건→'19)3,337건→'20)3,354건→'21)3,966건→'22)3,896건→'23)4,079건

** WTO TBT 미통보문 발굴 추이: '18)510건→ '19)550건→ '20)570건→ '21)662건→ '22)925건→ '23)1,208건

-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①규제정보를 수집·분석(기초/심층)·전파하고, ②WTO/FTA TBT등 협상(양자/다자, 현지방문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③TBT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

-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에 대한 표준 분석 및 컨설팅, TBT 교육등수행

○ **(내역사업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지원)**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관련 규제내용을 수출기업에 전파

· 규제대상의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계 의견수렴(정부/TBT종합지원센터/업계/시험분석기관/업종별 협단체, 무역유관기관등)

- **(내역사업 ② WTO/FTA TBT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

· WTO TBT 위원회(3,6,11월)에 참석, **다자협상**을 실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FTA TBT 위원회(예: 한-중국, 한-콜롬비아), 현지 규제당국 직접방문 등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 현안을 적기 해소

- **(내역사업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

· 분석된 협상 당사국의 규제정보를 사용하여 협상시 우리 국익에 최대 반영

* 협상 전후시 상대국의 각종 기술규제 법령, 제도 등을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의 TBT 협상/이행시 국가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

- (내역사업 ④ FTA TBT 종합지원)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수출 지원 확대)

·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제품성능 규제 등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베트남, 인니, 인도 등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1항]**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보급 및 국내 · 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 · 훈련 · 조사 · 연구 ·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 · 분석 · 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 · 훈련 · 조사 · 연구 · 개발 및 홍보

○ **[WTO/TBT 협정('95) 제10.1조]**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 발효된 FTA 양자협정에서 규정(현재 21개*)

* 한-칠레 FTA, 한-페루 FTA, 한-콜롬비아,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등

- **(예시) 한·미 FTA 협정('07) 제9.6조 (투명성)** 3항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② 추진경위

○ '06. 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 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에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 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을 전담 대응중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국 신설
○ '15. 5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旣타결 FTA 국내보완대책」중 한-중 FTA 종합지원사업 추진
○ '17. 5. 대선 10대 공약[주변 4국(중·일·러 등)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통상외교 역량 강화(국익우선 협력외교 2, 3)
○ '17. 8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진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무역기술장벽대응 지원 및 기술규제 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 '18. 6 범부처 협의회 구성·운영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국가표준기본법)
○ '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6,970	7,418	8,474	7,869	6,6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방식, 출연방식(일부내역사업한)
- 사업시행주체 : 국표원, (참여기관) TBT종합지원센터(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시험분석기관 KTR, KTC, KCL, KOTITI, 업종별협단체 KEA, KEAA, KCFA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 수출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기술 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등	출연	TBT종합지원센터 (시험인증산업협회)	5,219백만원	미정	ㅇ**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제1항**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제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3) '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 지원 : (2024) 6,039 → (2025) 5,133백만원,-15.0%

◇ WTO 통보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문 입수 및 분석(기초분석 및 심층분석)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4,358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WTO TBT 통보문(미통보문) 기초분석 : 358백만원(4475건 × 0.08백만원)
  *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 4,000백만원(800건 × 5백만원)

-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 25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 150백만원(30건 × 5백만원)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 100백만원(20건 × 5백만원)

-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분석: 110백만원 [350-02사업출연금]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 110백만원(11건 × 10백만원)

-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 411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 385백만원 (10개국×11개품목×3.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 26백만원 (1건 × 26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 4백만원 [240-01 사업추진비]
  * 10명× 25천원 × 16회 = 4백만원

(2)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 (2024) 230 → (2025) 196백만원,-14.8%

◇ 양자협상, 다자협상 및 타국 공조를 위한 전문가 협의 등 수행

- WTO/FTA TBT 협상 및 애로 협상 여비 : 75백만원 [220-02 국외여비]
  * 12건 × 2명 × 3.125백만원 = 75백만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 30백만원 [210-07 임차료]
  * 3회 × 10백만원 = 30백만원

-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법률자문, 인쇄·홍보, 통·번역 등 : 83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14회(전문가 회의) × 1백만원 = 14백만원
    2건(법률자문) × 10백만원 = 20백만원
    2.5건(인쇄·홍보) × 10백만원 = 25백만원
    1건(통·번역) × 24백만원 = 24백만원

-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 8백만원 [240-01사업추진비]
  * 8건 × 1백만원 = 8백만원

(3) FTA TBT 협상 및 이행 강화 : (2024) 186 → (2025) 158백만원, -15.1%

◇ 상대국의 규제현황, 법, 제도 및 기술규정 등을 분석

- FTA TBT 제도분석 : 37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1건 × 37백만원 = 37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76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2건 × 38백만원 = 76백만원

- FTA TBT MRA 연구 : 45백만원 [260-01일반연구비]
  * 1건 × 45백만원 = 45백만원

(4) FTA TBT 종합지원 : (2024) 1,414 → (2025) 1,201백만원,-15.1%

◇ 중국, 신남방국 등의 기술규제 및 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표준분석, 컨설팅 및 TBT 교육, 설명회 등 정보제공

- 기술표준 분석 : 675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 기술표준분석 : 665백만원 (133종 × 5백만원)
  * 규제맵 제작 : 10백만원 (2건 x 5백만원)

- FTA TBT 종합지원 포털 운영 : 90백만원 [350-02 사업출연금]
  * 1식 × 90백만원

- 현지 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애로 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 80백만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 20백만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 30백만원(2회 × 15백만원)

- FTA TBT 애로 해소 지원 : 189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맞춤형 컨설팅 63건 × 3백만원 = 189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및 홍보 : 137백만원
  • 기술표준 교육 : 55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교육 11건 × 5백만원 = 55백만원
  • SNS 온라인 광고 : 29백만원 [210-14 일반용역비]
  * 2건 × 14.5백만원 = 29백만원
  • 기술규제 교육 교재 및 팜플렛 인쇄 : 53백만원 [210-01 일반수용비]
  * 5.3건 × 10백만원 = 53백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260-01) : 1,071,000천원(1,071백만원) 1.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186백만원 가. FTA/TBT 제도분석 2*32,500천원=65,000천원 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 2*38,000천원=76,000천원 다. FTA/TBT MRA 연구 1*45,000천원=45,000천원 2.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885백만원 가. 기술표준분석 885백만원 표준 175종*5,000천원=875백만원+ 표준분석규제맵제작 2건 *5,000천원=1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86,000천원(386백만원)** 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64건*3,000천원=192,000천원 나. 기술표준 교육 11건*5,000천원=55,000천원 다. SNS 온라인 광고 2건*14,500천원=29,000천원 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000천원(110백만원) -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20,000천원*4개국=80,000천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2건*15,000천원=3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833,000천원(833백만원)** 1. FTA/TBT 협상 및 이행 강화 158백만원 가. FTA/TBT 제도분석 1*37,000천원= 37,000천원 나. FTA/TBT 기술규정 분석 2*38,000천원= 76,000천원 다. FTA/TBT MRA 연구 1*45,000천원= 45,000천원 2.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675백만원 가. 기술표준분석 675백만원 표준 133종*5,000천원(665백만원) + 표준분석규제맵제작 2건 *5,000천원(1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83,000천원(383백만원)** 1. FTA/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가. FTA/TBT 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63건*3,000천원= 189,000천원 나. 기술표준 교육 11건*5,000천원= 55,000천원 다. SNS 온라인 광고 2건*14,500천원= 29,000천원 라. 현지대응체제 구축/운영 : 110,000천원(110백만원) - 애로접수 및 대응 현지 상담실 운영 20,000천원*4개국= 80,000천원 - 현지 설명회(간담회) 개최 2건*15,000천원= 30,0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천원(150백만원)** 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97,000천원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18회*10,000천원=18,000천원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3건×10,000천원=30,000천원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5건*10,000천원=25,000천원 ・통역 및 번역 등 1건*24,000천원=24,000천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53,000천원 - 교육용 교재 및 팜플렛 인쇄 5.3건*10,000천원=53,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36,000천원(136백만원)** 1. WTO/FTA TBT 협상 및 기술규제 애로협상 83,000천원 ・TBT 대응 전문가 회의비 등 14회*10,000천원= 14,000천원 ・TBT 대응관련 외국법률 자문 2건×10,000천원= 20,000천원 ・무역기술장벽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2.5건*10,000천원= 25,000천원 ・통역 및 번역 등 1건*24,000천원= 24,000천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53,000천원 - 교육용 교재 및 팜플렛 인쇄 5.3건*10,000천원= 53,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0천원(50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5회*10,000천원=50,000천원		○ **임차료(210-07) : 30,000천원(30백만원)** - 국제회의, 간담회, 포럼 등 회의장 임차 3회*10,000천원= 3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5,000천원** 12건*2명*3,125천원=7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75,000천원** 12건*2명*3,125천원= 7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2,000천원** 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4,000천원 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000천원=8,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2,000천원** 가. 해외기술규제 조사분석 대응회의체 운영 10명*25천원*16회= 4,000천원 나.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대응회의체 운영 8건*1,000천원= 8,000천원
	○ **사업츟연금(350-02) : 6,125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6,035백만원 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4,662.5건*80천원=373백만원 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896건*500,000천원=4,480백만원 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250백만원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30건*5,000천원=150백만원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100백만원 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110백만원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1건*10,000천원=110백만원 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411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10개국*11개 품목*3.5백만원=38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1건*26백만원=26백만원 바. 주요 수출국의 화학물질 규제정보 조사/대응 411백만원 - 소재→부품→완제품 단계별 POPs, PFAS 공급망정보 조사 205.5개 물질 * 2,000,000원= 411백만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국가) -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90,000천원		○ **사업츟연금(350-02) : 5,219백만원** 1.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 및 대응지원 5,129백만원 가. WTO TBT 통보문 기초분석 4,475건*80천원= 358백만원 나. WTO TBT 심층분석(통보문+미통보문+해외기술규제 최종안) 800건*500,000천원= 4,000백만원 다. 신산업, 신기술 기술규제 분석 250백만원 - 규제 모니터링, 기술동향 및 표준 분석 30건*5,000천원= 150백만원 - TBT 메가트랜드 보고서 발간 20건*5,000천원= 100백만원 라.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110백만원 - 기술규정 및 표준의 모니터링/분석 11건*10,000천원= 110백만원 마. TBT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 411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 및 전파 10개국*11개 품목*3.5백만원= 385백만원 - 개도국 규제대응 현지 거점 체계구축 1건*26백만원= 26백만원 2. FTA TBT 종합지원(중국 및 신남방 주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FTA/TBT 종합지원 포털운영 90백만원 1식*90,000천원= 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외국과의 협상 건수 (단위: 건수)	목표	130	140	150	155	170	*코로라19 이후 WTO TBT 위원회 참석(연3회) 다자 및 양자 협상대응을 대면 협상으로 전환하고, TBT 대응(애로해소) 협상건수 목표치를 최근 3년(21~23년) 평균실적(156건) 대비 9% 증가한 170건으로 설정	TBT 관련 외국과의 협상 건수 = ∑(서면대응 건수 + WTO TBT 다자대응건수 + FTA TBT 양자대응 건수 + 해당국 방문 협상 건수)	국가기술표준원 통계
	실적	145	155	170					
	달성도	111%	110%	11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① 애로발굴 및 규제분석정보 제공** ○ **(기초 조사)** '21년 해외 기술규제 3,966건(통보문+미통보문)을 조사/번역하고, 국제표준 일치 등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기업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미통보 TBT 발굴·대응)** 신흥 개도국 및 주요수출국 중심으로 규제전문 사이트 및 현지 주요 규제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통보문(숨은규제) 662건도 발굴, 관련 분석정보를 기업에 제공 * 숨은 규제 발굴(건): ('18) 510건 → ('19) 550건 → ('20) 570건 → ('21) 662건 ○ **(심층분석)**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력이 지대한 중요규제는 심층분석(816건) 실시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45건 협상, 56건 해소)** * 프랑스 생산자책임제도 라벨링 규제 TBT 대응으로, 약 2조 2천억원 규모의 對프랑스 수출 달성이 가능 **③ FTA TBT 종합지원사업 수행** ○ 중국 및 신남방(베트남·인도네시아) 정부의 WTO 통보·미통보 기술규제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해 TBT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에 정보제공 등 수행 - 중국 정부의 품질규제 강화, 신산업 제품 및 신남방 국가의 강제성 제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 '규제 및 표준 분석(160건, 중국 110건 신남방 50건)' 실시 ○ 제품별 기술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규제맵(110종, 중국 71종 신남방 39종)', '품목별 TBT가이드북(6건)'으로 발간 * 관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규제대응 KnowTBT포털에 업로드

	④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소통(기업, 업종별협단체등) ㅇ **(품목별 협의회)** TBT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전자/금속기계/정밀화학 등 품목별/규제유형별 협의회(53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실시 ㅇ **(TBT 설명회)** EU, 중국의 기술규제관련 업계애로 의견수렴 및 對유럽, 對중국 수출시 이슈가 되는 기술규제동향* 설명회 2회 등 총 TBT 설명회(36회)를 개최 ㅇ **(기업간담회)** 전기전자/건설기계 분야 기업간담회**(3회)를 통해 기업의견 적극 수렴 * 유럽의 과불화합물 규제, 탄소중립 및 배터리 등 에너지관련 규제,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인증, 네트워크 보안 동향 등 ** 정부(국표원),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 기업(삼성, 엘지등), 협회단체(전자정보진흥, 에너지기계, 정밀화학등), 시험분석기관(KTR, KTC, KTL, KCL)등 참여 ㅇ **(TBT 컨설팅)**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에너지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 컨설팅(429회)을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 전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을 실시(300회)
2022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 ㅇ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3,905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ㅇ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925건 발굴·대응 ㅇ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4,821건(3,896+925)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941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ㅇ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55건 협상, 60건 해소) * 인도 플라스틱포장제 폐기물 규제 대응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약 268억불 규모의 전자제품 수출장벽 해소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건설기계/소프트웨어등)를 통해 기초상담(409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컨설팅을 실시(338건) ㅇ **(TBT 설명회)**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38회) 실시 **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 ㅇ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2회) 운영 ㅇ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논문공모전 안내 등 SNS 게시(13건), 기획보도/기고(4회) 유투브 범퍼애드, TBT 종합지원센터 네이버 브랜드광고, 전자신문 지면 하단광고(3회) ㅇ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기업애로 해소사례집(1건), TBT 대응 가이드 리플릿(1건) 발간 및 배포

2023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 ㅇ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4,079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ㅇ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1,208건 발굴·대응 ㅇ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5,287건(4,079+1,208)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 1,229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ㅇ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70건 협상, 62건 해소) * 총 37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애로해소(미국 메인주 PFAS 오염중지를 위한 법안 대응(약 222억 달러), 사우디 기계류 안전 규정 정보제공(약 45억 달러) 등)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에너지기계등)를 통해 기초상담(161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컨설팅을 실시(155건) ㅇ **(TBT 설명회)**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12회) 실시 **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 ㅇ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2회) 운영 ㅇ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설명회 개최 안내 등 기획보도(4회), 지면광고(4회), 기고(2회), SNS 카드뉴스 (13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콘텐츠 광고(4회), SNS 이벤트(3회), 메타네트워크 광고(2회), 구글(GDN)광고 (노출 11,570,949회), 네이버 브랜드 광고(노출 14,400회), 리플릿 발간 (1회), SRT 차내 영상광고(4개월) ㅇ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1건), TBT 대응가이드북(1건) 발간 및 배포
2024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 ㅇ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ㅇ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발굴·대응 ㅇ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중 아국에 영향 미치는 주요 규제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ㅇ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에너지기계등)를 통해 기초상담 실시 -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컨설팅을 실시 ㅇ **(TBT 설명회)**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 실시 **④ 해외 기술규제대응 역량기반 구축** ㅇ **(업종별 기업간담회)** 대·중소 기업관계자와 TBT현안 논의 및 신속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채널 운영 ㅇ **(TBT 홍보)** WTO TBT 위원회 성과, TBT 설명회 개최 안내 등 기획보도, 지면광고, 기고, SNS 카드뉴스,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콘텐츠 광고, SNS 이벤트, 메타네트워크 광고, 구글(GDN)광고, 네이버 브랜드 광고, 리플릿 발간 등 ㅇ **(간행물 발간)**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TBT 대응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제·개정되는 해외기술규제내용에 대한 신속한 입수*, 전파**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력 향상

* WTO TBT 사무국 통보 및 미통보 기술규제: '19) 3,887→ '20) 3,924→ '21) 4,628→ '22) 4,821→ '23) 5,287

** 해외기술규제 분석 보고서(연례보고서등) 제공, KnowTBT 포털 등 온-오프라인으로 정보제공

ㅇ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 WTO TBT 정례회의(3,6,11월 연3회) 및 FTA 공동위등 채널을 통한 협상 실시

* '22년 WTO TBT 협상 3회(1/2차 화상, 3차 현지) / '23년 WTO TBT 협상 3회(1차, 2차, 3차 현지)

- 필요시 해외기술규제 당국과의 직접협상을 실시, 애로 해소(완화)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TBT 대응역량 지원

- TBT 개념 및 TBT 관련 정부지원사업안내 등 TBT 기초상담 실시(23년 161건)
- TBT 현장 맞춤형 심층컨설팅 실시(23년 155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table>
<tr>
<td>사업추진절차</td>
<td>
○ 국표원 직접수행 : 국외여비, 연구용역, 수용비 등
<table>
<tr>
<td>국가
기술표준원
(사업 총괄)</td>
<td>· 정부채널의 외교적 TBT 협상 총괄
· WTO/TBT 위원회 협상(연3회)
· FTA/TBT 위원회 협상(수시)
· 양자 애로 협상(수시)</td>
</tr>
</table>
○ 산업부(국표원) → TBT종합지원센터(사업출연금) → 업종별 협단체 및 시험분석기관
-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 WTO/TBT 통보문 분석을 근간으로 정례적·상시적 WTO/TBT 대응업무등 수행
※ TBT 종합지원센터 주요 업무(기능)
· WTO/TBT 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WTO/TBT 미통보문 입수, 기초분석, 심층분석, 대응방안 수립
· 규제분석서 작성, 통보문 산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발굴
(기업 간담회, 품목/규제유형별 협의회)
· 연간 정례(3회) WTO/TBT 위원회 대응, 양자회의(수시) 협상 지원 등(특정무역현안 발굴, 현안에 대한 산업계대응방안마련)
· TBT통계, 주요 통보문동향, TBT대응사례 등 정기 리포트 제공
· 기술규제종합포털(KnowTBT) 운영('22년 이후~)


</td>
</tr>
</tabl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8,474	7,869	6,688	11,003	12,004	
'24~'28		7,869	6,688	9,486	10,415	11,4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예결위 : 중국·신남방국가의 기술 표준분석 확대, 중국 현지 상담실 기업 애로를 고려한 지원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 **'2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최근 3년('21~'23年)간 외국의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정보 분석(기초/심층) 후, 업계에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애로를 사전 해소**

* WTO 통보증가 : ('19) 3,337건 → ('20) 3,354건 → ('21) 3,966건 → ('22) 3,896 → ('23) 4,079

○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통보문 기초분석 및 의견수렴,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동향분석, 국내제품 수출현황 분석, 기업대응 및 협상전략 마련 등을 위해 **규제 심층분석(최종안 심층분석 실시) 확대 실시**

○ **신산업/신기술 및 화학물질분야의 규제도입전 표준동향 분석** 및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분석**

○ 중소·중견 기업은 TBT 인력·정보력 부족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TBT 애로기업을 찾아가는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컨설팅 실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3년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에 장애가 되는 해외 **기술규제(제/개정)내용을 입안 초기단계부터 조사·입수·분석**하여, 관련 업계에 그 분석(기초/심층)내용을 전파(온/오프라인)하고,

- WTO 다자협상(3월 6월, 11월), 양자 협상(필요시 현지규제당국자 방문 협상)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사전에 제거(또는 완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수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외국의 기술규제를 분석(기초/심층)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21년부터는 TBT종합지원센터(시험인증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시험분석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음
- 이후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건의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6,970	-	6,970				6,970	6,698	96.0	96.0	-	272
2022	7,474	△56	7,418		±600		7,418	7,231	97.5	97.5	15	172
2023	8,474		8,474	15	±45		8,489	8,379	98.9	98.7	15	95
2024	7,869		7,869	15	±40		7,884	7,774	98.8	98.6	-	11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2,796	2,796	2,796	2,796		2,796	2,796			100
2022	4,887	4,887	4,887	4,887		4,887	4,887			100
2023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100
2024	6,125	6,125	6,125	6,125		6,125	6,125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여비 118.8백만원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2022	- 전용 사유 :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일반연구비 편성 권고, 디브레인 시스템상 권고 미반영에 따른 출연금을 일반연구비로 전용(600백만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기본성 경비에 대한 제2회 추경 감액 조정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중국 현지 코로나 봉쇄로 인해 공동 연구수행기관간 시험 재료 이동이 불가하여 수행기간 종료 시점을 '23.3월로 연장함에 따라 15백만원 이월 발생,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코로나19로 38백만원,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등 134백만원
2023	- 전용 사유 : WTO 3차 정례회의 및 기술규제대응 활동 등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45백만원 전용(일반수용비 45백만원 감액)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중국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일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종료 시점을 '24.4월로 연장함에 따라 15백만원 이월 발생, 일반수용비 및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18백만원,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잔액(조달낙찰차액) 등 76백만원
2024	- 전용 사유 : WTO 3차 정례회의 및 EPA TBT 협상 참석 등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40백만원 전용(일반수용비 40백만원 감액) - 불용 사유 :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조달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으로 110백만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8.21.)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210-01	40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3736-301)	220-02	WTO 3차 정례회의 및 EPA TBT 협상 참석 등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애로해소 우수사례 (‘23)

◈ 對미국 수출 애로해소 ◈

►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량 보고를 요구하는 「PFAS 오염 중지 법안」이 철회되어, 약 29조 800억원('23년 기준) 규모의 수출지원 효과

1. 규제개요

○ 미국 메인주 환경보호부(DEP)는 「PFAS 오염 중지 법안」 발표('21.7.)

- **(적용대상)** 메인 주에서 PFAS를 함유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 **(주요내용)** PFAS 물질 함량 산출, 사용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23.1.)

· 각 화학 물질의 일반명칭, 분자 구조 등
· 각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한 사용 범주
· 제조한 각 물질 또는 혼합물의 총량, 각 사용 범주에 대한 제조량
· 수입 물품의 수입 생산량 및 생산량에 대한 측정 단위(예: 수입 물품 수량, 파운드, 톤).
· 각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 가공, 사용 또는 처분으로 인한 부산물 정보
·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모든 기존 정보
· 노출된 총인원, 노출 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 및 노출 기간
· 각 물질 또는 혼합물 폐기 방식 또는 방법 및 그러한 방식 및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

2. 기업의 애로사항

○ ’23년 1월부터 PFAS 사용현황 보고의무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부적인 이행지침이 제공되지 않아 규제대응에 어려움

- PFAS 물질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함량 산출 기준, 보고양식, 대체제 제공 등 구체적인 정보 필요

3. 주요 대응사항

○ WTO TBT 위원회 양·다자협의를 통해,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PFAS 규제에 대한 향후 일정 등을 문의함. 이후 미국은 메인주 PFAS 규제 내용 및 최종 시행일 등을 전면 재검토 중이며, 동 법안은 유효하지 않음을 발표하여 기업 애로 해소

참고 2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사업 주요성과 ('23)

① 불합리한 해외 기술규제의 발굴·분석/대응

○ **(기초 조사)** WTO TBT **통보문(4,079건)을 조사·번역**하여 해당 업계에 전파하고, 적용대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 **(미통보 TBT 발굴·대응)** 해외규제기관 및 규제 전문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WTO 사무국에 통보되지 않는 **숨은 해외 기술규제 1,208건** 발굴·대응

○ **(심층분석)** WTO에 통보된 규제와 미통보된 규제 5,287건(4,079+1,208) 중 아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 1,229건에 대해 심층분석 수행, 기업의견 수렴

② 해외규제 상대국과의 TBT 다자·양자 협상 등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 **(WTO TBT 위원회)** 정기회의(연3회)를 계기로 **다자·양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애로 해소 **(170건 협상, 62건 해소)**

* 미국 메인주 PFAS 오염중지를 위한 법안 대응을 통해, 약 222억불 규모의 수출 장벽해소

○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신통상 규범(디지털) TBT 협상**

- **(한·UAE)** 투명성 강화* 및 지역-국가 적합성 평가 절차 요건 중복 방지** 등 우리측 핵심 이익을 반영한 TBT 챕터 협상 타결('23.10.2)

* 기술규정 초안에 대한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UAE가 회원으로 인한 GCC 표준화기구(GSO)와 국가(UAE) 적합성 평가 요건 중복 적용 우려 존재

- **(디지털 통상*) 한-EU 디지털통상 협정*, WTO 전자상거래 및 IPEF 디지털 챕터 등** TBT 관련 조항 문안 제시 및 협상 참여

* 사전협의 및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조항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소스코드 접근 문안 협상(공식협상 2회) 참여

- **(한·몽) 한-몽골 EPA TBT분과 1차 협상**을 개최('23.12)하여 우리측이 제안한 TBT 협정문 초안 설명 및 의견 교환

○ **FTA 旣체결 주요 수출국과의 전략적 FTA TBT이행 협력 확대**

- **(한-EU)** 전기용품 관련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개최(5월) 및 양자협의(11월)를 통해 EU PFAS, 배터리, 에코디자인 규제 및 유아용 섬유제품 인증 등 양자 TBT 현안을 논의하고 한-EU TBT 대화체 설치 등 협력 강화 방안 협의

- **(한·중 FTA TBT 위원회)** 한-중은 **제5차 FTA TBT 위원회를 개최**('23.5)하고**, TBT 현안* 논의** 및 인증애로 해소방안 논의

  * (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등 3건, (중) KC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구분 세부기준 완화 요청 등 2건

- **(한·중 적합성평가소위)** 한-중은 **제20차 소위원회를 개최**('23.11월)하여, 양국의 적합성평가제도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23년도 숙련도평가 결과 및 협력방안 논의

  * (한) ①제품 안전기준 개정 동향, ②'24년 숙련도평가 계획, ③공장심사원 상호등록 활성화
  ** (중) ①CCC인증 개정 동향, ②'23년도 숙련도평가 결과, ③상호인정 활성화 방안

- **(한·베트남) 제6차 FTA TBT 개최**('23.7월)하여 신규 도입 예정 규제 정보를 요청하고, 국내 유해물질 규제 경험 등에 대하여 논의

  * **(한)** ①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정보 요청, ②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의 신속허가 요청(식약처), ③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제정보 요청
  (베) ①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경험 공유, ②TBT 핸드북 개발 등 협력

③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현장방문 컨설팅)**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업종별 협단체(전기전자/정밀화학/에너지기계 등)를 통해 기초 컨설팅(161회)을 실시했으며,

- 주요 애로사항은 표준/시험/인증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심층 컨설팅**을 실시(155회)

ㅇ 중소/중견기업의 TBT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TBT 설명회(12회) 실시**

④ FTA TBT 종합지원 내역사업 주요 성과

ㅇ 수출 주요국의 WTO 통보·미통보 기술규제(5개 분류: **정책, 법규, 시험·인증 제도, 강제표준, 품질검사**)에 대한 적시대응을 위해 주요 규제 기관(34개소) 모니터링을 실시

- 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인도 표준원(BIS) 등 주요 규제발행기관을 국가별 선정, **일일(11개소), 주간(11개소), 월간(12개소)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정보를 발굴(115건)*하고, 분석 보고서 발간**

  * (CN) 소형리튬전지의 CCC 편입, 중국로봇인증(CR)고도화, (IND)탄소배출권 거래제도, (VN) 근거리 무선장치 규제, (IDN)에너지 절약에 관한 2023년 정부규정 등
  ** 신규 규제정보 발굴 및 게시판 업로드 115건, 심층분석 30건, 월간 뉴스레터 9건

○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 제품, 기술규제 애로 품목 등에 대한 **'기술표준 분석*(186건)'**을 완료하고, 수출기업의 실질적 수출 사전대응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을 위한 TBT가이드북(6건)'*으로 발간하여, 기술규제대응 Know TBT포털에 업로드하고, 12,800여 기업에 뉴스레터를 전파

* (CN) 에너지효율, 사이버보안관련, 전기차, 노트북 등 제품, (IND) LED 등기고, 전기차 충전기, 정수기, TV 등 (VN) 안전유리, 도료, 케이블 등 (IDN) 할랄, LED, 전자제품 등

** ① 중국 **IoT규제동향**, ② **전기전자부품** 중국 TBT 가이드북, ③ **화학제품**의 對 베트남수출을 위한 TBT 가이드북 ④ 도네시아 TBT 가이드북(**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편) ⑤ 인도 TBT 가이드북(**화학제품 시장 현황**편) ⑥ 인도 TBT 가이드북(**전기차 충전기** 규제편)

○ **(TBT 교육/설명회, 간담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규제설명회'** 및 TBT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를 통한 규제애로를 지원하여 업계의 TBT 대응역량 제고

* CCC 인증제도 최신동향, 인도 전기차 충전기 규제설명회, 베트남 해외규격인증 교육, 인니 SNI 제품인증제도 소개 등 규제설명회 개최

- 교육구성 방식을 다양화 하여 전문가 초빙 대면 설명회, 인도 현지 온라인 연결 웨비나(ZOOM활용)등으로 다양화하여 사용자 규제교육의 접근 편의성 제고

- 지원국 현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현지 규제기관 등과 협업하여 TBT 간담회, 규제설명회를 **4회 개최**(중국, 베트남, 인니, 인도 각 1회씩, 현지진출 우리기업 기술규제 지원)

⑤ 신산업·신기술 분야 TBT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정부차원의 TBT대응지원체계 고도화 지원

- 탄소중립,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향후 대응이 필요한 분야 및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규제 등 현안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지원체계 운영

- 분야별 주요 규제 동향 및 이슈를 조사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보고서 발간

- 분야별 교육 지원, 설명회 개최, 정보교류회 확대 등 기업 소통 체계 구축

○ **(홍보 및 전파)** 동향보고서 발간, 설명회, 수출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결 가이드 마련

* WTO TBT 통보문 및 미통보문의 동향을 전파하는 월간동향보고서 발간 (12회)

* 주요 국가별 기술규제 이슈 사항을 종합분석하고 대응 필요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사점 및 대응전략을 포함한 규제 동향보고서 발간 (12종)

* 국내 수출기업의 TBT 애로발굴 및 기업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지역 TP,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12회)

* 주요 수출 품목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선제적인 TBT 현안 발굴, 긴급이슈 대응 등 기업 애로해소 지원 확대 (50회)

* 기업 애로 접수 전담창구(온/오프라인) 설치·운영, 정기 애로조사 등을 통한 기업 대상 TBT 애로 접수채널 운영(상시)

참고 3 '23년 TBT 대응 애로해소 수출 기대효과

No	국가	규제명	기대효과	
			백만불[1]	십억원[2]
1	미국	메인주 PFAS 오염중지를 위한 법안	22,232	29,080
2	사우디아라비아	기계류 안전 규정(Part 2. 이동식기계 및 중장비)	4,554	5,957
3	GSO	기업-GSO 간 질의응답	2,707	3,541
4	GSO	기계류, 안전부품 및 리프팅 장비에 대한 GSO 규정	2,156	2,820
5	베트남	5G 단말장비 전자파적합성 적용 및 시행 지침	1,498	1,959
6	베트남	정보통신기술 단말장비의 전기안전표준 (QCVN 132:2022/BTTTT)	1,440	1,884
7	사우디아라비아	가전제품 전자파적합성 기술규정 초안	1,257	1,644
8	인도	전자 폐기물 규제	564	738
9	베트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임계값에 대한 국가 기술규정 초안	461	603
10	GSO	에너지효율 규제	172	225
11	베트남	RoHS 규제	65	85
12	인도	에어컨 완제품 및 부품(압축기, 열교환기)에 대한 BIS인증	51	67
13	유럽연합	가정용 텀블 건조기 에코디자인 규제	48	63
14	중국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CHINA REACH, MEE Order No.12)	41	54
15	사우디아라비아	대기/오프모드 소비전력 규제	39	51
16	인도	냉장고 완제품에 대한 BIS인증	39	51
17	영국	광원 에코디자인 규제	30	39
18	인도	탄산칼륨 BIS 인증	26	34
19	아랍에미리트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1차)	22	29
20	아랍에미리트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2차)	22	29
21	인도	BEE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시험절차)	19	25
22	영국	CE 마크 사용 기한 연장	14	18
23	사우디아라비아	기계류 안전 규정(Part 3. 리프팅장비)	6	8
24	필리핀	의류 세탁기 에너지라벨링 프로그램 이행지침	6	8
25	튀르키예	냉장고 에코디자인 규제 (사후관리 규정 이행)	6	8
26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규제	1	1
27	칠레	세탁기-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1	1
28	스위스	가전제품 MEPS 강화 조례 초안	0.3	0.4
29	호주	DBDPE 사용 및 수입허가 철회	-	-
30	인도	BIS 인증절차 불명확(문의창구)	-	-
합계			37,477.3	49,022.4

1) 산출 근거 : 규제 해당품목별 수출무역 통계(관세청, 전년 기준)

2) 환율 기준 : '23년 평균 USD 매매기준율(1USD = 약 1,308원)

※ '23년 TBT 대응지원 활동(총 170회) : TBT질의처 공식서한(71회), WTO/TBT위원회 양자회의(31회), WTO/TBT위원회 STC제기(27회), 협력채널(19회), FTA/TBT 양자회의(11회), 민간 질의서한(10회), 현지 간담회 및 설명회(1회) 수행

참고 4 국가/품목별 시행중 인증제도·기술기준 조사/제공

□ 배경

○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및 해외인증 서비스의 지속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가 확대 필요

○ 기존에 제공된 해외 인증 정보의 최신화 및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

< 해외기술규제맵 20개국 40개 품목 >

구분		'20년 선정기준	'21년 선정기준	'22년 선정기준	'23년 선정기준
정보 수집 대상	국가	'17~'19년 3년간 수출 상위 국가	수출상위국, EU, EAEU 등 연합국, 신흥국기준	중소·중견기업 수요실적, TBT통보, 정부정책 등을 다각도로 반영	'20-'22년 선정 국가 유지
	품목	산업부의 13대 주력산업과 5대 신산업관련 중요 품목	수출상위, 규제빈도, 중소기업 중점품목,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그린뉴딜 등 정책반영	중소기업 수요 기반의 품목 중, 안전, 에너지 등 전 세계 강제 규제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반영	'20~'22년 까지 제공되지 않은 규제 분야 및 탈탄소 관련 규제정보 기업수요 반영
선정결과		10개국 10품목	15개국 25품목	20개국 35품목	20개국 40품목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독일, 러시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태국, 브라질	'20-'22년 누적 20개국 유지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소형단상전동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스마트공기청정기, 스마트전기의류건조기, 스마트세탁기, 스마트식기세척기, 저장식 냉온수기, 무선 진공청소기, 개인용 플라즈마 피부관리기, 웨어러블 심전도기, 러닝머신, 어린이용물놀이튜브, 오토바이용 헬멧, 담배라이터, 승용차타이어, 실내용PVC바닥재, 가정용 압력솥	전기비데, 실내 CCTV카메라, 스마트모니터, 헤어드라이어, 전기매트, 블렌더, 인덕션(휴대용), 유아용물티슈, 휴대용마사지건, 소형 2차전지(리튬)	로션(FACE), 유아용섬유, AC-DC 어댑터, 생분해성플라스틱, 노트북컴퓨터(태블릿 포함)
DB범위		- 규제매핑: 품목별/국가별 인증, 기술기준 매핑테이블 제공 - 인증정보: 인증명, 인증개요, 법령, 법령출처, 규제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규제품목, 인증절차 - 기술기준: 기술기준번호, 기준명(원문/국문), 공표년도, 출처, 유사국제표준			
10대산업군 ('23년~)		①국제공통(IECEE-CB, IECEx, IECQ), ②식품의약품, ③태양광, ④풍력, ⑤유기농 식품, ⑥유기농 섬유, ⑦친환경, ⑧철강, ⑨자동차, ⑩선박			

□ 주요 내용

○ **(정보확대)** 신규 5개국 추가에 따른 신규인증제도 및 총 25개국 주요 산업군에 대한 인증제도 구축

- 신규 5개국 10대 주요 산업군에 대한 신규 강제 및 임의 인증제도 구축

- 기 구축된 20개 국가의 신산업, 탈탄소, ESG 등 주요 인증제도 지속 구축

○ **(정보최신화)** KnowTBT 사이트 내 구축된 정보의 최신화

- 기 구축 국가/ 품목별 규제맵핑,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 전면 재조사·최신화

- 기 구축된 20개국의 주요 10대 산업군*의 인증제도 최신화

* ①국제공통(IECEE-CB, IECEx 등), ②식품의약품, ③태양광, ④풍력, ⑤유기농식품, ⑥유기농섬유, ⑦친환경, ⑧철강, ⑨자동차, ⑩선박

○ **(시스템 개편)** KnowTBT 사이트 사용자 수요중심의 정보조사 매뉴 및 관리자 편의를 고려한 사이트 개편

- 인증정보 신청 메뉴를 신설하여 검토 단계를 거쳐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절차 마련

- 관리자 시스템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신규정보 및 업데이트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참고 5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 선제적 대응

□ 규제동향 조사•분석 대응 필요성

○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新보호무역체계에서 신산업·신기술 중심의 전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 산업계의 실효적인 현안 중심 협의체 강화 및 관련 기업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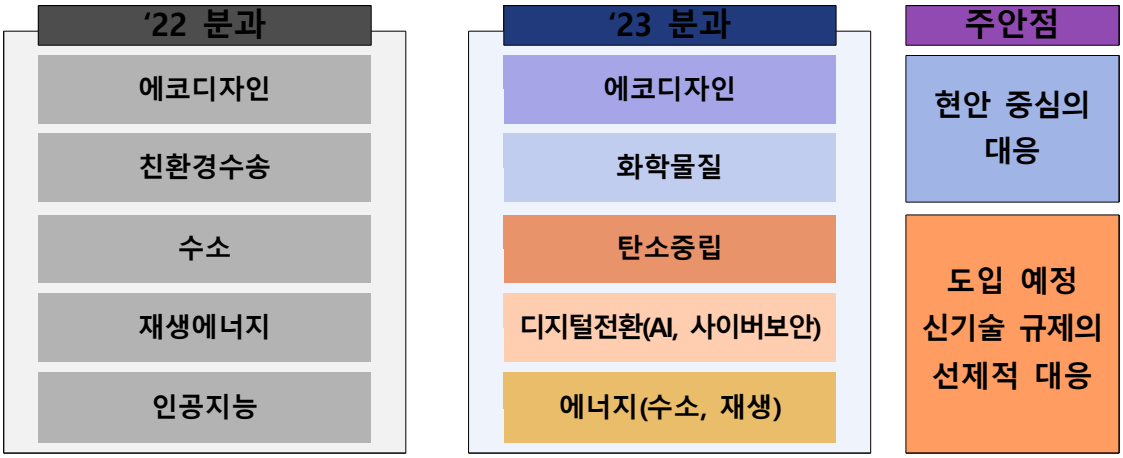
- 현안 대응이 필요한 주요 법안 중 하위법령* 공표 예정인 사항을 선제적으로 입수·분석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에코디자인 규정(ESPR), 디지털제품여권(DPP),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규제 등

- 사전 기업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분야별 논의 주제 선정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공유

- 주제 논의 후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후속조치

< '22년 ~ '23년 교류회 구성 >



* (21년)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5G/6G 융합, 미래차,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 추진 내용

○ 신산업·신기술 규제 분야 전주기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신산업·신기술 관련 TBT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에 따른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신설·강화가 예상되는 5대 분야 운영

*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 5개 신산업·신기술 규제 정보 교류회 분야 >

구분	관련 산업	주요 규제명	주요국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우수재활용인증 등	- 에코디자인 규정(ESPR) -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EU
배터리	배터리	- 배터리법 - 에너지저장장치 규제(ESS) 등	EU, 중국
AI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등	- AI Act - 사이버보안법 등	미국, EU, 중국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수송 등	-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 넷제로 산업법(NZIA) 등	EU
화학물질	화학물질	- 과불화화합물(PFAS) - DP 및 DBDPE 금지 등	미국, EU

- 각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각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기술전문가, 정부관계자(표준, 안전 등), 시험·인증, 표준위원회(WG 간사 등) 전문가를 위촉, 협·단체 등 분야별로 구성

* 산·학·연·시험인증기관 기술·표준 전문가, 해당 산업군 협·단체 이해관계자, 신기술 규제 정부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



○ 신기술·신산업 무역기술장벽 현안 발굴, 월간 레터, 중간 결과 발표 등 보다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

< 교류회 기능 개선 방향 >

기존 기능		현안 발굴 강화	월간 레터 발간	중간 결과발표
동향보고서 발간 설명회 개최	+	**신산업 무역기술장벽 현안 발굴**	**산업계 현안 이슈에 대한 신속 공유**	**신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현황 및 결과 공유**
		교류회, 협단체 활용	유관 협단체 전파	산업계 관련 기업

○ 신산업·신기술 규제 분야 TBT 동향보고서 발간

-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EU, 미국)의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규제 및 적용표준 모니터링

- TBT 관련 주요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기관, 해외지사, 관련 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관련 도입 예상 정책발표 현황, 시장 반응, 현 기술 수준 내용 조사・수집

< 기술규제 조사를 위한 국가별 웹사이트 예시 >

국가	규제당국명	웹사이트주소
EU	European Environment Agency	https://www.eea.europa.eu/
	Department of Energy	https://ec.europa.eu/energy/home_en
	Depart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	https://ec.europa.eu/info/research-and-innovation_en
	Department of Mobility and Transport	https://ec.europa.eu/transport/home_en
	Department of Communication	https://ec.europa.eu/info/departments/communication_en
	UNECE	https://unece.org/transport/vehicle-regulations
	...	...
미국	Department of Energy	www.energy.gov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www.faa.go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ww.fcc.gov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ww.trasportation.gov
	...	...

- 신산업·신기술 규제 분야 관련 규제 동향, 정책 동향, 표준 동향 등 TBT 주요 이슈 동향보고서 발간

< 분야별 이슈리포트 및 동향보고서 발간계획(안) >

구분	분과	내용	시기
이슈 리포트	에코디자인	지침 개요 및 신 에코디자인 규정(ESPR) 분석	1분기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동향과 우선 적용 제품 분석	2분기
		...	...
	화학물질	EU PFAS 관련 ECHA 위원회(RAC 등) 의견 검토	1분기
		미국 환경보호청(EPA) PFAS 전략로드맵 정리 및 분석	2분기
		...	...
	...	...	...
동향 보고서	에코디자인	신 에코디자인 규정(ESPR) 동향과 제품별 규제 대응 방안	4분기
	화학물질	EU, 미국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방안	
	...	...	

○ 관련 분야별 주요 TBT 이슈 교육, 설명회, 애로조사 및 컨설팅 지원

- 신산업·신기술 규제 관련 기술규제로 인해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TBT 동향정보에 대한 기업 1:1 교육 지원
- EU, 미국 에코디자인, 배터리 등 최신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설명회 개최
- 최근 기술규제가 완제품 단위에서 부품, 중간재, 원재료 단위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신산업·신기술 규제 관련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지원

○ 관련 분야별 주요 규제 대응을 위한 Mega TBT 포럼과 연계

< 글로벌 Mega TBT 포럼 운영 계획(안) >

일정	분야	주제(가칭)	비고
12월 1주차 (기술규제대응의 날 2부)	에코디자인	글로벌 화학물질(DBDPE) 규제와 수용성	
	배터리	(EU) DPP 제도 추진과 대응 방안	
	AI	(IEC TC42) AI 규제와 국제 표준화 동향	
	탄소중립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실태	
	화학물질	화학물질 규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현안	

□ 기대효과

○ **(산업적 효과)** 규제 대응이 시급하거나 중·장기적인 대응준비가 필수적인 신산업·신기술 규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조사·분석·전파하는 전 주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수출 기업 지원 효과**

- 주요 TBT현안에 대한 대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시 활용 가능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무역 역량 및 국가적 TBT 기업지원 기반 강화

○ **(경제적 효과)** 신산업·신기술 관련 도입이 예상되는 규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TBT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에 기여

- 탄소중립, 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배터리 관련 수출액은 약 19.9조원

* **(탄소중립)** 약 4.4조원: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에 해당하는 HS Code 4자리
*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약13조원: HS Code 85
* **(배터리)** 약2.5조원: HS Code 8506, 8507

-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관련 수출액은 약 122조원

* **(에코디자인)** 약73조원: 에코디자인 규정의 경우 해당품목은 전제품임(식품, 의약품 제외), 에코디자인 지침의 경우 약24조원: 해당품목은 에너지관련 제품으로 HS Code 84, 85
* **(화학물질)** 약49조원: HS Code 28, 29
* 對전세계, '23년 수출액 기준

○ **(정책 홍보 및 TBT 인식 제고)** 신산업·신기술 규제 대응에 대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최신 트렌드 제공을 통한 인식 제고

- 이슈리포트 및 동향보고서 발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수출 지원

참고 6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정 및 표준 분석 필요

□ 필요성

○ **(대외적 배경)** 금융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인접 국가들 간 경제블록화 실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특히 자국의 국제 경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신흥국 간 지역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

< 경제통합 단계 및 지역연합(예시) >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역내관세철폐				SICA ASEAN
→ (STEP 1) 회원국 간 관세 철폐 중심					
관세동맹 Customs Union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GCC MERCOSUR
→ (STEP 2)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 적용					
공동시장 Common Market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EAEU
→ (STEP 3)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 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EU
→ (STEP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통상교섭실(https://www.fta.go.kr/main/)

○ **(중동지역)** GCC의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GSO Ceritification 또는 Gulf Conformity Mark)을 채택해 일부 수입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시행 중

- (주요 규제대상) 전기전자, 기계, 보일러, 열 교환기, 파이프, 압력장치 등에 해당하는 압력용기 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모두 강제 인증인 GSO 인증 규제 대상

- (규제 동향) GSO 기술규정 초안(단순압력 용기 등 6건)이 현재 검토 중이며, '25년까지 18개의 인증제도 도입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전기전자 안전인증은 '22년 상반기에 13개 품목에서 전기전자 전품목으로 인증대상 확대 예정

○ **(중남미지역)** 브라질 주축의 메르코수르*는 '22년부터 4개국의 공통 기술규정/표준도입 확대 예정으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각 국가마다 강제인증 시행예정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對메르코수르 수출 특징: 약 66억 달러규모('19년) / 자동차 부품, 반도체가 약 99%

- (주요 규제대상)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등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모두 강제 인증 대상

- (규제 동향) '22년 1월, 305개의 MeRCOSUR 기술규정이 발표되었으며, 규정에 따라 적용국가가 상이

○ **(유라시아지역)**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

* EAC(Eurasian Conformity)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

- (주요 규제대상)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중장비, 타이어, 화학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모두 강제인증인 EAC 인증 규제대상

- (규제 동향)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 자동차 안전('22.7.)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아프리카지역)** 2010년 동아프리가 관세동맹(East African Customs Union), 공동시장 설립, 동아프리카 통화동맹 의정서 이행 등 지역통합을 위한 활동 수행 중

- (주요 규제대상)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의 적합성평가 시스템은 초기 단계로 식품 관련 TBT 통보 건수가 대다수

○ **(대내적 배경) 기술 규제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규제 당국자 접촉 및 규제정보 입수가 쉽지 않아, 지역연합(체)의 기술규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

- 국내 산업계는 중점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해외 기술규제 분야로 '신흥시장국 대상 기술규제'(33.8%) '지역연합(체) 규제'(28.1%) 대응을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 **(장기 미해소 규제 해소)** 장기 미해소 기술규제에 대해 WTO/FTA TBT 위원회, 양자회의 등 공식절차를 통해 규제 애로 해소 (4개국 규제개선 6건, 시행유예 3건 애로 해소)

국가	규제명	기업애로 해소 성과	협의결과	'22년 수출 (백만불)
인도	전자폐기물 규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이 EU RoHS 규제와 동일하게 개정	규제개선	564
	에어컨 BIS 인증	코로나로 인한 공장심사 등 지연으로 시행일 내 인증취득이 불투명하였으나, 규제 시행이 유예되어 한시적으로 기업애로 해소	시행유예	51
	냉장고 BIS 인증		시행유예	39
	탄산칼륨 BIS 인증		시행유예	26
베트남	RoHS 규제	EU의 RoHS 규정보다 강화된 적합성평가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측 절차개선 요구에 규제시행 철회	규제개선	65
아랍에미리트 (UAE)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1차)	기후 등급 기준 및 신선식품 목표온도가 국제표준과 일치하게 개정	규제개선	22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2차)	소비전력량 측정 시 가중치를 EU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규제개선	
칠레	세탁기 사후관리 규제	에너지소비량 관련 사후관리 허용오차가 완화	규제개선	1
	세탁가건조기 사후관리 규제	에너지소비량 관련 사후관리 허용오차가 완화	규제개선	

- **(개선사례, 인도)** EU 등 타국가와 달리 RoHS 물질제한 대상에 의료기기 예외조항이 없어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TBT 질의처를 통한 지속적인 서한대응으로 의료기기 예외조항이 추가되어 산업계 애로해소

- **(개선사례, UAE)**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안) 시험기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TBT 질의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요청, 이에 ①(1차 개정안) 기후 등급 및 신선식품 목표온도 기준 국제표준 일치화, ②(2차 개정안) 소비전력량 측정 시 가중치가 EU 기준에 맞춰 개선 성과

○ **(사전 정보제공)** 주요 지역연합체와의 협력채널을 통해 신설 규제에 대한 제정계획 및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받아 기업 TBT 역량 제고

국가	규제명	기업애로 해소 성과	협의결과	'22년 수출 (백만불)
GSO	적합성 평가절차	GSO에서 운영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2,707
	리프팅 장비 GSO 규정	당국으로부터 규제 가이드라인 및 공표 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규제애로 해소		2,156
	에너지효율 규제	시행 예정인 GSO 에너지효율 통합 규제 관련 사전 정보제공		172

- **(시행예정 GSO 규제 정보제공)** KATS-GSO 양자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 예정 GSO 통합 규정에 대해 질의 및 당국으로부터 공식 확인

□ 차년도 발전 방향

○ **(신흥연합 협력 정례화)** 중동, 중남미 및 유라시아 등 시장성이 큰 국가연합에 대해 정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인 정기적 교류를 통한 TBT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선제적 정보교류, 애로해소, 전문가 인적교류 등 국가연합 별 세부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행 현황에 대해 정기적 점검 실시

- 향후 CPTPP, RCEP, 태평양동맹, 안데스공동체 등 미발굴 연합체들과의 협력 교두보 마련을 위한 Road-Map 제시

기존		정례화 (신설)	신속 애로해소 (신설)	협력프로그램운영 *당국자 워크숍, 현지 기업간담회 및 국내 설명회
신흥 지역연합 **규제분석** 중심	+	매년 Action Plan 선정 및 정례안건 협력	협력 기반 양자회의를 통한 능동적 규제해소 규제 Q&A Hot-line 활성화	[우리측 방문 시] **최신 규제정보 상호교류 현지 기업간담회 등** [상대측 방문 시] **국내 규제자 초청 설명회 및 기업-규제자 차담회 등**

○ **(애로해소 채널)** Action Plan을 근거로 한 정기 양자회의 개최, 정기적 교류를 기반으로 한 신속·정확한 규제 애로 해소 채널로 활용

○ **(홍보·전파 강화)** 규제당국과의 규제이슈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전파하여 기업이 발생가능한 규제장벽을 선제적으로 대응

* △규제자 초청 직접 질의응답의 장 마련, △기업-규제자 차담회 개최, △對지역연합 한국 수출기업 정기 Q&A레터 발송 및 회신 체계 구축, △현지 방문 시, 현지 기업(해외지사, 인증대리인 등) 간담회개최 및 최신 규제정보 공유·정책홍보 등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기대효과

○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연합체의 제·개정되는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채널 기반 강화

○ 지역연합체와의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TBT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회의 및 포럼에서의 국가 간 공조 및 협력 확보

○ 최신 기술규제를 제공하여 대·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해소·완화 및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관심도 및 참여 증대

참고 7 인도, 중국 및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표준분석

1. 주요수출국·수출유망국 진출지원을 위한 제품표준분석·정보제공

○ 인도표준(ISI)분석 및 중국, 아세안 등 통상·정세 변화에 선제대응 위한 제품별 기술요구사항 '표준분석 정보' 제공

예시) 인도 전기차 충전기 관련 IS표준

제품	분야	IS표준번호
전기차 충전기	안전일반요구	17017-1 : 2018
	전자파 요구	17017-21-2 : 2019
	산업용 AC충전장치	17017-22-1 : 2021
	휴대용 충전장치	17120 : 2019
	DC 충전기	17017-23 : 2021
	DC충전기 디지털통신제어	17017-24 : 2021

○ 우리기업의 수출유망, TBT애로해소 필요, 신산업 대응 등 통상규제 수요를 다각도로 반영, 지원국별 맞춤형 제품의 표준정보 제공

(1) 인도표준분석 : 전기차배터리, 사이버보안 신산업표준분야 및 수출 유망소비재

(2) 베트남표준(TCVN)분석 : 안전유리, 페인트 등 생활소비재 표준

(3) 인도네시아표준(SNI)분석 : 할랄, 전기전자 제품 등 표준

(4) 인도(ISI) 분석: 가전기기, 전기차 충전기, LED 조명 등 표준

국가(표준명)	23년 주요 표준분석 품목
중국(GB)	**(강제성 규제적용제품)** 드럼건조기, 조명, 전선, 전기부품 등 전자제품* * 플러그 및 소켓, 커플러, 모터, 퓨즈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 분석 **(신산업)** 전기차, 라우터, 무선통신시험, 상용암호 제품*, 서버, 교환기 등 - 방화벽, 스마트카드 COS, 네트워크 취약점 검사제품, 전지차 배터리 등 * 상용암호: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를 암호화 및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증하기 위해 특정 변환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베트남 (QCVN, TCVN)	**(강제규제)** 안전유리, 벽 페인트, 상하수도관 파이프, 알루미늄 합금, 강철케이블, 케이블 관리 도관, PVC 방수 테이프, 건축 구조물용 실리콘 슬러리,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봉, 철 또는 비합금강 와이어
인도네시아 (SNI)	**(강제규제)** 할랄 관리 시스템 **(기업애로 품목)** 정보 기술 장비 (PTI), 보온 플레이트, 전기 온수기 **(신산업)** 지상 광전지 모듈 (PV)
인도 (ISI)	**(강제규제)** LED 등기구, LED 컨버터, 휴대폰 핸드셋, 디지털 TV 수신기, 삼상유도전동기, 저장식 냉온정수기 **(신산업 및 주력제품)**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발전용 이차전지

1 인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1947년 설립된 ISI(Indian Standards Institution)에서 BIS Act 의해 1986년 개칭된 정부기관

○ **(표준개요)** 인도표준국에 의해 국가표준인 IS(Indian Standards) 표준 22,700여건을 운영 중임('24년 3월 현재)

○ **(표준분야)** 화학, 의료기기, 공학, 전자기기, IT, 식품, 섬유, 생산, 경영, 시스템, 서비스 등 분야의 표준이 있음

* 국제표준인 IEC, ISO와 IS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26% ('18년 3월 5049건)

○ **(인증제도)** 대표적 인증으로는 ISI 인증(Mark Scheme)*과 CRS 강제등록(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을 운영하고 있고, 대상 제품 수는 각 352개, 75개 제품임(인증기간 2년)

- 외국산 제품은 인도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절차에 따라 ISI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Scheme Ⅰ : 시멘트, 가전기기, 배터리, 식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352개 품목
** Scheme Ⅱ : AV, IT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저전압 스위치 등 75개 품목

인증스킴	명칭	해당품목	품목개수	표준개수
Scheme Ⅰ	ISI 마크인증	시멘트, 가전제품, 배터리, 식품 및 관련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변압기, 전동모터, 가정용 온수기, 주방용품, 에어컨 등	39류 352종	351개
Scheme Ⅱ*	CRS 강제등록	AV, IT기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저전압 스위치 등	75종	37개
Scheme Ⅳ	적합성 인증서	변압기의 스탬핑 / 라미네이션 / 코어 자전거용 역반사 장치	2종	4개

- 그 외 강제인증으로는 통신인증(TEC), 무선승인(WPC ETA), 에너지효율(BEE), RoHS 인증(EPR), 차량부품 안전인증(AIS),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증(CDSCO) 등이 있음

○ **(기업애로)** 인도의 시험기준은 국제기준 채용정도가 낮고, 현지 시험소 시험결과만 인정

- 인증 획득 시 현지대리인이 요구되고, 인증비보다 과도한 컨설팅비 및 인증 취득기간 소요(6개월 이상) 등 정보부족 및 과도한 규제운용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발생

2 중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 표준의 제·개정 예고, 의견수렴 등 전반적 표준화작업 관리감독 수행

○ **(표준개요)** 국가적 공통요구사항인 국가표준, 산업표준, 단체표준 등의 표준체계를 가지며 국가표준인 GB(Guojia Biaozhun) 표준43,920여건을 운영 중임('24년 3월 현재)

○ **(GB표준)** 국가표준은 제품에 요구되는 기본안전요구사항으로, 제조자는 **GB 표준의 안전요구에 상응**하는 제품의 품질을 갖춰야 함(中 표준화법 규정)

- 국제표준과의 조화도는 전기전자제품분야 일부 등에 국한되는 등 자국 고유의 공고한 표준체계를 기반으로 적합성평가제도 구축·추진

○ **(인증제도)** 전기전자, 공산품 분야 CCC인증(중국강제성제품인증)과 NMPA등록·허가제(화장품,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록제, 에너지효율 라벨, 무선통신규제(SRRC, NAL등) 등 산업 전분야 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 중

○ 최근 주요 산업분야 표준화 업무 추진내용('23년 규제동향 발췌)

규제명	세부내용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23.2)	- 디지털 중국 건설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 국가적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고,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디지털 인프라구축, 디지털 생태환경 구축, 디지털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등 **산업의 전 분야에 디지털화를 도입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표준을 제정, 관련 표준화를 조속히 추진함**
에너지절약 표준 개선·활용 심층강화 정책('23.3)	에너지절약표준의 갱신·개선 및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산업분야와 제품설비의 에너지효율 및 탄소저감 선진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동 정책을 발표함 - ① 에너지절약 표준의 갱신·개선 및 적용 강화의 중요성 제창, ② 주요 산업분야 에너지절약 표준의 갱신·개선을 심화 추진, ③에너지절약 표준 실시 및 감독검사의 강화, ④에너지효율 선진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⑤에너지절약 표준화작업 기반구축, ⑥조직구성 및 시행 강화
소비재 표준화 건설 강화 행동계획('23.5)	내수 확대 전략의 실시와 제조공급사 관리감독 통해 소비재 표준화 공고화, 소비재 전체 산업 체인의 품질 안전 표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① 소비재 품질 및 안전표준 개선,② 친환경, 융합표준 등 새로운 표준 공급강화, ③인터넷, 인공지능 등 혁신산업 표준제정 추진, ④물류표준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체인 표준확장, ⑤무역촉진을 위한 표준제정 강화, ⑥소비재의 표준화된 개발 추진 등

3 베트남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품질기술원(Directorate for Standards)과 기술표준원(STAMEQ,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은 베트남의 표준화, 측정, 품질관리분야 담당

○ **(표준개요)** 강제사항인 기술기준(QCV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802건 및 국가표준(TCVN,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13,220건 등 총 14,000여 건의 표준을 운영 중임

* 관련법률 : No: 68/2006/QH11: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ppendix-1

○ **(표준분야)** 제품 및 상품(연료, 헬멧, 장난감, 전기전자, EMC, 철강, 건축자재 등), 서비스 및 프로세스, 환경, 사회경제활동 등 총 5개 분야가 해당

* 국제표준인 IEC, ISO와 베트남 강제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약 38%이고, 자국언어로 표준을 발행함에 따라 별도의 표준내용 확인 필수

○ **(인증제도)** 대표적인 강제인증으로는 CR Mark인증(안전 및 EMC)이 있고, 대상 품목군은 현재 12개 품목군*임(인증기간 3년) 102종제품**에 해당

* (1) 가솔린 바이오 및 디젤, (2) 헬멧, (3) 장난감, (4) 전기제품, (5)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건축자재), (6) LPG, (7) 전자파 제품(EMC), (8) 시멘트 클링커, (9) 시멘트와 콘크리트용 혼화제, (10) 비료, (11) 식품, (12) 가축시료 등 12개 품목

** 102종 제품의 경우, 12개 품목군에 적용되는 TCVN(TCVN이 없는 경우 상위강제규정인 QCNV기준) 기준 제품군 수 산출

- CR Mark인증에서 요구되는 품목군별 기술규정은 52종이고, 각 규정 내 적용표준 수는 1~20건으로 제품마다 상이

- 그 밖의 강제인증으로는 에너지효율(VNEEP), 통신(VNTA), 의료기기허가(MOH) 등이 존재

○ **(주요 기업애로)** 인증제도의 복잡성*, 旣 제공 중인 규제정보의 부정확함** 등 수출에 필요한 규제 정보 자체의 물리적 부족으로 기업애로 부상

- 베트남어 규제제공 등 정확한 규제파악에 애로

* CR마크 인증 취득 형식이 제품별 1-8단계로 구분, 취득절차 상이

** 규제도입 신흥국으로 에너지 효율, 무선통신, 유해물질제한(RoHS) 등 제품 별 다중분야 규제 적용 추세이며 매년 새로운 규제의 도입, 기존규제의 개정이 활발히 진행

4 인도네시아 표준 및 기술규정 현황

○ **(표준화기관)** 국가표준화기구(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는 대통령령(President Decree) No. 12/1997)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

- 인도네시아의 표준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계측, 표준, 시험 품질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규격을 개발

○ **(표준개요)** 국가표준화기구(BSN)에 의해 국가표준(강제)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를 운영 중에 있고, 14,249건으로 집계('24.3월)[1)]

○ **(표준분야)** 일반, 서비스, 환경 및 안전, 산업(전기전자, 통신, 철도, 선박, 비행기, 건축자재, 화학, 의료 등), 제품 및 서비스, 시험방법 등 총 42개 분야가 해당

* 국제표준인 IEC, ISO와 SNI표준 간 조화비율은 전체의 16%이하(1,955건)

○ **(인증제도)** SNI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중 작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강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을 통해 SNI인증을 획득하고 규정 마크를 표시해야 함.

- 현재 약 83개의 기술규정, 285개의 SNI표준이 강제성 규제(Mandaroty) BSN공지 됨[2)]
- 그 외 강제인증으로는 통신승인(SDPPI), 할랄인증(Hallal), 의료기기허가(DOH) 등이 존재

○ **(기업애로)** 국제표준인증 미인정 및 국외 시험인증 진행 불가*등 인증취득에 제약이 많아, 기업애로 부상

- 인도네시아어 규제제공 등 정확한 규제파악에 애로

* IEC CB등 국제표준규격인증을 취득했더라도 SNI 강제 취득 대상이면 인도네시아 현지 LSPro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 및 유통 가능, 이에 비용·시간 부담이 증가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CB성적서 불인정으로 인해, 오로지 현지 시험결과만 인정

1)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정보사이트 :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검색

2) http://sispk.bsn.go.id/RegulasiTeknis/DaftarList

참고 8 FTA TBT 종합지원 '표준분석' 실적

□ 최근 5년('19~'23) 표준분석 실적

( ) : 중국실적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TBT 지원국가	중국	중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
표준분석(종)	94	130	160 **(110)**	186 **(111)**	186 **(86)**	**756종 (531)**
TBT 가이드북(권)	5	5	6 **(4)**	5 **(2)**	6 **(2)**	**27권 (18)**

□ '23년 표준분석 주요 실적

'23년 사업 주요 성과		
기술규제·표준 분석	분석 대상표준(GB) 및 비교표준(KC등), 중국 규제 조사	**186종**
	TBT 가이드북	**6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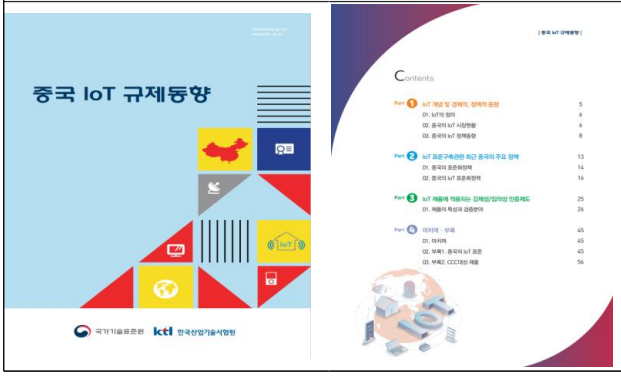
- '22년도 수출기업 TBT 애로 수요조사, 강제규제 동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선정기준(시급성/파급성/의존성/시장성 등)를 고려하여 분석 순위 선정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186종 표준을 분석하여 규제포털(KnowTBT)에 제공하고, 주요 주제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6종)

< '23년도 분석대상 품목 중국 예시 >

제품군명	세부 제품명
전기부품	플러그, 콘센트, 커플러, 전기부품박스, 퓨즈, 전동공구, 모터,
전기전자제품	드럼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IT기기, 소형컴퓨터, 2차전지
생활용품	학용품, 책상 전등,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용 전지, 배기가스 배출한도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핵심설비, 정보 보안기술 네트워크 장치, 보안관리, 스캐너 등

< 표준분석 결과물 예시 >

가이드북①- IoT규제동향	가이드북②-전기부품 규제동향





참고 9 국내 FTA TBT 추진 현황 ('24.2월 현재)

단 계	FTA	이행관련 주요사항
발효된 FTA (21개)	- 한-칠레('04.04.)	o 칠레 전기·전자제품 인증절차 개선
	- 한-싱가포르('06.03.)	o 한-싱 MRA 관련 안전인증기관 지정 갱신
	- 한-EFTA('06.09.)	o 한-EFTA FTA 공동위원회 TBT 분과
	- 한-ASEAN('09.05.)	o 한-ASEAN TBT 대화체
	- 한-인도(CEPA, '10.01.)	o 한-인도 TBT/SPS 공동작업반
	- 한-EU('11.07.)	o 한-EU FTA 전기전자규제대화체, 상품위원회
	- 한-페루('11.08.)	o 한-페루 FTA TBT 위원회
	- 한-미('12.03.)	o 한-미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터키('13.05.)	o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 TBT 분과
	- 한-호주('14.12.)	o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TBT 분과
	- 한-캐나다('15.01.)	o 자동차, 목재 등 기술규제 정보교환
	- 한-중('15.12.)	o 한-중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뉴질랜드('15.12.)	o 한-뉴질랜드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베트남('15.12.)	o 한-베 FTA TBT 분과 위원회
	- 한-콜롬비아('16.07.)	o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 협상
	- 한-중미('21.03.)	o 한-중미 FTA TBT 위원회
	- 한-영 ('21.01.)	o 한-영 FTA TBT 분과 회의
	- RCEP ('22.02.)	o 아세안, 인도 등 FTA/TBT 협정 개선 효과
	- 한-이스라엘 ('22.12)	o 한-이스라엘 TBT 위원회
	- 한-캄보디아 ('22.12)	o 상품 챕터 내 TBT 관련 조항 마련
	- 한-인니('23.1.)	o 상품 챕터 내 TBT 관련 조항 마련
타결된 FTA (2개)	- 한-필리핀('21.10.)	o WTO TBT 협정상 권리·의무 확인
	- 한-에콰도르('23.10.)	
협상진행 FTA (11개)	- 한-GCC('08.07.~)	o 제6차(`22.6월) 협상에서 TBT분과 타결
	- 한-중-일('13.03.~)	
	- 한-메르코수르('18.09.~)	
	- 한-말레이시아('19.07~)	
	- 한-칠레('21.10)	o 통상환경 변화 반영
	- 한-ASEAN('19.09)	o 교역확대, 통상환경 번화 반영
	- 한-인도(CEPA, '19.06)	o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한-러시아('19.06~'20.07)	
	- 한-우즈벡('21.04.~)	
	- 한-몽골('23.12~)	
	- 한-조지아('24.2~)	
재개, 개시 여건조성(2개)	- 태평양동맹PA('19.09.) : TOR 협상 중 - EAEU('17.09.) : 공동실무작업반설치 합의	

참고 10 中상해 TBT대응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지대응

□ '23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중국 상해 TBT 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현지 간담회·설명회** 개최

○ (범위) 中기술규제 정보의 신속 파악 및 현지진출기업의 애로 대응지원을 위한 상설 대응 협력체계 구축·운영

○ (목표) 상시기업애로접수·지원, 규제대응 협의회 개최·운영 및 中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구분	내용	비고
기업애로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10건	-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H2ICE 배기규제 제정동향 지속 모니터링 중
현지 정기 협의회 개최·운영	- 간담회: 1회(5월) - 설명회:1회(11월. 화상형식)	- COVID-19종료로 현지 대면 운영
홍보	- 2회(5월, 11월)	- 6월, 11월(뉴스레터)
협력채널 운영	- 네트워크관리카드(10건)	- 방문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 조사사항 반영

□ '23년도 중국 현지대응 업무 성과

○ '23년은 엔데믹 후 중국 리오프닝 원년으로 실질적 애로지원을 위한 기업의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중국의 최신기술규제 동향을 전문가를 초빙, 효과적 정보전파함



북경기업간담회('23.5)



북경기업간담회('23.5)



상해 TBT규제설명회('23.11)



상해 TBT규제설명회('23.11)

참고 11 '23년도 「인도 현지 TBT 대응 협의체」 운영 계획

□ '23년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인도 TBT 대응지원센터 구축 및 현지 간담회·설명회** 개최

○ (범위) 최근 기술규제 지원 수요가 급증하는 인도의 TBT지원을 위한 현지 TBT대응지원 협의체 구축추진

○ (목표) TBT 대응지원 소개, 현지기업대상 기술규제 지원간담회 개최, 규제정보 전파를 위한 TBT설명회 개최 등 활동전개

구분	내용	비고
TBT 기업애로 수집 및 지원	- 상시 접수지원·대응 : 5건	- 상시 접수지원·대응 : 9건
현지 간담회 개최	- 기업간담회 : 1회(11월. 대면형식)	- 기업간담회 : 1회('23.11.15. 르메르디앙) - 대사관, 기업 등 20명
현지 설명회 개최	- 설명회 : 1회(11월. 대면형식)	- 설명회 : 1회('23.11.15. 르메르디앙) - KOTRA, 기업 등 40명
인도 규제기관 네트워크 확보	- 인도정부 : 도로교통부, 철강부, 신재생에너지부, 통신공학센터 등	- BIS, BEE, ARAI 등 5개 기관

□ '23년도 인도 현지대응 업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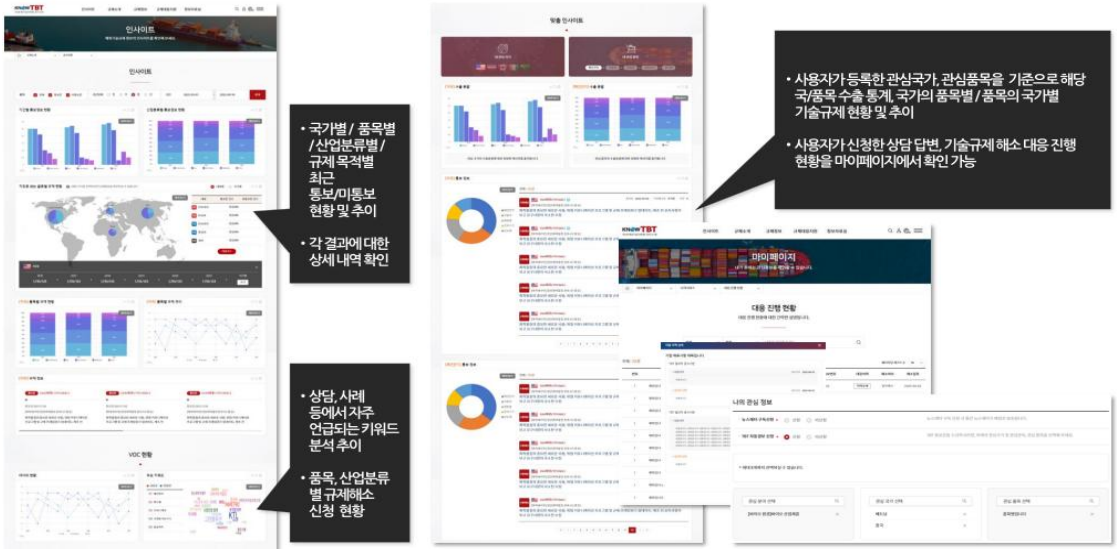
○ 엔데믹 이후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통상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기업 주요 관심 지역인 인도지역의 선제적 규제대응 협의체 활동 전개

<table>
<tr><td>  </td><td>  </td></tr>
<tr><td>인도기업간담회('23.5)</td><td>인도기업간담회('23.5)</td></tr>
<tr><td>  </td><td>  </td></tr>
<tr><td>인도 TBT규제설명회('23.11)</td><td>인도 TBT규제설명회('23.11)</td></tr>
</table>

참고 12 knowtbt 포털 운영

□ 국내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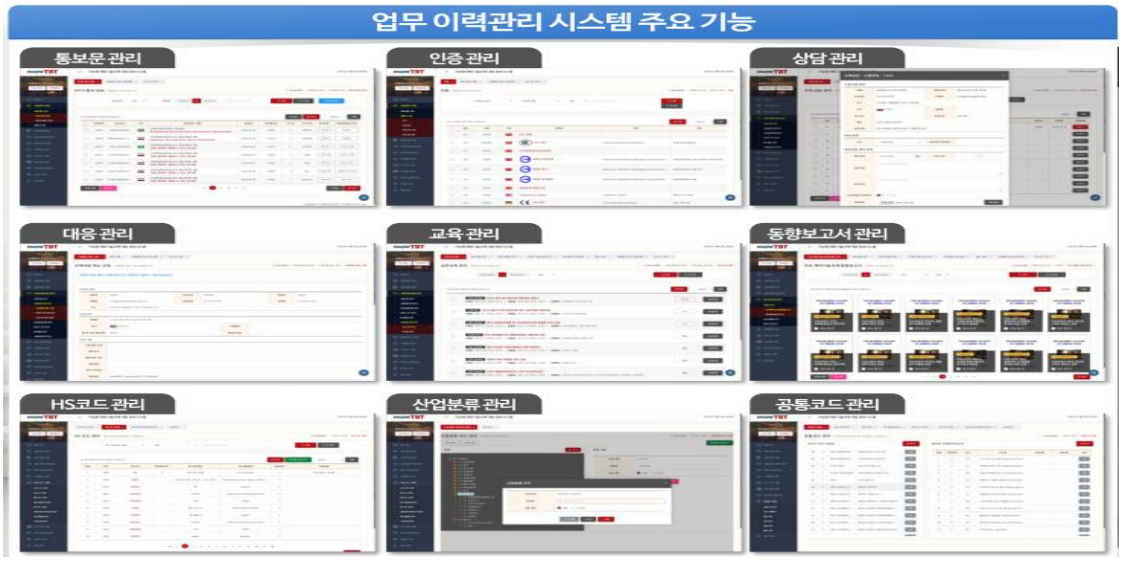
○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화 서비스(국가별, 품목별) 구현으로 기업(사용자)의 취급 품목에 적용되는 맞춤형 기술규제 정보 선제적 제공



사용자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화면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업무지원 서비스

○ 체계적인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 지원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품질 제고와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정보 제고**

○ TBT 관련 해외 규제 당국과 협상·협력 이력 등 TBT 대응 현황, 기업 TBT 애로 해소사례 등을 종합 관리하여 정책 품질 제고



업무이력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참고 13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비 산출내역

심층분석	□ **심층분석 : 5,000천원/건** - **규제원문 번역비 : 1,400천원/건** - **인건비* : 3,600천원/건** (16MD/건 소요) *** 인건비 산출내역** 1) 통보 : ①WTO TBT 통보문 입수, ②분석(규제대상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③산업계 의견수렴·대응, ④ 규제내용 전파 등 2) 미통보 : ①미통보 규제 발굴(규제당국 모니터링, 해외규제 포털 모니터링 등), ②분석(규제대상 범위, 제.개정 주요내용, 국가간 규제내용 과도성 비교, 문제점 및 대응방안), ③산업계 의견 수렴·대응, ④규제내용 전파 등 3) 최종안 : ①관보 모니터링, ②분석(규제대상 범위, 주요내용), ③시험인증 정보(인증절차, 인증기관, 시험소,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④산업계 의견수렴·대응, ⑤규제내용 전파 등
*** 통보/미통보 심층분석과 최종안의 인건비 산출이 동일한 이유** - 최종안은 통보/미통보의 분석 내용에 없는 **인증절차, 인증기관, 시험소,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의 정보조사가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인건비 산출됨	

* 인건비 기준 : '21년 기재부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 MD당 단가 : 226,263 (원/MD)

사 업 명
(22)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술규제 개혁선진화 체계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김태완	신명철	
		기술규제조정과	043-870-5550	043-870-555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170.0	1,060.0	1,133.0	1,133.0	73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78.0	1,178.0	1,170.0 [1,170.0]	-	8.0	1,060.0	1,060.0	1,046.1 [1,046.1]	1,060.0	1,046.1 [1,046.1]	-	13.9	1,133.0
· 기술규제영향평가	591.6	591.6	589.9 [589.9]	-	1.7	529.0	529.0	528.7 [528.7]	529.0	528.7 [528.7]	-	0.3	650.7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74.0	174.0	169.2 [169.2]	-	4.8	161.0	161.0	147.7 [147.7]	161.0	147.7 [147.7]	-	13.3	101.2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412.4	412.4	410.9 [410.9]	-	1.5	370.0	370.0	369.7 [369.7]	370.0	369.7 [369.7]	-	0.3	381.1
○ 비목별 분류(합계)	1,178.0	1,178.0	1,170.0 [1,170.0]	-	8.0	1,060.0	1,060.0	1,046.1 [1,046.1]	1,060.0	1,046.1 [1,046.1]	-	13.9	1,133.0
· 일반수용비(210-01)	33.1	33.1	31.7 [31.7]	-	1.4	33.0	31.5	25.7 [25.7]	31.5	25.7 [25.7]	-	5.8	34.0
· 임차료(210-07)	10.0	10.0	10.0 [10.0]	-	-	10.0	11.5	11.2 [11.2]	11.5	11.2 [11.2]	-	0.3	10.5
· 국내여비(220-01)	4.3	4.3	4.3 [4.3]	-	-	4.0	4.0	4.0 [4.0]	4.0	4.0 [4.0]	-	0.0	4.0
· 사업추진비(240-01)	8.4	8.4	8.4 [8.4]	-	-	9.0	9.0	9.0 [9.0]	9.0	9.0 [9.0]	-	0.0	9.0
· 일반연구비(260-01)	1,122.2	1,122.2	1,115.6 [1,115.6]	-	6.6	1,004.0	1,004.0	996.2 [996.2]	1,004.0	996.2 [996.2]	-	7.8	1,075.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78.0	1,178.0	1,170.0 [1,170.0]	-	8.0	1,060.0	1,060.0	1,046.1 [1,046.1]	1,060.0	1,046.1 [1,046.1]	-	13.9	1,133.0
· 기술규제영향평가	591.6	591.6	589.9 [589.9]	-	1.7	529.0	529.0	528.7 [528.7]	529.0	528.7 [528.7]	-	0.3	650.7
- 일반수용비(210-01)	4.0	4.0	2.7 [2.7]	-	1.3	4.0	4.0	4.0 [4.0]	4.0	4.0 [4.0]	-	0.0	4.0
- 사업추진비(240-01)	3.6	3.6	3.6 [3.6]	-	-	4.0	4.0	4.0 [4.0]	4.0	4.0 [4.0]	-	0.0	4.0
- 일반연구비(260-01)	584.0	584.0	583.6 [583.6]	-	0.4	521.0	521.0	520.7 [520.7]	521.0	520.7 [520.7]	-	0.3	642.7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74.0	174.0	169.2 [169.2]	-	4.8	161.0	161.0	147.7 [147.7]	161.0	147.7 [147.7]	-	13.3	101.2
- 일반수용비(210-01)	29.1	29.1	29.0 [29.0]	-	0.1	29.0	27.5	21.7 [21.7]	27.5	21.7 [21.7]	-	5.8	30.0
- 임차료(210-07)	10.0	10.0	10.0 [10.0]	-	-	10.0	11.5	11.2 [11.2]	11.5	11.2 [11.2]	-	0.3	10.5
- 국내여비(220-01)	3.0	3.0	3.0 [3.0]	-	-	3.0	3.0	3.0 [3.0]	3.0	3.0 [3.0]	-	0.0	3.0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0.0	2.0
- 일반연구비(260-01)	129.9	129.9	125.2 [125.2]	-	4.7	117.0	117.0	109.8 [109.8]	117.0	109.8 [109.8]	-	7.2	55.7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412.4	412.4	410.9 [410.9]	-	1.5	370.0	370.0	369.7 [369.7]	370.0	369.7 [369.7]	-	0.3	381.1
- 국내여비(220-01)	1.3	1.3	1.3 [1.3]	-	-	1.0	1.0	1.0 [1.0]	1.0	1.0 [1.0]	-	0.0	1.0
- 사업추진비(240-01)	2.8	2.8	2.8 [2.8]	-	-	3.0	3.0	3.0 [3.0]	3.0	3.0 [3.0]	-	0.0	3.0
- 일반연구비(260-01)	408.3	408.3	406.8 [406.8]	-	1.5	366.0	366.0	365.7 [365.7]	366.0	365.7 [365.7]	-	0.3	37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사업) 국내기업의 기술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방지 내역사업:기술규제영향평가 하고 지속 검토·관리 내역사업:중소중견기업애로기술규제발굴·인증제도실효성검토 를 통해 全주기적 기술규제 합리화 추진

- (내역사업①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내역사업② 중소·중견기업기술규제기업애로발굴) 기술규제정책포럼,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내역사업③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정부 법정인증제도(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존속·개선·폐지 등 실효성 검토를 3년 주기(약79건/연)로 실시

※ 단, '25년은 全인증제도 정비추진에 따라 전체인증제도(257건)에 대한 검토·정비현황 점검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 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로 개정
- '23. 7.1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기술규정·적합성평가 시행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127	1,148	1,178	1,060	1,1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 ('24) 529.0백만원 → ('25) 650.7백만원, 23.0%

- 전부처 제개정 법령 내 포함되어 있는 신설 인증에 대한 합리성 검토절차가 신설(`24.6월 규제개혁위원회) 됨에 따른 검토·분석 추가추진 및 기존 기술규제 영향평가 지속수행을 위한 23.0% 증액(1.2억)

- (산출)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 : 642.7백만원(121.7백만원 증액, 283건* x 2.27백만원**/건)
② 간사기관 운영비 : 4백만원(전년동)
③ 사업추진비 : 4백만원(전년동)

* 검토건수 : 254(`24년) → 283건(`25년, `19~`23년 평균건수 반영)
* 검토비용 : 기술사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석단가 상향(2.05→2.27백만원)

②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24) 161.0백만원 → ('25) 101.2백만원, △37.1%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건수 감소 및 검토비용 축소검토 등으로 '24년 대비 △37.1% 감액(△0.6억)

* 발굴건수 : 126건(`20년) → 107건(`21년) → 96건(`22년) → 89건(`23년)

- (산출) ①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 : 55.7백만원(△61.3백만원, = 50건* x 1.11백만원**/건)
②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 : 6백만원(전년동)
③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 : 24백만원(+1백만원, 15만원 X 16인 X 10회)
④ 기술규제위원회 등 임차료 : 10.5백만원(+0.5백만원, 1.5백만 X 7회)
⑤ 국내여비 / 사업추진비 : 3백만원(전년동) / 2백만원(전년동)

* 검토건수 : 88(`24년) → 50건(`25년)
** 검토비용 : 검토일수(3→2일) 축소로 분석단사 하향(1.33→1.11백만원)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4) 370.0백만원 → ('25) 381.1백만원, 3%

- 현행 3년주기 실효성 검토(약 79건, 매년 전 인증제도의 약 1/3정도 검토 중)에서 국내 전 인증제도 정비 방안·현황 검토(257건, `24.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며, 의원입법 검토 수준을 현행화하기 위한 3% 증액(0.1억)

- (산출) 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전문가 분석 : 319백만원(0.2백만원, 257건* X 1.24백만원**/건)
②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 : 58.1백만원(13.1백만원, 87건*** X 0.68백만원****/건)
③ 국내여비 : 1백만원(전년동)
④ 사업추진비 : 3백만원(전년동)

* 검토건수 : 79(`24년) → 257건(`25년)
** 검토비용 효율화 : 검토일수 축소(9→2일)로 건당 검토비 최소화 추진 : 4.07→1.24백만원
*** 검토건수 : 38(`24년) → 87건(`25년)
**** 검토비용 효율화 : 검토일수(2→1일)로 건당 검토비 최소화 추진 : 1.12→0.68백만원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60,000	○ **일반수용비(210-01) : 33,000천원** 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 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 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3,000천원) ・ 150천원x16명x10회 = 24,000천원 ・ 조정재원 (-1,000천원)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1,500천원=10,500천원 ・ 조정재원 (-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 ・ 80회×50천원=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 ・ 오찬, 만찬비 등 : 36회x10명×25천원=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4,000천원** 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521,000천원) ・ 254건x2,048천원*=520,192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 x 4일) + 자료구입비 280천원 = 2,048천원 ・ 재원조정(+808천원) 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117,000천원) ・ 88건x1,326천원*=116,688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 x 3일) = 1,326천원 ・ 재원조정(+312천원) 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524,000천원) ・ 38건x1,198천원=45,524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 x x 2일) + 자료구입비 314천원 = 1,198천원 ・ 재원조정(-524천원) 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21,000천원) ・ 79건x4,066천원=321,214천원 * 1건당 검토비용 : ('22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임금 기술사 평균 442천원 x x9.2일) = 3,689천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2주기('22~24) 총 검토 건수는 222개 제도로 '23년 검토 대상 제도는 79개 ・ 재원조정(-214천원)	1,133,000	○ **일반수용비(210-01) : 34,000천원** 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 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 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4,000천원) ・ 150천원x16명x10회 = 24,000천원 ○ **임차료(210-07) : 10,500천원** 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5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1,500천원=10,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 ・ 80회×50천원=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 ・ 오찬, 만찬비 등 : 36회x10명×25천원=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75,500천원** 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642,650천원) ・ 283건*x2,278천원**=644,674천원 * 수량 : 5년간(`19~23년) 영향평가 평균 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4일)+ 자료비 250천원 = 2,278천원 ・ 재원조정(-2,024천원) 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55,700천원) ・ 50건*x1,114천원**=55,700천원 * 수량 : 3년간('21~23년) 하향추세를 반영(107건/'21년 → 96건/'22년 → 89건/'23년)한 기업애로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2일)+ 자료비 100천원 = 1,114천원 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58,150천원) ・ 87건*x668.4천원**=58,150.8천원 * 수량 : 3년간(`21~23년) 의원입법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1.2일)+ 자료비 60천원 = 668.4천원 ・ 재원조정(-0.8천원)  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19,000천원) ・ 257건*x1,235.1천원**=317,420.7천원 * 수량 : `25년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 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x2.3일)+ 자료비 69천원 = 1,235.1천원 ・ 재원조정(1,579.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단위: %)	목표	72	73	73	-	-	(기존) '20~'21년 실적치의 평균인 74.6%을 반영하여 '23년 대비 1% 상향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 의견수렴건수 /검토의견제시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72	79.7	72.5	-	-			
	달성도	100	109	99.3*	-	-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제시율 (단위: %)	목표	-	-	-	32**	32***	신규지표이므로 '24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10년 평균 실적은 약 28%임)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제시율 = 검토의견제시건수 /검토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38.4	33.0	57.8	-	-			
	달성도	-	-	-	-	-			

* 전년대비 의견 제시건수는 전년대비 184% 수준(59건 '22년 → 109건 '23년)으로, 의견 반영 건수는 전년대비 168% 수준(47건 '22년 → 79건 '23년)으로 증가

** '24년부터 의견반영률 → 의견제시율로 목표가 변경되었으며, '24년 목표는 32%임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기준 등에 대한 분석 및 합리화 제안이 본 사업의 목표이므로, 사업 목표에 더욱 적합한 '의견제시율'로 성과지표를 수정함)

*** 의견제시율의 '25년 목표는 현재 미협의 상태이며 '24년 신규지표이므로 전년동일 수준으로 기입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기술규제 영향평가 : 341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74건 → 반영 53)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07건) → 개선(16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182건(검토의견 제시 11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3개, 개선 30개, 존속 30개, 제외1개)
2022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26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59건 → 반영 47)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96건) → 개선(18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5건(검토의견 제시 5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11개, 개선 39개, 존속 14개)
2023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69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9건 → 반영 79)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89건) → 개선(14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44건(검토의견 제시 2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79개(통·폐합 20개, 개선 37개, 존속 22개)
2024.7월말	- 기술규제 영향평가 : 96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45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16건) → 개선(7건부처협의진행중)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건(검토의견 제시 0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목표 79개(검토 추진 중)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부담완화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업현장에서 불합리·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범부처 인증제도(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 분석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 유사제도는 통합하여 국민(기업) 부담완화 및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제시로 불합리한 제도 신설 방지

* 79건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로 인증 유효기간 확대, 수수료 완화 등의 간접효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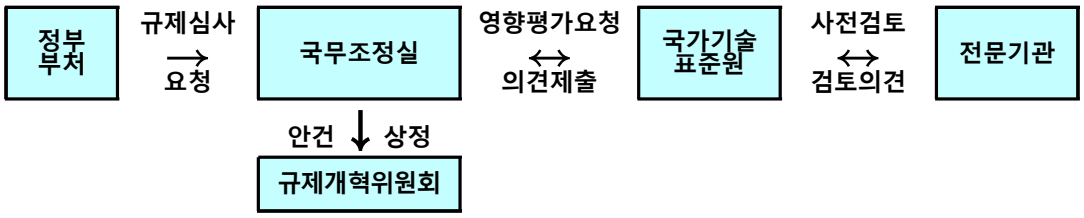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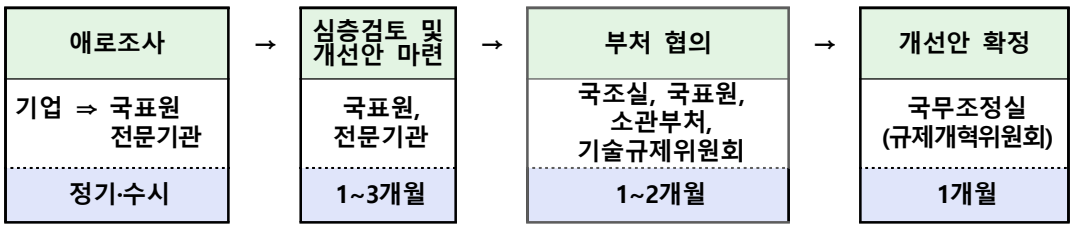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 영향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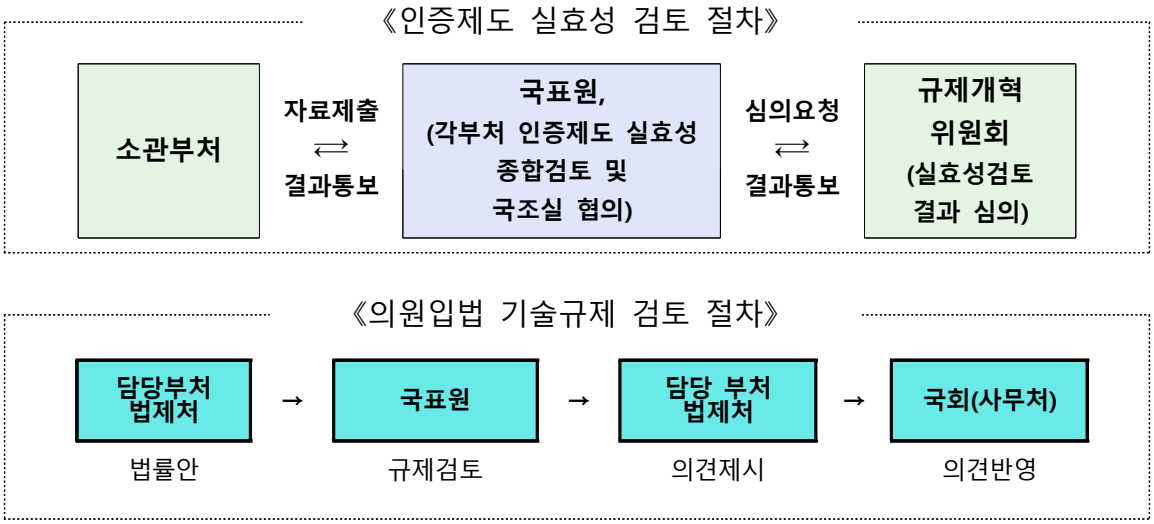


② 중소중견기업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절차》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178	1,060	1,133	1,445	1,547	
'24~'28		1,060	1,133	1,221	1,285	1,35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全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신설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제개정 단계부터 신설 인증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강화 추진

○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25년은 全 인증제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현황점검 추진

○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127	-	1,127	-	-	-	1127	1,111	98.6	98.6	-	16
2022	1,148	-	1,148	-	-	-	1,148	1,144	99.6	99.6	-	3.6
2023	1,178	-	1,178	-	-	-	1,178	1,170	99.3	99.3	-	8
2024	1,060	-	1,060	-	-	-	1,060	653	61.6	61.6	-	(4.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2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년 수준의 불용예상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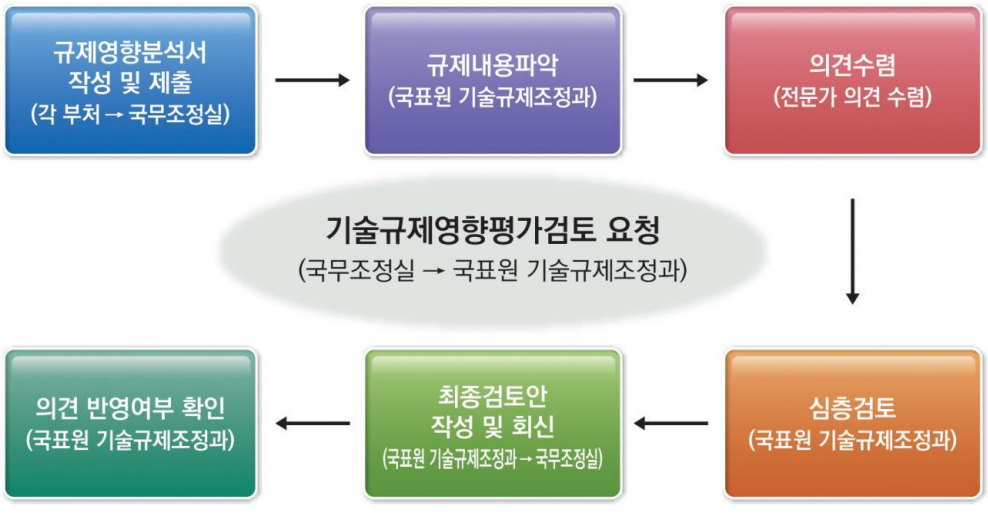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기술규제 영향평가 설명자료

□ **(기술규제영향평가)**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목적)**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 **(절차)** 부처에서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규제안을 국무조정실로 송부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안을 검토하여 각 담당기관에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뢰
- 이때 규제안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임
- **(대상)**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해 실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



참고 2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증명하는 것으로, **인증, 검사, 형식승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법률적인 용어로 **적합성평가**(표준·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인증제도"로 통용.** '22.4월 기준 **222개 법정 인증제도 운영중**

○ **인증제도는**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

안전(제품)	환경보호	보건(식품)	산업육성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건축물	 유기농 식품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 그러나,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기준** 등으로 **기업의 비용·시간적 부담 초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기업 애로를 유발

□ 정부는 이런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검토**하는 제도 도입*

*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마련(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4.8월)

○ 이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18.6.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12.21)

< 국가표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① **기존 법정 적합성평가제도**(인증 등) **존속 필요성 검토 근거 규정 신설**
②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존 적합성평가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심의 기구로 규정**
③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

※ 산업부(국표원)가 사전검토하여 규개위에 보고토록 국무총리 훈령 정비('18.12)

2. 추진체계

□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

필요성	적절성	완성도
▸제도 활성화 및 존치 타당성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유사·중복 여부	▸국가, 국제표준과의 조화 ▸유효기간, 비용 등 유지부담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근거, 평가절차, 범위 등의 명확성 ▸시장진입의 방해요소로 작용 여부 ▸사후관리 등 관리 절차

※ **2주기 실효성 검토**('22~'24)**는** 1주기 검토와 차별화하여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므로 **심층 분석·검토**가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함

□ 전문가·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분석,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기술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종합의견서(안) 도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① 분 석	**자체검토서** ▸각 부처에서 작성 ▸자체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전문가검토** ▸시험기관 컨소시엄 ▸산·학·연 전문가	**이해관계자의견** ▸관련 협단체 ▸인증 취득 기업
② 협 의	**관계부처 협의** ▸종합의견서 초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와 정비(안) 협의	**기술규제위원회 논의** ▸존속 및 정비제도에 대한 종합 의견 ▸쟁점제도 부처소명을 통한 논의	
③ 결과도출	**종합의견서 최종(안) 마련** ▸필요시 부처와 의견 교환 ▸국표원 최종(안)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안 확정** ▸적합성평가대상 제도 검토결과 확정	
④ 이행, 관리	**각 부처 개선안 이행**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개선 및 존속 제도는 3년 후 실효성 재검토	**이행실적 점검** ▸개선제도 모니터링 및 이행 독려	

3. 검토 대상

□ **(검토 대상) 2주기 검토대상은 1주기에 존치**된(186개중 20개 통·폐합) **166개 제도**에, **신규 대상 56개*** 제도를 추가한 총 **222개 제도**임

* 신규대상 56개 제도 : ①1주기 기간중 신설된 25개 제도, ②1주기대상에서 제외(우수문화상품지정 등) 또는 누락(실내공기우수시설인증 등)되었던 31개 제도

○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이 89개 제도(40%)**이며 제품, 서비스, 조직의 품질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이 133개 제도(60%)임**

* 이중 제품과 관련이 없는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은 55개 제도**(전체의 25%)임.

□ **(연도별 계획)** 1주기 검토연도와 연계하고 연간 부처별 검토* 및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제도를 검토**

* 국토부(35개), 해수부(30개), 환경부(24개), 산업부(23개), 농축산부(19개)의 **5개 부처의 인증제도가 131개(59%)이며** 부처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배분

< 참고 : 연도별 검토대상 기본원칙 >

① 1주기 존치제도(168개)는 1주기와 동일한 연차에 검토(1주기 1차년도('19) 검토한 제도는 2주기 1차년도('22)에 검토) 하되, 부처별로 연간 균등배분을 위해 일부 조정

* 부처가 제출한 희망 검토연도에서 조정된 제도는 14개(6%)

② 신기술인증 등 유사제도, 상호 연관성*이 큰 제도는 가급적 동일 연도에 검토

* KS인증(산업부), 전기용품 KC인증(산업부), 환경표지인증(환경부) 등을 '22년 동일연도에 검토

③ '22년은 검토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64개, '23~'24년은 각각 79개를 배정

4. 검토 중점 방향

□ **(제도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 새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증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폐합** 유도

○ ①**단순 홍보 수단**의 인증, ②**소수 기업만 획득**하는 인증, ③**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증 등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

< 법정 인증제도 통폐합 검토대상 >

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과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인증과 달리, **인증마크를 단순 홍보 또는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 특히,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55개 임의 인증제도에 대해 집중 분석

② 3년이상된 제도임에도 **소수 기업만 인증을 획득**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인증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

*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필요성이 낮은 인증이 '인증을 위한 인증'으로 변질화될 우려를 사전 차단

③ 해외에 유사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증제도**

* 1주기에 존치된 166개 인증제도중 43개 제도(26%)가 해외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품목단위 규제개선)** 제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 개선결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방법 및 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 제도별 **품목단위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①**인증품목 축소**, ②인증 **기간 및 비용 절감**, ③인증 **유효기간 확대**, ④**기준 완화** 등을 검토

※ 특히, 20년 이상된 제도*(75개, 전체의 33%)와 **다수 인증으로 애로를 겪는** LED 등의 품목**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 강구**

< 인증방법 등 규제 완화 검토대상 >

① 정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품목 제외 등 **인증대상 축소**

② 시험 적체로 제품출시가 지연되거나 인증비용에 과도한 부담이 있는 분야는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방안** 마련

③ **파생모델 면제범위 확대, 유효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유지관리 부담 완화**

④ 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일치화**

□ **(절차 간소화)** 유사 **인증제도간** 상당부분 **중복적 요소**가 있거나 **획일화된 절차***로 **불합리성**이 있을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 강구**

* 로봇과 같은 소량 다품종 품목에 대해 공장심사를 적용할 경우 애로 발생

○ ①유사 인증제도와 연계한 **면제제도 도입**, ②공장심사 등 일부 **심사체계 제외**, ③**시험성적서 수용범위 확대** 등 절차적 간소화를 검토

<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법 검토대상 >

① 타 제도의 제품, 공장, 경영체계 등의 심사 결과를 **포괄적으로 수용(면제)**
* 예,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의무)'은 'KS 인증(임의)'을 취득하면 면제 혜택을 부여중

② 품목 특성에 따라,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하는 방안** 마련

③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 시험성적서나 해외발행 시험성적서 등을 수용**
* 예, 국가공인시험기관(기업내 시험소도 포함)이나 상호인정 체결된 해외 시험기관

④ 기타, 신청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략화, 심사원 자격 완화 등

□ **(규제 입증책임제 적용)**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의 폐지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기술규제위원회 등에서 입증***

* 법정제도에서 제외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 의무

○ 제도상의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중요 쟁점사안**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부처 입장을 입증**

○ 필요 시, 산업·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쟁점사안이 있을 경우**, "**인증제도 규제 청문회**(가칭)" 등을 개최하여 쟁점을 해결 모색

* 청문회는 사안에 따라 '국조실' 또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주관으로 운영

□ **(유관단체와의 협력)** 기업 현장의 **애로 발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유관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조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정비과), 중기옴부즈만, 기술규제개혁작업단(기술규제 애로발굴 부서)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연계하여 심층 검토**

5.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폐지로 규개위 안건 상정 예정인 4개 제도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비 감소만 연간 160억* 이상으로 예상됨**

* (직접비) 인증수수료 절감에 따른 직접비용 감소 27억, (간접비) 매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3억

□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국민 불편 해소

○ 필요성이 낮거나, 인증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잠재적인 부담 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인증대상 축소,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 등 제도별 맞춤형 정비를 통해 기업·국민에게 체감도 있는 불편 경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로 부처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 촉진

○ 부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술규제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검토 등 소통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모든 인증제도는 3년 주기 재검토하여, 산업·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이고 진전된 기술규제 정비 지속 추진

참고 3-1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통합·폐지, 개선 사례

□ 인증제도 통합·폐지 사례

○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합·폐지

1 유사·중복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 (국토부)

현행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

개선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

2 타 제도 대체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과기부)

현행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연구소 등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폐지**

✓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식품부)

현행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운영

개선 **가축검정제도와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어 **폐지**

3 낮은 실효성

✓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농식품부)

현행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주로 민간·지자체에서 운영 중

개선 도농교류 교육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 폐지, 지자체 자율운영 지원**

□ 인증제도 개선 사례

○ 인증방법 개선 및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1] 인증기간 및 비용

✓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현행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 (예시)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19년 제품수량 80개 기준)
▲갱신수수료 4,020,060원 ▲인증마크사용수수료 3,463,419원

개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2] 중복검사 면제

✓ **ICT 융합품질인증** (과기부)

현행 IC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출 지원하는 제도이나, **파생모델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일부변경한 유사제품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 진행

개선 **파생모델**의 경우 **시험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방법 등 파생모델 인증기준 등 제도 정비

✓ **전승공예품 인증** (문화재청)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유사제도인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과 **시험항목이 일부 중복**되며, **유해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개선 우수공예품과 **동일항목 시험은 면제**,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수용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

[3] 시험성적서 수용 확대

✓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 (소방청)

현행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자체 시험 결과만 인정**

개선 **국제표준**인 ISO 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수용**

4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인증 재시험·재심사 부담 경감

✓ **성능 인증** (중기부)

현행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되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방장비인증** (소방청)

현행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비용이 건당 95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복지부)

현행 안전하고 질높은 고령자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제도 평균보다 짧음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4년으로 연장**

✓ **녹색인증** (산업부)

현행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녹색인증 제품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기부 우선구매, 특허청 우선심사 등 공공시장 진출시 다양한 혜택 부여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산업부)

현행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이 일정기준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취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액감면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공정위)

현행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용역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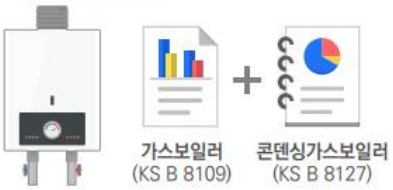
참고 3-2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개선 사례

<기술규제 영향평가 개선 사례>

가정용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개정전
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의 시험방법으로 가스온수 보일러 관련 표준만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콘덴싱 방식에 대응하기 어려움

개선
기체연료 2등급 보일러 시험방법으로 KS B 8127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을 추가해 콘덴싱 보일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안

개정전
살균제 및 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기준 중 기존 시험법으로 분리 측정이 어려운 항목*이 있어, 기준 합리화가 필요함

* 살균제 주성분 중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
살조제 주성분 중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칼륨 등

개선
기존 시험법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사례>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국토교통부)

개정전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기준이, 모바일을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기준 개선 필요

개선
모바일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함



승강기검사 (행정안전부)

개정전
승강기 심사 설계심사 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이 1개월으로 정해져 있으나, 보완을 반영하기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함

개선
설계심사 보완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사 업 명
(23)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37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	110	117
명칭					산업·중기·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4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IT기반기술 표준정보화 체계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노재홍	유용재	-
		기술규제협력과	043-870-5550	043-870-5562	-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IT기반기술표준 정보화체계구축	3,145	2,389	806	806	△1,583	△6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20	3,220	3,145	-	75	2,389	2,389	2,366	2,389	2,366	-	23	806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2	-	8	480	480	476	480	476	-	4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2	-	3	185	185	182	185	182	-	3	166
· 전산장비 및 SW구매	160	160	153	-	7	160	160	159	160	159	-	1	160
· 자능형표준인증플랫폼구축	2,395	2,395	2,338	-	57	1,564	1,564	1,549	1,564	1,549	-	15	-
○ 비목별 분류(합계)	3,220	3,220	3,145	-	75	2,389	2,389	2,366	2,389	2,366	-	23	806
· 관리용역비(210-15)	665	665	654	-	11	665	665	658	665	658	-	7	646
· 일반용역비(260-01)	2,325	2,325	2,269	-	56	1,514	1,514	1,499	1,514	1,499	-	15	-
· 자산취득비(430-01)	230	230	222	-	8	210	210	209	210	209	-	1	1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59	2,759	3,145	-	75	2,389	2,389	2,366	2,389	2,366	-	23	806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	480	472	-	8	480	480	476	480	476	-	4	480
- 관리용역비(210-15)	480	480	472	-	8	480	480	476	480	476	-	4	480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	185	182	-	3	185	185	182	185	182	-	3	166
- 관리용역비(210-15)	185	185	182	-	3	185	185	182	185	182	-	3	166
· 전산장비 및 SW구매	160	160	153	-	7	160	160	159	160	159	-	1	160
- 자산취득비(430-01)	160	160	153	-	7	160	160	159	160	159	-	1	160
· 자능형표준인증플랫폼구축	1,934	1,934	2,338	-	57	1,564	1,564	1,549	1,564	1,549	-	15	-
- 일반연구비(260-01)	1,864	1,864	2,269	-	56	1,514	1,514	1,499	1,514	1,499	-	15	-
- 자산취득비(430-01)	70	70	69	-	1	50	50	50	50	50	-	0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부처 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14~‘16)된 범부처 표준 · 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의 안정적인 운영서비스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 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의 행정 · 정책업무 수행 지원

- (전산장비 및 SW 구매)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구현을 위한 PC 백신 라이센스 비용, 비표준 플러그인 제거, 윈도우 10 OS 도입 등 HW 및 SW 최신화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기업의 대표적인 규제 애로 건의 과제로 국가별·제도별·품목별로 ❶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❶지능상담·검색서비스 제공, ❸기술규제 혁신 협업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 · 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국가표준 · 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15.11월 :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인증제도 혁신방안)

- ‘21. 7월 : 국정현안점검회의 보고(기업활력제고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혁신방안)

 *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추진

- ‘24. 2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인증규제 정비방안)

 * 정부 인증제도 관리 시스템 강화(범정부 인증제도 정보 등록관리 - 이나라표준인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895	2,850	2,759	2,389	80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중소기업 및 신생벤처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범부처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4) 480 → **(2025) 480백만원**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표준인증 포털) 관제 및 통합 DB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2)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2024) 185 → **(2025) 166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전문업무포털(5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지원
- 산출 : 시스템 및 인프라 유지보수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4.61백만)

(3)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구매 : (2023) 160 → **(2025) 16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서버·PC 등 보안관리 SW 라이센스 비용 및 장비 구매
- 산출 : 14백만원(PC백신500개×0.028백만원)+9백만원(윈도우서버 백신30개×0.3백만원)+5백만원(리눅스서버백신5개×1백만원)+17백만원(보안SW라이센스 500개×0.034백만원)+15백만원(SSL3개×5백만원)+100백만원(한글200개×0.095백만원+MSword200개×0.25백만원)

(4)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 : (2023) 1,934 → **(2025) 0백만원(사업종료)**
- 기업 시장진출에 필요한 표준인증 등 기술요건 정보를 디지털혁신기술(AI)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추진

<table>
<tr><th colspan="2">'24년 예산</th><th colspan="2">'25년 예산</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
<td>2,759</td>
<td>○ 관리용역비(210-15) : 665백만원

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85백만원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5.14개월)

○ 일반연구비(260-01) : 1,514백만원
가.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개발 1,514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r><td>표준인증 데이터댐 구축</td><td>15.57</td><td>17.66MM</td><td>275</td></tr>
<tr><td>지능기반 품목분류체계 표준화</td><td>14.1</td><td>10.36MM</td><td>147</td></tr>
<tr><td>지능형 연계분석활용 플랫폼</td><td>0.80</td><td>357.1FP</td><td>286</td></tr>
<tr><td>인공지능 표준인증 상담챗봇시스템</td><td>14.53</td><td>17.20MM</td><td>250</td></tr>
<tr><td>기계가독형 표준문서체계 구축</td><td>13.20</td><td>21.35MM</td><td>282</td></tr>
<tr><td>정부기술기준 협업시스템 구축</td><td>0.81</td><td>215.0FP</td><td>174</td></tr>
<tr><td>위탁감리비</td><td>27.2</td><td>3.68MM</td><td>100</td></tr>
<tr><td colspan="3">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1,514</td></tr>
</table>
○ 자산취득비(430-01) : 210백만원

가. 전산장비 및 업무용SW도입 160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r><td>PC 백신(V3) 라이센스</td><td>0.028</td><td>500개</td><td>14</td></tr>
<tr><td>보안 SW(내PC지킴이) 라이센스</td><td>0.034</td><td>500개</td><td>17</td></tr>
<tr><td>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센스</td><td>0.3</td><td>30개</td><td>9</td></tr>
<tr><td>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센스</td><td>1</td><td>5개</td><td>5</td></tr>
<tr><td>웹보호 라이센스(SSL)</td><td>3</td><td>5개</td><td>15</td></tr>
<tr><td>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1</td><td>250개</td><td>25</td></tr>
<tr><td>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3</td><td>250개</td><td>75</td></tr>
<tr><td colspan="3">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160</td></tr>
</table>
나.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장비 도입) 50백만원

・ESG 연계 등 50백만원(어댑터, 서버 50백만원)</td>
<td>2,389</td>
<td>○ 관리용역비(210-15) : 646백만원

가.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유지보수 인건비 : 426백만원(개발비5,530백만원×요율7.7%) + 54백만원(상용SW797백만원×요율6.9%)

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66백만원
・유지보수 인건비 185백만원(3명×12개월×4.61백만)

○ 자산취득비(430-01) : 160백만원

가. 전산장비 및 업무용SW도입 160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단가(백만)</th><th>수량</th><th>금액(백만)</th></tr>
<tr><td>PC 백신(V3) 라이센스</td><td>0.028</td><td>500개</td><td>14</td></tr>
<tr><td>보안 SW(내PC지킴이) 라이센스</td><td>0.034</td><td>500개</td><td>17</td></tr>
<tr><td>윈도우 서버백신 라이센스</td><td>0.3</td><td>30개</td><td>9</td></tr>
<tr><td>리눅스 서버백신 라이센스</td><td>1</td><td>5개</td><td>5</td></tr>
<tr><td>웹보호 라이센스(SSL)</td><td>3</td><td>5개</td><td>15</td></tr>
<tr><td>한글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1</td><td>250개</td><td>25</td></tr>
<tr><td>MS 워드프로세서(최신판)</td><td>0.3</td><td>250개</td><td>75</td></tr>
<tr><td colspan="3">합 계(백만단위 미만 반올림)</td><td>160</td></tr>
</table>
</td>
</tr>
</table>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5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만건)	목표	639	668	785	864	951	최근 3개년 실적치 평균 및 전년도 실적 증가율 감안	연간 포털검색 이용건수 (로그기록 기준)	e-나라표준인증 로그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합산
	실적	713	1,112	1,167	-	-			
	달성도	111.6	166.5	148.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e-나라표준인증 포털 접속자수 연간 2억페이뷰 달성(17년 부터 누적 접속자수)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2022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1차)**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개시(스마트 검색·챗봇 상담 서비스 등, '23.5~)
2023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2차)**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행안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달발주 -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조달발주 및 SW분리 발주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사업자 선정(6월) 및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24.1월~)
2024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안정적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②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행(가동율 99.9% 목표)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구매** - 서버 등 HW 구매, 백신 등 업무용 SW 구매 운영 **④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3차)** - 사업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행안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달발주 -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조달발주 및 SW분리 발주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사업자 선정(6월) 및 시스템 개발 추진 중('24.12월 완료)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u>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u>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이나라표준인증) 이용자수 **연간 1,000만건 이상 상회(로그기록 기준) 달성**
- 기업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확충, 정보 접근성·가독성 확대 운영
- 해외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서비스 세일즈 및 수출 적극 추진

* 국가기술표준원 ODA 지원사업, 국제표준화기구(ISO) 개도국 지원사업 등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이행과제 작성 * 시스템 수요분석 및 사업환경 분석 등을 통해 이행과제 발굴·분석 및 수행전략 마련
⇩		
②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및 당해연도 사업 수행계획 발표
⇩		
③ 중간보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중간점검
⇩		
④ 사업결과 보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사업자	-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연간 시스템 운영 결과 평가 및 피드백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지침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2~'26	2,759	2,389	806	2,750	2,750	
'23~'26		2,389	806	2,750	2,750	2,7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 및 조치사항 없음
- '20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1억페이지뷰 돌파 등)
- '23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지능형 서비스 개편, '23.5)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협업 우수 포상(장려상, 이나라표준인증-전자관보연계, '23.10)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우수 과제 선정('23.11)
- '24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빅데이터 서비스 개편, '24.2)
- '24년 언론보도(e-나라표준인증 포털 기업 시연회 개최, '24. 4)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 구축
- 국내 표준인증 정보수요 충족, 해외 표준인증 정보수요 확대를 위해 신규 DB 구축
- 정형 데이터 수집 체계에서,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등 빅데이터 체제 구축
- 부처간 표준인증 정보공유 및 활용확산을 위한 협업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산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화는 지능형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

* 실시간 표준인증 상담수요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챗봇) 구축 추진
*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외 인증 맵 서비스 지원
* 빅데이터 기반 맞춤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제공

* 22년 ~ 24년 3개년간 "지능형 플랫폼 구축" 운영예산 확보

○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수요자 중심 기능개선으로 원내 행정 · 정책업무 지원 및 맞춤형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연중)

* 표준 · 제품안전 · 해외기술규제 · 시험인증 정책 및 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 추진

* 정부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전산실 이전 등 고려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1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 2022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우수
○ 2023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 2024년 통합재정사업자율 평가결과 : 보통

12) 부처 건의사항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22~'24) 사업(총 투입예산 약 60억원)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예산 편성 반영 필요(정보시스템 중요도 : 2등급)

* 지능형 표준인증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 5억원 요구예산 미반영('25년)**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사업비 1-2차년도 예산만 반영하여 유지보수비 산출)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25년 유지보수비 예산(안) 산출내역 : 총 496백만원, 210-15 >

①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개발시스템 운영 : 295백만원
* 시스템 개발구축비(2,947백만원)×개발기준요율(10%)

②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상용SW 운영 : 47백만원
* 상용 SW도입비(389백만원)×도입기준요율(12%)

③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HW 운영 : 4백만원
* HW구축비(50백만원)×도입기준요율(8%)

④ 지능형 표준인증 서비스 헬프데스크 운영 : 150백만원

* 표준인증, 리콜 및 제품안전 챗봇 지식 DB 정비확장, 기계가독 표준인증 데이터 검증 및 민원 대응 전문 인력 1명 투입 필요

* 150여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수집(웹클로링) 데이터의 가공, 분석, 기업알림 지원서비스 소요 전문인력 1명 필요(국내외 표준인증 동향 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 24MM×6.25백만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895	-	895	-	-	-	895	888	99.2	99.2	-	7
2022	2,850	-	2,850	-	-	-	2,850	2,307	80.9	80.9	461*	82
2023	2,759	-	2,759	461*	-	-	3,220	3,145	87.7	97.6	-	75
2024	2,389	-	2,389	-	-	-	2,389	2,366	99.0	99.0	-	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사업기간) 준수를 위해 용역잔금 이월(정보화 용역사업 2건) 및 사업 완수에 따라 전액 집행('23.1월)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2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 이월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적정사업기간 준수를 위하여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만료일('23.1월말) 검수 후 잔액 지급예정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별첨 참조

참고 1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요약)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정현안점검회의 총리보고(기업화력 및 수출진흥 기술규제 혁신방안, '21.8)
(추진전략 1-3,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총리보고(인증제도 정비방안, '24.3)
(추진과제 3, 인증제도 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 인증정보 종합관리)

○ 부처별·제도별 산재된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 통합구축 및 디지털 혁신기술(AI 등) 활용 중복 해소로 기업 친화형 기술규제 환경 조성

* 기술규제 관계부처·기관의 효과적인 표준·기술기준·인증 데이터 수집·분석과 기술규제 심사제도 도입·활용을 위한 범정부 협업 정보기반 구축

○ 표준·기술기준·인증 통합 정보망을 활용하여 기업이 시장 진출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품목별 맞춤 정보 서비스 구현

* 중소기업은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 제공 다수건의(중기중앙회, FTA 간담회 등)

□ 사업내용

❶ **(데이터기반 규제해소)** 기업·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빈번한 중복 기술기준·인증 AI 검증시스템* 및 협업 정보시스템** 구축

* 기술기준.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AI 기반 중복 검증모델.시스템 개발

**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지원을 위한 정부 기술기준, 인증, 시험 협업정보시스템 제공

❷ **(지능형 정보 서비스)** 수집된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필요 정보 추천 검색,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챗봇)

*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전문가형 표준·인증 검색·상담(챗봇) 통합 정보 제공

** 빅데이터 기반 표준·인증 지식맵(MaP) 서비스, 정보추천·동향알림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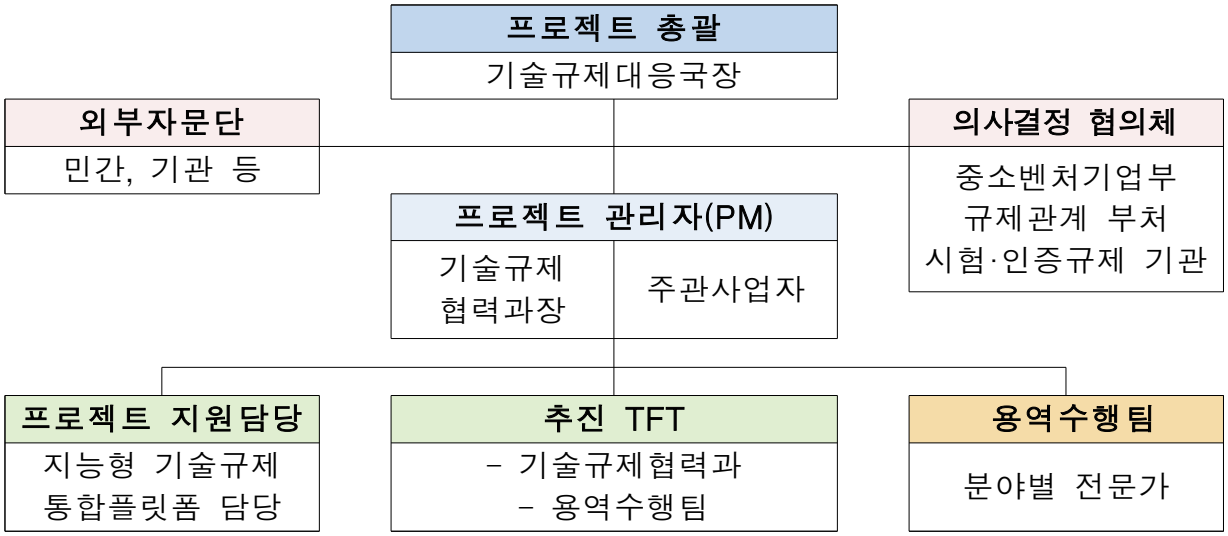
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통합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통합검색 제공

* 국내·해외 표준.기술기준.인증 통합 정보망 및 지능형 플랫폼 구축

** 기계가독형 표준·인증·시험문서 데이터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지원

□ 추진체계 (또는 추진절차)

ㅇ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구분	구성	역할
프로젝트 총괄	- 기술규제대응국장	지능형표준인증시스템 구축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검토, 행정업무 지원 사업산출물 품질 검사
외부자문단	- 민간 혹은 기관의 자문단	사업관련 표준인증 전문가 자문
의사결정 협의체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 산업기술시험원 담당 - KOTRA 무역기반본부담당	주요 의사결정 지원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관리자	- 기술규제협력과장 - 주관사업자 PM	업무 및 주요사안 협의 프로젝트 수행 사업관리(일정, 보고)
프로젝트 지원담당	- e-나라표준인증 담당	현 정보시스템 분석 지원 사업운영 시 인프라/보안 지원
추진 TFT	- 기술규제협력과 - 용역수행팀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분석설계·개발 사업 프로젝트 관리 수행 사업 품질 관리 및 감리수행
용역수행팀	- 용역 수행팀 기술별 구성원	최종산출보고서 작성 및 시연

참고 2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추진 계획)**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표준·인증 정보 접근 등 디지털 격차가 기업경쟁력 악화 요인

○ **(국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품별 표준·인증 정보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

* 중소기업 41.7%는 인증정보(품목별 인증대상 여부, 인증 절차, 시험 표준 등) 획득이 어렵다고 인식('20년 중소제조업 인증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해외) 수출 기업**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품목별 기술요건 및 국가별 인증정보 제공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

< 수출 경제 협회·단체를 통한 표준인증 정보 지원 건의 사항 >

❶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애로 건의, '19.4)** 해외 시장 진출 등 수출시 필요한 해외 인증 획득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 요청

❷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무역협회 건의 '19.7)** 신남방 지역 진출 및 제품 수출을 위해 국가별·제품별 종합적인 인증제도 정보 확보가 어려움

◆ 급증하는 표준·인증 정보 수요에 혁신적 디지털 전환 필요

○ **(기업)** 비대면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등 **폭넓은 기업 정보 수요 충족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디지털 기반 확대 시급**

* 1381 표준인증 콜센터 상담문의 현황 : ('14) 19,752건 → ('19) 87,130건(4.4배 증가↑)

○ **(정부)** 정부도 국가별·품목별 새롭게 확장하는 **표준·인증 제도**에 대한 **신속한 데이터 입수**를 통해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필요**

* 표준인증 등 기술규제 도입 통보현황(WTO) : ('00) 633 → ('10) 1,869 → ('19) 3337건

◈ **디지털 혁신 플랫폼**(AI 도입 등) 구축을 통해 기업간 **표준·인증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

◆ 현장은 표준 · 인증 전문가 수준으로 체감 가능한 정보지원 요구

□ 중소·수출기업은 ▲ 수출국가별·제도별 정보제공, ▲ 인증 단계별 맞춤정보 지원, ▲ 과도한 규제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애로 건의

❶ 공급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 제도별로 맞춤형 표준·인증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인력 및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 컨설팅에 의존

< 현장애로 · 건의사례 >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증에 대한 정보도 없어 외부 컨설팅**을 받게 되고 **비용도 2배 이상**으로 부담스럽다('20 중소기업 인증취득 실태조사)

≫ **(시사점)**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분산된 표준·인증 정보**를 **통합**하고 新시장 진입기회를 찾도록 **디지털 전환(AI 도입 등)**을 통해 **정보접근성 혁신 필요**

❷ 복잡한 인증 절차에 업무부담 가중

○ 국가별·품목별로 다수 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고 평가 표준도 다양하기 때문에 절차별 정보에 대한 밀착 지원 요구

< 현장애로 · 건의사례 >

◎ **제품 수출시 국가·품목별 인증, 획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절차 진행에 애로가 크다.('20 온라인 수출기업 FTA 활용간담회)

≫ **(시사점) 수출인증 절차별 핵심정보**(품목별 표준, 시험항목, 공장심사 등)를 기업이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 대폭 절감 추진**

❸ 선제적인 표준·인증 규제 해소 요구

○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표준·인증제도·절차에 대해 신속한 데이터 입수·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해소 노력 필요

< 현장애로 · 건의사례 >

◎ **(국내)** 기술규제영향평가, 인증제도 실효성평가 등 사전·사후관리 제도적 기반은 갖추었으나 데이터 수집·분석에 상당한 시간 소요

◎ **(해외)** 국가별 숨은 표준·인증 규제에 대한 정보파악 등 사전인지 어려움

≫ **(시사점)** 데이터에 기반한 협업 플랫폼 구축으로 **규제행정 환경을 혁신**

2 추진내용

○ **(지능형 데이터기반 구축)**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필요한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 서비스 체계 구축

과제①-1 ·표준인증 데이터댐 구축(국내·외 표준인등 기계가독 빅데이터 체계 구축)



과제①-2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키워드 검색에서 품목 검색 기반으로 표준·인증 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HS 코드, 인증품목 코드, 조달물품 코드, 유사·동의 품목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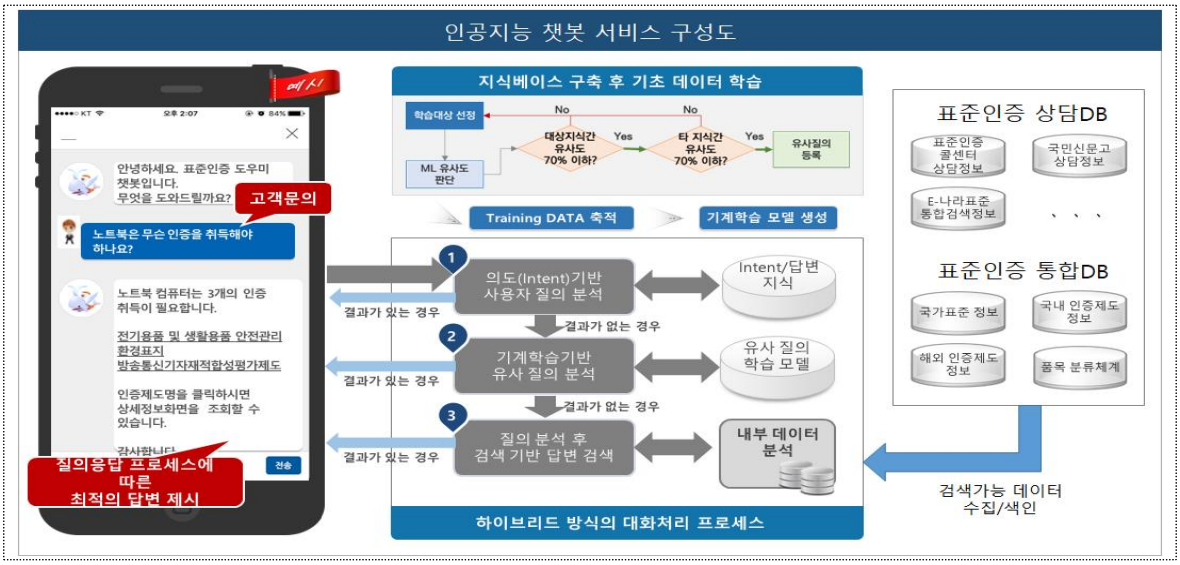


과제②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지능형 검색·상담 서비스 제공 및 표준인증 정보연계 분석·기반 서비스를위한 통합포털 시스템 개발(⇨ 지능형 플랫폼 연계·분석·활용 플랫폼)

○ **(현장체감 지능정보 구현)** 수집된 국내외 표준·인증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필요 정보 추천 검색, 질의, 응답 시스템 구축

과제③④ 상담사례(표준인증콜센터DB)+통합DB의 머신러닝 → 인공지능상담체계 구축(LLM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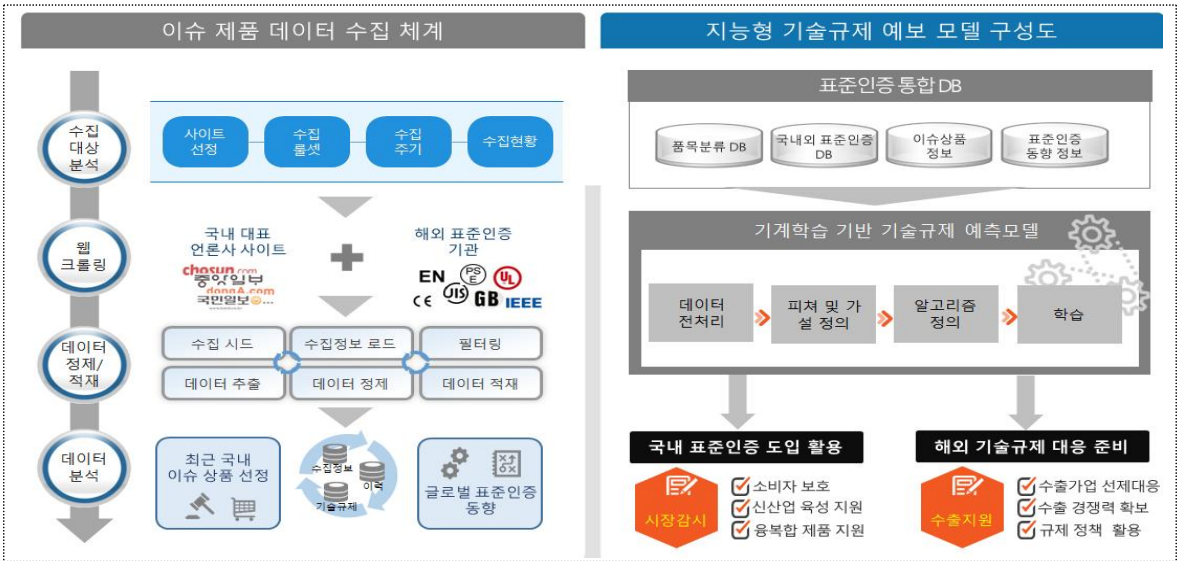
과제③④ 지능형 상담·검색 서비스 체계 구축 → 현장 활용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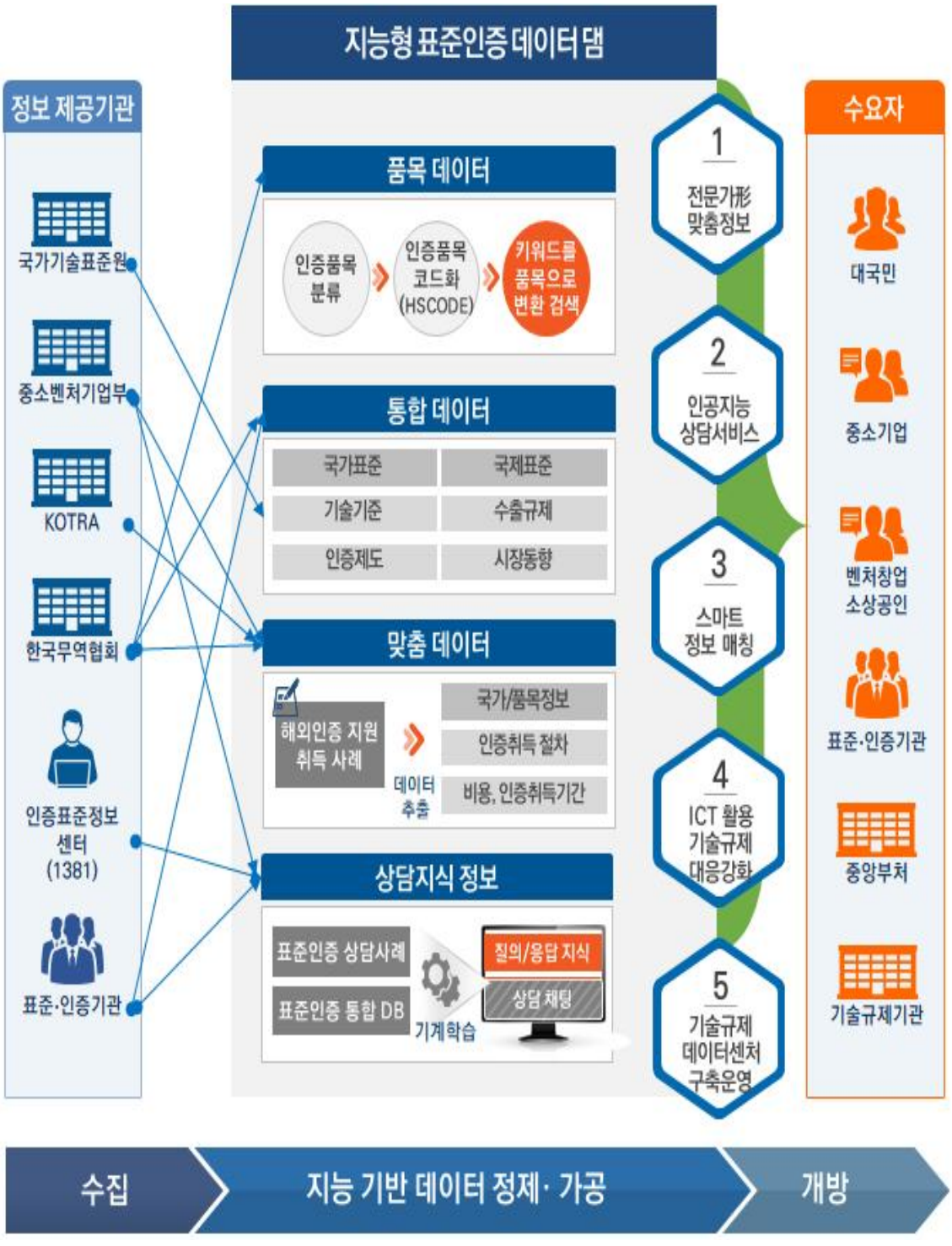
○ **(지능형 협업관리 시스템)** 부처의 효율적 표준·인증 데이터 정보·수집·분석 및 중복검증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⑤ 기계가독형 표준·인증·기술기준·시험인정 문서체계 및 협업시스템 구축

과제⑥ 표준인증시험 문서데이터 분석협업 시스템 구축 → 규제동향파악 및 대응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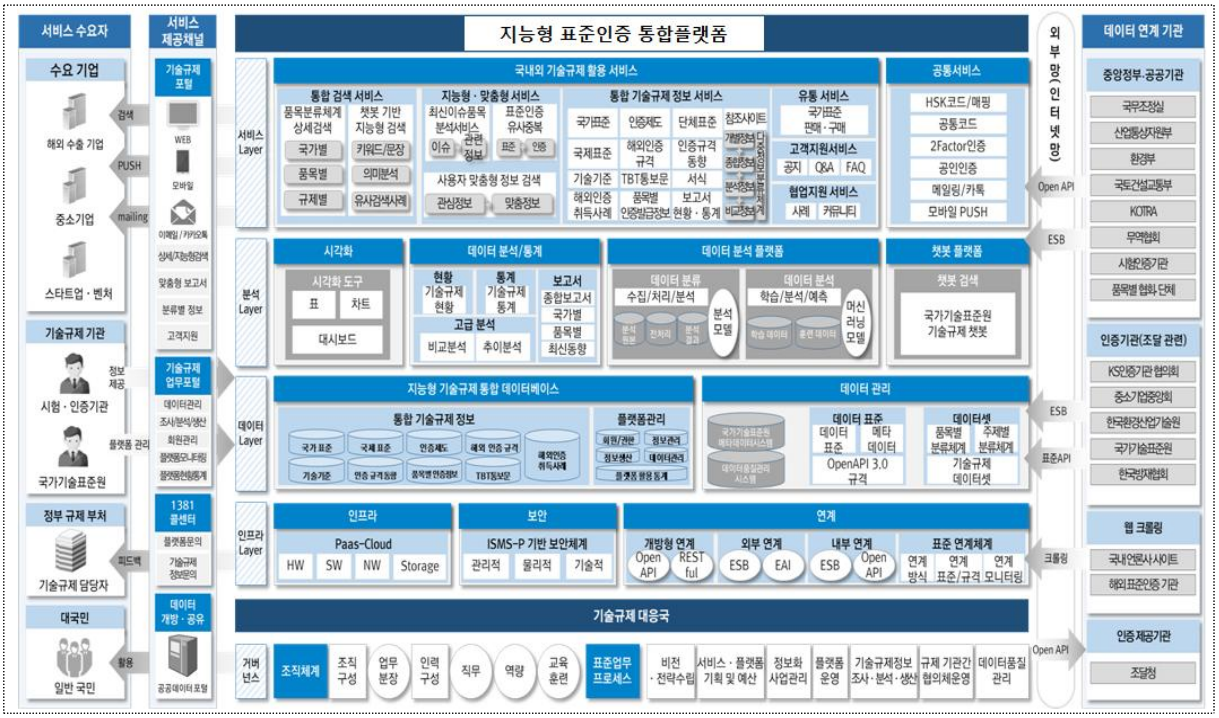


3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 서비스 】
지능형표준인증데이터댐
정보 제공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
인증표준정보 센터 (1381)
표준·인증기관
품목 데이터
인증품목 분류
인증품목 코드화 (HSCODE)
키워드를 품목으로 변환 검색
통합 데이터
국가표준
국제표준
기술기준
수출규제
인증제도
시장동향
맞춤 데이터
해외인증 지원 취득 사례
데이터 추출
국가/품목정보
인증취득 절차
비용, 인증취득기간
상담지식 정보
표준인증 상담사례
표준인증 통합 DB
기계학습
질의/응답 지식
상담 채팅
1 전문가形 맞춤정보
2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3 스마트 정보 매칭
4 ICT 활용 기술규제 대응강화
5 기술규제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수요자
대국민
중소기업
벤처창업 소상공인
표준·인증기관
중앙부처
기술규제기관
수집
지능 기반 데이터 정제· 가공
개방

4 목표시스템 및 추진 로드맵

○ 목표시스템 현황



○ 추진로드맵 현황



* 챗 GPT 도입('22년)에 따라 거대언어모델(LLM)기반 표준·인증 검색·상담시스템으로 확장 고도화('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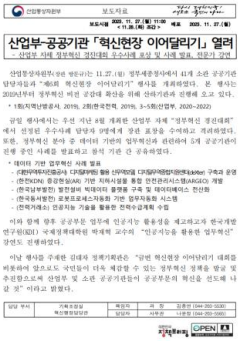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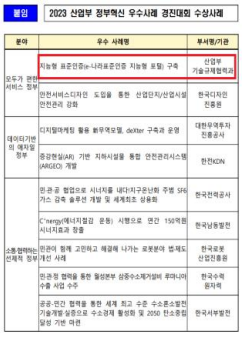
5 기대효과


"시장으로 通하는 표준·인증 디지털 허브"
활용
신생 기업
벤처 기업
중소 기업
수출 기업
1 기술 혁신·경쟁력 제고
2 시장개척 및 수출진흥
3 규제혁신 환경조성
고품질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분석지원
표준인증 수출규제·시장동향 지능형 데이터기반 구축
지능형 표준인증 통합 플랫폼 구축
KS 표준문서의 기계가독 표준화 추진
국내·해외 표준인증 통합정보서비스 구현
실시간 인공지능 표준인증 상담서비스
지능형 표준·인증 검색서비스 구현
스마트 기술규제 동향 알림 서비스
데이터에 근거한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
유사·중복 인증 검증시스템 구축
기술규제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기술규제 데이터 분석 및 대응 지원
시험인증·거래비용 감소로 연간 "연간 200억" 가치창출
표준인증획득 거래비용 감소
82.2억원
기술규제애로해소 민원서비스 개선
109억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분석 비용절감
8.9억원
합계
200억원
* 산출근거 : 지능형 기술규제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기획(ISP, 20.6)

참고 3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구축현황 및 추진성과

■ 2023년 산업부·공공기관 정부 혁신우수사례 수상(산업부내 유일)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 도입으로 대국민 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혁신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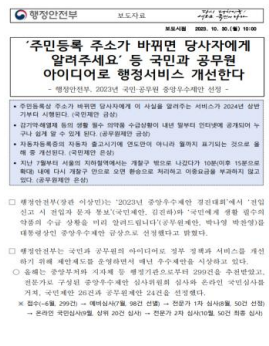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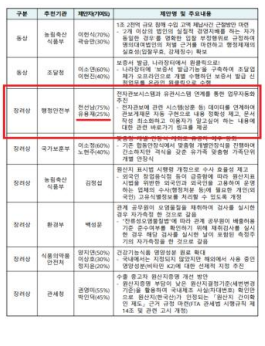
2023년 산업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보도자료('23.11)	2023년 산업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23.11.27)
 산업부-공공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열려  붙임 2023 산업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제6회 산업부·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2023년 11월 27일(월) /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산업통상자원부 NEWS WORKER

■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범정부 왕중왕전 경진대회 진출

* 부처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산업통상자원부 대표과제로 본선 진출(대국민 심사 실시)

■ 2023년 국민 공무원 중앙 우수제안 수상(행안부 장관상, 장려상)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 및 지능형표준인증 플랫폼(e-나라표준인증)간 연계로 대국민 정보 서비스 편의성 혁신적 개선 추진(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협업)

2023년 국민·공무원 중앙우수제안 수상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보도자료('23.10)	2023년 범정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출작 대국민 투표 실시(1차 전문가 평가 진출)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당사자에게 알려주세요' 등 국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 개선한다 	 정책제안 정책참여 공모전 정책소통포럼 도전.한국 참여정보 산업통상자원부 검색 한번으로 모든 표준인증 정보를 내손에 부산시설공단 놓치기 쉬운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납부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학생의 빛나는 미래, 전국 최초의 자부심! 인천 장애학생 대학생 전공과 운영 해외통관에도 ZERO 당성!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이동식 침수조" 전국 최초 도입 환경부 버리기 불편한 폐의약품, 우체통에 버려주세요 조달청 복잡하고 불편한 안전점검 업체 선정 이젠 간편하게! 조달청 안전점검 통합명부 추진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 기업 현장 시연회 개최('24. 4-6월)

① 서울 시연회 개최(중소·벤처기업 인증담당자 등 300여명 참석)

2024. 4. 4일(목) 더케이 호텔	
	

② 천안 시연회 개최(중소·벤처기업 인증담당자 등 100여명 참석)

2024. 4. 24일(수) 천안축구센터, ** 해외인증설명회와 동시개최	
	

③ 창원 시연회 개최(중소·벤처기업 인증담당자 등 200여명 참석)

2024. 5. 9일(목) 창원 산업단지공단, ** 해외인증설명회와 동시개최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1차, 2차) 정보서비스 현황 >

인공 지능 기술(AI)을 적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표준인증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똑똑한(Ⓢ Ⓜ Ⓐ Ⓡ Ⓣ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서비스 제공**

❶ (스마트 검색, Ⓢearch) 시장에서 유통되는 실제 인증 품목명과 연관된 정보를 인공지능이 최적화하여 우선순위 검색 결과 제공

* (As-Is) 가나다순 나열식 검색결과 → (To-Be) 생산품목별 맞춤형 검색결과

❷ (스마트 상담, Ⓜessenger) 표준인증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듯 AI 챗봇이 문답식으로 온라인 상담 정보 서비스 제공

* 1381 표준인증 콜센터 상담자료('18-'21) 1만여건을 분석 상담지식 DB 구축

❸ (스마트 알림, Ⓐlarming) 국내 및 해외 품목별 표준인증 도입 정보, 기술규제 이슈 및 동향 정보를 실시간 매창하여 사용자에게 전달

* 사용자는 간편 이메일 등록 만으로 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❹ (스마트 추천, Ⓡeccomend) 지능 학습으로 축적된 품목별 연관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추천, 관련 품목 동향 정보 동시 제공

* 표준 지식 맵 서비스, 인증 지식 맵 서비스(인증절차별 정보 제공)

❺ (스마트 연결, Ⓐlarming) 사용자 검색과 관련된 표준-인증제도-기술기준 관계도를 제공하여 다수인증 획득과 시험평가기준 정보 통합 지원

* 표준, 인증(기술)기준 원문간 유사도를 학습하여 상호 연결성 추출

현장 수용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의 **표준인증 규제 데이터 수집·가공·연계 구축**

○ (데이터댐 구축) 시장진출에 필요한 국가별·제도별·품목별 표준인증 데이터 수집 확대 및 기술동향, 기술규제 데이터 연계 구축 추진

* 300여개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품목별 기술정보 자동수집·제공
** 국가표준, 인증·기술기준의 기계가독화 데이터 구축(천만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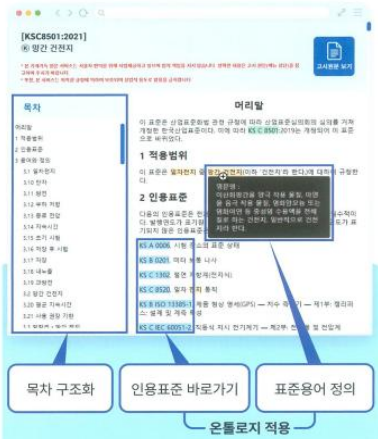
< 지능형 표준인증 플랫폼(1차, 2차) 주요서비스 현황 >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Search
스마트 검색

추진내용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법정 인증제도 품목(300만여종) 및 표준 **기계가독화** 정보를 활용하여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최적화 된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선효과

기업은 실제 생산·판매하는 품목별 표준인증 정보를 더욱 빠른 시간안에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Messenger
스마트 상담

추진내용

1. 인증대상 여부, 인증 평가기준, 인증 절차 등 인증 획득 과정별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상담합니다.
2. 공산품 전기용품 KS 표준제도 어린이제품 인증제도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선효과

표준인증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듯 온라인 상담(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Alarmming
스마트 알림

추진내용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150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를 품목별로 맞춤 제공)

개선효과

최근 표준인증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 누리집(웹사이트)으로 부터
자동 데이터 수집 › 분석 › 저장 › 알림
* 사용자는 간편 메일 등록으로 최신 표준인증 정보 획득 가능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Alarmming
스마트 알림

추진내용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최신 뉴스 및 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150개국 300여개 기관에서 자동 수집된 정보를 품목별로 맞춤 제공)

개선효과

최근 표준인증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장벽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국내외 표준인증 기관 누리집(웹사이트)으로 부터
자동 데이터 수집 › 분석 › 저장 › 알림
* 사용자는 간편 메일 등록으로 최신 표준인증 정보 획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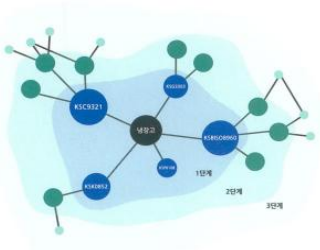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Recommen & Tree
스마트 추천 & 스마트 연결

추진내용

부처별·제도별로 상호 연관된 표준인증 정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추천하여 초보인증 담당자도 검색 한 번으로 품목별 통합 정보 분석이 가능합니다.

* 사회연결망 기법(Social Network Analysis)



기계가독화 + 빅데이터형 시각화 제공 + 국가표준·인증제도·기술기준 관계 DB

개선효과

다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거나 관련 시험평가 기준·항목을 찾는데 활용하면 인증획득의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S.M.A.R.T 서비스

해외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연계 제공

추진내용

TBT 통보문 및 해외 인증 정보를 TBT 포털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150여개국 2,000여건의 해외인증 정보 제공
- 국가별 TBT통보문 45,000여건 정보 제공



시간·비용 절감 효과

해외인증 · 기술규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해외 시장진출을 촉진합니다.

참고 4 범부처 표준인증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성과

□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14~'16)**으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보관리 및 부처간 협업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사업명)**」 **구축**

* 정부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표준·인증 중복해소 필요성 강조(**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애로과제, '14.3.20.**)

□ 범부처 표준·인증 협업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정보시스템 구성·기능	활용부처
① 국가표준 협업시스템	▸ 국가표준(KS) 개발 업무프로세스 지원 - 전문(기술)위원회 기술검토·기록관리 - 국가표준 (예고)고시 관리 / 전자관보연계 - (권한)담당자 / 전문가 / 위원회 관리 * 기계가독형 국가표준 정보체계 고도화 완료('23)	* 5만여종 * 10개 부처 * 50개 기관
② 국제표준 연계시스템	▸ 국제표준(ISO/IEC) 문서연계 관리 - ISO 문서시스템과 API 연계 - IEC 문서시스템과 API 연계 - 국제표준 문서 검색 및 원문 제공	* 5만여종 * 10개 부처
③ 기술기준 협업시스템	▸ 정부 기술기준 문서 통합 정보관리 - 부처별 기술기준(고시) 원문 DB 관리 - 표준 / 인증 DB 연계 데이터 관리 * 기계가독형 기술기준 정보체계 고도화 중('24)	* 4,000여종 * 20여개 부처
④ 정부인증 협업시스템	▸ 법정 인증제도 통합 정보관리 -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DB 관리 - 표준 / 인증기준 DB 연계 데이터 관리 * 기계가독형 인증제도 정보관리 고도화 완료('23)	* 250여종 * 20여개 부처
⑤ 중복성 검증시스템	▸ 표준·기술기준·인증 유사도(%) 제공 - 국가표준 개발시 유사도 검증 지원 - 인증제도 도입시 유사도 검증 지원	* 부처·기관 (표준인증)
⑥ 규제동향 수집시스템	▸ 국내·외 표준인증 동향 정보 수집관리 - 표준인증 동향정보 자동수집·알림	* 100여건(월간) (메일등록·알림)
⑦ 품목분류 관리시스템	▸ 현장 품목 정보수집 관리 - 표준·인증·기술기준 품목 DB 수집·관리 - 품목 분류 및 검색 색인(Index)	* 300만여종

□ 범부처 표준·인증 협업시스템 운영성과

○ 협업시스템 생성 **표준·인증 정보는 포털 서비스 제공(연간 1억페이지뷰 돌파)**

* 연간 접속자수(페이지뷰, 만뷰) : ('17) 4,072 → ('19) 4,582 → ('21) 7,535 → ('22) 12,153만건 → ('23) 13,110

참고 5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성과

○ 사업 추진현황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개편 등 기능 고도화, 오픈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확장으로 추가 재원 없이 정책 정보 채널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표준·안정 정책 콘텐츠 제작·보급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정보 전달력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 대국민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22) 84점 → ('23) 85.6점

○ 사업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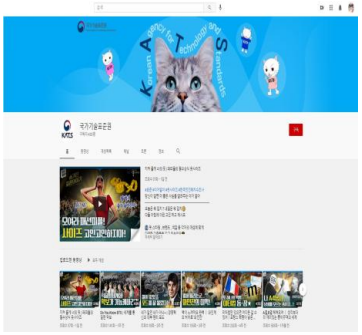
- 국가기술표준원 핵심정책 포토뉴스, 카드뉴스 제작·보급, 각종사업 고시·공고 등 대국민 정책홍보·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

< 카드뉴스 제작·보급 >



- 디지털 아카이브(블로그, 유튜브, 포스트 등) 신설 등 국민과 소통을 위한 접촉 면적 대폭 확대

  * 국가기술표준원 정책 뉴스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콘텐츠 제작·보급

국가기술표준원 블로그	국가기술표준원 포스트	국가기술표준원 유튜브
		

참고 6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SW 현황

□ 홈페이지 · 업무포털 지원 전산장비(HW)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서버 / 스토리지	통합가상화 서버(업무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서버(인터넷망)	HP Blade BL460c G8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업무망)	MSA 2052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HP Storwize V3700	1
	통합가상화 스토리지(인터넷망)	MSA 2042	1
	e-KOLAS AP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1
	e-KOLAS 스토리지	IBM DS3512	1
	e-KOLAS HMC	IBM X3550 M3	1
	사이즈코리아 웹서버	DELL R410	4
	사이즈코리아 DB서버	DELL R610	2
	사이즈코리아 파일서버	HP DL360 G5	2
	사이즈코리아 PSM	DELL 1950	1
	백업서버	Arcserve-9040V	1
	IP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IP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내부망)	INI MAX IPKeeper	1
	IP관리프로그램 관리 서버(인터넷망)	INI MAX IPKeeper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서버	DELL PowerEdge R520	1
	PMS 및 PC 보안관리 서버	HP DL380 G6	1
	보안USB 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안USB 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6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업무망)	IBM X3550 M3	1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인터넷망)	IBM X3550 M3	1
	웹키퍼 미러링 서버	CT-1000	1
	V3 배포서버(업무망)	AhnLab EMS 2000A	1
	V3 배포서버(인터넷망)	AhnLab EMS 2000A	1
	개발서버(업무망)	HP Proliant DL380 Gen9	1
	개발서버(인터넷망)	HP Proliant DL380 Gen9	1
	소계		35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BigIron RX-4 제조사 : BROCADE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FWS 624 제조사 : BROCADE	35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7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32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인터넷망 광포트	제품명 : OS9-GNI-U24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소계		79
보안장비	NAT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Guard 제조사 : 안랩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ISG-1000 제조사 : 주니퍼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XTM6000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WAPPLES-240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좀비PC방지용 방화벽	제품명 : AhnLab TrusWatcher 제조사 : 안랩	1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	제품명 : VENUS 제조사 : 엑스큐어넷	1
	IP 관리 시스템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아이앤아이맥스	2
	IPS(사이버안전센터 연동)	제품명 : Sniper IPS NE2000 제조사 : 윈스	1
	소계		9
총 합 계(서버 · 스토리비, 전송장비, 보안장비)			**112**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VMWare vCenter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운영 SW	4
제품명 : VMWare vSphere	제조사 : VMWare	가상화서버 관리 SW	4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IP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DB 암호화)	1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PC 보안)	1
제품명 : CharkraMax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UBI SAFER-PSM MAST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보안관리 솔루션)	1
제품명 : UBI SAFER-PSM MANAGER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서버)	1
제품명 : UBI SAFER-PSM AGENT	제조사 : 이지서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로그수집 에이전트)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피루스	KS표준 e-book열람시스템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닉스테크(주)	보조기억매체 관리 솔루션	2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PC 문서삭제 SW	1
제품명 : nProtect Enterpirse	제조사 : 잉카인터넷	PC 보안솔루션	1
제품명 : Backup Exec	제조사 : Symantec	백업SW	1
제품명 : BigLook WASS	제조사 : 이븐스타	웹취약점 점검 SW	1
제품명 : MS-SQL 2008	제조사 : Microsoft	통합DB운영	1
제품명 : Window Server 2008	제조사 : Microsoft	서버 운영체제	2
제품명 : ContentWise CMS	제조사 : ContentWise	업무포털 CMS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WEB/WAS	1
제품명 : Tibero	제조사 : 티맥스소프트	e-KOLAS DBMS	1
합 계			**30**

사 업 명
(24)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71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국가기술표준원	-	110	116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1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박상철	김상걸 서기관	유연철
		지원총괄과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4
	사업시행주체	꿈나래어린이집	-	이희주	043-533-201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346	1,702	1,469	1,469	△233	△1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65	1,665	1,346 [1,346]	-	319	1,702	1,702	1,655 [1,655]	1,702	1,655 [1,655]	-	47	1,469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665	1,665	1,346 [1,346]	-	319	1,702	1,702	1,655 [1,655]	1,702	1,655 [1,655]	-	47	1,469
○ 비목별 분류(합계)	1,665	1,665	1,346 [1,346]	-	319	1,702	1,702	1,655 [1,655]	1,702	1,655 [1,655]	-	47	1,469
・상용임금(110-03)	810	810	693 [693]	-	117	695	695	695 [695]	695	695 [695]	-	-	717
・일반수용비(210-01)	8	8	8 [8]	-	-	40	40	38 [38]	40	38 [38]	-	2	10
・임차료(210-07)	450	450	389 [389]	-	61	360	360	357 [357]	360	357 [357]	-	3	380
・유류비(210-08)	15	15	11 [11]	-	3	9	9	9 [9]	9	9 [9]	-	-	9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31	131	125 [125]	-	6	359	359	359 [359]	359	359 [359]	-	-	122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10]	-	1	10	10	10 [10]	10	10 [10]	-	-	1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8	8 [8]	-	-	8	8	8 [8]	8	8 [8]	-	-	8
・포상금(3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민간경상보조 (320-01)	72	72	60 [60]	-	12	81	81	48 [48]	81	48 [48]	-	33	70
・고용부담금(320-09)	158	158	39 [39]	-	119	136	136	127 [127]	136	127 [127]	-	9	140
・자산취득비(430-01)	1	1	1 [1]	-	-	2	2	2 [2]	2	2 [2]	-	-	1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65	1,665	1,346 [1,346]	-	319	1,702	1,702	1,655 [1,655]	1,702	1,655 [1,655]	-	47	1,469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1,665	1,665	1,346 [1,346]	-	319	1,702	1,702	1,655 [1,655]	1,702	1,655 [1,655]	-	47	1,469
- 상용임금(110-03)	810	810	693 [693]	-	117	695	695	695 [695]	695	695 [695]	-	-	717
- 일반수용비(210-01)	8	8	8 [8]	-	-	40	40	38 [38]	40	38 [38]	-	2	10
- 임차료(210-07)	450	450	389 [389]	-	61	360	360	357 [357]	360	357 [357]	-	3	380
- 유류비(210-08)	15	15	11 [11]	-	3	9	9	9 [9]	9	9 [9]	-	-	9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31	131	125 [125]	-	6	359	359	359 [359]	359	359 [359]	-	-	122
-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10]	-	1	10	10	10 [10]	10	10 [10]	-	-	1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8	8 [8]	-	-	8	8	8 [8]	8	8 [8]	-	-	8
- 포상금(3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 민간경상보조 (320-01)	72	72	60 [60]	-	12	81	81	48 [48]	81	48 [48]	-	33	70
- 고용부담금(320-09)	158	158	39 [39]	-	119	136	136	127 [127]	136	127 [127]	-	9	140
- 자산취득비(430-01)	1	1	1 [1]	-	-	2	2	2 [2]	2	2 [2]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국가기술표준원은 충북혁신도시(충북 음성)에 위치한 독립 청사로써, 청사 내·외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기관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해 95년도부터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1,592	1,628	1,665	1,702	1,4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꿈나래어린이집(보조)
- 사업 수혜자 : 충북혁신도시 공동어린이집 보육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	보조	꿈나래 어린이집	70백만원	100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2,000	○ **상용임금(110-03) : 694,672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인건비 (694,672천원) ・ 전문직 인건비 : 3,046천원×19명x12개월=694,67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40,000천원** 가. 안전 보건 관련 용역비 (40,00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용역 : 40,000천원x1식=40,000천원 ○ **임차료(210-07) : 360,000천원** 가. 버스 임차료 (360,000천원) ・ 버스 임차료 : 450천원x4대x200일=360,000천원 ○ **유류비(210-08) : 9,000천원** 가. 소형승용(코나 등) (1,500천원) ・ 소형승용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나. 소형버스(에어로타운) (1,000천원) ・ 소형버스 유류비 : 1,000천원x1대=1,000천원	1,469,000	○ **상용임금(110-03) : 717,249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인건비 (717,249천원) ・ 전문직 인건비 : 3,146천원×19명x12개월=717,24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000천원** 가. 안전 보건 관련 용역비 (5,00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용역 : 5,000천원x1식=5,000천원 나. 소모품 구매 (5,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보수 소모품 : 1,000천원x5회=5,000천원 ○ **임차료(210-07) : 380,000천원** 가. 버스 임차료 (260,000천원) ・ 버스 임차료 : 650천원x2대x200일=260,000천원 나. 물품 임차료 (60,000천원) ・ 공기청정기 등 : 60,000천원x1식=60,000천원 다. 사무실 임차료 (60,0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소형화물(봉고) (1,500천원) ・ 소형화물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라. 중형승합(쏠라티 등) (5,000천원) ・ 쏠라티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 카니발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59,000천원** 가. 건물 관리 유지비 (120,000천원) ・ 외벽, 보도, 주차장, 소화설비 등 : 120,000천원x1식=120,000천원 나. 기계, 전기, 통신 유지비 (149,000천원) ・ 지열, 공조, 수배전, CCTV 등 : 149,000천원x1식=149,000천원 다. 조경 등 (50,000천원) ・ 유지비 : 50,000천원x1식=50,000천원 라. 차량 등 시설 유지비 (40,000천원) ・ 유지비 : 40,000천원x1식=4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9,994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복리후생비 (9,994천원) ・ 전문직 복리후생비 : 526천원x19명=9,99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00천원** 가. 시설안전평가회의 (4,500천원) ・ 시설안전평가회의 : 500천원x9회=4,500천원 나. 시설안전기관간담회 (1,400천원) ・ 시설안전기관간담회 : 280천원x5회=1,400천원 다.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2,100천원) ・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 300천원x7회=2,100천원 **○ 포상금(310-03) : 2,000천원** 가. 포상금 및 상금 (2,000천원) ・ 직원 포상금 : 2,000천원x1식=2,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81,000천원** 가. 공동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 (81,000천원) ・ 운영비 : 675천원x10명x12개월=81,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36,135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고용부담금 (136,135천원) ・ 전문직 고용부담금 : 7,165천원x19명=136,135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199천원** 가. 기타시설장비 구매 (2,199천원) ・ 물품 구매 : 2,199천원x1식=2,199천원		・ 사무실 : 10,000천원x6개월=60,000천원 **○ 유류비(210-08) : 9,000천원** 가. 소형승용(코나 등) (1,500천원) ・ 소형승용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나. 소형버스(에어로타운) (1,000천원) ・ 소형버스 유류비 : 1,000천원x1대=1,000천원 다. 소형화물(봉고) (1,500천원) ・ 소형화물 유류비 : 1,500천원x1대=1,500천원 라. 중형승합(쏠라티 등) (5,000천원) ・ 쏠라티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 카니발 유류비 : 2,500천원x1대=2,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1,535천원** 가. 점검용역비 (44,000천원) ・ 기계설비성능점검 등 : 22,000천원x2식=44,000천원 나. 유지보수용역비 (48,000천원) ・ 통신, 소방, 승강기, 방역 : 12,000천원x4식=48,000천원 다. 기타수선유지비 (29,535천원) ・ 시설장비 보수 등 : 2,953천원x10회=29,53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9,994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복리후생비 (9,994천원) ・ 전문직 복리후생비 : 526천원x19명=9,99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000천원** 가. 시설안전평가회의 (4,500천원) ・ 시설안전평가회의 : 500천원x9회=4,500천원 나. 시설안전기관간담회 (1,400천원) ・ 시설안전기관간담회 : 280천원x5회=1,400천원 다.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2,100천원) ・ 시설분야별직원간담회 : 300천원x7회=2,100천원 **○ 포상금(310-03) : 2,000천원** 가. 포상금 및 상금 (2,000천원) ・ 직원 포상금 : 2,000천원x1식=2,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70,000천원** 가. 공동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비 (70,000천원) ・ 운영비 : 583천원x10명x12개월=7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40,222천원** 가. 기계, 전기, 조경, 미화 전문직 고용부담금 (140,222천원) ・ 전문직 고용부담금 : 7,380천원x19명=140,22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천원** 가. 기타시설장비 구매 (1,000천원) ・ 물품 구매 : 1,000천원x1식=1,000천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1,665	1,702	1,469	1,873	1,910	
'24~'28		1,702	1,469	1,965	2,063	2,16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청사 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1,592	-	1,592	-	-	-	1,592	1,357	85.2	85.2	-	235
2022	1,628	-	1,628	-	-	-	1,628	1,312	80.6	80.6	-	316
2023	1,665	-	1,665	-	-	-	1,665	1,346	80.8	80.8	-	319
2024	1,702	-	1,702	-	-	-	1,702	1,655	97.2	97.2	-	4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1	56	63	63	63	-	63	63	-	-	100
2022	70	70	51	51	-	51	51	-	-	72.9
2023	72	72	59	59	-	59	59	-	-	81.9
2024	81	81	48	48	-	48	48	-	-	59.3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이 · 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충북혁신도시 공동어린이집 운영비(민간경상보조, 320-01)가 부족하여, 고용부담금(320-09)에서 7백만원 세목조정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25) 기술표준정책(71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302
명칭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국가기술표준원정책수립운영	기술표준정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품질경영대회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김상태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1	
	사업시행주체				
전문관 고용 포상금 운영 청년인턴 고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박상철	김상걸 서기관	김혜린
		지원총괄과	043-870-5320	043-870-5328	043-870-5332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정부안	확정(B)		(B-A)/A
기술표준정책	683	949	800	800	△149	△1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9	769	683	-	86	949	949	889	949	889	-	60	800
· 전문관 고용	619	620	536	-	84	637	637	623	637	623	-	14	657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116	116	116	-	-	205	205	205	205	205	-	-	57
· 포상금 운영	4	4	4	-	-	4	4	4	4	4	-	-	4
· 청년인턴고용	-	29	27	-	2	103	103	57	103	57	-	46	82
○ 비목별 분류(합계)	739	769	683	-	86	949	949	889	949	889	-	60	800
· 상용임금(110-03)	511	511	494	-	17	526	526	520	526	520	-	6	543
· 일용임금(110-04)	-	29	27	-	2	97	97	55	97	55	-	42	69
· 일반수용비(210-01)	62	62	62	-	-	142	142	141	142	141	-	1	11
· 복리후생비(210-12)	9	9	9	-	-	8	8	8	8	8	-	-	8
· 일반용역비(210-14)	54	54	54	-	-	64	64	64	64	64	-	-	47
· 국내여비(220-01)	-	-	-	-	-	5	5	2	5	2	-	3	4
·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 고용부담금(320-09)	99	100	33	-	67	103	103	95	103	95	-	8	11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9	769	683	-	86	949	949	889	949	889	-	60	800
· 전문관 고용	619	620	536	-	84	637	637	623	637	623	-	14	657
-상용임금(110-03)	511	511	494	-	17	526	526	520	526	520	-	6	543
-복리후생비(210-12)	9	9	9	-	-	8	8	8	8	8	-	-	8
-고용부담금(320-09)	99	100	33	-	67	103	103	95	103	95	-	8	106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116	116	116	-	-	205	205	205	205	205	-	-	57

	2023					2024('24.12월말)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62	62	62	-	-	141	141	141	141	141	-	-	10
-일반용역비(210-14)	54	54	54	-	-	64	64	64	64	64	-	-	47
· 포상금 운영	4	4	4	-	-	4	4	4	4	4	-	-	4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 청년인턴고용	-	29	27	-	2	103	103	57	103	57	-	46	82
-일용임금(110-04)	-	29	27	-	2	97	97	55	97	55	-	42	69
-일반수용비(210-01)	-	-	-	-	-	1	1	-	1	-	-	1	1
-국내여비(220-01)	-	-	-	-	-	5	5	2	5	2	-	3	4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8

※ 동 사업은 직접 수행 사업으로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동일함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문관 고용)** 국가기술표준원 정책·업무(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를 지원하는 전문관(16명) 인력 운영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국가품질경영문화 확산)**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활동 성과 포상을 통해, 품질경영 문화를 활성화하여 국가 품질경쟁력을 강화
- **(포상금 운영)**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부서 연말 포상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 역량 제고 유도
- **(청년인턴 고용)**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실무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고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산업표준화법 >

ㅇ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가표준화체계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06.0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2.0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6.0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수립
- 2019.06.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수립」(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ㅇ 국가품질경영대회 :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로 시작

< 최근 3년간 정부포상 수여 규모 >

구분	종류	’21년	’22년	’23년
정부포상	훈 장	4	3	**3**
	포 장	2	3	**3**
	대통령표창	18	18	**18**
	국무총리표창	13	13	**13**
정부포상 소계		**37**	**37**	**37**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7	2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5	5	**5**
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	10	**10**
협회	협회장표창	1	12	**13**
기타포상	우수품질분임조	288	266	**273**
	국가품질명장	16	9	**10**
선정	품질경쟁력우수기업	29	39	**43**
기타 포상 소계		**356**	**365**	**381**
총계		**393**	**402**	**760**

- 역대 주요 참석인사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20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한덕수 국무총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711	723	739	949	8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관 및 청년인턴, 품질경영 우수기업 및 개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전문관 고용: ('24) 637.2 → ('25) 657백만원, 19.8백만원 증액

- 인건비 특성상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
- (산출) 상용임금 543백만원(16명×283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 8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 106백만원(16명×663만원)

ㅇ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24) 204.8→ ('25) 57백만원, 147.8백만원 감액

- 품질경영 우수기업·유공자 포상을 위한 심사비와 포상물 제작비
- (산출) 심사수당 10백만원(20만원×3개분야×1.5일×11명) + 포상물 제작비 47백만원(2,200개×21,500원)

ㅇ 청년인턴 고용: ('24) 103 → ('25) 82백만원, 21백만원 감액

- 인건비 특성상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요구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ㅇ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실무경험 및 국정참여 등 청년 일경험 지원을 위해 4년간('23~'26년) 중앙행정기관 **인턴 채용 확대 추진**(국조실)

* ('23년) 2천명 → ('24년) 2.5천명 → ('25년) 3천명 → ('26년) 4천명

- (산출) 일용임금 69백만원(1명×210만원×3개월 + 5명×210만원×6개월) + 일반수용비 1백만원 + 국내여비 4백만원 + 고용부담금 8백만원

ㅇ 포상금 운영: ('24) 4 → ('25) 4백만원, 전년동일

-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 운영을 통해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활동 또는 표준화, 생산성향상, 서비스 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성과 평가

- (산출) 4백만원(개인·기관40명×10만원)

ㅇ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4년 예산		'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9 백만원	○ 전문관 고용 : 619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525.6백만원(16명×273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8.7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2.9백만원(16명×646만원)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204.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0.8백만원(심사수당) - 일반용역비(210-14) : 64백만원(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 4백만원 - 포상금(310-03) : 4백만원(개인·기관40명×10만원) ○ 청년인턴고용 : 103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7백만원 (1.6명x2.24백만원x3개월 + 6.4명x2.24백만원x6개월) -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5만원x100회)	800 백만원	○ 전문관 고용 : 657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543백만원(16명×283만원×12개월) - 복리후생비(210-12) : 8백만원(16명×54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6백만원(16명×663만원) ○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 : 57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심사수당) - 일반용역비(210-14) : 47백만원(포상물 제작비) ○ 포상금 운영 : 4백만원 - 포상금(310-03) : 4백만원(개인·기관40명×10만원) ○ 청년인턴고용 : 82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69백만원 (1명×210만원×3개월 + 5명×210만원×6개월) - 일반수용비(210-01) : 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백만원(5만원x80회) - 고용부담금(320-09): 8백만원(6명×129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391점 수여
2022	전문관 16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02점 수여
2023	전문관 16명 고용, 청년인턴 3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15점 수여
2024	전문관 16명 고용, 청년인턴 7명 고용, 품질경영 우수 기업 및 개인에게 훈·포장 등 451점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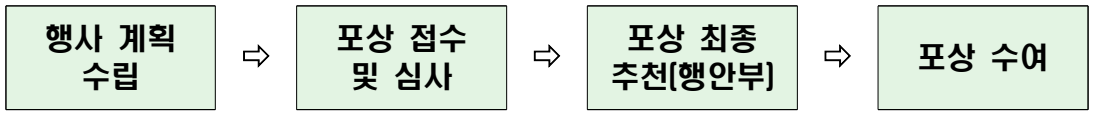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관의 안정적 고용 및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 수행

< 국가품질경영 유공 포상 수행 프로세스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3	'24	'25	'26	'27	'28
'23~'27	739	949	800	2,103	2,175	
'24~'28		949	800	1,906	1,965	2,0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관 인건비 및 실무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인건비 지출
- 품질경영 유공자를 포상·격려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 운영을 위해 지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711	-	711	-	-	-	711	675	94.9	94.9	-	36
2022	723	-	723	-	-	-	723	627	86.7	86.7	-	96
2023	739	-	739	-	30	-	769	683	92.4	88.8	-	86
2024	949	-	949	-	-	-	949	889	93.7	93.7	-	60

※ 23년도 청년인턴 고용에 따라, 30백만원 전용하여 인건비 집행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1년~2024년 결산사항

2021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6백만원 불용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96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청년인턴(3명)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인건비에서 30백만원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및 연도중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86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전문관 휴직 및 청년인턴 지원자 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0백만원 불용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품질분임조 및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요

□ 품질분임조 개념 및 현황

○ **(개념)** 산업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집단

* 공업표준화법 제정('61.9)으로 KS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해 시작한 '제조현장 품질관리 운동'이 그 시효

○ **(현황)** 9,000여개 사업장에서 약 54,000개 분임조가 활동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목적)** 품질분임조를 산업계 개선 활동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벤치마킹을 유도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 **(부문)** 현장개선, 사무간접, 서비스, 환경품질, 안전품질, 설비(TPM), 보전경영(EAM), 6시그마, 상생협력, 자유형식, 신제품개발(NPD),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AI, 제안사례 등 18개 부문

○ **(대상)** 품질경영추진본부 등록 품질분임조 중 시·도 예선대회 또는 기업군·사업장별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분임조가 전국대회 출전

품질분임조경진대회(예선)			
17개 시·도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기업군별 또는 단위사업장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본선)

* 품질경영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은 200개 이상 분임조가 있는 단위사업장은 자체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분임조 선발

○ **(내용)** 전국대회(본선)에서 품질분임조 활동내용에 대한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금·은·동 메달 선정하고,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수여

참고2 국가품질경영 유공 정부포상 개요

□ **(목적)**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 등 품질경영 혁신활동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와 우수기업에게 서훈·표창 수여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 포상)

□ **(연혁)** 1975년 10월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 **(포상분야)** 품질경영 유공(단체 및 개인), 우수품질분임조상, 국가품질명장, 품질경쟁력우수기업 포상 및 증서 수여

□ **(참석자)**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국표원장, 수상자 등 참석

- 역대 주요참석 인사
  - *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대회(김종필 국무총리)
  - *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노태우 대통령)
  - *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김영삼 대통령)
  - *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이낙연 국무총리)
  - *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정세균 국무총리)
  - * 20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한덕수 국무총리)

□ **포상규모**

구분	종류	'20년	'21년	'22년	'23년 수여 현황			'24년		
					개인	단체	계	개인	단체	계
정부포상	훈 장	3	4	3	3	-	**3**	3	-	**3**
	포 장	3	2	3	3	-	**3**	3	-	**2**
	대통령표창	18	18	18	7	11	**18**	11	7	**18**
	국무총리표창	13	13	13	7	6	**13**	6	7	**13**
정부포상 소계		**37**	**37**	**37**	20	17	**37**	23	14	**36**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2	17	24	15	10	**25**	18	7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5	5	-	5	**5**	-	5	**5**
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	-	10	10	-	**10**	10	-	**10**
협회	협회장표창	-	1	12	13	-	**13**	12	-	**12**
기타포상	우수품질분임조	304	288	266	-	273	**273**	-	298	**298**
	국가품질명장	23	16	9	10	-	**10**	9	-	**9**
선정	품질경쟁력우수기업	59	29	39	-	43	**43**	-	56	**56**
기타 포상 소계		**408**	**356**	**365**	48	331	**381**	49	366	**415**
총계		**445**	**393**	**402**	68	348	**416**	72	380	**451**

참고3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이력

연도	대회명	개최지	주빈
1975	제1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500	김종필 총리
1976	제2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900	장예준 장관
1977	제3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900	장예준 총리
1978	제4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600	최규하 총리
1979	제5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600	최각규 장관
1980	제6회 전국품질관리 및 표준화 대회	1,500	남덕우 총리
1981	제7회 전국품질관리 대회	4,000	서석준 장관
1982	1982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4,200	김동휘 장관
1983	1983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진의종 총리
1984	1984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신병현 부총리
1985	1985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신병현 부총리
1986	1986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200	나웅배 장관
1987	1987 전국공장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700	나웅배 장관
1988	제14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500	나웅배 부총리
1989	제15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1,500	한승수 장관
1990	제16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700	박필수 장관
1991	제17회 전국품질관리·표준화 대회	700	정원식 총리
1992	제18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노태우 대통령
1993	제19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황인성 총리
1994	제20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김영삼 대통령
1995	제21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이홍구 총리
1996	제22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이수성 총리
1997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고 건 총리
1998	제24회 전국품질경영대회	4,000	김종필 총리
1999	제25회 전국품질경영대회	1,700	김종필 총리
2000	제2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700	이한동 총리
2001	제2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300	장재식 장관
2002	제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300	김석수 총리
2003	제2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400	고 건 총리
2004	제3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이해찬 총리
2005	제3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이희범 장관
2006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600	한명숙 총리
2007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김영주 장관
2008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500	임채민 차관
2009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500	정운찬 총리
2010	제3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700	박영준 차관
2011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600	김황식 총리
2012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600	김황식 총리
2013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900	정홍원 총리
2014	제4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정홍원 총리
2015	제4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황교안 총리
2016	제4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1,800	정만기 차관
2017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정동희 원장
2018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성윤모 장관
2019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이낙연 총리
2020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현장 40	정세균 총리
2021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현장 91	이상훈 원장
2022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장영진 차관
2023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00	한덕수 총리